

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

- 일제의 해외 조선인 통제와 친일협력(1931~1945)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

초판 1쇄 발행 2009년 10월 30일

발행인 || 성대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

- 일제의 해외 조선인 통제와 친일협력(1931~1945) -

발간사

이제 마침내 우리 위원회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4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제1기는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1919년), 제2기는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1937년), 제3기는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1945년) 입니다.

그러나 8·15해방 후 6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지금은 제3기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위원회 전체 활동을 수록할 종합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과 재작년에 제1기와 제2기 조사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모두 일곱 권의 사료집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3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들을 선별하여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은 제8권에서 제16권까지 총 9권이며, 제8권에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전시총동원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총독의 훈시와 법령을 비롯하여 조선인 노동력 동원과 병력동원 관계 자료와 친일언론의 전쟁지원 논설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9권에는 1937년 이후 전시체제에 조선인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등 친일단체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10권에는 일제의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조선인의 글을, 제11권에는 1937년 이후, '만주국'의 조선인 통제와 해외에서의 친일협력 자료를, 제12권에는 일제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한국인(조선인)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또 제13권에는 유교계의 친일협력 글과

친일 한시를 모으고, 지금껏 번역되지 못하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학원, 조선유도연합회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제14권에는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협력의 주제로 기독교·천주교·불교·천도교의 친일관련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15권에는 문화예술계의 식민화 정책과 관련 조직들의 자료를 묶었습니다. 끝으로 제16권에는 조선인이 친일협력을 목적으로 쓴 시와 소설, 희곡과 시나리오, 악보와 가사, 미술작품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용제의 친일 시집 3권 『아세아시집』, 『서사시어동정(敍事詩御東征)』, 『보도시첩』은 조선인이 일본어로 시를 써서 단행본 시집으로 묶어낸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료집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함께 발간하는 마지막 사료집입니다. 그래서 제3기에 조사 관련 사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1차 사료집(2007년)과 2차 사료집(2008년)에 실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자료로 활용했던 조선인 훈포상 자료, 종교관련 자료, 문학예술관련 자료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발간한 사료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편찬하는 9권의 사료집뿐만 아니라 이미 간행한 7권의 사료집 내용도 함께 디지털화하여 CD에 담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시민사회와 학계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사료집을 연구와 교육에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과거사 가운데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간된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지나사변, 대동아전쟁 등이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필자명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 왼쪽에 표기하고 ‘,(콤마)’로 연결했다.
단행본명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은 경우, 『 』로 표시하고 연도를 병기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 발간사 4
 * 해 제 : ‘만주국’과 중국 상해 및 일본지역 조선인 통제와 친일활동 13

1. ‘만주국’의 조선인 통제와 친일협력

1. 치안과 경찰 47

 1) 경찰기구 47

 (1) 만주국의 치안(1935~1936) 47

 (2) 치안개황월보 제9호(1940.9) 57

 (3) 관동군 제2독립수비대 사령관 노조에(野副)의 ‘대토벌’(1939~1941) 65

 (4) 만주국 중앙경찰학교 132

 (5) 만주국 간도성 경찰학교 144

 (6) 만주국 치안부 경무사 149

 2) 신선대 184

 (1) 일본이 양성한 주구, 신선대 184

 (2) 간도성 내 비적 토벌 상황에 관한 건 외(1940) 187

 (3) 화룡현에서의 신선대 개관 205

2. 이주개척사업 207

 1) 간도 훈춘 재주(在住) 40만 동포의 도현(倒懸)을 구제 207

 2) 야마지 세이시(山地誠士), 수화(綏化) 안전농촌 건설 상황 210

 3) 조선인 이민의 8대 의의 217

 4) 반도인 이주의 안전농촌 자립 218

 5) 원용국, 안전농촌과 재만 선농(鮮農)에 관한 소견 219

 6) 히라이 센조(平井千乘), 만주에 안전농촌의 건설 222

 7) 만주국의 조선인 이민 통제내용? - 윤상필(만주국 민정부 척정사 제2과장) 씨와 문답 226

 8) 윤상필, 순리화한 조선이민 입식책 230

9) 윤상필, 만주에서 조선개척민에 대한 희망	234
10) 홍양명, 대륙진출의 조선민중 -만주국에서 활약하는 그 현상	237
11) 홍양명, 재만동포의 결전생활	241
12) 한상룡, 농공병진의 발전을 희망	242
13) 윤상희, 조선농민의 만주 이주 문제	243
14) 윤상희, 재만조선인의 취적문제	247
15) 윤상희, 조선인 만주개척민의 보호와 지도에 대하여	251
16) 윤상희, 조선인 만주개척 청년의용대에 대하여	254
17) 김연수, 만주개척민의 동아신건설 참여(라디오 방송요지)	257
18) 신기석,嫩江地區의 조선개척민 선견대(先遣隊)	260
3.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264
1) 『만선일보』의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뉴스’ 연재 기사	264
2) 선계(鮮係) 보도(輔導)의 행진보(行進譜), 강연과 영화의 밤, 동남지구공작후원회 지부도 조직(기사)	275
3) 김일성 등 반국가자에게 권고문, 재만동포 150만의 총의로	276
4. 언론출판물 게재 주요 친일논설	279
1) 『만선일보』	279
(1) 본보(本報) 사명의 재인식 -창간 7주년을 맞이하여(사설)	279
(2) 신체제의 이념과 국민의 협력(사설)	280
2) 『재만조선인통신』	281
(1) 김대우, 평화의 전사로 사명을 다하라	281
(2) 박석운, 동아민족 결성에 신기운	282
(3) 박석운 외 14인, 재만조선인의 당면문제	285
(4) 송찬도, 시국을 인식하라	298
(5) 윤상필, 미가(米價)와 재만동포에의 요망, 재만동포는 정부를 신뢰하고 국책에 협력하라	299
(6) 이성환, 중대한 사명을 자각하라	301
(7) 조원환, 자족(自族)의 돈목(敦睦) 없이 타족(他族)과의 협화는 무망(無望)	301
(8) 조원환, 복지사변과 총후의 임무(강연)	303
(9) 조원환, 총후 우리의 임무	306
(10) 최남선, 조선 문화 당면의 문제	308
(11) 최병협, 반도문화의 장래에 대하여(1~6, 終)	312
(12) 최병협, 아세아의 재건시대	346
(13) 최탁, 현역 지원병제도의 실시와 조선인의 각오	348

- 3) 기타 350
 - (1) 권태산, 『만주제국의 확립과 대동아 건설의 기본문제』(1933) 350
 - (2) 이범익, 간도에 와서 393
 - (3) 장규원(高山遠源), 건국 실천담 396
 - (4) 최남선, 건국대학과 조선청년 397
 - (5) 최남선, 만주건국의 역사적 유래 399

II. 만주국군과 간도특설대

- 1. 『만주국군지』 411
- 2. 간도특설대 458
 - 1) 『위특설부대조직활동』 458
 - 2) 특수부대 - 간도특설대 554
 - 3) 조선인 특설부대를 만주국군에 신설(기사) 557
 - 4) 간도성내 조선인 특설부대(기사) 557
 - 5) 국군 조선인부대 모집협의회 개최, 화룡(和龍) 대랍자(大拉子)학교 강당에서(기사) 558
 - 6) 최무, 연길가민(延吉街民)에게 특설부대 위안금에 대하여(기사) 558
- 3. 윤상필 개인앨범 수록 사진(1931~1935) 560
 - 1) 육군기병 제28연대 소속 활동(22점) 560
 - 2) 열하(熱河) 침략전쟁 참가(70점) 571
 - 3) 관동군사령부 재직(55점) 599

III. 만주국 협화회와 관련단체

- 1. 협화회 개관 621
 - 1) 만주국의 근본이념과 협화회의 본질에 대하여 621
 - 2) 『협화필휴(協和必携)』(1936) 627
 - 3) 하라 타쓰로(營原達郎), 협화회의 전모 645
 - 4) 사카타 슈이치(坂田修一), 협화회의 실천운동 660
 - 5) 김태호, 협화회의 본질과 그 사명 671
 - 6) 코야마 사다토모(小山貞知), 만주국 협화회의 성격과 그 변천, 정당적인 것에서 향도적인 것으로 675
 - 7) 윤상필, 제2회 일만화(日滿華) 흥아(亞團)단체 회합에 대한 소감 685

2. 협화회의 사업과 활동	686
1) 신경협화소년단	686
2) 교육진흥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	691
3) 만주국 협화회 전국연합의회 기록	707
4) 김경재, 협화회 전련(全聯)과 조선인 대표	716
5) 만주국 협화회 조선인 직원 100명 명단	718
6) 해내·해외 조선동포의 현지 보고, 조선인 발전책(신년의 글)	721
7) 협화회, 각 개척지에 협화분회 결성을 종용(기사)	727
3. 조선인 교육후원회	728
1) 선계(鮮系) 교육 경영기구와 기타 문제 타개차 교육후원회를 조직(기사)	728
2) 교육후원회 태세 확립, 양 당국에 진정 결정(기사)	729
3) 오노(大野) 정무총감과 회견, 교육문제 상세설명(기사)	730
4)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조선 내에서 드디어 결성(기사)	731
5) 재만조선인 교육, 조선 측 후원회(기사)	731
6) 최창국(崔昌國), 재만조선인 교육문제	732
7) 조재호, 재만조선인의 금후 교육	742

IV. 중국 상해지역 조선인의 친일협력

1. 전시하 상해지역 상황과 조선인 협력	747
1) 상해거류조선인회	747
2) 김경재, 전시하의 상해	751
3) 상해서 지원병 지망, 성대한 송별에 신의주로	756
4) 반도동포의 징병제실시 선서식	756
2. 『광화』와 이갑녕	757
1) 신질서의 원리	757
2) 지나의 동무들과 늙시다	758
3) 발행인 이갑녕의 편집후기	759
4) 친일잡지 『광화』 발행	760
5) 상해의 근황과 재류조선인 생활상(이갑녕 대담록)	760
3. 손창식 기록	765
1) 상해시 경찰국의 조선국적 손창식에 관한 자료	765

V. 일본 협화회와 『동아신문』

1. 일본 중앙협화회 개관	841
1) 협화회 사업개요(1937)	841
2) 중앙협화회 요람(1940)	892
2. 협화회와 기업의 조선인 노동자 통제	907
1) 반도광원 모집 관계서류(1940)	907
2) 노무자 훈육 구체안(1943)	943
3) 보도원 필휴(1943)	985
4) 게이한신(京阪神)협화회원의 부여신궁 어조영 근로봉사(사설)	988
5) 아이치현(愛知縣)협화회원 보도원의 소리를 듣는다(기사)	988
3. 동아신문사 사장 임용길의 글	993
1) 『용사에게 바치는 학동의 문집』 서문	993
2) 『적성(赤誠)의 대륙』에 붙여	994
3) 재지(在支)반도인은 모두 훌륭한 황민	995
4) 봉축의 글	996
5) 황군의 무운(武運)이 장구하길 바람	997
6) 야마자키(山崎) 선생에게 반도사정을 듣는 모임	998
4. 『동아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	999
1) 반도지원병 최초의 전사(사설)	999
2) 권태용, 무사시노(武蔵野)의 고려촌과 내선일체(기사)	999
3) 반도인과 씨 창립에 대한 열의(사설)	1000
4) 고권삼, 왕도철학과 황도철학(1~5)	1001
5) 내지 재주의 반도청년에게 복음(사설)	1005
6) 세계재건과 만주사변, 조선출신자 협력의 공(사설)	1006
7) 내지 재주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는 급무(기사)	1007
8) 혈서로 해군 지원, 반도청년 금광청호(金光淸浩) 군(기사)	1008
9) 오로지 감격의 극치! 조선징병제 간담회, 오사카부 협화회 주최(평론)	1009
10) 협화사업에 활을 당기는 자!(기사)	1010
11) 동아신문의 열의(기사)	1011
* 찾아보기	1013

해제 : '만주국'과 중국 상해 및 일본지역 조선인 통제와 친일활동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머리말

자료집 제11권은 1937년부터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중국 관내와 만주국 시기의 중국 동북지역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한 친일 조선인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이 시기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은 물론 만주국 전역에 전시총동원체제를 수립했다.

11권은 먼저 이 시기 만주국의 무장폭력기구인 경찰과 그 외곽 무장조직인 신선대, 만주군(특히 간도 특설대) 그리고 만주국 최대의 대민 통제기구이자 이데올로기 기구로서 군림한 만주제국 협화회와 산하 기구, 관련 단체들, 조선인의 만주 이주정책과 일제의 만주 통치 정책의 상관성, 그리고 주요 조선인들의 협력 활동과 관련 자료들을 번역 또는 편집해 수록했다. 다음으로 전시하 상해 지역의 조선인거류민회와 산하 조직 그리고 상해조선인거류민회를 이끌던 이갑녕과 그가 발행한 기관지 『광화』 그리고 일제 패망 후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전범재판을 받았으나 요행히 풀려난 손창식의 재판 자료 등을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지역에서 각종 조선인 융화·친목단체가 중앙협화회로 귀일되는 양상과 기업이 협화회를 통해 재일조선인 노동자를 통제하는 양상을 드러내주는 자료들을 수록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 운영하는 신문으로 최장기 발행, 최대부수 발행을 자랑하던 친일지 『동아신문』의 논조와 운영자 임용길 관련 자료들을 아울러 수록했다. 동일한 전시체제라고 해도 지역별로 또 일제의 정책적 판단이나 조선인들이 처한 양상에 따라 일제의 통제 정책이나 조선인들의 협력행위도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조선인의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1. 만주국의 조선인 통제와 친일협력

1) 만주국의 치안과 경찰

(1) 경찰기구

1932년 만주국이 성립된 후 1937년에 이르러서도 만주 전역에서 항일무장세력의 활동은 지속되고 있었다. 만주 지역 항일무장투쟁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동북항일연군이 주축을 이루었고 조선인 항일무장세력도 대체로 여기에 편제되어 조·중 연합군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1937년 7월 신설된 경찰 총지휘부인 치안부 시기(1937년 7월~1943년 3월)에는 만주경찰은 주로 만주국군과 함께 관동군의 지휘 아래 국내 치안, 특히 항일무장세력을 소탕하는 활동에 주로 종사했다. 1943년 4월 1일자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치안부가 해체되고 총무청 산하에 경무총국이 설치된 이후 만주국 경찰은 무력 진압과 사상적 진압 외에 양곡출하, 물자 수탈과 노동자 징집 등 인력과 물자를 쟁탈하기 위한 모든 영역으로 활동을 넓혔다. 경찰은 경무총국의 지휘하에 사상정책, 경비(警備) 및 방공(防空)을 중심으로 특무경찰·경비경찰·경제경찰로 확대되고 특무처와 경비처 두 기구를 신설했다.

여기서는 주로 치안부 시기 특히 1937년 7월부터 1941년 시기를 중심으로 만주 경찰의 특징과 그 속에서 조선인 경찰 활동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 만주국 경찰은 각 지방의 치안유지를 제1목표로 관동군·만주국군과 함께 항일무장투쟁 세력에 대한 ‘토벌작전’을 주요한 활동으로 삼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만주국 경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경찰은 관동군의 일부분으로 경찰의 조직, 구성, 인원의 분배 등과 관련하여 관동군의 직접적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 이는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 정부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만주국 경찰이 관동군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경일체(軍警一體) 조직이었음을 의미한다. 치안부 시기에는 치안부 산하 경무사가 경찰을 지휘했다. 일제가 치안부를 설치한 목적은 치안부 대신의 일원화된 지도 아래 군경일체로 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자 한 데 있었다. 즉 관동군이 전적으로 대소 침략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주국군과 경찰이 만주국 내의 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치 목적이었다. 초대 경무사장은 시부야 사부로(澁谷三郎, 일본군 퇴역 보병대좌)가 임명되었으며, 치안부 차장이 중앙보안국 장관을 겸했으며, 각 성(省)의 경무청장이 각 성 지방보안국장을, 각 성의 특무국장이 각 성의 지방보안국 이사장을 겸했다. 각 성 특무국장의 임명과 이동은 관동군의 비준을 거쳐야 했다. 한편 중앙보안국의 참여(參與)는 관동군 사령부 제2과의 군관이 임명되었고, 지방보안국 참여는 당지 특무기관장이 임명했다. 요컨대 일제는 치안부를 통해 경찰행정을 전국 일원화하고, 관동군이 치안부 요소요소를 장악해 만주 경찰을 조종했다.¹⁾

둘째, 만주국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무장부대가 약 30만 명이 있고 또한 중국 본토와 경계를 접하고 소련과 서로 인접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국 경찰에는 강한 무장력이 요구되었고, 경찰의 핵심은 헌병과 조선, 대만 및 외무성에서 식민지 파시즘 통치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조성되었다.

1) 1943년 4월 경무사가 경무총국으로 바뀌고 국무원이 경무총국을 직할하는 체제로 넘어갔다.

특히 1937년 12월 치외법권이 철폐되자 관동국과 외무성의 일본인 경찰 다수가 만주국 경찰로 편입되었다. 이때 여기에 소속된 조선인 경찰도 다수가 만주국 경찰로 넘어와 주로 재만조선인에 대한 통제와 조선인 항일세력에 대한 탐문 수사와 무장 '토벌'에 종사했다. 1941년 이후에는 만주국 내에서 무장항일 세력은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재만 조선인 경찰과 그 외곽조직의 조선인 항일세력에 대한 탄압은 주로 1937년부터 1941년 사이에 집중되었다.

셋째, 항일세력에 대한 수사와 무장 토벌을 전문으로 하는 '특무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만주국 특무경찰은 대단히 다양하게 존재했다. 일본의 특별고등계에 해당하는 고등특무로는 만주국 비밀경찰인 보안국(특히 1·2·3·4과 중 제2과)과 특무처의 특고과·특무과·외사과와 그 예하 기구 그리고 밀정경찰과 특수하게는 경무사지문관리국의 감식과가 있었다. 지문감식업무는 1934년 2월부터 실시되었는데, 간도성의 경우 1939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토벌활동'에 종사하였던 이른바 '토벌경찰'로는 경찰토벌대(1939년 6월~1940년 6월)와 특무경찰토벌대(만주국 특무경찰, 특별수사반, 특수반 등으로 불림) 등이 있었다. 경비(순찰)조직이 전신인 특무경찰토벌대는 1936년 7월부터 각 현 토벌대에 특수반 형태로 배치했는데, 이들은 특무고(特務股)와 특무계에서 선발되었다. 이외 해상경찰대(1932년 5월)·삼림경찰대(1939년 삼림경호대로 출발)·국경경찰대(1938년 4월 1일 국경감시대를 개편해 조직)·경찰경비대(1941년 6월)·경제경찰(경제보안과·경제보안과)·노무경찰·철로경찰(철로보안경찰·철로특무경찰)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 경찰이 존재했다. 한 마디로 전 경찰의 특무화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만주국 경찰의 또 하나 주요 임무는 재만조선인 사회를 집단부락으로 재편해 감시·통제함으로써 재만조선인과 조선인 항일무장세력의 연결 고리를 끊고 나아가 재만조선인들을 무장화시켜 항일세력에 대항케 하려는 것이었다. 집단부락의 조직화에는 경찰만이 아니라, 관료와 협회회 조직이 공동으로 간여했다. 이와 함께 일종의 인보(隣保)조직인 보갑제(保甲制) 등을 실시해 군경의 취약 지역을 민간 방위조직을 통해 보강하고자 했다.

1937년에서 1941년 시기 만주국에는 특무·경비·경제경찰을 중심으로 10만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었고, 이 중 일본인은 약 8천 명이였다. 특히 특무경찰은 거의 일본인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까지 경찰 간부 대부분은 일본헌병대에서 전문적으로 무력진압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으며 나머지는 관동군 출신이었다. 각 성 특무과장의 임명과 인사이동은 반드시 관동군의 비준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지방의 핵심 간부는 1933년 외무성과 관동국 경찰로부터 약 150명의 경무지도관(警務指導官)을 채용하고 지방 경찰지도관으로 임명하였으며, 또한 경무지도관 대부분은 1934년 2월 관동국·외무성·조선·대만경찰 중에서 채용하여 다년간 쌓아온 식민지경찰의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1937년 12월 치외법권 철폐로 인해 관동국과 외무성의 경찰관 다수가 만주국으로 흡수되었으며, 1939년 말에는 전시하의 경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경제경찰을 대량으로 배양하였다.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약 25명의 전문 경제경찰을 초빙하여 중앙과 장춘, 심양, 하얼빈 등에 배치하였다. 중앙과 각 성(省)의 경찰 책임자는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조선인 경찰은 주로 간도성(間島省) 등지에 집중되어 재만조선인 사회를 통제하거나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추적과 토벌활동에 직접 종사했다. 비록 재만조선인 경찰의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었고 고급 간부의 민족별 비중도 높지 않았다. 만주국 경좌(경부급에 해당) 이상의 조선인 수요는 200명에서 300명 정

도로 추산된다. 그 이하 조선인 경찰의 수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은 재만조선인 사회를 최일선에서 통제하는 핵심분자들이었으며, 재만조선인 사회에 침투하고 조선인 항일세력을 추격하고 소멸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급 지휘관이라기보다 일선의 통역, 수색과 첩보 활동, 길잡이, 직접적인 전투 참가, 심문 등의 활동을 전개해 동만지역 조선인 항일무장세력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이 때문에 조선인 경찰들은 일제 패망 후 재만조선인과 중국 민중의 제1차 타도 대상이 되었다.

자료집 1장 1)에는 만주국 경찰이 본질적 임무로 자처한 국내치안의 핵심이 항일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무장타격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조선인 항일세력에 대한 만주국(조선인) 경찰의 구체적 죄상을 보여주는 자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가려 뽑아 수록했다. 제목과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자료 제목	출전	내용
만주국의 치안 (1935~1936년)	關東軍參謀部 編, 『(最近に於ける)滿洲國の治安』, 新京 : 關東軍參謀部, 1937년	조중 항일세력에 대한 만주국 경찰의 무장 탄압 사례
치안개황월보(제9호) (1940년 9월)	治安部警務司警防科, 「一般概況 康德7年 9月分 治安概況月報(第9號)」, 『日本關東憲兵隊報告集(第二輯) 5』, 桂林 :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년	조·중 항일세력에 대한 만주국 경찰의 무장 탄압 사례
관동군 제2독립수비대 사령관 노조에(野副)의 “대토벌”(1939~1941년)	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野副“大討伐”」,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東北大討伐』, 北京 : 中華書局, 1991년	조·중 항일세력에 대한 만주국 경찰의 무장 탄압 사례
만주국 중앙경찰학교	治安部警務司中央警察學校, 「中央警察學校」, 『滿洲國警察學校要覽』, 1938년	만주국 고급 경찰 양성학교
만주국 간도성 경찰학교	治安部警務司中央警察學校, 「間島省地方警察學校」, 『滿洲國警察學校要覽』, 1938년	1935년 12월 설치한 만주국 지방(간도성) 경찰 양성학교
만주국 치안부 경무사	吉林省公安廳公安史研究室, 東北淪陷十四年史吉林 編寫組 編譯, 「治安部警務司」, 『滿洲國警察史』, 1990년	1937년 7월부터 1943년 3월까지 존속한 경찰 최고 지휘기구

(2) 신선대

신선대(神選隊, 新選隊)는 1938년 7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존속한 만주국 경찰특수조직이다. 장백산(長白山 : 백두산) 지구의 항일연군—특히 조선인 최현 등이 이끄는 항일부대를 제거하고자 만주국 경찰 안도현(安圖縣) 경무과의 지휘하에 조직되기 시작해 연변 각 현의 자위단과 경찰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신선대가 설치되었다.

1937년 중반 안도현 경무과 경방고장 박호길(朴好吉 : 경좌)이 안도현 안도촌 흥룡하(興隆河)에서 백두산 일대의 포수와 옛 군인출신들을 대상으로 신선대를 조직했다. 성립 당시에는 17명의 대원으로 출발했으나 1939년 11월 만보촌(萬寶村) 십기가(十騎街)에서 40명의 신선대 대원을 확충하고 이후 90여 명으로 대원이 증가하였다. 초창기에는 대원 대부분이 조선인이었지만 조직이 확대되면서 일부 중국인들도 끌어들였다. 신선대는 흥룡하에서 조직된 신선대를 신선대 제1대, 십기가에서 조직된 신선대를 제2대로 편성하였다. 안도현 신선대의 조직 편성은 다음과 같다.

〈조직 및 참여자〉

대장 : 채봉림(蔡鳳林, 1대), 이창조(李昌朝, 2대)

제1대대 대장 : 박호길, 부대장 : 신덕승(辛德勝), 참모장 : 김두익(金斗益)

제2대대 대장 : 이도일, 참모장 : 장홍성

한편 화룡현(和龍縣)에서 조직된 신선대는 박승벽(朴承璧)이 대장, 연길현병대 밀정인 김일로(金日怒)가 부대장이었다. 이들은 맹산(孟山) 홍기하(紅旗河) 득미동(得味洞) 등지에서 항일연군에 대한 ‘토벌’활동을 전개했다.

안도현과 화룡현 신선대는 현지 경찰 또는 헌병의 지휘 아래 수십 차례 출동해 항일연군을 공격해 악명을 떨쳤다. 신선대는 1941년 3월 홍기하 전투에서 김일성 부대에 의해 거의 궤멸당하고 5월에 해산했다. 일제가 패망한 후 박승벽은 사형당했고, 김일로는 한국으로 도주해 군 장성이 되었다고 한다.

신선대의 성립과 죄상에 관한 관련자료 가운데 수록된 것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목	출전
일본이 양성한 주구, 신선대	政協安圖縣文史資料委員會, 「日僞豢養的鷹犬—新選隊」, 『安圖文史資料』第4輯, 1990년
간도성 내 비적 토벌 상황에 관한 건 외(1940년)	「琿領情機密 第85號, 間島省内匪賊討伐狀況ニ關スル件(1940.3.19)」, 『現代史資料(30) 朝鮮(6)』, みすず書房, 1980년
	「琿領情機密 第94號, 匪賊情報報告ニ關スル件(1940.3.29)」, 『現代史資料(30) 朝鮮(6)』, みすず書房, 1980년
	「琿領情機密 第114號, 匪賊情報報告ニ關スル件(1940.4.20)」, 『現代史資料(30) 朝鮮(6)』, みすず書房, 1980년
화룡현에서의 신선대 개관	吉林省文物志 編委會 主編, 『和龍縣文物志』, 吉林省: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1984년

2) 재만조선인 통제를 위한 이주개척사업

자료집 I 장 2절은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와 개척을 적극 주장한 친일 조선인들의 글들을 수록했다. 이른바 조선인의 권익과 생활향상을 위해 만주로 이주해 개척에 힘쓰자는 이들의 주장이 실상 일본의 만주국 정책과 대외 침략전쟁 그리고 재만조선인 통제 정책의 하나였음을 원 자료를 통해 직접 드러내 고자 한다.

식민지 시기 일제가 추진한 조선인 만주 이주정책은 만주국 성립 이전에는 1) 조선 내 농촌 과잉 인구의 해소 2) 만주에서 조선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 만주국 성립 이후에는 1) 일(日)－선(鮮)－만(滿)으로 이어지는 경제 시스템 아래 조선인 이민을 통한 경제 안정화와 만주에서의 개척을 통한 농업 생산력 확충, 2) 재만조선인 사회의 통제를 통한 재만조선인 항일세력의 소멸 3) 오족협화(五族協和)의 미명 아래 만주국 개발의 인적 요소를 확보한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만주국의 조선인 관리들 상당수는 재만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개척 사업과 관련한 부서에서 활동하였다. 또

재만조선인 관리는 물론 만주와 조선의 친일 지식인들은 만주 이민의 선전요원으로 글 또는 강연을 통해 조선인들이 만주 이주와 개척의 선봉에 설 것을 주창했다. 이들은 이러한 만주 이주와 개척론을 재만조선인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민족적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변명·미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개척은 어디까지나 일본제국의 일·선·만 경제정책과 만주국 통치 방침 그리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침략전쟁과 이에 따른 재만조선인 통제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논리가 교묘한 민족논리를 동원해 조선인의 권익을 가장하면서, 궁극적으로 재만조선인의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꾀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먼저 재만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개척에 대한 일제의 정책과 그 본질을 시기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만주지역으로의 조선인 이주는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19세기 중반부터 간도협약 및 한국병합 시기까지, 제2기는 1910년 전후부터 1931년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1932) 시기까지, 제3기는 만주국 건국 이후 1945년까지의 시기인데 1936~1937년(치외법권 철폐와 중일전쟁 발발)을 경계로 전기,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 이주에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즉 19세기 중반 청조가 그간 봉금(封禁)되어 있던 간도 지방을 개방한 이래 경제적으로 북부 조선의 빈궁 농민들이 만주로 이주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의병투쟁 이래 항일운동의 거점으로서 민족주의자들의 망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00년에 약 7만, 1916년에는 30만 명이 넘는 ‘재만조선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부 조선의 농민들이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일제의 농업정책에 의해 몰락한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만주로 대량 이주하기 시작했다. 일제 당국도 만주로의 일본인 이민을 추진했으나 별 성과가 없자, 이 대신 조선인이 만주로 이주하는 것을 방임 또는 보호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인이 일본에 이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과 병행되어 일본 내의 고용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일제는 조선인의 이주를 만주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조선인 사회에 민회를 조직하고 영사관 분관을 통해 재만조선인 사회를 통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조선인 항일세력과 충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일제의 토지침략 첩병으로 인식하는 중국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 가운데 중국 동북 군벌은 귀화를 통한 동화(同化)를 유도했고, 일제 당국은 조선인에게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간도 지방에 대해 영사관 경찰을 이용한 실질적 지배를 관철하고, 여타 지방에 대해서는 간접적 지배를 병행하는 방침을 취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1932년 3월 만주국이 수립되면서 일본은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했고, 조선인 농업이민도 급증했다. 1927~1930년 사이에 56만에서 61만으로 5만 명 정도 증가했던 것이, 1933~1936년 사이에는 67만에서 88만으로 무려 21만 명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만주국을 조종하는 관동군과 조선총독부는 만주 이민을 둘러싸고 첫째, 정책의 주안점, 둘째, 이민의 영농 방침, 셋째, 이민 기관의 형태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조선총독부 측은 주로 조선 내 과잉인구와 소작쟁의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조선인 이민을 추진했다. 이른바 ‘남선(南鮮) 공민(窮民)의 구제, 노동력 수급의 조절, 부원(富源)의 개발, 과잉인구의 조절, 내지(內地: 일본) 도향 노동자의 삭감’을 5대 지침으로 내건 서북선 개척을 통해 “대규모 만주 진출의 발판”(우가키 총독)을 마련하고, 자본가적 대농의 소수 이주를 지양하고 자작농(自作農) 창정(創定)을 목표로

대규모 이주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만선농사주식회사를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해 이주민 관리를 하려고 했다.

반면 관동군 측은 무엇보다도 군사·정치적 관점에서 일본 척무성과 함께 일본인 무장이민의 입식(入植)을 위주로 하며 조선인 이민은 되도록 배제한다는 방침이었다. “장래 일본 이민사업의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농 이민을 조절”한다는 방침 아래, 만주국 내에 산재한 조선인 농민을 집단화하는 것, 즉 안전농촌 및 집단부락 건설에 중점을 두고 신규 이민은 억제한다는 것이 기본구상이었다. 이민 기관도 만주국 측 기관으로의 단일화 안을 내세웠다. 실제로 만주척식주식회사(송출)와 만주농지개혁회사(수용), 그리고 협력기관으로서 만주이주협회가 설립되어 관동군과 만주국 정부 주도의 이민안이 우위를 점하면서 만주국 초기의 농업이민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34~1936년 사이에 만주국 현지에서 대규모 농민 무장저항이 일어나고, 조선에서도 1933년 이후 소작쟁의가 격화하고, 조선인의 내지 도항 문제가 본토의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키자 관동군과 조선총독부는 타협점을 모색했다. 이 결과 관동군은 일본인 무장이민 위주의 이민정책을 수정하여 조선총독부 측의 구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그 타협의 귀결점이 바로 1936년 8월 관동군의 「재만조선인 지도요강」에 입각한 「선농(鮮農)취급요령·선농(鮮農)이주통제 및 안정 실시요강」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선인 신규 입식 호수를 연간 1만 호 이하로 제한하고, 입식 대상지역도 간도성과 구 동변도 지역으로 제한하며, 기존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조선인 농민들을 별도의 지정된 장소로 집단 이주시킨다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이 「지도요강」에 입각하여 당초 15년간 15만 호(75만 명)의 이주 계획을 수립했다가 곧 제1기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이민 영농의 방식은 자작농 창정주의가 채택되었으며, 이민기관도 총독부의 독자적 기구가 인정되었다. 그 결과 토지대, 가옥건축비, 영농자금 등을 보조하여 수확 개시년도부터 20년 이내에 연부상환하고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방침 아래, 1937년 경성에 선만(鮮滿)척식주식회사, 신경(新京)에 만주척식유한공사(만척)가 각각 설립되어 농업이민의 송출과 수용 업무를 전담했다.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이민 구상이 거의 관철된 셈이었다.

그러나 1936년부터 이른바 ‘통제이민’으로 바뀌어갔다. 중일전쟁 이후 관동군은 「재만조선인 지도요강」을 일부 개정하는 한편 새로이 「선농 취급요령」을 제정했다(1938년 7월). 「지도요강」 개정의 중점은 향후 조선인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전방하에서 이민 역시 “군사적 필요에 따라 통제 지도”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만주국 정부가 조선인 이민의 지역·종류별 입식 호수를 결정하고 총독부에 통지한 뒤 총독부의 할당에 의해 이주지역별 입식자를 결정한다는 프로세스로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조선인 이민은 집단이민, 집합이민, 분산이민의 세 종류로 구분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집단이민은 총독부와 만주국, 선만척식과 만선척식이 알선하여 각종 자금(여비와 농경자금)과 경지, 가옥을 보조하여 자작농 창정을 전망하는 이민 형태였다. 집합이민은 기존 이주자의 연고 초빙 형태로 만선척식과 만주국 지방금융회가 관여하고 선만척식이 토지만 보조하여 소작농으로 정착시킬 입식자를 선발해 이주케 하는 형태였다. 이들 집단이민과 집합이민에 대해서는 만선척식과 선만척식이 각각 길림성 강밀봉(江密峰)과 강원도 세포(洗浦)에 이민 예정 농민들에 대한 ‘입식훈련소’를 개설하기도 했다. 한편 분산이민은 종래 관동군의 ‘방임정책’하에 이루어져 왔던 ‘자유이민’의 이름만 바꾼 형태

로서, 만선척식의 관여 없이 만주국 개척총국과 지방행정기구의 주도하에 희망자를 모집해 전형한 뒤 이주증명서를 발급하여 자비로 이주시키는 형태였다. 이 분산이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주국과 조선의 '국경' 양안에 단속기관이 설치되었다. 조선 측에서는 신의주, 만포진, 혜산진, 상삼봉, 남양 등에, 만주국 측에서는 안동, 집안, 장백, 개산, 도문 등지에 이민 판사처가 세워져 단속을 실시했다. 집단·집합이민은 간도성(약 40%) 중심의 동만주 지역에, 분산이민은 길림성(약 35%) 중심의 남만주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전개된 세 가지 형태의 '통제이민'은 만주국의 치안유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관동군의 '군사적 필요'에 대한 강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 집단거주지를 만주국 내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치안대책의 차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1933년 이래 치안대책으로 추진되어온 안전농촌과 집단부락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농업이민을 통제한다고 하는 발상이었다. 따라서 일부 조선인들이 조선인의 만주 이주에 대해 '대륙진출' 또는 '낙토만주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미화하더라도 그 실상은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신질서' 또는 '대동아건설'에 황국신민으로서 적극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안전농촌·집단부락은 집체적 노동 착취와 재만조선인 사회 통제의 수단이자 조선인 항일무장세력을 고립시키려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주 개척민이라는 것은 반도인 개척민도 내지인 개척민과 함께 일본 제국의 신동아건설 거점의 배양·확립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개척민이란 것은 전지(戰地)로 가서 싸우는 전사(戰士) 다음으로 가는 사업전사입니다. 국가를 위해, 신동아건설을 위해 만주에 가서 싸우는 용사라는 기지를 여러분이 가짐과 동시에, 조선내의 전반적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윤상필, 「滿洲に於ける朝鮮開拓民に對する希望」, 『大陸の開拓と半島』, 1941)

한편 재만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어디까지나 일본제국의 이해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 실례로 1942년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일본 본토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강제연행이 실시되어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오히려 격감했다. 이 또한 조선인의 권익이나 생활 향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다. 수록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목	출전
간도, 훈춘 재주(在住) 40만 동포의 도현(倒懸)을 구제	「昭和六年 一月 現在 間島琿春在住四十萬同胞ノ倒懸ヲ救ヘ」, 『齊藤實文書』 11, 서울: 高麗書林, 1999년
야마지 세이시(山地誠士), 수화(綏化) 안전농촌 건설 상황	山地誠士, 「綏化安全農村建設狀況」, 『會報』 第20號,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4년 10월
조선인 이민의 8대 의의	「朝鮮人移民の八大意義」, 『朝鮮人移民問題の重大性』, 京城: 朝鮮總督府, 1935년
반도인 이주의 안전농촌 자립	「半島人移住の安全農村自立」, 『會報』 第51號, 奉天: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7년 5월
원용국, 안전농촌과 재만 선농(鮮農)에 관한 소견	元容國, 「安全農村と在滿鮮農に關する所見」, 『會報』 第12號, 奉天: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4년 2월

히라이 센조(平井千乘), 만주에 안전농촌의 건설	平井千乘, 「滿洲に安全農村の建設」, 『朝鮮及滿洲』 第332號, 京城: 朝鮮及滿洲社, 1935년 7월호
윤상필(만주국 민정부 척정사 제2과장) 씨와 문답	「滿洲國의 朝鮮人移民統制內容? 尹相弼(滿洲國民政府拓政司第二科長)氏와 問答」, 『在滿朝鮮人通信』 27號, 奉天: 興亞協會, 1937년 5월
윤상필, 순리화한 조선이민 입식책	尹相弼, 「順理化한 朝鮮移民入植策」, 『在滿朝鮮人通信』 59號, 奉天: 興亞協會, 1938년 10월
윤상필, 만주에서 조선개척민에 대한 희망	伊原相弼, 「滿洲に於ける朝鮮開拓民に對する希望」 『大陸の開拓と半島』, 京城: 鮮滿拓殖, 1941년
홍양명, 대륙진출의 조선민중, 만주국에서 활약하는 그 현상	洪陽明, 「大陸進出의 朝鮮民衆, 滿洲國에서 活躍하는 그 現象」, 『三千里』 第11卷 第1號, 1939년 1월
홍양명, 재만동포의 결전생활	洪陽明, 「在滿同胞의 決戰生活」, 『新時代』 4卷 2號, 1944년 2월
한상룡, 농공병진의 발전을 희망	韓相龍, 「農工併行의 發展을 希望」, 『在滿朝鮮人通信』 63號, 奉天: 興亞協會, 1939년 2월
윤상희, 조선농민의 만주 이주 문제	尹相曦, 「朝鮮農民의 滿洲移住問題」, 『春秋』 第2卷 第3號, 1941년 4월
윤상희, 재만조선인의 취적문제	尹相曦, 「在滿朝鮮人の就籍問題」, 『春秋』 2卷 8號, 1941년 9월
윤상희, 조선인 만주개척민의 보호와 지도에 대하여	尹相曦, 「朝鮮人 滿洲開拓民의 保護와 指導에 對하여」, 『半島の光』 44號, 1941년 6월
윤상희, 조선인 만주개척 청년의용대에 대하여	尹相曦, 「朝鮮人 滿洲開拓青年義勇隊에 對하여」, 『半島の光』 45號, 1941년 7월
김연수, 만주개척민의 동아신건설 참여(라디오 방송요지)	金季洙, 「滿洲開拓民의 東亞新建設への參加(ラヂオ放送要旨)」, 『大陸の開拓と半島』, 京城: 鮮滿拓殖, 1941년
신기석,嫩江지구(嫩江地區)의 조선개척민 선견대(先遣隊)	申基碩, 「嫩江地區의 朝鮮開拓民先遣隊」, 『半島史話와樂土滿洲』, 滿鮮學海社, 1943년

이상 자료에서 주요 필진들 가운데 원용국은 일본군 장교 출신이자, 만주국 길림성 반석현 민회 회장으로 자경단 또는 '안전농촌' 건설을 통해 조선인을 철저히 통제할 것을 주장한 인물이다. 윤상필 또한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만주국 고위관료를 지내며 다양한 방면에서 친일 활동을 적극 전개한 인물이며, 사실상 재만조선인 관리의 후견역을 하던 인물이다. 홍양명은 저명한 소설가로 만선일보사 기자로 재직하였으며 협화회에서 활동했다. 한상룡은 경제계의 최대 친일 인물이었다. 조선총독부 고등관인 윤상희는 조선인이 만주 이주를 통해 동아신질서의 건설을 달성하는 동시에 민족협화의 중핵으로서 내선일체의 이상 구현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연수는 실업가이자 국내 거물급 친일파로 이 시기 경성주재 만주국 명예총영사를 하고 있었다. 신기석은 1942년 12월 북안성(北安省)嫩江지구(嫩江地區) 선견대의 건설상황을 시찰한 실정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만주개척의 필요성과 개척선견대 후원을 역설하였다.

황군이 지나전선에서 혹은 북만의 광야에서 총을 들고 싸우며 국경을 지키는 것도 국가와 민족을 위함이고, 홍안(紅顔)의 청년의용대가 깡이를 휘둘러 개척을 하고 총을 메고 훈련을 받는

것도 신대륙정책의 선구자가 되려함이 아닌가? 우리는 병역의 의무가 없어 직접 총을 잡고 전선에서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길이 없지만 정신만은 제1선에 선 용사와 같이 굳은 신념과 성의로써 개척의 선구자가 되면 반드시 성공의 광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2, 3년 동안은 입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하며, 쫓겨 온 자의 비애를 극복하고 대륙개척의 희망과 열의를 가질 것을 누누히 부탁한다. (신기석, 『嫩江地區의 朝鮮開拓民先遣隊』,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滿鮮學海社, 1943)

3)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는 동만주 일대에서 항전하고 있던 조선인 항일유격대를 대상으로 한 관동군의 반공공작 및 선무공작을 지원하고 귀순·투항공작을 전개할 목적으로 1940년 10월 만주국 수도新京에서 최남선·이범익·유홍순·박석운·윤상필 등 조선인 유력자 17명이 설립한 친일단체다. 박석운과 윤상필 등이 총무를 맡아 사업을 주도했고, 이범익·최남선 등이 고문으로 있었다.

본부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고문 : 이범익(淸原範益), 최남선, 유홍순(中原鴻詢)

총무 : 박석운 윤상필(伊原相弼), 김응두(金應斗)

상무위원 : 최창현(崔昌鉉, 신경), 박준병(朴準秉, 신경), 이성재(李性在, 신경), 김동호(金東昊, 안동), 서범석(徐範錫, 봉천), 김교형(金矯衡, 무순) 외 62명

1940년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는 유세반을 조직해 신경·안동·통화·삼원포·오상·치치하얼·주하 등지를 순회하며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의 설립 취지와 지부결성 및 현금모집 등과 관련한 강연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 해 말에는 「김일성 등 반국가자에게 권고문, 재만동포 백오십만의 총의로」라는 포고문을 만들어 비행기로 뿌리기도 했다. “만주국은 실로 이러한 동아 제민족의 공존공영을 실현하는 신질서의 표본으로써 이미 국내오족의 일사불란한 협력에 의하여 세계에 자랑할 도의세계의 창건을 국시로 하여 착착 국초(國礎)를 공고히 하고” 있음에도, “일만 군경이 종래 제군을 총괄적으로 집중 토벌치 않는 것을 기화로 하여 겨우 산간밀림지대로 횡행하다가 조선에서 살 길을 찾아 벽지로 이래한 가엾은 빈농동포를 노려 그 가지고 있는 가엾은 최후 남루(襤褸)까지를 뺏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궁경에 빠진” “김일성 등 반국가자”에게 “이 권고문을 보고 즉시 최후의 단안을 내려 갱생의 길로 뛰어 나오”기를 선무하는 장문의 포고문이다.

존속 기간은 불명확하나 만주와 국내의 저명한 친일인사를 대거 동원해 당시 동남지역에 거의 마지막 조선인 항일유격대의 하나였던 김일성 부대를 소멸·투항시키고, 재만조선인의 이른바 국방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수록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목	출전
선계(鮮系) 보도(輔導)의 행진보(行進譜), 강연과 영화의 밤, 동남지구공작후원회 지부도 조직(기사)	「鮮系輔導의 行進譜 講演과 映畵의 밤 東南地區工作後援會 支部도 組織(吉林)」, 『滿鮮日報』, 1940년 11월 6일
150만 선계(鮮系) 총의로 된 획기적 특별공작 운동(기사)	「百五十萬 鮮系 總意로 된 劃期的 特別工作運動, 迷路에 헤매는 異端同胞에 覺醒의 巨彈, 東南地區工作後援會의 赫赫한 總決算」, 『滿鮮日報』, 1940년 12월 24일
김일성 등 반국가자에게 권고문, 재만동포 150만의 총의로(포고문)	「金日成等 反國家者에게 勸告文, 在滿同胞 百五十萬의 總意로」, 『三千里』 第13卷 第1號, 1941년 1월
150만 선계(鮮系) 동포여! 우리들의 사업을 지원하라	「百五十萬鮮系同胞여! 吾等의 事業을 支援하라」, 『滿鮮日報』, 1940년 11월 3일
전만(全滿)에 솔선하여서新京(新京)의 운동 드디어 발족	「全滿에 率先하여서 新京의 運動 遂 發足」, 『滿鮮日報』, 1940년 11월 6일
소학생도 함께 참여, 넘치는 열의로 영구(營口)의 지부 결성식	「小學生도 함께 參與, 넘치는 熱意로 營口의 支部結成式」, 『滿鮮日報』, 1940년 11월 7일
지부 결성식 성대 거행, 봉천(奉天)지부의 힘찬 후원공작	「支部結成式 盛大舉行, 奉天支部의 힘찬 後援工作」, 『滿鮮日報』, 1940년 11월 9일
흉년을 극복코 협력, 류하현(柳河縣)하 동포들의 의기	「凶年을 克服코 協力, 柳河縣下 同胞들의 意氣」, 『滿鮮日報』, 1940년 11월 10일
충천하는 선계(鮮系)의 열의, 관헌 각 기관의 절대한 협력 원조하에 이 운동의 유종미를 예기	「冲天하는 鮮系의 熱意, 官憲各機關의 絶대한 協力援助下에 이 運動의 有終美를 豫期」, 『滿鮮日報』, 1940년 11월 11일
열성에 넘치는 격려문 비래(飛來)	「熱誠에 넘치는 激勵文 飛來」, 『滿鮮日報』, 1940년 11월 17일
목단강(牡丹江)지부 역원을 결정	「牡丹江支部 役員을 決定」, 『滿鮮日報』, 1940년 11월 18일
오상현(五常縣)하 각 지구에 간사두고 활동 개시, 활발해지는 각지 후원공작	「五常縣下 各地區에 幹事두고 活動開始, 活潑해지는 各地後援工作」, 『滿鮮日報』, 1940년 11월 19일
오상현(五常縣)위원회 개최, 공작의연금 3천 원 각출 결의, 신기석(申基碩) 씨 출장 유세	「五常縣委員會開催, 工作義捐金三千圓輸出決意, 申基碩氏出張遊說」, 『滿鮮日報』, 1940년 11월 20일
각지 상무위원에 헌금모집 독려, 모집기한은 금월 말일까지	「各地常務委員에 獻金募集督勵, 募集期限은 今月末日까지」, 『滿鮮日報』, 1940년 11월 21일
교하(蛟河) 지부결성, 공작에 협력할 것을 서약	「蛟河支部結成, 工作에 協力할 것을 誓約」, 『滿鮮日報』, 1940년 11월 22일
지방 공작 실적 등 제 사항을 협의!	「地方工作實績等 諸事項을 協議」, 『滿鮮日報』, 1940년 11월 24일
박석윤(朴錫胤) 씨 래제(來齊)를 기해 용강(龍江) 지구 위회(委會) 결성, 위회활동 방침에 대해 협의	「朴錫胤氏 來齊를 期해 龍江地區 委會 結成, 委會活動 方針에 對해 協議」, 『滿鮮日報』, 1940년 11월 27일
빈강성(濱江省)의 2만 원을 필두 각지에서 헌금 답지(還至), 동포의 이 열성과 이 감격	「濱江省의 二萬圓을 筆頭 各地에서 獻金 還至, 同胞의 이 熱誠과 이 感激」, 『滿鮮日報』, 1940년 11월 30일
헌금운동에 비취진 가지가지의 미담, 빈강성(濱江省) 지구의 감격담	「獻金運動에 비취진 가지가지의 美談, 濱江省地區의 感激譜」, 『滿鮮日報』, 1940년 12월 3일

빈민들이 쌀팔아 연금을 각출	「貧民들이 쌀팔아 捐金을 釀出」, 『滿鮮日報』, 1940년 12월 9일
전만(全滿) 상무원회 10일 국도(國都)서 개최	「全滿 常務員會 十日 國都서 開催」, 『滿鮮日報』, 1940년 12월 10일
열성의 편지와 함께 분간 모아서 헌금,嫩江(嫩江) 선계(鮮系)개척민의 특지	「熱誠의 편지와 함께 分錢 모아서 獻金, 嫩江鮮系開拓團의 特志」, 『滿鮮日報』, 1940년 12월 13일

4) 친일신문·잡지 게재 논설

오족협화를 표방한 만주에서 재만조선인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작의 최선두에 선 신문과 잡지로는 『만선일보』와 『재만조선인통신』을 들 수 있다. 이 외 만주국건국십주년 기념 간행물인 『낙토만주와 반도사회』와 같은 특집 간행물이나 권태산의 『만주제국의 확립과 대동아건설의 기본문제』(1933)와 같은 개인 저작물, 기타 당시 국내외 신문과 잡지에 실린 만주국 관련 기사와 논설들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만선일보』와 『재만조선인통신』의 친일지로서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만선일보』는 1937년 10월 21일에 만주국의 수도 신경에서 『만몽일보』와 『간도일보』를 통합하여 창간되었다. 『만선일보』는 창간 7주년 기념 사설에서 “만주국의 이상과 정책을 선계 국민에게 하달하는 보도자로서”, “선계 국민을 만주국의 충실한 국민으로서 육성”할 것을 자임했듯이,²⁾ 1945년 일제 패망시까지 존속한 만주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어 친일신문이었다. 『만몽일보』는 신경에서, 『간도일보』는 용정에서 발행되던 조선어 신문으로 모두 친일적 성격이 농후했다. 『만선일보』 또한 일본 제국의 언론 통제 정책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진 만큼 만주국 건국이념인 오족협화를 충실히 따르고 구현함으로써, 150만 명에 달하는 재만조선인들을 상대로 조선어로 일본 제국의 정책을 선전하는 역할을 했다. 일본 제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발간되면서 창간 이듬해에는 조석간 체제로 발행하고 조선에도 지국을 설립했다. 1937년 말에서 1938년 초 이용석이 사장, 이성재가 부사장을 할 당시 『만선일보』가 일대 기구 쇄신을 하면서 다수의 친일 명망가 영입과 만주국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정부의 언론통제하에 만주국에선 오직 조선문 신문으로는 유일기관인 만선일보는 이번에 사내 진용을 일신하고 만선 일대에 향하여 약진을 시(試)하리라 하는데 이번 기구개정의 요령은 현(現)에(만주국) 건국대학 교수로 있는 최육당(최남선)이 이름은 고문이나 사시(社是) 결정에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게 되고 협화회 수도본부 간부로 있는 김경재 씨가 촉탁으로 사설반의 1인이 되고 그 밖에 외교부 박석운 씨 또 내무부 진학문 씨 또 관동군의 윤상필 씨 등이 모다 명예직원격으로 모다 집필하게 되어 논객 다수를 외곽에 배치하게 되었다 하며 신문도 14단체 조석간으로 판매광고망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활약을 개시하리라는데 당국의 보조도 금년부터 년 64,000원으로 결정을 보았다고 한다.³⁾

2) 「본보 사명의 재인식—창간 7주년을 맞아」, 『만선일보』 1940년 8월 25일. 원래 『만선일보』는 1934년에 창간된 『만몽일보』가 사실상 중심이 되었기에 『만몽일보』 창간으로부터 7주년을 헤아린 것이다. 그러나 통상 1937년을 『만선일보』 창간으로 간주한다.
3) 「기밀실, 우리 사회의 제내막」, 『삼천리』 제10권 제12호, 1938년 12월.

『재만조선인통신』은 1936년 4월 봉천 지역 한인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봉천육군특무기단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흥아협회(興亞協會)가 발행한 기관지이다. 흥아협회는 회규 1조에서 “본회는 일선양문(日鮮兩文)의 『재만조선인통신』을 부정기로 간행하여(뒤에 정기 간행물로 바뀜-인용자)” “1. 재만조선인의 사상선도, 2. 재만조선인의 지위 및 생활향상, 3. 재만국내 타민족과의 협화”를 목적으로 한 ‘재만조선인선도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상선도’의 수단으로 『재만조선인통신』을 간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재만조선인통신』은 만주국에 관한 치안 상황과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귀순 및 이들의 동향과 관련된 기사가 많으며, 특히 사상 이론 방면에서 공산주의와 소련체제의 모순을 강조하는 내용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인 필진 또한 흥아협회 사무장인 서범석을 비롯해 최남선, 최린과 같은 명망성 높은 친일파와 친일무장조직인 간도협조회의 우두머리인 김동한, 간도성장 이범익, 봉천 일본총영사관 부영사 최탁 등 거물급 인사는 물론 박승환 같은 조선인 만주군 장교가 참여하기도 했다.⁴⁾ 『재만조선인통신』은 1936년 4월 1일 창간호를 발행해 1939년 12월 1일 통권 73호까지 발행한 것이 확인되나 정확한 폐간 시기와 폐간호는 확인할 수 없다.

자료집에서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시학관을 역임하고 「황국신민서사」를 입안한 김대우, 매일신보사 부사장과 폴란드 바르샤바 주재 만주국 총영사 및 만주국 참사관을 지낸 박석운, 조선임전보국단 상무이사를 역임한 이성환과 해방 후에 발간된 『민족정기의 심판』(혁신출판사, 1949)에서 “최악질 친일반역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조원환, 사무관·군수·봉천영사관 부영사, 교사를 거쳐 옥천군수를 역임하고 황도문화를 제창하고 이른바 사상선도의 최일선에 나섰던 최병협의 글들을 통해 『재만조선인통신』이 추구한 친일 논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성환이 1939년 2월 『재만조선인통신』 제 63호에 기고한 「중대한 사명을 자각하라」에서 “만주에 낙토를 건설하려는 생각으로 많이 이주하되 지도적 입장에 있음을 알고 사상적으로는 방공(防共)운동에 선구가 되며 경제적으로는 정당한 사업에 집중하여 신동아 건설의 중임을 다하”는 것이 재만조선인의 과제라고 주장한 데에 그 핵심이 집약되어 있고, 조선인 청년의 마지막 길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다(최탁, 「현역 지원병제도의 실시와 조선인의 각오」, 『재만조선인통신』 44·45호, 1938년 2월).

제목	출전
김대우, 평화의 전사로 사명을 다하라	朝鮮總督府 社會教育科長 金大羽, 「平和의 戰士로 使命을 다하라」, 『在滿朝鮮人通信』, 奉天: 興亞協會, 1939년 2월
박석운, 동아민족 결성에 신기운	朴錫胤, 「東亞民族結成에 新機運」, 『在滿朝鮮人通信』 39호, 奉天: 興亞協會, 1937년 11월
박석운 외 14인, 재만조선인의 당면문제	朴錫胤·尹相弼·陳洋根·李鴻周·朴準秉·李鍾元·金璟載·金道根·金泰昊·李瑢澤·李龍祚·李基荇·金相泰·金生·金永三, 「在滿朝鮮人の當面問題」, 『在滿朝鮮人通信』 62號, 奉天: 興亞協會, 1939년 1월

4) 자세한 내용은 황민호, 「만주지역 친일언론 “재만조선인통신”의 발행과 사상통제의 경향」,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0호, 2006, 3~42쪽 참조.

송찬도, 시국을 인식하라	宋燦道, 「時局을 認識하라」, 『在滿朝鮮人通信』 63號, 奉天: 興亞協會, 1939년 2월
윤상필, 미가(米價)와 재만동포에의 요망, 재만동포는 정부를 신뢰하고 국책에 협력하라	尹相弼, 「米價와 在滿同胞에의 要望, 政府를 信賴하고 國策에 協力하라」, 『在滿朝鮮人通信』 72號, 奉天: 興亞協會, 1939년 11월
이성환, 중대한 사명을 자각하라	李晟煥, 「重大한 使命을 自覺하라」, 『在滿朝鮮人通信』 63號, 奉天: 興亞協會, 1939년 2월
조원환, 자족(自族)의 돈목(敦睦)없이 타족(他族)과의 협화는 무망(無望)	曹元煥, 「自族의 敦睦없이 他族과의 協和는 無望」, 『在滿朝鮮人通信』 9號, 奉天: 興亞協會, 1936년 8월
조원환, 북지사변과 충후의 임무(강연)	曹元煥, 「北支事變과 銃後의 任務」, 『在滿朝鮮人通信』 34·35號, 奉天: 興亞協會, 1937년 9월
조원환, 충후 우리의 임무	曹元煥, 「銃後 吾等의 任務」, 『在滿朝鮮人通信』 73號, 奉天: 興亞協會, 1939년 12월
최남선, 조선 문화 당면의 문제	崔南善, 「朝鮮文化當面의 問題」, 『在滿朝鮮人通信』 22·23號, 奉天: 興亞協會, 1937년 3월
최병협, 반도문화의 장래에 대하여(1~7)	崔秉協, 「半島文化의 將來에 就いて」(1-7), 『在滿朝鮮人通信』 2號,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奉天: 興亞協會, 1936년 4월, 5월, 6월, 7월
최병협, 아세아의 재건시대	崔秉協, 「亞細亞의 再建時代」, 『在滿朝鮮人通信』, 奉天: 興亞協會, 1937년 9월
최탁, 현역 지원병제도의 실시와 조선인의 각오	崔卓, 「現役志願兵制度의 實施と朝鮮人의 覺悟」, 『在滿朝鮮人通信』 44·45號, 奉天: 興亞協會, 1938년 2월

한편 사료집에는 만주국 건설에 대한 재만조선인 친일인사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글들도 수록했다. 수록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목	출전
권태산, 『만주제국의 확립과 대동아 건설의 기본문제』(1933)	權泰山, 『滿洲帝國의 確立と大東亞建設의 基本問題』, 大連: 滿鮮研究社, 1933년
이범익, 간도에 와서	李範益, 「間島에 와서」, 『三千里』 第10卷 第10號, 1938년 10월
장규원, 건국 실천담	高山達源(張達源), 「建國實踐談」,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滿鮮學海社, 1943년
최남선, 건국대학과 조선청년	崔南善, 「建國大學과 朝鮮青年」, 『三千里』 第10卷 第10號, 1938년 10월
최남선, 만주건국의 역사적 유래	崔南善, 「滿洲建國의 歷史的 由來」, 『신시대』 3卷 3號, 1943년 3월

이 가운데 유독 두드러지고 내용 또한 극렬한 것은 권태산의 글이다. 권태산은 『만주제국의 확립과 대동아건설의 기본문제』(1933)에서 “만주사변이 도화선이 되어 대(大) 아세아주의가 팽배하면서 주창되었으며, 근래 동아시아 여러 민족 간에는 아시아연맹 결성 규합의 봉화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시국을 전망하고, “이와 같은 추세를 ‘일찍이 우리 아시아 민족에 의해 지지되어 온, 세계를 인류 영원의 낙토로 만들고자 하는 평화의 문명, 즉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부활·재건이야말로 그 제일의적(第一義的) 문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오늘날 아시아 지도자인 일본의 국시(國是) 정신이 입증하는 바”이며, 결국 “일본의 아시아 경륜은 이 숭고한 정신문명의 발양에 따라 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황도주의 정신을 그 본체로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 국시인 황도주의를 본체로 대아시아 건설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면의 핵심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조선인은 “의무를 온전히 다 함으로써 권리는 주어지는 것”임을 자각하고, 현재 조선인이 “일본제국헌법이 정한 국민의 삼대 의무” 가운데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으나 유독 “병역 의무,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국가를 위해 바치는 신성한 정신적 인륜도의 상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선융화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높은 정신이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 없이 미침으로써 비로소 참된 융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와 같은 견지에서 모든 급선무를 주장하기에 앞서 징병 의무의 실시를 절실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 징병제가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당분간 “보통교육을 받은 자를 표준으로 삼아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만주에서는 “그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조선의용군을 편성”할 것을 제창했다. 주목할 것은 조선의용대는 “재만 선농(鮮農) 부락의 경비를 위해 혹은 사상 선도를 위해, 나아가 만주국의 치안 유지를 위한 획기적 계획”일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의 “징병제 실시의 예비 시안(豫備試案)”이라고 하며 이것이 “내선융화의 장래에, 장차 일본의 장래에, 나아가 대 아시아 건설 도상(途上)” 빛을 발하는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주에서 조선의용대를 만들어 일제의 대륙 침략의 선봉이자 황도주의의 실천조직으로서 활동하며 나아가 이를 기초로 조선인에게 징병제를 실시해 실질적인 내선융화를 도모하자는, 일본 우익의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패권적 대아시아주의에 영합한 주장일 뿐 아니라 1938년 조선에서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 시행되기 5년 전에 벌써 이러한 전쟁 동원 논리를 친일 조선인이 먼저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 일제의 침략전쟁과 간도특설대

1) 만주국군 개요

관동군은 1937년 7월 치외법권이 철폐됨에 따라 민정부 소속의 경무사를 기존의 군정부로 흡수시키고, 군정부를 치안부로 고쳐 군정통일의 지휘체계를 완성했다. 만주국군 또한 이 시기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했다.

치안부는 1937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혁에 따라 국방, 용병, 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였다. 종래 통군의 최고기관인 군정부와 종전 민정부의 치안경찰 및 행정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무사를 통합하여 치안부로 개칭하였다. 국군과 경찰은 치안부대신 아래 일원시켜 통할하였으며, 오로지 치안공작에 힘썼다. 치안부에는 관방 및 참모, 군정, 경무 3사(司)를 두고 이외 군사고문부가 있었다. 국(局)으로는 측량국, 지문관리국, 철도경찰총대 및 치안부대신 직속기관으로서 육군군관학교, 육군홍안학교, 육군비행학교, 육군훈련학교, 육군자동차학교, 중앙경찰학교, 해상경찰대 등이 있었다.⁵⁾

한편 이 시기 관동군은 만주국군의 부대를 신설하고, 각종 군 기관과 군사학교를 설치하여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39년 기존의 5개 군관구 외에도 제6군관구(사령부 : 목단강)와 7군관구(사령부 : 가목사)를 추가로 설치하고, 홍안경비군도 홍안군관구사령부로 재편하고, 1940년에는 방공대사령부도 설치했다. 연대는 확인되지 않으나 북안, 통요, 해남이(海拉爾-하이랄)에 제 8, 9, 10군관구 사령부를 설치하였다.⁶⁾ 이 밖에 헌병대(1935)와 헌병총단(1937)⁷⁾, 자동차대(1935), 고사포부대(1937)가 신설되었고, 1938년 강방함대(江防艦隊)를 만주국군의 육군에 편입시켜 강상군(江上軍)으로 재편하였다. 이외 관동군 특히 관동군 헌병대와 경찰 특무기관 등이 개입해 만든 간도협조회(1934~1936), 간도협조회용자위단(1934~1935), 간도협조회특별공작대(1934~1936)와 같은 외곽조직이나 만주국군 내의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1938~1945) 등이 항일조선인세력이나 반일적인 조선인 주민들을 추적 살해해 악명을 떨친 것도 이 시기였다.

이 시기 만주국군의 민족적 특수성과 병과별 전문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군사학교도 활발하게 설립되었다. 몽고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육군홍안학교(1934)를 개설했고,⁸⁾ 각 병과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육군군의학학교(1934), 육군군수학교(1937), 육군수의학교(1938), 육군군관학교(1939), 육군비행학교(1940)가 각각 설립되었다.

1941년 들어서 만주국군은 또 변화를 겪었다. 만주국은 1941년 국병법(國兵法 : 일종의 징병제)을 실시하고⁹⁾, 사단 중심에서 12개 단(지금의 연대에 해당)으로 전력을 개편 강화해 이들을 주로 열하(熱河) 등 팔로군 작전지역인 중국 화북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또 만주국 최고지휘부를 개편해 1943년 4월에는 만주국군의 치안기능을 총무청외국(總務廳外局)의 경무총국으로 이관하고 치안부를 군사부로 개칭하였다.¹⁰⁾ 1930년대 중후반기 관동군은 만주국군에게 주로 치안경비기능을 맡기면서 일부 부대에 국군으

5) 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단체편람』, 38쪽.

6) 『朔風万里』, 1979, 34쪽.

7) 만주국 내의 치안사정에 따라 헌병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헌병대는 군사경찰과 '치안숙정공작'에 적극 참가하는 지방방위를 주요 임무로 했다면, 헌병총단은 군사경찰을 주임무로 하고 지방방위를 부임무로 했다. 헌병대의 조직 체계와 '토벌'출동에 대해서는 『만주국군』 189~193쪽을, '헌경통치(憲警統治)'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로는 中央檔案館 外 合編, 『偽滿憲警統治』, 中華書局, 1993 참조.

8) 처음에는 몽고인도 중앙육군훈련처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언어·풍습 등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어 정가둔(鄭家屯)에 별도로 이 학교를 설치하였다.

9) 국병제에 대해서는 『만주국군』, 596~601쪽 참조. 국병제는 19세 이상의 징병 대상자 모두의 신체를 검사하고, 체력, 학력,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그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3년간 근무하는 제도이므로, 국민개병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입영한 사람들 가운데 1945년까지 제대한 사람은 없었을 만큼 호응이 좋았다고 한다. 국병제 아래 조선인들의 만주 국군 입대도 자연 늘어났다.

로서의 임무를 부여했지만, 1940년대에 이르면 주로 관동군의 대외군사작전시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주국군의 역할이 전환된 것이었다.

이러한 조직 재편과 만주국군의 임무 변경은 다음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먼저 중국전선이 장기 고착화되고, 중국공산당 계열의 팔로군이 만리장성을 넘어 관외(關外)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등 화북 지방에서 만주국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시기 들어서면 2차 치안숙정사업의 결과 만주국 내의 가장 위협세력이던 항일반만무장투쟁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사실상 끝나고 있어 만주국군의 전력을 대외적으로 전환할 여유가 있었다. 특히 1941년부터 국병법이 실시되면서 보다 많은 만주국 청년들을 대규모로 군대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이는 노령화한 군대에 ‘젊은 피’를 수혈하는 효과도 있었다. 또 1941년 4월에 일소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여기에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갈수록 일본에 불리해지면서, 관동군의 대소대응전략도 대치방침에서 전면적인 지구방어 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관동군은 1941년 들어 만주국군을 8만 3천여 명에서 5만 9천여 명으로 줄이고, 전술의 기본단위를 사단 중심에서 12개의 여단 중심으로 개편하며 전력강화를 꾀하였다. 또한 일본과 만주국은 소련과의 대치를 염두에 두고 배치된 관동군을 서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5개 여단 2만 5천여 명의 병력을 열하성과 팔로군 작전지역에 배치하였다.¹¹⁾ 예를 들어 만주국군은 1941년 여름 제11군관구를 개설하고, 그해 11월부터 열하성에 있는 팔로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43년 1월 제5군관구 사령부를 열하성 서부에 두고 독자적인 경비를 담당하게 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제8군관구 사령부를 북안으로 이주시켰다.¹²⁾

1940년대 주목되는 것은 철석부대의 존재이다. 1945년 관동군은 1만여 명의 특별정예부대인 철석부대를 편성해 하북성 기동(冀東)지방에 배치하였다. 간도특설대 또한 1944년 동만지역에서 열하성으로 이동해 제5군관구 사령부 산하에 배치되었고, 1945년 철석부대의 지휘를 받았다. 이들 부대는 만주 최정예부대라는 점과 아울러 이들의 작전지역이 기동지역의 팔로군과 그와 연관된 조선의용군이 활동하는 지역이기도 했으며, 팔로군이 자랑하는 기동유격대가 활동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된다.¹³⁾

이후 만주국군은 1945년 8월 9일 극동의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관동군과 함께 허물어졌고, 8월 20일 만주국군은 공식 해산되었다.

만주국 조선인 장교들은 대부분 중앙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신경군관학교)를 거쳐 장교로 임관하였다. 그 외 군의관처럼 특임으로 바로 장교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하사관들의 경우 육군훈련학교에서 단기 교육을 받고 소위로 임관했다. 만주국의 조선인 장교 출신들은 해방 후 남한으로 와 한국군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5·16쿠데타 또한 만주군 인맥이 주요한 한 갈래를 이루고 있었다. 『만주국군지』는 만주국군 출신인 김석범·정일권이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만주국군 출신 조선인들 명단과 이력을 정리한 것으로, 국내에서 만주국군 출신자들이 직접 제작한 준1차 자료이며

10) 傅大中, 『偽滿洲國軍簡史』, 吉林文史出版社, 1999, 350~351쪽. 傅大中은 군사부가 1942년 12월에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11) 傅大中, 앞의 책, 355~356쪽. 1944년과 1945년에도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이 때였다.

12) 각 군관구의 위치와 편제 그리고 연혁에 대해서는 王之佑, 「各軍管區兵力的使用」, 『偽滿洲國軍史』, 487~498쪽 참조.

13) 冀東遊擊隊의 책임자는 조선인이었다.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료로서 가치를 무시하기 어렵다.¹⁴⁾ 만주국군 출신 일본인 모임인 난성회(蘭星會)가 중심이 되어 제작한 『만주국군』(1970)은 만주 국군에 대한 가장 방대한 정리서이지만, 조선인 군인에 대해서는 매우 소략하다. 때문에 이 사료집에는 만주국 조직 편제와 조선인 출신 장교들의 대체적 윤곽을 알 수 있도록 『만주국군지』를 수록했다.

참고로 봉천군관학교와 신경군관학교 출신 조선인 장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봉천1기	* 확인 안됨
봉천2기	* 김주찬(金周贊, 군수장교) : 간도특설대 근무, 봉천1 또는 2기
봉천3기	* 김정호(경리장교)
봉천4기	* 강재호(간도특설대) 박봉조(간도특설대) 이원형(간도특설대) 김응조 계인주(헌병 근무) 양대진(경리장교) 김**(경리양성부) 최세창(헌병 장교)
봉천5기	* 강기태 김신도 김찬규(김백일, 간도특설대) 김홍준(간도특설대) 문용채(헌병근무) 문이정(간도특설대) 송석하(간도특설대) 신현준(신봉군, 간도특설대) 윤춘근(간도특설대) 이두만 탁명환 최경만(간도특설대) 김일환(군수학교 1회 졸업) 최구룡 전해창(중퇴) * 일본 육사편입 * 김석범(간도특설대, 일육사54기생과 교육받음), 석희봉(간도특설대, 일육사54기생과 교육받음), 정일권(졸업 후 만군 복무 중 일육사 55기 편입)
봉천6기	* 1937.3 입학~1938.12 졸업~1939.4 임관(신명식) * 김용기(간도특설대, 육군군수학교 2회 졸업), 양국진(육군군수학교 2회 졸업)
봉천7기	* 박승환 이상렬 조용성(간도특설대) 최남근(간도특설대) 최재환(간도특설대) 최철근(군수학교 3회 졸업)(『만선일보』 1940.1.19 조선인 7명 졸업으로 나옴)
봉천8기	* 석주암 김용국 태용범
봉천9기	* 백선엽(간도특설대), 손병일(간도특설대) 윤수현(간도특설대, 군수학교 5회 졸업)
신경1기	* 강재순 김동하 김영택(군수학교5회 졸업 후 일본경리학교) 방원철 윤태일 이기건 이순(일본경리학교) * 일본육사 편입 * 김민규 박임항 이주일 조영원 최창륜 최창언
신경2기	* 강창선 김목(김명철 : 간도특설대) 김원기 안영길 이병주 이상진 이재기(이정린) * 일본육사 편입 * 김재풍 박정희 이섭준 이한림
신경3기	* 최주중 강태민

2) 간도특설부대

간도특설부대는 1938년 9월에 간도성 성장 이범익의 건의와 연길현 특무기관장 겸 간도지구 고문 오코시 노부오(小越信雄)의 공작에 의해 1938년 12월 17일 간도성 연길현 명월구에서 창설되었다. 1938년 9월부터 부대 조직에 착수하여(9월 15일이 부대창설일) 안도현치안대(만주군소속부대), 훈춘국경감시

14) 金錫範 等 編, 『滿洲國軍誌』, 1987년.

대, 연길현청년훈련소, 중앙육군훈련처(봉천)와 기타 만군부대에서 선발한 위관급 이상의 일본인 군관 7명, 조선인 위관 9명, 조선인 사관 9명이 중심이 되어 안도현 명월구(明月溝)에서 정식으로 대대(大隊) 규모의 특설부대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연변 각지에 선전을 하는 한편, 시험에 자원 응시하는 형식을 통해 조선인 청년을 모집해, 1938년 12월 15일에 모두 200명을 모집하고 제1기병 입대의식을 정식으로 거행했다. 이때 1기생 300명이 입대했다.

간도특설부대는 간도특설대·간도성특설대·간도특설부대·조선인특설부대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역대 지휘관 이름을 따 소메카와(染川) 부대(1938년~1940년 3월), 소노베(園部) 부대(1940년 3월~1942년), 사사키(佐佐木) 부대(1942년~1943년 5월), 시바타(柴田) 부대(1943년 5월~1944년 7월), 후지이(藤井) 부대(1944년 7월~패전)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1945년 1월에는 '지원보병대'라고 불렀고 같은 해 6월에는 '간도제1특설대'라고 고쳐 불렀다. 만주군 철석부대 예하 독립보병대대로 활동할 때는 철인부대라고 부르기도 했다.

1940년 3월 1일에 제2기병 약 100명을 모집하고 1941년 6월 1일에는 제3기병 약 80명을, 1942년 3월 1일에는 제4기병 약 80명을, 1943년 4월 1일에는 제5기병 약 70명을, 1944년 3월 1일에는 제6기병 약 80명을, 1945년 4월 1일에는 마지막 기수인 제7기병을 약 80명 모집했다. 특설대 제1, 2기는 신체검사와 구두시험을 통과한 지원병이었지만, 제3기부터는 만주국의 국병제 실시에 따라 선발된 재만조선인 중에서 병력을 충원했다. 이들은 명월구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제6, 7기는 흑룡강성 영안현에서 훈련을 받았다.

부대원 수효는 군관 등을 포함하여 743명이지만 매년 환자, 사망과 퇴역한 사람이 있어 매년 평균 인수는 일반적으로 300~360명 내외가 되었다. 일제가 투항하기 전까지 7기병을 모집하고 총 수는 약 690명 내외였다(특설대 이외의 기타 계통 53명의 군관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임).

만주국 군 당국자는 간도특설대의 위관을 강화하기 위해 1939년부터 1943년까지 하사관급 인원 중에서 16명(17명이라고도 함)을 뽑아내 각종 만군군관학교에 보내 훈련받게 하였다. 이들은 졸업 후 모두 소위 직함을 받았고 대부분이 특설대에 돌아와 배급(排級: 소대장급) 이상의 직무를 담임해 특설부대 조직의 가장 핵심 역량을 이루었다.

간도특설부대는 창설 초기 만주국 국무원 치안부 소속의 길림 제2군관구사령부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1939년 초부터는 치안부 소속 목단강 제6군관구사령부 지휘를 받았다. 1944년 초 열하·하북성으로 이동한 뒤에는 제6군관구 사령부의 지휘 외에 군사행동에서는 치안부 소속 승덕(承德)에 본부를 둔 제5군관구 사령부의 지휘 감독도 받았다.

창설 직후 내부 조직은 3개 실(본부부관·의무·군수) 아래 2개 련(連: 중대 - 보병련·기박련)을 두고 보병련 아래 3개 내무반이, 기박련(機迫連) 아래 2개 내무반을 두었다. 또 내무반을 여러 배(排: 소대)로 다시 개편하여 각 배에 여러 개의 반을 설치했다. 이는 비전시의 내무반을 전시편제로 개편하여 전시행동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1940년 3월 신병 훈련을 위한 신병련(新兵連)을 증설했다가 1940년 12월 신병련을 없애고, 보병1련·보병2련·기박련 등으로 개편하였다. 부대는 영(營: 대대)의 편제로 각 련 아래에 3개 배를 설치하고 각 배에 세 개 혹은 네 개 반을 두었다.

그 후 1944년까지 편제 및 기구의 변동이 없다가 1944년 초 열하로 이동한 후 본부기구를 조정하였다. 부관처를 신설하고 군수·군의·군계·통신·전선 등의 부서를 설치, 부관처 밑에 전문 정보활동을 관장하는 군관을 설치하여 직접 정보반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승덕군관구 사령부와 명월구 본대와 연락을 강화하고 군수물자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능원(凌源)에 연락소를 추가 설치했다.

특설부대는 1939년 12월부터 1943년 말까지, 간도성 내에서 토벌활동을 진행하였다. 1943년 이후 만주의 항일투쟁 형식이 비밀적인 지하공작으로 전환되었고, 이와는 반대로 관내의 각 근거지가 공고해지고 발전하는 형세하에서 일제는 '치안숙정'의 중점을 만주로부터 관내로 이동하였다. 때문에 1944년 1월 15일 일부 사무인원과 부상자를 명월구에 남겨두고 기차를 타고 열하성(지금의 북경시 소속)으로 주둔지를 옮겼다. 1944년 팔로군의 일부 병력이 산둥성 방향에서 기동(冀東) 지구로 북상하자, 관동군과 북지나방면군(北支那方面軍)은 1945년 들어 이곳에 정예병력을 배치하기로 하고 만주국군 가운데 1개 사단의 기동과건군 곧 철석부대를 편성했다. 이때부터 간도특설대는 철석부대 사령부 예하 독립보병대대로서 사집진(司集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1945년 8월 20일에 이르러서도 특설부대는 일본군이 투항한 소식을 몰랐기에 계속하여 사집진에서 약 30리 떨어진 곳에서 토벌활동을 감행하였다. 팔로군과의 접전에서 일제가 투항한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이들은 토벌활동을 중지하고 열차로 금주(錦州)로 이동해 8월 26일 금주 교외에서 해체식을 거행했다. 조선인 대원들은 선임장교 김백일 상위의 지휘로 봉천으로 이동, 이곳에서 각자 여비를 챙겨 해산했다. 한편 영안(寧安)에서 교육받던 신병보충대는 일본군 경박호(鏡泊湖) 진지에 배치되어 소련군과 교전 중 8월 24일 밤 단독으로 전장을 이탈해 간도 왕청현 백초구에 와서 8월 31일 자진 무장해제하고 부대를 해산해 각기 출신지로 귀가했다.

간도특설대는 중국측 기록에 따르자면 성립된 날로부터 해산될 때까지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에 대해 모두 108차례나 되는 '토벌'을 감행해, 평균 매달 1회 이상 토벌을 한 셈이었다. 간도특설대원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항일전사와 무고한 민간인은 도합 172명에 달하며, 이것은 특설부대 인원 4사람당 한 사람씩 살해한 것과 같다고 한다. 이외 그들에 의해 체포된 자와, 강간, 약탈, 고문당한 자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한편 만주국은 특설대원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175명의 대원에게 만주국 국무원명의로 된 무공장(武功章), 경훈장(景勳章), 주국장(柱國章) 등을 주었는데 1945년 3월 21일, 만주국 국무원에서 수여한 각종 훈장의 통계를 보면 그 가운데 조선인은 167명, 일본인은 8명이었다.

간도특설부대에 관한 자료로는 1960년 중국 연변지역에서 편찬한 『간도특설부대조직활동』(1960. 3)이 가장 상세하며 방대하다. 여기에는 간도특설대 연혁과 활동 그리고 소속 부대원들의 행적이 장교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술에 의거한 부분이 많고 이름이나 기타 사실에 대해 부정확한 부분도 있으며 조선인 장교 가운데 명단이 누락된 사람도 있다. 따라서 『만주국군지』와 당시 신문기사 그리고 간도특설대 출신 장교들의 회고록(매우 소략하고 드물지만)을 참조하면 그 전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집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수집자료인 『간도특설부대조직활동』(원제 『偽特設部隊組織活動』, 1960. 3)을 비롯해 난성회가 펴낸 『만주국군』(1970)의 간도특설대 그리고 당시 『동아일보』와 『만선일보』의 관련 기사를 함께 수록했다.

제목	출전
『위특설부대 조직활동』	『僞特設部隊組織活動』, 1960년 3월
간도특설대의 창설 의의와 편성	『滿洲國軍』, 蘭星會, 1970년
조선인 특설부대를 만주국군에 신설(기사)	「朝鮮人特設部隊를 滿洲國軍에 新設」, 『東亞日報』, 1938년 10월 12일
간도성내 조선인 특설부대(기사)	「間島省內 朝鮮人特設部隊」, 『間島新報』, 1938년 10월 15일
국군 조선인부대 모집협의회 개최, 화룡(和龍) 대랍자(大拉子)학교 강당에서(기사)	「國軍朝鮮人部隊 募集協議會開催, 和龍大拉子學校講堂에서」, 『滿鮮日報』, 1940년 1월 18일
최무, 연길가민(延吉街民)에게 특설부대 위안금에 대하여(기사)	間島支社 崔武, 「延吉街民에게 特設部隊慰安金에 對하여」, 『滿鮮日報』, 1940년 6월 13일

3) 윤상필 앨범 수록 사진(1931~1935)

만주국에서 군인, 특무, 관료 등 다방면에서 친일 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로 윤상필(尹相弼, 伊原相弼)을 들 수 있다. 1915년 5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27기로 졸업하고 기병 소위로 임관한 후 1934년 8월까지 육군 기병 대위로 경성 용산 소재 20사단 관할 기병 제28연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1931년 만주 사변이 일어나자 만주 봉천에서 관동군사령부 대위로 근무하며 조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933년에는 일제가 중국 화북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던 열하침략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항일세력 파괴 공작에도 앞장서 1934년 7월 악명 높은 간도협조회를 조직할 것을 입안하였고, 간도협조회를 통해 귀순시킨 사상범들을 집단농촌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일본군 현역장교로서 조선인의 만주 이주문제, 조선인 민회 내부의 자위단 설치문제 등 주로 조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1935년 2월 일본 육군 기병 소좌로 전역한 후 만주국 민정부 촉탁으로 파견되었다. 1935년 11월부터 1939년까지 만주국 민정부(1938년 3월 이후 산업부) 척정사(拓政司) 지도과장, 1940년부터 1943년까지 개척총국 참사관 등을 역임하며 주로 조선인의 만주 이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0년부터 만주국협화회(協和會) 수도계림분회 고문을 지냈으며, 1940년 8월 수도계림분회에서 재만 조선인 교육사업을 위한 항구적 기구로 설립한 조선인교육후원회 신경 지역 위원으로서 일제의 황민화 교육정책에 협력했다. 1940년 10월 30일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의 총무를 겸임하며 이 단체의 각 지역 지부 설치를 주도하였다. 윤상필은 영구(營口), 무순(撫順), 봉천지부 결성식에 참여하여 선전 강연을 하였다.

1942년에는 재만 150만 조선인이 불구자를 제외한 만 14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 및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여자 전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가목적에 합당한 생산증진, 향토의 건설 같은 공동작업에 연 12일간 근로봉사를 하는 동시에 직장 내외를 통하여 한 사람도 노는 자가 없도록 하자는 국민개로운동을 제안하며 ‘근로보국을 통하여 총후국민의 실무를 다하자’고 주장했다. 1943년 8월 16일부터 1943년 8월 18일까지 제2회 일만화(日滿華) 흥아단체(興亞團體) 회합에 협화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1945년 7월 이후에는 총무청 참사관으로 재직하였다. 해방 후, 소련군에게 압송되었다.

위원회는 군인, 특무, 관료 등 다방면에서 친일 활동을 전개한 윤상필의 자가 소장 사진을 입수해 1) 육군기병 제28연대 소속 활동 2) 열하(熱河) 침략전쟁 활동 3) 관동군사령부 재직시 활동 등 주요 친일 행적과 관련된 사진을 자료집에 수록했다.

3. 만주국 협화회와 관련단체

III장에는 만주국 협화회 관련 자료들과 관련 조선인들의 주요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수록했다. 만주국 협화회는 1932년 7월 일본 관동군의 지도와 구상 아래 '민족협화(民族協和)'의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만주국의 건국 정신을 실천할 전 만주의 유일한 사상적, 교화적, 정치적 실천단체'를 표방한 전국적인 친일 조직이다. 각지에 분회를 조직하여 만주국 지배체제 안으로 민중을 끌어들이면서 항일민중운동에 대한 내부교란과 파괴공작, 선전선무공작, 전시동원의 역할을 담당한 민중통제조직이었다. 좀더 세분해서 본다면 초기에는 1) 만주국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보급하는 사상전의 최고 조직이며, 2) 만주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중조직의 성격이 있었고, 3) 항일민중통일전선에 대응한 지배체제의 강화라는 목적을 지니고 조직되었다. 그 뒤 조직을 개편하고 대중조직화가 강화되면서 주요 활동은 이른바 '동변도 치본공작'이란 이름 아래 전개된 치안숙정사업과 각지에 분회를 조직해 말단 가지조직을 강화하고 선전활동을 전개하며 산하에 무장조직을 두어 '반혁명 특수공작'을 전개했다. 여기서는 개별 자료에 대한 설명 대신 협화회의 성격과 다양한 활동 그리고 시기별 변천 과정을 개관함으로써 수록 자료들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¹⁵⁾

협화회는 일제가 만주국을 수립한 직후인 1932년 7월 '왕도낙토'·'민족협화'를 이데올로기로 내건 관동군에 의해 결성되어, 대중조직의 외피를 쓰고 만주국의 전시국민동원을 주도하였다. 협화회의 정치·사회적 기능은 만주국의 중앙집권화와 '국방국가화'를 뒷받침할 국민동원조직으로서의 기능과, 민족협화라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선전에 의한 민족모순의 은폐, 분단지배의 기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나아가 일제의 대륙침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수립된 대중조직들, 즉 화북신민회(華北新民會), 화중대민회(華中大民會)의 모델로서 인사·공작 양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뿐더러, 식민지 조선·대만의 전시동원조직인 국민총력연맹과 황민봉공회(皇民奉公會), 나아가 일본의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에도 영향을 미쳤다.

협화회는 1935년 2월 최초의 전국 공작원 협의회를 소집하여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견회원의 확보와 훈련, 조직망의 확립을 중점공작방침으로 결정하였다. 이어 3월에 개최된 제2회 '전련'은 상의하달을 강조하는 이른바 '선덕달정(宣德達情)공작'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즉 분회 대표인 지방 토착지배세력의 참여를 통해 일본의 만주국 지배에 대한 피지배민족으로서의 불만을 일정하게 여과시키면서 지배정책을 민중에게 침투시키는 장으로서 활용되었던 것이다. 제1회 전련에는 조선인으로서 최근우(崔謹愚 : 안동, 전 중학교 교감), 박두영(朴斗榮 : 간도, 관동군 촉탁, 예비역 대위), 최윤주(崔允

15) 이하 협화회에 관한 기술은 임성모, 「1930年代 日本의 滿洲支配政策 연구 : '滿洲國協和會'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외 기타 임성모의 논문에 전적으로 의거해 정리했다.

周 : 명월구, 조선인 민회장), 강재후(姜載厚 : 용정, 무역회사 사장), 선우일(鮮于日 : 두도구, 간도일보 사 사장) 등 조선인 5명이 참가했으며, 제2회 전련에는 강조림(姜兆霖 : 간도성 연길현 연길분회), 김의정(金義政 : 간도성 왕청현 凉水泉子분회), 김열(金烈 : 간도성 안도현 안도분회), 이향래(李享來 : 간도성 훈춘현 훈춘분회) 등 4명이 참가했다.

이후 협화회의 거국적인 대중조직화는 관동군사령관 미나미 지로(南次郎)의 지도 아래 본격화되었다. 미나미 사령관은 1935년 말 관동군·만주국정부·협화회 관계자의 간담회에서 협화회를 거국일치적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일본인의 조직화, 특히 일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군·관청의 조직망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그 구심점은 협화회 중앙사무국 직속의 신경특별공작위원회였다.

특별공작이 본궤도에 오르자 협화회는 “전체주의에 근거한 전국민 조직체로 운영할 것”, “전민족·직업·계층에 걸친 광범위한 조직망을 건설할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1936년 7월 제3회 전련 기간 중에 조직을 개편해, 명칭을 만주국 협화회에서 만주제국 협화회로 바꾸고 기구를 개편했다. 주목할 점은 대중조직화 표방을 전후해 반공운동의 전개와 사상대책기구의 정비가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이다. 1937년 7월에는 삼강성(三江省) 치안숙정공작에 특별공작대를 파견하여 관동군의 항일연군 진압에 따른 선무공작에 주력했다.

한편 1939년 7월 현재 협화회 회원의 민족별 분포를 보면 중국인(漢人, 滿洲人)이 83.88%로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이어서 일본인(10.26%), 조선인(5.04%), 몽골인(0.53%), 러시아인(0.27%)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만주국 총인구의 민족별 분포와 협화회원의 민족별 분포를 대비해 볼 때, 중국인 회원이 전체 중국인의 2.7%로서 민족별 평균조직률인 2.9%를 밑돌고 있는 반면, 일본인 회원의 조직률은 무려 6배인 15.8%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 회원의 조직률은 4.4%였다.

조선인 회원의 증가도 일본인 못지 않았다. 1936년의 조직개편 시 유사단체들(대만주국정의단 등)이 모두 협화회로 통합되었는데, 이때 간도협조회와 조선인 민회도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치외법권 철폐로 종래와 같은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조선인들은 그 불안을 협화회로의 참가에 의해 상쇄시키려 했다. 조선인 회원 수는 1938년 11월 4만 1,713명이었던 것이 1940년 10월에는 8만 7,370명으로 2.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인은 1.3배, 중국인이 1.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조선인 회원의 증가는 두드러진다. 조선인 전체 인구 중에서 협화회원이 접하는 비율도 1938년에 3.9%였다가 1940년에는 6.6%로 증가하고 있다. 협화회의 재만조선인 사회로의 침투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협화회에서 활동한 조선인 중 최고지도부에는 이범익(간도성장-참의), 윤상필(개척총국 참사관), 박석윤(폴란드 총영사), 최남선(건국대학 교수) 등이 있었다. 이 밖에 현 본부 사무장급 이상으로 활동한 조선인으로는 김동한(중앙본부 지도부), 주평로(중앙본부 기획국), 박팔양(중앙본부 홍보과), 백석(중앙본부 경제부), 김태호(중앙본부 조사과), 최창국(중앙본부 총무부), 이준근(중앙본부), 김경재(수도본부), 신영우(간도성 본부), 윤순근(간도성 본부), 박두영(간도지방사무국), 조원환(봉천성 본부), 최근우(안동성 본부), 이동석(길림성 본부), 이동성(통화성 본부), 유영락(서란舒蘭현 본부), 홍식(청원淸原현 본부), 주중우(태래泰來현 본부), 최태형(훈춘현 본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지도 아래 1939년 말 조선인 민족분회인 신경계림분회(新京鷄林分會)는 대대적인 ‘자정(自靜)

운동'을 제창했다. “망향(望鄕)적 감정을 청산하고 만주 생활에 자기적응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설하자”는 ‘만주정착운동’으로서, ‘재만조선인’에서 ‘만주국 선계(鮮系)국민’으로의 의식전환운동이자 생활개선운동이었다. 직업 보도(輔導), 이민 안내소 설치, 국방헌금과 위문부대 헌납, 〈협화시간(協和時間)〉 라디오 방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이 운동은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정부의 ‘선만일여(鮮滿一如)’ 정책에 부응하는 운동이기도 했다. 당시 분회 고문은 최남선, 박석윤, 윤상필이었고 분회장은 전 민회연합회 회장 박준병이었다.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체제로의 이행이라는 긴박한 정세하에서 협화회는 종래의 청년훈련을 대폭 강화하여 1939년부터 훈련기간을 늘이고 과정을 일반-실무-간부훈련의 3부제로 단계화했다. 1939년 당시 만주국 전역에는 132개의 청년훈련소가 설치되어 ‘국민(公民)교육’과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1939년 3월 ‘건국기념일’을 기해 청년운동의 전국적 체계화를 위하여 협화청소년단을 결성했다. 한편 20~35세의 장년 조직으로는 협화의용봉공대가 편성되었다. 종래의 보갑(保甲)·가촌(街村) 자위단의 민간경비 기능을 보강하고 근로봉사까지 담당하는 동원조직이다. 협화청소년단과 협화의용봉공대는 중앙본부 보도부가 지도하다가 1941년 이후 협화회 외곽조직으로 독립한 협화청소년단 통감부와 협화의용봉공대 총감부의 지도를 받았다.

재만조선인도 도시부와 간도성을 중심으로 협화청소년단과 협화의용봉공대에 가입했다. 신경에서는 조선인 중견청년들로 수도 협화의용봉공대 중견대 18대(隊)와 16대 제3소대를 결성했고, 간도성에서는 총대 본부를 연결현 본부에 두고 연결, 도문, 용정에 각 구대를 설치했다. 봉공대는 국민훈련조직체의 중견간부를 양성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가정 방호(防護)조직 지도, 방위 연습, 경비활동 등에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으며, 전시통제경제하에서 전개된 농산물 증산촉진운동이나 근로봉사활동에도 동원되었다.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총동원체제의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협화회는 1941년 초 기구개혁에 의해 회 기구와 행정조직을 일체화(성·현·기·시 본부장과 성·현·기·시장, 각 부분부장과 성차장·부현장·기참사관·부시장을 겸임)시켰고, 만주국 정부의 국외 송금 제한 조치로 중국인 노동자가 급속히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이른바 ‘국민근로봉사운동’을 주도했다. 노동력 문제는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더욱 심각해졌는데, 빈강성 부분부장 한다(半田敏治)가 나치스의 근로동원제도를 모방하여 국민근로봉공대를 결성, 철도 복선화 공사에서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자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재만조선인 유력자들은 국방헌금이나 무기헌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 ‘선계국민개로보국운동(鮮系國民皆勞報國運動)’을 제창하고 협화회에 대해 실천방법을 책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운동의 기획통제기관으로서 협화회 중앙본부 위원회에 조선인보도(輔導)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3년 초 현재 봉천시, 안동시, 길림시, 가목사(佳木斯), 해룡(海龍) 6개소에도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현·시본부 단위로 확대되었다. 이후 재만조선인은 만주국 정부가 주도하는 근로봉공제로 흡수될 때까지 조선인보도분과위원회의 지도 아래 만주국 각지에서 ‘국방건설’, 도로건설, 토지개혁, 농산물 생산수확 등 생산증대와 군사작전에 동원되었다.

이 사료집에는 협화회를 전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자료들과 협화회 산하 주요 기구의 활동 자료 그리고 협화회에서 조선인 친일협력자들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수록했다.

제목	원출전
만주국의 근본이념과 협화회의 본질에 대하여	關東軍司令部 編, 『滿洲國の根本理念と協和會の本質に就て』, 新京 : 關東軍司令部, 1936년
『협화필휴(協和必携)』(1936)	만주제국협화회중앙본부, 『協和必携』, 1936년 9월 18일
하라 타쓰로(營原達郎), 협화회의 전모	營原達郎, 「協和會之全貌」, 『偽滿洲國史料』 2, 北京 :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2년
사카타 슈이치(坂田修一), 협화회의 실천운동	坂田修一, 「協和會之實踐運動」, 『偽滿洲國史料』 2, 北京 :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2년
김태호, 협화회의 본질과 그 사명	金泰昊, 「協和會の本質과 그 使命」, 『朝光』 1941년 6월호
코야마 사다토모(小山貞知), 만주국 협화회의 성격과 그 변천, 정당적인 것에서 향도적인 것으로	小山貞知, 「協和會の性格とその變遷(1) - 政黨的のものより嚮導的のもの -」, 『滿洲協和會の發達』, 東京 : 中央公論社, 1941년
윤상필, 제2회 일만화(日滿華) 흥아(亞團)단체 회합에 대한 소감	伊原相弼, 「第二回日滿華興亞團體會合に對する所感」, 『協和運動』 第5卷 第10號 增刊, 1943년 10월
신경협화소년단	「新京協和少年團」,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54號,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7년 8월
교육진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건	滿洲帝國協和會 編, 「教育振興並に制度改善に關する件」, 『協和會創立十周年記念全國會員大會並康德九年度全國聯合協議會記錄及分科委員會記錄』, 新京 : 滿洲帝國協和會, 1942년
만주국 협화회 전국연합의회 기록	滿洲帝國協和會 編, 『全國聯合協議會記錄』, 新京 : 滿洲帝國協和會, 1941년
김경재, 협화회 전련(全聯)과 조선인 대표	김경재, 「協和會 全聯과 朝鮮人代表」, 『在滿朝鮮人通信』 60號, 1938년 11월
만주국 협화회 조선인 직원 백명 명단	「機密室, 우리 社會의 諸内幕」, 『三千里』 第12卷 第9號, 1940년 10월
해내(海內) 해외 조선동포의 현지 보고, 조선인 발전책 신년의 글	海內 海外 朝鮮同胞의 現地報告, 朝鮮人發展策 新年之辭」, 『三千里』 第13卷 第1號, 1941년 1월
협화회, 각 개척지에 협화분회 결성을 종용(기사)	協和會, 「各開拓地에 協和分會 結成을 慫慂」, 『滿鮮日報』, 1940년 3월 9일

협화회는 수많은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직을 만들어 내는 산파이기도 했다. 여기서는 협화회와 관련이 있는 단체 또는 유사 단체들 중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1940년 8월 만주국 협화회 수도계림분회(首都鷄林分會)에서 재만 조선인들의 교육문제 해결과 재만조선인에 대한 황민화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제목	출전
선계(鮮系) 교육 경영 기구와 기타 문제 타개차 교육후원회를 조직(기사)	「鮮系教育經營機構와 其他問題打開次 教育後援會를 組織」, 『滿鮮日報』, 1940년 8월 19일
교육후원회 태세 확립, 양 당국에 진정 결정(기사)	「教育後援會態勢確立 兩當局에 陳情決定」, 『滿鮮日報』, 1940년 8월 22일

오노(大野) 정무총감과 회견, 교육문제 상세설명(기사)	「大野政務總監과 會見, 教育問題 詳細說明」, 『滿鮮日報』, 1940년 8월 31일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조선 내에서 드디어 결성(기사)	「在滿朝鮮人教育後援會, 朝鮮內에서 遂結成」, 『滿鮮日報』, 1940년 9월 2일
재만조선인 교육, 조선측 후원회(기사)	「在滿朝鮮人教育 朝鮮側後援會」, 『滿鮮日報』, 1940년 9월 5일
최창국, 재만조선인 교육문제	崔昌國, 「在滿朝鮮人教育問題」, 『春秋』 第3卷 6號, 1941년 6월
조재호, 재만조선인의 금후 교육	夏山在浩(舊名 曹在浩), 「在滿朝鮮人の 今後教育, 在滿朝鮮人教育問題를 爲한 視察團記」, 『三千里』 第13卷 第7號, 1941년 7월

4. 중국 상해지역 조선인 및 단체의 친일협력

중국 관내에서 조선인이 집거한 지역은 화북에서는 북경과 천진 일대, 화남에서는 상해를 들 수 있다. 비록 일본이나 만주의 조선인 사회처럼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1930년대 후반 20만 명 내외의 조선인들이 중국 관내 특히 상해와 북경 일대에 있었다. 중일전쟁 시기 상해의 친일 조선인들은 대체로 상해거류조선인회를 중심으로 일제의 비호 아래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도모하고 반대급부로 일제에 협력했다.

상해거류조선인민회는 1934년 3월 중국 상해 공공조계에 거주하는 ‘다소 여유가 있는’ 한인들이 ‘친일·동족상애’를 표방하며 유인발을 회장으로 조직한 상해조선인친우회가 발전적으로 해체해 만들어졌다. 1934년 4월 유인발이 상해 독립운동세력에 의해 사살되어 이창하를 회장, 이용로를 부회장, 이성군을 총무로 하여 진영을 정비했다. 1935년 3월 총회를 개최하고 조선인회(친우회)를 해체하고 상해조선인거류민회를 새로이 조직하고 이갑녕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상해거류조선인민회는 국방헌납, 재상해 유력조선부녀의 조선과 내지 시찰, 계림청년단을 조직해 일제에 노동력을 제공, 징병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제에 충성을 했다.

여기 수록한 자료들은 첫째로 전시하 상해와 현지 조선인 사회의 상황 그리고 국내에서 상해로 이주 또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대체로 상해는 ‘좋았던 시절’이 한 풀 꺾였으니 보다 먼 지역으로 나아가라는 충고이다. 이는 일제의 해외 팽창에 맞추어 발 빠르게 조선인이 움직여 나갈 것을 권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인거류민회를 중심으로 한 친일 활동 양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록했다.

다음으로 이갑녕이 발행인인 친일잡지 『광화』의 몇몇 글을 수록해 이갑녕의 친일 논리와 활동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상해의 유력 실업가이자 상해조선인회 참사회(參事會) 의장, 계림구락부(鷄林俱樂部) 초대 이사장, 상해조선인기독교연맹 난민구제회 위원 등을 지낸 손창식(孫昌植)의 이른바 ‘한간(漢奸)관련재판’ 자료를 실었다. 손창식은 1941년 1월 18일자 『매일신보』의 “축흥아우신(祝興亞維新)” 시국광고에 상해거류조선인회 참사로서 참여했으며, 1943년 9월 상해계림회 평의원으로 있으면서 비행기 구입비

40만 원을 냈다. 1945년 6월 6일 주임관 대우의 증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1946년 6월 상해에서 일제에 협력한 혐의로 중국경비사령부에 체포되었다가, 12월 석방되었다.

손창식이 상해에서 손꼽히는 조선인 상공업자로서 거액의 국방헌납(비행기헌납)을 했음에도 상해군 사법정은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전쟁이 8년간 지속되었고 피고가 헌납한 40만 원 대금으로 전쟁을 확대 연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과, 일제가 패망하기 전에 손창식은 여전히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현금당시에는 상해시도 일본에 점령되어 있어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해군사법정의 판결은 손창식을 일제 패망 전에는 일본인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했으며 일본 국민으로서 의무를 한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또 손창식이 40만 원 비행기 대금을 낸 것도 전쟁을 확대 강화하는 실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평화죄에 연원을 둔 전쟁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목	출전
상해거류조선인민회	楊昭全 編, 『關內地區朝鮮人反日運動資料彙編 上冊』, 遼寧民族出版社, 1987년
김경재, 전시하의 상해	金璟載, 「戰時下の 上海」, 『三千里』 第12卷 第3號, 1940년 3월
상해서 지원병 지망, 성대한 송별에 신의주로	「上海서 志願兵志望, 盛大한 送別에 新義州로」, 『三千里』 第13卷 第4號, 1941년 4월
반도동포의 징병제 실시 선서식	白川秀男 編, 「半島同胞의 徵兵制 實施宣誓式」, 『在支半島人名錄』 第3版, 1942년 11월
신질서의 원리	「新秩序의 原理」, 『光化』 第1卷 第12號, 光化社, 1939년 12월
지나의 동무들과 놀시다	「支那의 동무들과 놀시다」, 『光化』 第1卷 第12號, 光化社, 1939년 12월
광화잡지 발행인 이갑녕의 편집후기	「編輯後記」, 『光化』 제1권 제12호, 光化社, 1939년 12월
친일잡지 『광화』 발행	「情報室, 우리 社會의 諸事情」, 『三千里』 第13卷 第9號, 1941년
상해의 근황과 재류조선인 생활상	「上海의 近況과 在留朝鮮人生活相, 李甲寧氏와 本誌記者와의 對談錄」, 『三千里』 第12卷 第8號, 1940년 9월
상해시 경찰국의 조선국적 손창식에 관한 자료	『上海市警察局關於朝鮮籍孫昌植材料』, 상해시당안관 소장

5. 일본 협화회와 『동아신문』

1) 협화회와 노동 통제

재일조선인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체제가 강제동원과 관련이 있었다. 1930년대 말부터 1945년까지 ‘강제연행’, 곧 전쟁 수행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린 일제가 조선인들을 동원함으로써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전시체제가 이전 재일조선인의 수는 30여 만 명이었으나 일제 패망 직전에는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

전시체제 아래서도 일본 국내에서 재일조선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일제 당국은 전시체제 아래 수적으로 증가한 재일조선인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재일조선인을 중요한 치안대상으로 간주했다. 조선인만의 다양한 조직과 그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일제 치안당국은 조선인의 용화·친목단체를 이용하여 재일단체를 관 주도로 조직하려고 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앙협화회 아래 재일조선인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중앙협화회는 먼저 용화·친목단체의 대표직이나 핵심 간부직을 경찰이 맡았다가 그 다음 이 조직을 중앙협화회로 해소시키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각종 재일조선인 용화·친목단체의 조직과 이름을 둔 채 일본인 경찰서장이 회장이 되고 조선인이 부회장이 되는 단체가 전국에서 조직되기 시작했다. 또 회장은 조선인이지만 사무소는 경찰서 내에 두는 등의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용화·친목단체는 재편되는 형태로 협화회에 통합되게 되었다.

1930년대 말, 재일조선인 전체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협화회는 1910년대부터 조선인을 감시하던 사상경찰 특고가 중심이 되어 운용된 전국적 조직이었다. 협화회는 외형적으로 조선총독부와 후생성, 내무성, 척무성, 문부성 등 중앙의 성청들과 서로 연계되어 있었고, 하부에 각 부현(府縣) 조직이 연결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업무는 제국 일본의 경찰을 총괄하는 내무성 경보국과 각 부현 경찰부의 조선인 담당부서인 특고과 내선계가 담당했다. 협화회 지회의 관할 구역은 경찰서 관할 구역과 동일했고, 사무소도 각지의 경찰서에 두었다. 특고는 협화회 조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특고는 조선인에 대해 항상 의구심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강점되었던 전 시기를 통하여 일본 치안 당국의 대 조선인정책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협화회는 전면적인 전시체제의 확립을 위해 모든 재일조선인을 동원, 통제하고자 설립되었다. 모든 협화회 조직은 전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일조선인 및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 강력한 일본화 즉 '황민화'의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철저한 감시를 해 나갔다. 침략전쟁의 확대로 1941년 조선인 노무자를 대량 동원하는 방침이 수립되었고, 중앙협화회는 '후방 봉공' 강화를 하부에 시달하고, 강제연행노무자 훈련을 직접 담당했다. 1943년 병역법이 개정되자, 협화회는 '징병제 발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조선인 청년의 전쟁 훈련에도 적극 참여했다.

한편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조선인 통제는 생산현장이었다.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은 경찰과 같은 공권력에 의지해 조선인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고 야만적인 노무관리로 일관했다. 조선인을 열등하고 게으르며 거짓말을 잘 한다는 식으로 기술된, 민족 차별과 편견에 기초한 노무지침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다루는 방식을 조장했다. 특히 협화회 보도원들은 기업-경찰(국가)과 연결되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노무 관리와 탈주자 색출 등에 종사하면서 커다란 재일조선인 사회의 암적 존재로 군림했다. 전시체제가 일본 내 최대의 재일조선인 친일단체인 협화회의 활동 특히 재일 조선인 노동자 통제와 관련해 수록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제목	출전	비고
중앙협화회 요람(1940년)	桶口雄一 編, 「中央協和會要覽」, 『協和會關係資料集: 戰時下における在日朝鮮人統制と皇民化政策の實態史料』 1, 東京: 綠蔭書房, 1995년	중앙협화회 관련
협화회 사업개요(1937년)	桶口雄一 編, 「協和會事業概要」, 『協和會關係資料集: 戰時下における在日朝鮮人統制と皇民化政策の實態史料』 1, 東京: 綠蔭書房, 1995년	중앙협화회 관련
반도광원 모집 관계서류(1940)	小沢有作 編, 「半島礦員募集關係書類(住友歌志内炭礦, 1940年)」, 『(近代民衆の記録 10) 在日朝鮮人』, 東京: 新人物往來社, 1978년	일본기업들의 노동자 통제
노무자 훈육 구체안(1943)	小沢有作 編, 「勞務者訓育具體案(石炭統制會札幌支部, 1943年)」, 『(近代民衆の記録 10) 在日朝鮮人』, 東京: 新人物往來社, 1978년	일본기업들의 노동자 통제
보도원 필휴(1943)	朴慶植 編, 「報道員必攜(北炭釜山出張所, 1943年)」, 『朝鮮問題資料叢書第一卷 戰時強制連行勞務管理政策(1)』, 東京: 三一書房, 1981년	일본기업들의 노동자 통제
게이한신(京阪神) 협화회원의 부여신궁 어조영 근로봉사(사설)	「京阪神協和會員の扶餘神宮御造營勤勞奉仕」, 『東亞新聞』, 1942년 10월 20일	일본기업들의 노동자 통제
아이치현(愛知縣) 협화회원 보도원의 소리를 듣는다(기사)	「愛知縣協和會員補導員の聲を聴く(1-8)」, 『東亞新聞』, 1941년 9월 30일, 10월 1, 2, 3, 4, 5, 7, 8, 9, 10일	일본기업들의 노동자 통제

협화회는 1944년 말 흥생회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과거 협화회에서 경찰서장에게 위촉받은 지도원은 지사에 의해 임명된 지도원이 되어 새로운 권위를 가졌다. 이 지도원들이 지역에서 조선인의 전시 동원의 일단을 담당하게 되었다. 100세대에서 150세대에 1명의 지도원을 임명했다. 융화단체의 구성원이었던 자와 일본어가 능숙했던 사람이 지도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일은 해산 후의 재일조선인 단체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흥생회의 지도원이 된 사람이 해방 후 민주적인 활동에 전념한 사람도 있고,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으나 해방 후의 재일조선인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 임용길과 동아신문

임용길(1898~1979)은 일본을 주무대로 활동한 친일 언론인이다. 젊어서는 항일운동과 청년운동에 종사하기도 했으나, 1935년경 일본 나고야에서 『동아신문』을 운영하면서 친일로 돌아섰다. 1939년 현재 『동아신문』은 본사를 나고야에 두고 동경, 교토, 고베, 시모노세키 등 일본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성, 평양, 함흥 등의 조선, 그리고 상해, 봉천, 북경, 신경 등 중국에 지사와 지국통신부를 두었다. 상해회의 간부이자 일본 중의원 의원이었던 박춘금이 『동아신문』의 상담역이었다. 『동아신문』은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신문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한 신문이며, 발행부수도 최대 규모였다.

『동아신문』은 황민화정책을 아래로부터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특히 협화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임

용길은 “협화는 우리들의 염원이고, 시국하 내선일체는 내선협화에 의해 성취된다고 생각”했으며, 동아신문사를 운영함에 “협화 두 글자는 꿈에서도 잊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신문』은 협화사업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과 협화회가 시행한 구체적 실천 활동을 보도하는 데 주력했다. 그 구체적 보도내용을 보면 협화회 지회와 청년단, 부인부 등이 벌였던 현금활동, 저축장려운동, 근로봉사, 훈련, 조선복 폐지운동 등이 많았다. 1939년에 조선인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자 일본 수상 등에게 감사장을 보냈다.

『동아신문』 1940년 2월 17일자에 기원절을 맞이하여 게재한 ‘봉축지사(奉祝之辭)’에서 임용길은, 천황의 만수무강과 국민정신의 양양, 국가총력의 충실한 발휘에 힘써서 내선일체의 실질을 굳게 함으로써 신동아건설의 성업에 힘쓸 것을 주장했다. 또 1941년 10월 2일의 사설에서는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국가의 최대 국책의 하나인 협화사업에 익찬하여 내선의 진정한 일체를 향해 견실한 발걸음을 내딛음과 함께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위해 과감한 정의의 논진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1942년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에 아이치(愛知)현 제1선거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43년에는 ‘황군’ 위문의 현지보고서인 『적성(赤誠)의 대륙』을 동아신문사에서 출간했다.

1948년 12월 20일에 『동아시보』를 창간하고 대표를 지냈다. 1952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속간된 『동아신문』의 운영에 관여하기도 했다. 1979년 7월 10일에 사망했다. 1920년의 ‘민족부활단결사대 경고문’ 발송 등 국내 항일운동에 힘쓴 공로로 대한민국정부로부터 1982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제목	출전
『용사에게 바치는 학동의 문집』 서문	任龍吉, 「序文」, 『勇士にささぐる学童の文集』, 東亞新聞社, 1938년
대륙의 적성에 붙여	任龍吉, 「大陸の赤誠に寄す」, 『赤誠の大陸』, 東亞新聞社, 1943년
재지(在支)반도인은 모두 훌륭한 황민	임용길, 「在支半島民は総て立派な皇民」, 『赤誠の大陸』, 東亞新聞社, 1943년
봉축의 글	任龍吉, 「奉祝之辭」, 『東亞新聞』, 1940년 2월 13일
황군의 무운(武運)이 장구하길 바람	任龍吉, 「祈皇軍武運長久」, 『東亞新聞』, 1940년 10월 2일
야마자키(山崎) 선생에게 반도사정을 듣는 모임	任龍吉, 「山崎先生の半島事情聴く會」, 『東亞新聞』, 1941년 10월 5일

현재 『동아신문』은 1939년 7월 15일자 이후의 호수만 남아 있으므로 초기의 신문 논조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신문이 처음부터 내선융화를 지지하고 나아가 황민화정책에 동조했음은 분명하다. 당시 나고야에서는 좌익적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나고야합동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등 사회·민족운동세력이 존재했다. 그러나 『동아신문』은 이들 운동세력과 대립하며 친일·융화적 색채를 강화했다.

신문 경영의 주요 원천이 된 것은 일제 당국 및 재일조선인 유력자들의 자금 지원이었다. 신문 발기인 명단이 1939년 9월 9일자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동경, 나고야, 오사카 등지에서

면사제조업, 도업 등을 운영한 조선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김연수(金連壽)는 상애회효고(兵庫)현본부의 회장을 역임했고 동경의 정인학은 이후 1945년에 일심회에 관계했다. 노차용은 오사카의 고무공장 경영자로 상애회에 관여한 바 있고 사회주의계 야학을 후원하는 등 전형적인 친일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발기인 이종택은 “기원 2600년의 빛나는 신년을 맞이하여, 진무천황(神武天皇) 조국(肇國)의 정신인 팔굉일우의 이상을 동아의 땅에 구현하고자 하며, 황위(皇威)는 사해(四海)에 가득차고……이제 내선일체는 명실 공히 갖추어져…… 반도 동포도 폐하의 적자(赤子)로 십이분의 총후(銃後)의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는 광고를 실었다.

『동아신문』의 본사는 나고야였으나 도쿄, 교토, 고베, 시모노세키 등 일본 각지에 지사 혹은 지국통신부를 늘려나갔다. 또한 일본뿐 아니라 조선의 부산, 울산, 경성, 평양, 함흥, 중국의 상해, 봉천, 북경, 신경 등지에도 지사, 지국통신부를 두었다.

처음에는 신문을 월 3회 발행하다가 이후에 주간, 일간신문으로 전환했고 1937년경부터 배포 구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신문의 최대 발행부수는 1942년 5,000부였다. 정기적 발행뿐 아니라 신문 부록으로 1938년 8월 20일 『내선일체의 재인식』을 5,000부 간행했고, 같은 해 12월 20일에도 역시 『용사에게 바치는 학동문집』(배포 범위는 만주, 대만, 조선)이라는 부록을 냈다. 1943년에는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보고서로 『적성의 대륙』을 출간했다.

『동아신문』은 일본 당국의 내선일체 정책을 철저하게 추종했다. 현재 확인되는 기사 가운데 ‘협화사업’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1936년 아이치현협화회가 결성된 이래 일제 당국의 의도에 따라 전시체제에 적극 부응한 것이다. 내용은 대체로 (1) 동경·오사카·나고야·큐슈 등 일본 각지의 협화회(지부)의 활동상 소개, (2) 특정 재일조선인들의 협화사업과 관련한 미담·사례 소개, (3) 내선일체와 관련된 계몽적 논설, (4) 일본 협화회 관계자들이 조선인에게 훈화하는 내용의 기사 등으로 분류된다.

(1)의 경우 지면에는 때때로 ‘관서판’ 등을 마련하여 각지의 협화회 활동을 소개했다. 1942년 9월 시모노세키에서 협화소비조합이 결성되었다는 보도라든가, 아마자키(尼崎, 효고현)의 ‘내선협진청년회’가 협화회로 해소되면서 자신들의 갖고 있던 기금을 기부했다는 기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2)에 대해서는 한 조선인이 화재가 났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천황 사진을 들고 나온 것을 보도하며 ‘우리도 일본인이다. 폐하의 사진(御眞影)을 몸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일개 노동자인 반도인이 모범으로 보인 가화(佳話)’라고 했다. 이러한 기사는 비단 일본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성에서 지원병 이인석(李仁錫)의 사망에 대해 ‘내선관민이 감격’했다는 기사, 현금, 근로봉사, 지원병 지원 등의 사례를 전하는 기사 등은 수없이 많다.

(3)의 경우 『동아신문』은 협화사업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설도 많이 실었다. 집필자 중에는 야마자키 엔키치(山崎延吉, 총독부 촉탁으로 농촌진흥운동에 적극 관여), 마루야마 츠루키치(丸山鶴吉, 전 조선총독부 경무총감), 쓰다 가타시(津田剛, 녹기연맹의 이데올로그) 등 일본인뿐 아니라 이광수, 신태약(변호사, 임전보국단 간부), 김두정(전선사상보국연맹 간사), 이영근(내선일체론 등을 쓴 저술가) 등 조선인들도 포함되었다. 고권삼은 「왕도철학과 황도철학」이라는 논설을 통해 조선인이 천황에 귀일함으로서 일본에 정신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두정은 「국어생활」이라는 논설을 통해 일본어 사용을 역설했다. 『동아신문』의 사설이나 논설에 필자 이름이 꼭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

통리(統理)의 성격 국제본의의 투철』과 같은 논설의 경우 필자명 없이 12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4)의 경우 1941년 오사카의 협화회 지도원을 집합시켜 협화회 블록회의를 열고, 기쿠치(菊池) 주임 정부가 유언비어를 삼갈 것, 조선복의 개선 등에 관해 훈시한 내용 등이 있다.

동아신문의 내용과 동아신문사의 활동을 볼 때 조선인의 민족적 이해에 관한 의식이나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 동아신문사는 스스로 협화사업의 실행자로서 내선일체와 황민화, 전시체제에 협조하는 본 보기를 언론으로서 보여주었다.

『동아신문』은 1943년 9월 폐간되었다. 신문 발행을 8년간 계속한 관계자들이 스스로 폐간하려 했다 기보다는 협화회에서 재일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미타미신문』을 간행했기 때문에 비슷한 목적을 가진 신문을 두 종류나 낼 필요는 없다고 내무성이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동아신문』은 창간과 간행 과정에서 내무성과 특별고등경찰의 허가와 지원을 받았고, 일본 내에서 사업 등으로 기반을 잡은 조선인 유력자들이 광고 등으로 재정적 후원을 했다. 동아신문사의 주도자들과 지지자들은 재일조선인 자신이 전시체제와 내선일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각지의 협화회 활동을 지지하고 협화사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전시통제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사업상의 이득을 꾀하고자 했다.

제목	출전
반도지원병 최초의 전사(사설)	『半島志願兵最初の戰死』, 『東亞新聞』, 1939년 7월 15일
권태용, 무사시노(武藏野)의 고려촌과 내선일체(기사)	권태용, 『武藏野の高麗村と内鮮一體(2)』, 『東亞新聞』, 1940년 1월 6일
반도인과 씨 창립에 대한 열의(사설)	『半島人と氏創立への熱』, 『東亞新聞』, 1940년 2월 24일
고권삼, 왕도철학과 황도철학(1~5)	高權三, 『王道哲學と皇道哲學(1~5)』, 『東亞新聞』, 1941년 10월 1, 2, 7, 8, 9일
내지 재주의 반도청년에게 복음(사설)	『内地在住の半島青年に福音』, 『東亞新聞』, 1941년 10월 8일
세계재건과 만주사변, 조선출신자 협력의 공(사설)	『世界再建と滿洲事變, 朝鮮出身者 協力の功』, 『東亞新聞』, 1942년 9월 19일
내지 재주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는 급무(기사)	『内地在住朝鮮人 皇國臣民化は急務』, 『東亞新聞』, 1942년 10월 21일
혈서로 해군 지원, 반도청년 금광청호(金光清浩)군(기사)	『血書で海軍志願, 半島青年 金光清浩君』, 『東亞新聞』, 1942년 11월 25일
오로지 감격의 극치! 조선징병제 간담회, 오사카부협화회 주최(평론)	『只々感激の極み 朝鮮徵兵制懇談会 大阪府協和會主催』, 『東亞新聞』, 1943년 1월 29일
협화사업에 활을 당기는 자!(기사)	『協和事業に弓引く者!』, 『東亞新聞』, 1943년 2월 24일
동아신문의 열의(기사)	『東亞新聞の熱意』, 『東亞新聞』, 1943년 8월 11일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I. '만주국'의 조선인 통제와 친일협력

1. 치안과 경찰

1) 경찰기구

(1) 만주국의 치안(1935~1936)

목 차(目次)

머리말

1. 비적(匪賊) 정세
 - 1) 각지 비적의 정세
 - 2) 민중의 비적에 대한 관념
 - 3) 비적의 서식 지역
2. 치안 숙정(肅正)의 개황
 - 1) 황군의 활동
 - 2) 만주국군 토벌에 대한 상황
 - 3) 보갑제도 실시의 상황
 - 4) 무기 회수와 잠복해 있는 비적 검거의 상황
 - 5) 집단부락의 구축
 - 6) 철로 애호운동의 상황

3. 만(滿)·소(蘇) 국경에서의 분쟁

맺음말

부도(附圖)

만주국 내의 비적 분포 요도(要圖)

부표(附表)

1. 1932년 이후 재만(在滿) 비적 수 일람표
2. 193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본군·만주군의 비적 토벌 성과 일람표
3. 1936년도 잠복 비적 검거 상황
4. 집단부락 결성 상황 조사표
5. 1936년 상반기의 애호 촌민 활동 상황
6. 1935년도 및 1936년도 만(滿)·소(蘇)·몽(蒙) 국경 방면 소·몽 측의 불법 행위 조사

머리말

치안은 국가의 초석이다. 치안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방도 없고, 산업 개발도 없으며, 문화도 없어, 이상적인 왕도정치(王道政治)도 실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관동군(關東軍)과 만주국(滿洲國)은 건국 이래, 치안의 개선에 가장 고심하였으며, 치안 제 일주의의 국책을 견지하면서, 경비에, 토벌에, 정치에, 선무(宣撫)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처럼 만주국의 치안은 날마다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를 만주사변 당시와 비교해 보면, 사뭇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양호해 졌으며, 국초(國礎)가 다져졌고 국방, 정치, 경제, 그 밖의 제반 문화 사업 등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듯한 기세로 약진을 하며 “일본 국내에서 5년 걸리는 일도, 만주에서는 1년이면 달성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라 할 것 없이 입을 모으고 있어, 마침내 왕도의 빛이 만주 전체를 비추게 된 것은 실로 기쁘기 그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까지 ‘황군(皇軍)’¹⁾이 밤낮으로 기울인 정진 및 노력 그리고 심신의 노고는 도저히 글로 다 옮길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동양민족 백년지대계를 위해, 가엾게도 청춘을 만주 땅의 꽃으로 산화한 영령, 혹은 적탄에 부상을 당하였거나, 익숙치않은 기후·풍토 그리고 고생으로 인해 병을 얻은 백의의 용사들에게 만강(滿腔)의 경의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또한 황군에게 협력하여 경비·토벌에 따라나서고, 혹은 산간벽지에서 어려움과 궁핍을 견디어내면서 치안을 위한 제반 공작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본과 만주의 군 관헌의 노고에 대해서도 일본과 만주 두 나라의 국민은 마음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한다.

이하, 지난 1936년 이후의 만주국 치안의 상황 및 일본과 민주 군관헌의 노고·분투 양상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통해 제대로 다스려지는 만주국의 참된 모습을 소개함과 동시에, 호국영령을 위로하면서 치안 숙정을 위해 힘쓴 여러 지사들의 공적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다.

1. 비적 정세

만주사변이 갑작스럽게 발발하고 한동안 만주에는 그 특산물인 대두(大豆)와 함께 유명하였던 마적(馬賊), 일본군에게 축출된 중국군, 이른바 ‘병비(兵匪)’ 등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회자될 정도로, 만주 국내에 만연해 있었다. 그러나 건국 6년째인 지금, 30만 명이라고 회자되던 병비가 1만 명도 안 되는 소수로 격감한 것은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부표1. 1932년 이후 재만 비적 수 일람표)

게다가 이들 잔존 비적은 지금 현재 일본군과 만주군으로 인해 만주국 동부 지방의 산악·밀림 지대로 쫓겨 들어가, 예전과 같은 자유로운 활동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도로나 전화는 날로 정비되었고, 보급제도도 마련되었으며, 집단부락이 형성되었고, 자위단(自衛團)도 강화되었으며, 민간에 산재해 있는 무기·탄약류는 회수되었고, 선무(宣撫)는 널리 펼쳐져 있는 양상이므로, 비적은 극도로 곤궁해졌다. 이들 비적은 일본과 만주의 군경 토벌대가 접근하자 교묘하게 정보를 얻어 도망을 하여 분산·잠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궁지 몰린

1) 일본군을 말함.

취가 오히려 고양이를 공격하는 기세로, 죽어라 미친 듯이 저항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년에 걸쳐 일본군과 만주군의 토벌을 받고 있어, 자연히 전법을 익혔으며 험난한 지형을 교묘히 이용하여 항전하고 있으므로, 좀처럼 무시하기 어려운 상대이다.

현재, 비적의 수가 격감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군과 만주군의 사상자가 적은 이유는 이와 같은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다.

비적의 수는 채 1만 명도 되지 않지만, 광대한 지역의, 게다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에 산채를 만들어 마치 원숭이처럼, 갑작스레 달려드는 악마처럼 출몰하는 비적의 소재를 찾아내어 이를 격멸하는 토벌작전의 심신이 가는 노고는 실로 생각만큼 되지 않는 면이 있다.

1) 각지 비적의 정세

(1) 봉천성·안동성 <비적 수 약 3,000명>

이 지방은 옛날부터 특별히 극악무도한 비적이 많았던 곳으로, 주민은 매우 피폐해 있다.

특히, 안봉선(安奉線) 이동(以東), 봉길선(奉吉線) 이남(以南)의 이른바 동변도(東邊道)가 심각하였는데, 작년부터 일본과 만주의 각 기관에서 철저한 치안 공작을 전개함으로써 비적은 격감하였다. 최근, 동변도부흥위원회(東邊道復興委員會) 및 동변도특별치안유지회(東邊道特別治安維持會)가 편성되어, 오직 이 지방의 치안 회복과 산업 조성에 주력한 결과, 일찍이 병비가 횡행하던 동변도도 오늘날, 왕도의 서광이 비추면서 소생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렇지만, 동변도 동북부 지역의 무송현(撫松縣)·몽강현(濛江縣)·임강현(臨江縣) 방면 그리고 중부 및 남부 동변도 방면으로는 지금 공산주의적 성향의 비적이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의 조정을 받으면서 어리석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철본선(滿鐵本線)과 안봉선(安奉線)으로 둘러싸인 이른바 삼각지대도 지금까지는 유명한 비적의 활동 지대였으나, 작년 이후, 유력한 비수(匪首)가 잇달아 궤멸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귀순해 오는 비적이 많아졌으며, 이 지방 일대의 치안은 눈에 띄게 밝아졌다.

(2) 길림성·간도성 <비적 수 약 500명>

이 지방은 길림성의 동남부 방면에 30명 안팎의 소규모 비적단이 가끔 출몰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평온한 것이지만, 남쪽 성의 경계 방면이나 동북쪽 경계인 박호(泊湖) 방면 성 밖은 여전히 유력한 비적단이 비교적 활발하게 행동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3) 빈강성(濱江省)·삼강성(三江省) <비적 수 약 5,000명>

이 지방은 현재에도 비적이 비교적 많으며, 승합 자동차나 경찰이나 자경단 등도 습격당하는 일이 있다. 특히, 송화강(松花江) 하류 방면의 삼강성 내에 자리를 잡은 공비(共匪)(공산주의적 성향의 비적을 말한다)는 그 세력 범위를 점차 북부 국경 방면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크게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 서부 빈수선(濱綏線) 방면 <비적 수 약 1,000명>

북방에는 의란(依蘭) 방면에서부터 사문동(謝文東)·상유구(常有狗)·관현인(關憲仁) 등을 두목으로 하는 공비가 이동해 와서, 방정현(方正縣) 동부의 현 경계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고 있으며, 남방에는 고봉림(考鳳林)·오룡(五龍) 등을 두목으로 하는 공비가 오상현(五常縣) 동쪽의 위하현(葦河縣)·주하현(珠河縣) 경계 부근에 일단(一團)을 이루어 근거지를 삼고 있다. 고봉임·오룡 등 두 비적은 위하현 남쪽 지대에 그들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 지방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반일(反日)·반만(反滿) 선전을 하고 있다.

▷ 동부 빈수선(濱綏線) 방면 <비적 수 약 1,000명>

수많은 집단부락이 완성되어 점차 양민과 비적에 대한 구별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비적들은 평지 방면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 오지 삼림에서 목재 벌목에 종사하는 쿠리(苦力)들을 습격하여 의복을 빼앗거나 음식을 빼앗아 갔다. 이 지역의 비적은 모두 공비이며, 더구나 적색 본토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관계로, 크게 주의·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 동북부 국경 방면 <비적 수 약 500명>

요하현(饒河縣)·호림현(虎林縣) 경계 부근에 이학만(李學萬) 계(系) 공비가 있었고, 밀산현(密山縣)·발리현(勃利縣) 경계 부근에는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 제4군장(第四軍長)이라는 으리리한 직함을 가진 이연록(李延祿) 아래에 약 200명이 횡행하고 있다.

▷ 송화강(松花江) 하류 방면 <비적 수 약 1,500명>

송화강 서안(西岸)의 비적단은 가장 포악하고, 완강하며 또한 가장 활동적이다. 그 대표적인 무리가 조상지(趙尙志)라는 두목이 이끄는 공비인데, 조상지는 일본군과 만주군의 끊임없는 토벌로 약화된 군소 비적단을 한데 모아 항일·반만을 구실로 삼아, 그 세력 범위를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 지방의 비적 근거지는 삼강성(三江省) 서부, 즉 탕원현(湯原縣) 서부 및 북부의 산 속으로, 북부 국경 지방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빈북선(濱北線) 방면 <비적 수 약 1,000명>

이 지방은 철려현(鐵嶺縣)·경성현(慶城縣)·수릉현(綏稜縣)·목란현(木蘭縣)·봉산현(鳳山縣) 방면의 산악·산림 지대에 약 1,000의 공비가 있으며, 삼림 벌채에 종사하는 쿠리들의 움막을 습격하여 의류나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

(4) 금주성(錦州省)·열하성(熱河省) <비적 수 약 1,000명>

열하성의 능원현(凌源縣)·조양현(朝陽縣) 두 현의 경계 및 조양현의 북부, 임서(林西)의 남북 지대에는 중국의 반만·항일 책동에 조정당하고 있는 소규모 비적단이 있으며, 또한 열하성·금주성 두 성의 경계 부근 등, 군경의 위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에는 지금 양민인지 비적인지 알 수 없는 자나 비적과 내통하고 있는 자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이 지방의 치안은 양호한 편이다.

(5) 용강성(龍江省)·흑하성(黑河省) <비적 수 약 100명>

작년 말, 불산현(佛山縣)에서 활동하던 조상지(趙尙志)·하운계(夏雲階) 계(系)의 연합 비적을 소탕하였기 때문에, 이 지방의 치안은 크게 좋아졌으며, 현재에는 강도와 같은 비적이 가끔 출몰하는 정도이다. 최근의 비적 분포 상황은 대략 부도에 나타난 대로이다.

2) 민중의 비적에 대한 관념

구(舊) 군벌 가렴주구에 익숙해진 오지의 민중 중에는 만주국이 성립한 사실을 모르고, 비적이 되어 관현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상당히 있다.

이들 민중은 비적이 되어 토벌대의 행동들을 비적들에게 전하고 있어서, 토벌 활동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토벌이나 선무 공작이 진행됨에 따라, 작년부터 민중은 점차 비적을 적(敵)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체포된 비적은 입을 모아 “민중이 관현에 기대기 시작하여서, 강도질이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산간 오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중에게 관현의 은위(恩威)가 미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로, 가령 민중이 비적을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비적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잠시 비적의 편을 들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것을 책할 수만도 없는 사정도 있다. 그래서 오지에 산재해 살고 있는 주민들을 되도록 집단으로 만들어 자정단을 구성하여 비적에게 대항할 자위 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서술하는 집단부락 건설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3) 비적의 서식 지역

만주사변 당시, 30만 명이었다고 하는 비적이 만주 전체를 뒤덮고 있었으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토벌과 일본군의 분산 배치, 치안을 위한 제반 공작 등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평지 쪽에는 비적이 사라졌으며, 비적들은 산간벽지로 파고들었다. 현재, 대부분의 비적은 봉천·하얼빈·흑하(黑河)를 잇는 철도선(鐵道線) 이동(以東) 지구, 특히 동변도(東邊道), 동부 국경 지대, 송화강(松花江), 목단강(牡丹江) 유역 등에서 어리석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산악 밀림 지대로, 도로도 없어, 토벌대가 신속하게 행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토벌대에게 발견되더라도 도망치거나 몸을 숨기기에 편한 곳이어서 자연히 비적단의 마지막 은둔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치안 숙정의 개황

치안 숙정 공작은 일본과 만주의 군정이 단독으로 혹은 협력하여 실시하는 토벌과, 관동군·만주국·그 밖의 관계 기관의 통제나 협동작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치안유지회의 결의에 따라 각 행정 기관이 실행하는 치안 공작을 통해, 눈에 띄게 진척을 보이고 있다. 치안유지회는 중앙에 중앙치안유지회를 두고, 관동군 참모장이 위원장으로서, 창안 유지에 관한 일반 지도 방침이나 중앙 및 지

방 각 행정 기관의 협력 책응(策應)에 관한 사항 등을 입안·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성(省), 각 현(縣)에는 성(省)치안유지회, 현(縣)치안유지회가 설치되어 있어, 모두 일본 군부 및 만주국 측에서 위원이 나와, 치안유지에 관한 각종 사항을 입안·심의하여, 비적 소탕에 철저히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치안유지회는 앞으로 치안이 좋아짐에 따라 점차 폐지되어야 할 기구로, 이번 1937년도에는 일부 성과 현의 치안유지회를 폐지할 정도로 치안이 좋아졌다.

1) 황군의 활동

재만(在滿) 황군은 그 경비 면적에 비해 병력이 매우 적으며, 또한 비적이 분산되어 있는 전 지역에 서 양민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만 하므로, 자연히 적은 병력을 각지에 분산해 주둔시키고 있다. 따라서 항상 병력이 적어 중과부적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좋지 못한 기후와 풍토, 그리고 험준한 지형에 고생하고 조악한 생활을 견디면서, 오로지 치안 확립에 매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주국에 인접하여 20만 여 명의 병력을 갖고 불법을 자행하는 소련과 서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지난 1936년도 황군의 전체 전투 회수는 약 1,891회, 격멸된 비적 수는 13,384명, 황군의 전사자·부상자 수는 1,070명이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재만 황군의 전투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황군이 만주에 주둔하는 의의도 역시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1936년도의 황군 토벌 성과는 <부표 2>에 제시하였다.

2) 만주국군 토벌에 대한 상황

국군 건설 당시, 만주군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토벌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 항상 일본군의 지도·원조를 필요로 하였는데, 최근에는 당국의 개혁, 일본인 군관의 헌신적인 노력, 황군으로부터 받은 감화 등을 통해, 자질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지금은 단독으로 토벌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작년 말 이후, 동변도에서는 토벌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올렸다. 만주군의 작년 1936년도의 희생자 및 토벌 성과 상황은 <부표 2>에 제시한 대로이며, 토벌 전투 회수는 2,085회, 소탕된 비적 수는 7,419명 이상에 달하였다.

3) 보갑제도 실시의 상황

보갑제도라는 것은 각 지방의 주민이 직접 자체적으로 그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만주국 및 중국 특유의 제도로, 그 조직은 대개 10호(戶)를 패(牌)로 하고, 한 부락(部落)을 갑(甲)으로 하고, 한 촌(村)을 보(保)로 한다. 그리고 패내(牌內)의 주민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며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상호 검찰(檢察)을 하며, 호구(戶口)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알리며, 비적의 정보나 범죄 발생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보고하고, 또한 교통·통신망이나 방호 시설을 애호(愛護)하며, 또한 자위단의 의무를 수행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관공서의 명령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보갑제도는 변두리 지역에도 실시하여 1932년 12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현재에는 이를 공고

히 하기 위해 현(縣)을 지정하는 방법을 취하여, 1935년도에 49개 현, 1936년도에 55개 현, 1937년도에 60개 현을 지정해 특별 공고화 공작을 실시함으로써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보와 갑은 주민의 긴급한 위해를 경계·방어하기 위해 자위단을 만들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이 이를 만들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갑제도의 보급은 자연히 자위단의 증가를 낳았으며, 그 결과 비적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어서 치안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4) 무기 회수와 잠복해 있는 비적 검거의 상황

구 군벌 시대에 민중이 자위를 위해 갖고 있던 무기와, 만주사변 후 병비를 통해 민중의 손에 들어간 무기는 상당히 많아, 자칫하면 농민이 비적이 되거나 비적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등, 치안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국 이래, 일본과 만주의 관헌은 민간에게 있는 무기의 조사와 회수에 나서서, 1936년도에 207,300정(挺), 건국 이래 모두 합쳐 1,081,439정의 총기를 회수하였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민간에는 7, 80만의 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비적은 일본군과 만주군의 토벌을 피해 삼삼오오 민간으로 파고들어 양민을 가장하고 있는 자가 적지 않으므로, 토벌과 병행하여 민간에 잠복하고 있는 비적의 검거에도 나서서, 작년 1936년도에는 이런 종류의 비적 14,630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처럼 치안을 유지하는데 매우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다. 1936년도의 잠복 비적 검거 상황은 <부표 3>과 같다.

5) 집단부락의 구축

만주국은 농업국으로, 그 주민은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로 각 지에 분산해서 살고 있다. 촌락도 일본처럼 비교적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각 농가는 경작하기 좋도록 여기 저기 흩어져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과 만주의 군경은 비교적 집단을 이루고 있는 마을들을 경비하는 경우가 많아, 비적들은 분산되어 있는 농가들을 이용하여 식량을 얻거나 숙영(宿營)을 하기도 하여, 비적의 생활·비적의 활동에 분산되어 있는 농가들은 좋은 활용 대상인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농가들의 주민들은 비적들과 친숙해져 이들과 내통하고, 비적을 도와 토벌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산해 살고 있는 가옥들을 한 곳으로 모아 집단을 이루어 부락을 형성하여, 그 주위에 해자(壕字)나 울타리를 둘러 방어 설비를 마련하고, 또한 자경단이나 경찰을 설치하는 일은 비적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비적의 의식을 차단하여 이를 소탕시키기 위해서도, 장차 비적과 주민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양민들 중에서 비적과 내통하는 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과 만주 군경은 수년 전부터 치안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열성적으로 집단부락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는 비적에게는 분명 큰 고통이 될 것이므로, 비적은 이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처럼 집단부락의 구축은 한층 비적들을 곤궁에 빠뜨릴 것이며, 부단한 토벌 및 그 밖의 치안을 위한 제반 공작과 아울러, 오지 치안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현재까지 구축한 집단부락의 수 및 본년도 집단부락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그 수는 <부표 4>에 나와 있는 대로이다.

6) 철로 애호운동의 상황

철로 애호운동이라는 것은 철도 연선의 주민들에게, 철도는 국가와 민중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가르치고, 철도 애호 정신을 함양하여 자발적으로 철도와 그 건설 작업 보호에 참가하게 하려는 것으로, 철로와 도로 양측 각 5킬로미터 지대를 철도 애호 지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 운동은 1933년 8월, 군의 지휘에 따라 개시된 것으로, 지금 애호를 담당하고 있는 마을의 수는 약 3,000 정도이며, 그 주민의 수는 약 500여 만 명에 이르고 있다.

철도 애호운동이 철저히 보급되고, 또한 그 지대 안에서의 보갑제도가 완성될 때에는 철도 연선의 치안이 완전히 안정되고, 유사시에 철로 방어·수리·보전 등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운동은 교통의 대동맥인 철도 지대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다양한 선전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사상전·선전전을 수행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한 운동이다.

1935년 4월 이후, 1936년 9월에 이르는 동안에 실시된 애호 촌민 활동 상황은 <부표 5>에 나와 있는 대로이다.

3. 만·소 국경에서의 분쟁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약 만 명 정도의 비적은 그 대부분이 공비여서,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의 마수에 늘어나고 있다.

이들 비적들은 일본군·만주군에 쫓겨 소련으로 도망하여 그 비호를 받거나, 혹은 국경 부근에서 소련으로부터 무기·탄약 등의 공급을 받고, 또는 드물게는 고의로 만주국 내에 날아오는 소련 비행기로부터 군자금을 제공받기도 하므로, 소련이 비적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조차 없다.

또한 소련은 만주와 소련의 국경에 우세한 병력을 배치하고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불법월경·불법사격·만주인 납치 등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비행을 자행하고 있어, 국경 분쟁을 한층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국경 분쟁은 단순히 국경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단순한 비적 지원이라는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근본은 유사시를 대비한 정찰이며, 만주국에 대한 교란 음모이며, 군비 확충에 따른 침략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일본과 만주 측이 약간의 빈틈만 보인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지 모르며, 일본의 군비 확충·재만(在滿) 병력의 증가가 필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1935년도 및 1936년도의 소련 불법 행위 상황은 <부표 6>에 나와 있는 대로이다.

맺음말

관동군은 일본 육군의 대전제로서 만주국의 군대를 지원하고, 이와 협력하여, 한편으로 길고 긴 국경을 경비하고, 소련의 국경 부근에서의 난폭한 행위 및 만주국 내의 교란 공작을 단호히 배격하여, 국위의 유지·발양에 힘쓰며, 다른 한편으로 비적을 소탕하여 유사시에 후한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만주국의 민족협화·왕도낙토라는 이상국가 완성을 지원하고, 또한 만주국을 첫 번째 해제(楷梯)로서 황도를 세계에 선포하고 널리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대포부를 갖고 밤낮으로 대륙의 일각에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만주국 내의 치안은 현재 현저하게 양호해졌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세상에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만주라고 하면 지금도 예전처럼 비적이 도처에서 들끓고 있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적지 않다. 이는 만주국에게 전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실이며, 만주국 발전을 위해 유감스럽기 그지 없는 점이다.

또한 현재에도 비적 토벌을 위해 황군 중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주지한 바와 같이 만주국은 일본과 일체불가분(一體不可分)인 국가이며, 만주국에 사는 일본인을 위해서는 외국이 아닌 자신들의 나라이기도 하다.

더구나 비적이 횡행하고 있다면 이는 유사시에는 중대한 화근일 뿐만 아니라,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평상시에도 생명·재산의 안전은 물론, 산업의 개발·문화의 향상 등을 바랄 수 없으며, 이상적인 왕도 건국은 그저 하나의 공중누각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비적의 근거지 또는 활동하는 지대는 이미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황군의 병력에 비해 현저히 관대한 지역이며, 게다가 교통이 불편한 산악 밀림 지대이기 때문에, 최근 황군의 자질이 좋아졌다고 해도, 만주군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도 황군이 주체가 되어 토벌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적 토벌에서 전사 혹은 부상을 당한 용사들은 국운을 건 대전에서 전사 혹은 부상을 당한 자들로, 그 정신은 추호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본·만주 양 국민이 이와 같은 희생자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올림과 동시에, 그 유족들에게도 충분한 후원을 지불해야 함을 열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부표 2〉 1936년(1월부터 12월까지) 일본군·만주군의 비적 토벌 성과 일람표

구분		일본군	만주군	계
아군	전사(戰死)	301	326	627
	전상(戰傷)	769	648	1,417
적	유기사체(遺棄死體)	9,028	6,667	15,695
	포로	2,030	752	2,782
	소총	7,146	1,743	8,889
	소총 탄약	556,446	41,617	598,063

	권총	2,141	711	2,852
	권총 탄약	23,159	3,808	26,967
	인질 탈환	1,432	899	2,331

〈부표 3〉 1936년도 잠복 비적 검거 상황

검거 건수 8,600건

구 분	체포 수(逮捕數)	폐비 수(斃匪數)	계
비수(匪首)	463	146	609
비비수(非匪首)	6,735	1,397	8,132
통비자(通匪者)	5,530	359	5,889
합계	14,630		

〈부표 4〉 집단부락 결성 상황 조사표

구별(區別) 성별(省別)	1936년 이전 건설 수	1936년 건설 수	계	1937년 계획 수	적요(摘要)
봉천(奉天)	34	364	398	204	
길림(吉林)	760	907	1,667	582	
용강(龍江)	13	912	925	42	
열하(熱河)	—	—	—	—	집단부락 건설 없음
빈강(濱江)	246	964	1,210	508	
금주(錦州)	—	—	—	8	
안동(安東)	49	134	183	165	
간도(間島)	70	29	99	54	
삼강(三江)	—	60	60	68	
흑하(黑河)	—	—	—	—	집단부락 건설 없음
계	1,172	3,370	4,542	1,431	

비고) 흥안남성(興安南省)에는 집단부락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분명하지 않다.

〈부표 5〉 1936년 상반기의 애호 촌민 활동 상황

군경(軍警)에 협력 1,441		계 5,892 이 숫자는 1개월의 평균수로 본 기간(4월부터 6월까지)의 모든 건수는 35,352건으로 매우 많다.
애호봉사 2,565		
연락(連絡)	비적정보 808	
	철도·통신·사고·기타 1,021	
연락에 따르다	피해 방지 건수 30	
	피해 경감 건수 27	

비고)

- 본 표는 각 애호 촌민의 경무단 및 분소에 보낸 연락수를 기초로 한다.
이 밖에 연선 각 경비 기관에 하도록 한 애호 촌민의 연락 보고는 상당수 올라갈 전망이지만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2. 본 표에는 단순 연락·보고 등은 가산되지 않았으나 1개월 평균 16,000건에 달하고 있다.
3. '군경에 협력'은 애호 촌민이 일본과 만주 군경의 비적 토벌 때에 혹은 길 안내를 하거나 총을 휴대하고 협력하거나 비적의 귀순에 힘쓰거나 철도 경비에 협력하여 선로 순찰을 하거나 또는 애호의용반(愛護義勇班)을 조직하여 철도 보호에 온 힘을 쏟는 일 등을 한 것이다.
4. '애호봉사'는 애호 촌민이 철도·자동차선의 수재·화재·고장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교통로 개수·보수에 종사하는 것 등이다.

〈부표 6〉 〈1935년도 및 1936년도 만(滿)·소(蘇)·몽(蒙)의 국경 방면 소·몽 측의 불법 행위 조사〉

1937년 3월 조사

종류별	방면별	동부 국경	북부 국경	서부 국경	만몽 국경	계
불법월경(不法越境)		19(9)	4(2)	1(1)	3(3)	27(15)
불법월경 비행(飛行)		18(13)	2(2)	4(1)	3(6)	27(22)
불법납치		50(50)	21(9)	2(2)	1(4)	74(65)
불법사격		33(9)	9(6)	4(3)	9(4)	55(22)
기 타		(7)	13(3)	3(1)	4(1)	20(12)
합 계		120(88)	49(22)	14(8)	20(18)	203(136)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1935년도 수치를 나타낸다.

〈출전 : 關東軍參謀部 編 『(最近に於ける)滿洲國の治安』, 新京:關東軍參謀部, 1937년 5월, 1~34쪽〉

(2) 치안개황월보 제9호(1940.9)

일반개황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각 비적단의 도량(跳梁)·발호(跋扈)가 심각하며, 특히 북안지구(北安地區)에서 남하하여 빈강성(濱江省) 관내로 침입한 재홍빈비(載洪賓匪) 100명은 같은 성 조주조동(肇州肇東), 곽이라(郭爾羅), 사후기(斯後旗)를 중심으로 하여 민중 공작에 전념하고 있었으나, 9월 1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이튿날 12일 오전 0시 30분에 걸쳐 조주현(肇州縣) 풍락진(豐樂鎮)을 습격하여 경찰서, 경찰서장 공관을 불태웠으며, 중앙은행(中央銀行) 지점에서 현금 15만 여 원(圓)을 약탈하고, 주민에게서 많은 물건을 약탈하여 북방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 지역의 치안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편 왕명귀(王銘貴) 비적단 약 70, 80명은 북안지구 덕도능강(德都嫩江), 용강성(龍江省) 늘하지구(訥河地區)를 떠돌며 경찰서 분주소(分駐所)를 습격하는 등 활발한 행동을 계속해 가고 있었으나, 9월 25일 오후 9시 30분 무렵, 북안성(北安省) 극산현(克山縣) 성(城)을 습격하여 현(縣) 공서(公署), 국군단(國軍團) 본부, 감옥, 중앙은행 지점, 종마장(種馬場) 등을 습격하여, 일본인 6명, 만주인 5명을 살상하고 많은 무기·탄약을 약탈하여 동북쪽으로 도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그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황(活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열하성지구(熱河省地區)에서는 일본과 만주 군경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치안숙정공작(治安肅正

工作)에 따라, 국내에 침입한 국외 공산 비적단은 점차 국외로 퇴각하고 있으나, 국내 침범을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으므로 낙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정세이다.

이번 달 중으로 치안 숙정을 위해 특기해야 할 사항은 특별공작반 김광(金光) 이사관(理事官) 이하 16명은 9월 29일 박득범(朴得範)의 반거(蟠居)를 알아내어, 간도성(間島省) 왕청현(汪淸縣) 천교령(天橋嶺) 서쪽에 있는 아미타령(阿彌陀嶺)에서 박득범 이하 5명을 체포하여 많은 무기와 탄약을 포획하였는데, 이는 최현(崔賢)·안상길(安尙吉) 비적단에게 일대 타격을 가한 것으로, 치안 숙정 이상의 큰 영향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남부 지구에서는 일본과 만주의 군경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토벌에 나서고 있다.

주요 비적단의 행동

1. 동남부 지구

(1) 김일성(金日成)

김일성 비적단 약 150명은 여전히 안도(安圖)·화룡(和龍)·연길(延吉) 등 3개 현 경계 황구령(黃溝嶺)을 중심으로 한 지구에 분산해 잠복하면서 은밀하게 월동(越冬)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데, 그들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이 지구 토벌대는 김일성 비적단 토벌에 주력하면서 낙엽이 지기 전에 이 비적단을 제압하고자 열의를 가지고 체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수획엄호(收獲掩護)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① 김일성 비적단 약 40명은 9월 5일 10시 무렵, 연길현(延吉縣) 맹산둔(孟山屯) 서쪽 지구에서 국군(國軍) 노린부대(路麟部隊)와 충돌하여 약 1시간에 걸쳐 교전을 전개하여, 비적단의 피해가 매우 컸다. 총기·그 밖의 잡품 다수를 버리고 사체 1구도 버린 채 북쪽으로 달아났다.

② 9월 2일 10시 30분 무렵, 김일성 비적단의 일부로 보이는 약 10명이 안도현(安圖縣) 목조둔(木條屯) 동남쪽 2킬로미터 부근에서 나가시마(長島) 공작대와 충돌하여 맹렬한 공격을 받다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동북쪽으로 달아났다.

(2) 위극민(魏極民)

위극민 비적단 약 70 내지 80명은 여전히 돈화현(敦化縣)·안도현(安圖縣)·무송현(撫松縣) 경계 지역에 잠복하면서 구성원들을 극도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토벌대의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진한장(陳翰章)

진한장 비적단의 주력 약 40명은 영안현(寧安縣) 경박호(鏡泊湖)·보호(浦湖) 어구 남쪽 지구에, 일부

는 관지(官地) 동쪽 사도구(四道溝)를 중심으로 한 지구에 분산 잠행하면서 식량과 말에게 먹일 먹이를 구하는 데 광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한인화(韓仁和)

왕청현(汪淸縣) 대흥구(大興溝) 이서(以西) 지구에 잠행 중인 한인화 비적단 약 120명은 일본과 만주의 군경 토벌대의 날카로운 칼날을 교묘히 피하면서 점차 북상하여 8월 하순, 광성장(廣盛長)·마늑구(馬鹿溝)를 습격한 다음, 일본군 이노우에(井上) 부대의 추격·공격을 받아 사망으로 흩어져 도주하였다. 그러나 그 주력은 여전히 춘양(春陽) 서쪽 지구에, 그 일부인 약 60명은 다시 두 개 부대로 나뉘어 영안현(寧安縣) 방면으로 들어가 소규모 비적단으로 분산하여 월동을 위한 식량과 말에게 먹일 먹이를 구하는 데 광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박득범(朴得範)

박득범은 최현(崔賢)·안상길(安尙吉) 비적단을 영도하며, 최근 토벌대의 갑작스런 추적으로 여러 부대로 나뉘어 식량과 말 먹이를 구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 박득범 본인은 수하 수 십 명 정도를 대동하고 있는데, 9월 29일 특별 공작반 김광(金光) 이사관 이하 16명은 마침내 박득범이 잠복해 있는 왕청현(汪淸縣) 천교령(天橋嶺) 서쪽 아미타령(阿彌陀嶺)을 기습하여 박득범과 그 수하 5명을 체포하였다.

박득범의 공술(供述)에 따르면, 최현·안상길은 부하 50명을 이끌고 영안현(寧安縣)·목능현(穆稜縣) 경계 방면으로 이동하여 월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940년 9월분 동남지구 토벌 전과 일람표〉

	동지구	서지구	남지구	북지구	동북지구	나가시마 (長島) 공작대	제2공작대	합계
전투회수	8	7	1	10	4	4		34
연비수(延匪數)	153	35	1	44	110	42		385
전사				1				1
부상								
교전으로 버려진 사체	3	11	1	3	1	3		22
포로	1			5		3		9
원포검거(遠捕檢舉)	5	6	1		1	2	5	20
귀순(무장)	11	8	1	9	2	5		36
귀순(비무장)	1			2				3
비수(匪首)	김일성 지도부 □□□ 궁□산 (宮□山)	동북항일 연일로군 정치위원 왕수산 (王壽山)						극비여비 (旅費) 박득범

기관총							(3)	(3)
척탄통							(2)	(2)
소총	4 (16)	11 (12)	(4)	3 (16)	(2)	2 (2)	(82)	20 (180)
권총	4 (6)	(2)	1 (1)	2	1 (1)	1 (3)	(5)	14 (18)
□총				1	(1)			1 (1)
소총탄	387 (570)	475 (345)	(30)	119 (477)	(133)	141 (65)		1,122 (1620)
권총탄	108 (118)	(47)	6 (13)	39	8	38 (43)		199 (222)
수류탄				(2)	(2)		(1)	(5)
총검	(3)		(1)	1 (1)				1 (5)
체코단약	(60)							(60)
탄띠	(4)	(5)	(1)	(2)	(20)			(32)
척탄통 □탄	LG총신 1						(12)	LG총신1(12)
□리함	22	21	9		4			46

봉천성(奉天省)

지난달에 이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치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구에서는 초목이 우거지는 시기를 이용해 여전히 소수의 토비단이 끊이지 않고 발호하고 있다. 그들의 동향에 따라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사건

(1) 9월 1일 오후 10시 무렵, 신민현(新民縣) 백기보(白期堡) 경찰서 관내 심가강자(瀋家崗子)에 소속을 알 수 없는 비도 7명이 출현하였다는 급보에 따라, 본서에서 장(張) 경위 이하 7명과 대석사자(大石獅子) 분주소장(分駐所長) 이하 5명이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비도를 수색하던 중 2일 오전 0시 40분 무렵, 심가강자 서쪽 1.5킬로미터 숲 속에서 그 비도들을 발견하고 30분 정도 교전을 하다가 결국 사망으로 흩어져 도주하였다.

아래에 기술하였듯이, 인질 1명을 탈환하였고 우리 쪽에는 피해가 없다.

기(記)

신민현(新民縣) 제4구(第四區) 심가둔(瀋家屯) 주민 심신귀(瀋新貴) 당 41세

(2) 9월 4일 오전 3시 무렵, 신민현 공주둔(公主屯) 경찰서 관내 동정가둔(東程家屯)에 소속을 알 수 없는 비도 10명이 출현하여 이 지역 주민 진복여(陳福興)의 집에 침입해 이를 협박을 하고 국폐(國幣) 182원(圓), 의류 40여 점을 강탈하여 동남쪽으로 도주하였다.

(3) 개원현(開原縣) 경무과 특별수사반 반장 야마구치(山口) 경위 이하 6명은 이통현(伊通縣)·서풍현(西豐縣) 경계의 일대에서 열심히 수사를 속행하던 중에, 9월 4일 오후 3시 30분 무렵, 개원현 제1구 쌍수촌(雙秀村) 만가구(萬家溝) 북쪽 약 2킬로미터 산 속에서 목표로 삼았던 비도 5명을 색출해 급습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올렸다.

기(記)

① 사상(死傷)

사살 비도 3명 / 부상 비도 2명

② 포획

소총 3정(挺) / 소총탄약 96발

모젤권총 3정 / 모젤권총 탄약 24발

수류탄 3개 / 보병용 총검 2진(振)

③ 인질 탈환

개원현 제3구 이□촌 이□자둔 농부 왕병권(王秉權) 당 31세.

(4) 9월 5일 오전 3시 50분 무렵, 신민현(新民縣) 경찰서 관내 요고대자둔(腰高臺子屯)에……(판독불가)……를 두목으로 하는 8인조의 비적단이 출현하여 이 지역 주민 계춘관(季春官)을 인질로 납치하여 도주하였다.

(5) 9월 6일 오후 11시 무렵, 신민현(新民縣) 백기보(白旗堡) 경찰서 관내 금가와보(金家窩堡)에 소속을 알 수 없는 비도 7명이 출현하여 동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정보를 접한 본서에서는 장(張) 경위 이하 14명을 출동시켜 백기보 동쪽 약 4킬로미터 천심구자(川心溝子)에서 비도를 수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던 중인 7일 오전 1시 30분 무렵, 지난 달 18일에 인질로 손자 사독자(四禿子)를 납치당했던 소효봉(邵曉峰)의 집에 침입하여 가인(家人)을 협박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포위 공격하였을 때 살아남은 비적단은 이 집 뒤쪽의 창문을 파괴하고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이 교전 결과, 자위단원 1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장춘림(蔣春林) 당 32세. 왼팔……(판독불가)……관통 총상)

다음과 같이 인질 2 명을 탈환(奪還)하였다.

기(記)

……(판독불가)……제5구(第五區) 천심구자(川心溝子) 주민 사독자(四禿子) 당 12세

……(판독불가)……가유방(家油房) 주민 임백현(任伯賢) 당 11세

(6) 9월 12일 □□ 10시 50분 무렵, 신민현(新民縣) 왕삼호둔(王三戶屯) 경찰서 관내 진가와보둔(陳家窩堡屯)에 대탑(大塔)·태산호(抬山虎)를 두목으로 하는 6인조의 비적단이 침입하여 민가(民家) 14간(間)을 불태웠으며, 주민 양부(梁傅) 씨를 사살하고 동쪽으로 도주하였다.

(7) 9월 22일 오후 9시 무렵, 신민현 신민 경찰서 관내 후평안보(後平安堡)에 비수(匪首) 장강호(長江好) 이하 9명의 비적단이 출현하였다는 정보를 접하고 즉각 요대자(腰臺子) 분주소장 이하 10명이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그 마을 부근에서 교전을 펼치다 20분 뒤 서북쪽으로 몰아냈다.

그 결과 우리 쪽에 피해는 없었다. 다음과 같이 인질 1명을 탈환하였다.

기(記)

신민현 요대자촌(腰臺子村) 평안보(平安堡) 주민 이춘관(李春官)

(8) 9월 24일 오후 7시 30분 무렵, 신민현 왕삼호둔(王三戶屯) 경찰서 관내 왕가둔(王家屯)에 소속을 알 수 없는 비도 5명이 출현하여 북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정보에 따라, 즉각 전이대자(前二臺子) 분주소장 이하 7명, 주□자(周□子) 분주소장 이하 9명, 본서에서 주(周) 경위보 이하 9명을 출동시켰다. 25일 오전 0시 50분 무렵, 주 경위보가 이끄는 기마대 9명은 전림자둔(前林子屯) 부근에서 그 비도들을 색출하여 교전을 하다가 20분 뒤 이들을 북쪽으로 격퇴시켰다.

(9) 9월 24일 오후 11시 15분 무렵, 신민현 대유둔(大柳屯) 경찰서 관내 신가전둔(辛家甸屯)에 장강호(長江好) 이하 9명의 비적단이 출현하여 이 지역 주민인 장봉유(張鳳有)의 집에 침입하여 협박을 한 뒤, 장 씨의 넓적다리 부분에 발포를 하여 부상을 입히고 동쪽으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급보를 접한 고과산(苦瓜山) 동쪽 부근에서 비도를 색출하던 중이던 대유둔 경찰서 오(吳) 경위보 이하 10명은 즉각 이들을 추적하였다. 25일 오전 0시 무렵, 신가전(辛家甸) 동쪽 약 1킬로미터에서 이 비도들을 발견하여 교전을 하다가 20분 뒤 동쪽으로 쫓아냈다.

(중략)

(21) 9월 27일 14시 무렵, 조주현(肇州縣) 탁고촌(托古村) 정가와보(鄭家窩堡)에 토비(土匪) 오성(五省), 대순자(大順字), 천하(天河), 팔하(八河), 교적관(交的寬), 천합(天合), □천(□天) 등이 합류한 비적단 70명이 출현하여, 각 토벌대가 협력하여 포위 공격함으로써, 비적단은 토벽(土壁) 내에서 완강히 저항하면서 6시간 전투를 하였으며, □천(□天), 대순자, 오성, 교적관 등의 비수(匪首) 외에 6명의 사체를 남긴 채, 비도들은 토벽에 구멍을 뚫어 사방으로 도주하였다.

소총 2정(挺), 탄약 다수를 압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전사자 2명, 부상자 4명, 경찰대 전사자 1명이 나왔다.

(22) 9월 29일 21시 30분 무렵, 광후기(郭後旗) 사흥서(四興署) 관내 영주둔(榮州屯)에 토비 장가인(莊稼人) 이하 4명이 출현하였다.

사흥서에서 30명의 토벌대를 출동시켰으나 토비들은 도주한 뒤여서 놓치고 말았다.

(23) 9월 30일 2시 무렵, 광후기 신민서(新民署) 관내 신발둔(新發屯)에 토비 약 20명이 출현하였다. 대관(大官) 분주소에서 토벌대를 출동시켰으나, 비도를 찾지는 못하였다.

간도성(間島省)

중단 없는 숙정·토벌의 진전과 아울러, 마을 방비 시설의 공화(鞏化)(특히 이번 제2, 제3선 부락의 공화), 조기 수확, 추수 이삭 엄호 태세의 전면적 확립·실시 등 비적단의 월동 준비 공작을 지지하는데 주력을 기울여 온 결과, 전기(前期)에 이어 비적단의 행동을 크게 제약할 수 있었다. 그들은 분산하여 월동을 준비하였으나, 그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한 발 한 발 그들을 섬멸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왕청현(汪淸縣) 지구에서 그 잔당을 유지하고 있던 박득범(朴得範)·최현(崔賢) 일파는 9월 3일 왕청현 백초구(百草溝) 부근 산 속에서 박득범 통제 하에 최현·안상길(安尙吉)·최충국(崔忠國) 등이 수뇌부 회의를 개최하여 병약한 자 및 사상이 약한 자를 입□(入□) 하여 도주자, 귀순자를 방지하였다. 그리고 강설기(降雪期) 전에 분산하여 식량과 말먹이를 구하는 공작을 전개하였고, 눈이 내린 다음에는 행동을 자제하거나 비적단 상호 간의 연락을 중단하고, 해빙된 뒤에 연락을 하거나 집결하도록 하여 오직 비적단을 향해 있는 충기를 피하는 것을 이후의 방침으로 결정하였다. □장(□長) 박성길(朴成吉)은 부하 20명을 이끌고 액목(額穆) 방면으로, 지도원 김강(金剛)은 부하 14명을 인솔하여 영안(寧安)·액목 방면으로, 황해봉(黃海峰) 이하 30명은 산동선(山東線) 방면으로, 단장 이하 30명은 영안현(寧安縣)으로, 한인화(韓仁和)는 부하 17명을 인솔하여 연길현(延吉縣) 삼도위(三道葦)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박득범은 부하 30명과 함께 영안현·연길현의 경계 지역에 잠복하면서 월동할 계획을 세웠으나, 9월 29일 오전 2시 30분, 왕청현 아미타령(阿彌陀嶺)에서 간도공작반(間島工作班) 16명의 무장 공작대원이 이들을 공격하여 박득범 이하 5명을 체포해, 이 지역에서 비적단의 세력이 급속하게 꺾멸되어 가는 상황에 있다.

또한 김일성(金日成) 비적단 역시 분산하여 행동을 하고 있다. 귀순자의 진술 및 제반 사정에 관한 보고를 종합해 보면, 김일성 비적단은 겨우 소년 6명, 여성 1명 및 반장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인원으로, 연길·화룡(和龍)·영안현 경계(오도양분(五道場盆) 북쪽, 남황황령(南黃荒嶺) 동북쪽 지역)에 잠복하면서 토벌대의 예리한 칼날을 피하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일부 소수의 비도를 보내 식량 공작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이다.

위극민(魏極民)은 이번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돈화현(敦化縣) 미혼진(迷魂陣) 지구에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중요사건 열거

(1) 9월 5일 오전 10시 15분, 영안현(寧安縣) 경계 1341 △ 부근에서 국군(國軍) 여□(呂 □) 부대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비적단 약 40명과 충돌하여 교전을 펼쳐, 적 1명을 죽이고 소총 1정, 소총 탄약 15발, 권총 탄약 4발을 포획하여 비도들을 귀주(潰走)시켰다.

(2) 9월 10일 오후 9시 30분 무렵, 왕청현(汪淸縣) 백초구(百草溝) 관내 ?촌(村)(원문-역자) 마을에 박(朴)·안(安)²⁾이 연합한 비적단으로 생각되는 약 40명의 비적단이 습격해 옴으로써, 이 지역 자위단은

은 힘을 다해 방어를 위해 싸웠으나, 결국 마을로 쳐들어온 비적단들에게 물자를 약탈당하였으며, 그 후 비적단들은 도주하였다.

〈그들과 우리의 피해〉

적 : 자세히 알 수 없다.

우리 : 마을 주민 사망 1명, 부상 1명.

〈약탈당한 물자〉

조(粟) 4두(斗) 5승(升)

소금 13근(斤)

시계 2개

현금 75엔(圓)

기타 약간

(3) 9월 3일 오후 8시 30분 무렵, 왕청현 광성장(廣盛長) 마을에 박(朴)·안(安)이 연합한 비적단으로 생각되는 약 30명의 비도들이 습격해 왔는데, 마침 이 지역 둔중(屯中)에 있던 ‘국군(國軍)³⁾ 선중대(宣中隊)는 이에 반격을 가해, 비도에게 부상자 2명이라는 피해를 주면서 퇴각시켰다.

(4) 9월 18일 오전 2시 무렵, 일본군 다카기(高木) 토벌대는 도가선(圖佳線) 녹도(鹿道) 동북쪽 6킬로미터 부근에서 최(崔)⁴⁾·안(安)이 연합한 비단(匪團)으로 생각되는 약 30명의 비적단을 발견하고 기습을 하여 비도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이들을 궤주시켰다.

〈그들과 우리의 피해〉

적 : 사망 7명.

우리 : 피해 없음.

〈포획물〉

소총 7정(挺)

기타 잡품 다수.

(5) 9월 25일, 간도공작반에서는 귀순해 온 비도를 길 안내자로 삼아, 연길현(延吉縣) 신선대(특설의 용자위단(特設義勇自衛團) 25명의 응접을 받아 둔화현(敦化縣) 미혼진(迷魂陣) 부근에서 비도가 은닉한 총기 소총 63정(挺), 도검(刀劍) 9진(振)을 압수하였다.

2) 박득범(朴得範)·안상길(安尙吉).

3) 만주국군.

4) 최현(崔賢).

(6) 9월 28일, 나가시마(長島)공작대는 귀순해 온 비도를 길 안내자로 삼아 안도현(安圖縣) 동남쪽 60킬로미터 대마록구(大馬鹿溝) 밀림 속에서 비도(匪徒)들이 은닉해 놓은 총기 소총 17정(挺)을 압수하였다.

(7) 9월 29일, 간도공작반은 미리 준비를 하던 중에 이 날 오전 2시 30분 무렵 박득범이 잠들어 있는 곳을 기습하여 박득범 외에 1명, 모두 5명을 체포하고 소총 1정, 권총 5정을 포획, 압수하였다.

(8) 9월 30일, 박득범의 공술에 따라, 경무청(警務廳) 김□정(金□正)은 간도공작반원 □ 경찰대 본부 경비 소대를 이끌고 왕청현(汪淸縣) 사방합산(四方合山) 정상 바위에서 은닉해 놓은 총기 경기(輕機) 3정, 척탄통, 그 탄약 12, 소총 1정, 모젤 권총 1정, 수류탄 1개를 압수하였다.

(9) 9월 29일, 왕청현 천교령(天橋嶺) 서북쪽 16킬로미터 밀림 속에서 황군 고바야시(小林) 부대 1개 소대 및 이 지역 경방대 6명, 간도공작반원 3명은 체포한 비도를 길 안내자로 삼아, 은닉해 놓은 총기 소총 1정, 모젤 권총 1정, 수류탄 1개, 그 밖의 약간을 압수하였다.

〈출전 : 治安部警務司警防科, 「一般概況 康德7年 9月分 治安概況月報(第9號)」, 『日本關東憲兵隊報告集(第二輯) 5』, 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년, 240~265쪽〉

(3) 관동군 제2독립수비대 사령관 노조에(野副)의 '대토벌'(1939~1941)

편자 주 :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관동군 제2독립수비대 사령관 노조에 쇼토쿠(野副昌德) 소장은 일위군경(日僞軍警)⁵⁾으로 구성된 노조에토벌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하여 동남부지역 즉, 통화(通化)·길림(吉林)·간도성(間島省) 경내에서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한차례의 대규모 피비린 포위토벌을 진행하였다. 이번 진압행동은 그 괴수의 이름을 따 보통 '노조에 대토벌'이라고 부른다. 또한 '동남부치안숙정'과 '3성연합대토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40년 2월, 항일연군 수령 양정우(楊靖宇)가 적의 '토벌'중 피살되었다. 이때로부터 노조에토벌대는 위증민(魏拯民)·진한장(陳翰章) 항일연군에 대한 포위토벌에 진입하였다. 일본과 위만주국(日僞)의 이번 행동은 주요하게 항일연군 제1, 제2로군으로 하여금 아주 큰 손실을 입게 하였다.

5) 일본과 위만주국 군대와 경찰.

1. 개황

나가시마 다마지로우(長島玉次郎) 검거서(1954년 11월 24일)

위⁶⁾ 길림·통화·간도성 일만(日滿)군경 연합작전 죄행 검거서

검거자와의 관계 : 이 기간 나는 일·만군경작전사령부 제1공작대 공작반장·조장을 맡았다. 내가 직접 행한 범죄행위, 혹은 보고 들은 사실에 의한 검거토벌중의 죄행이다.

시간 : 1939년~1941년 3월

지점 : 요녕성(遼寧省) 동부 및 길림성 남부, 즉 동변도지역.

명칭 : 길림·통화·간도 3성 일만군경연합작전 혹은 동남부치안숙정

1. 조직체계 :

총사령관 : 동남방위사령관(제2독립수비대 사령관)·육군소장 노조에 쇼토쿠

사령부조직 :

- 1) 참모부 : 부장-작전참모 육군 중좌 北部邦雄, 후방참모 야마모토(山本) 중좌.
- 2) 헌병부 : 부장-헌병소좌 다마오카 이와오(玉岡巖)(위 신경(新京)헌병대 특고과장), 1940년 8월까지; 부장-헌병소좌 마츠모토 미즈사다(松本滿貞)(후임 위 신경헌병대 특고과장), 1941년 1월까지; 부장-헌병대위 야구우 카오루(柳生馨)(길림헌병분대장), 1941년 3월까지.
부(附). 헌병소교 카와노(河野) 모(某)(위 길림헌병단),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 3) 경찰부 : 부장-위 치안부 경무사장(警務司長) 우에다 고우타로우(植田貢太郎) 및 그 후임 타니구치 유이조우(谷口明三). 부부(部附)-위 치안부 경무사 경비과장 다나카 요우지(田中要次). 부부(部附)-위 치안부 경무사 특무과장 츠루 이에지(鶴榮次).
- 4) 위 만군연락부 : 부장-위 길림제2군관할구 고문 이시쿠로(石黒) 중좌 및 일본군관 수십 명.
- 5) 철도경호대연락부 : 부장 카와쿠라 스스무(川村進)(위 길림경호본대대장)
- 6) 위 법원연락부 : 부장 위 길림검찰청 일본인 검찰차장.
- 7) 위 행정연락부 : 부장, 위 국무원 참사관 송민웅(宋敏雄) 및 홍보처 등 인원 수명.
- 8) 이상 각 부장이 작전계획에 참가하여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원래의 각 기관 수장의 명의로 그 소속기관에 명령하여 실행하게 하였다. 위 3성은 위군·경찰·행정·협화회·법원 등 모든 기관, 상술한 기구를 통하여 노조에 소장의 통제와 지휘 하에 중국인민을 탄압하였다.

2. 참모부의 지휘 하에 일본침략군은 독립수비보병 제5대대장 후로미(古見) 중좌 이하 약 1천 명을 통화성 눈강(嫩江)지역에 배치하고, 독립수비보병 제21대대장 메노카미(布上) 중좌 이하 약 1천 명을 화전(樺甸)·영안(寧安)·화룡(和龍) 지역에 배치하고, 독립수비보병 제8대대장 도쿠히로(徳弘) 중좌(전임 스게가와(助川) 중좌, 전사) 이하 약 6백 명을 돈화(敦化) 지역에 배치하였으며, 독립수비보병

6) 이 자료에서 위(偽)는 위만주국, 괴뢰만주국을 뜻한다. 지역, 행정조직 등을 지칭할 때 한자 병기 없이 '위'로 쓰여 있는 경우도 모두 이에 해당한다.

제7대대장 사사키(木崎) 중좌 이하 약 8백 명을 길림 및 위 신경에 배치하였다. 아울러 헌병부가 상술한 부대에 헌병 하사관 수명을 배치하여 무장탄압을 실행하였다.

상술한 이외에도 토벌에 배합하여 유인하여 투항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공작대를 편성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참모부 : 부장, 작전 참모 육군 중좌 北部邦雄	제1공작대 대장: 北部邦雄(兼)	유격대 대장: 가타노(片野) 중위 (1939년 10월~1940년 7월)		
		특설대 대장	위덕성(魏德成): 부하 약 120명 (1939년 10월~1944년 3월)	
			임우성(林宇城): 부하 약 80명 (1940년 8월~1944년 3월)	
		공작반 반장: 헌병 소장 나가시마 다마지로우	일본헌병 10명(헌병보, 헌보 포함)	위경찰관 4명
	위군헌병 2명			
		공작반 활동지역 : 임강(臨江), 무송(撫松), 안도(安圖), 연길(延吉), 화룡(和龍) 등 현		
	제2공작대 대장: 위치안부 경무사 경비과장 다나카 요 우지		몽강반(濛江班)	화전반(樺甸班)
	제3공작대 대장: 위치안부 경비사 경비과 참사관 금광 용정(金光庸正)		후남반(輝南班)	안도반(安圖班): 청전(廳田)
			공작반장	왕청반(汪淸班)
			왕청반(汪淸班)	연길반(延吉班)
		돈화반(敦化班)		
경비과장: 다나카 요우지 특무과장: 츠루 이에지 경찰부: 부장은 치안부 경무 사장 우에다 고우타로우 ; 후 임 타니구치 유이조우 ; 경찰 부부(警察部附) 大美賀好一(지 문감별 담당)	위통화: 경찰본대 대장 위통화성경무청장 키시타니 류이치로(岸谷 隆一郎)	통화, 임강, 집안(輯安), 장백 (長白), 몽강, 휘남, 금천(金川), 유하(柳河) 경찰대장 및 현 위 경무과장	위성경찰대대 약 8개 대대	
		위성특별수사반장(특무과장) 각 현 특별수사반장(각 현 특무고장)	각 현 경찰대대장, 각 현 위 경 무과장	
	위길림 경찰본대대장: 위 길림경무청장 무라이 야노스케(村井矢之助)	위성경찰대대(위 봉천 1개 경 찰대대를 포함)	위성특별수사반장(특무과장) 각 현 특별수사반장(각 현 특무고장)	
		위현경찰대대장(각 현 특무과 장) 우나미 히토지로우(宇波彦 次郎)가 화룡현 경무과장을 담 당, 화룡현 위경찰대장 경정이 5백 명의 위성경찰대대를 지휘		

		비과장을 담당	위성특별수사반장(특무과장) - 각 현 특별수사반장(특무고장)
		위영구(營口)해변경찰대 비행기 3대	

3. 위3성 일만군경 연합작전 목적

- 1) 동북항일연군 제1군 군장 양정우 장군이 지휘하는 약 1,500명
- 2) 동북항일연군 제2군 ××장군이 지휘하는 약 800명
- 3) 동북항일연군 제1군 조범아(曹亞範) 장군이 지휘하는 약 300명
- 4) 동북항일연군 제3(2)군장 겸 남만성위 서기 위증민 장군 이하 100명
- 5) 동북항일연군 제3(2)군 군장(사장) 진한장 장군, 참모장 박덕범(朴德範), 최현(崔賢) 부대 약 500명
- 6) 동북항일연군 악단장(岳團長)·압오영(壓五營)·영장(營長) 위덕성 부대 약 300명

4. 독립수비보병 제5대대, 제9대대의 주력, 위만 통화·길림 두 경찰본대의 주력 및 제1공작대, 위 길림·통화특별수사반의 주력으로 동북항일연군 제1군장 양정우 장군 및 부군장 위증민 장군 부대를 공격하여 토벌하고 유인하여 체포함과 동시에 중국의 평화적인 농민을 탄압하였다.

5. 독립수비보병 제21대대주력, 위간도성경찰본대 주력, 위제2군 관할구역 간도특설대 주력, 제1, 제3공작대 및 위간도특별수사반 주력은 동북항일연군 제1(2)군 ××장군부대를 공격하였다. 양정우가 전사한 후, 독립수비보병 제9대대의 일부 역시 참가하였다.

6. 독립수비보병 제8대대 주력, 위간도·길림경찰대, 통화경찰대 및 목단강 야마자키(山崎) 부대 약 2천 명 및 독립수비 제9대대의 일부는 동북항일연군 제3(2)군 군장(사장) 진한장 장군 부대를 공격하였다.

7. 위군 제8군 관할구역 주력, 일본군 가타노 유격대 및 나가시마공작반은 동북항일연군 영장(營長) 위덕성·악단장·압오영 등 부대를 공격하였다.

8. 방법과 수단에서, 위만행정기구로 하여금 동북항일연군활동구역에서 무역과 물자유입을 금지시키고, 도로를 수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선전을 진행하고, 특히 위협화회를 동원하여 반공선전을 진행하고 토벌대를 협조하였다. 위 철도경호대로 하여금 교통을 단절시키고, 철도연선지역에 위 애로촌(愛路村)을 설립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매일 비행기를 파견하여 정찰을 진행하고, 토벌대를 인도하여 토벌을 강화하게 하였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특별수사반, 헌병대로 항일연군을 지원하는 중국의 평화적인 농민을 탄압하였다. 공작대는 동북항일연군이 큰 손실을 입고 무기와 탄약이 결핍하고, 식량과 의복 공급이 단절된 기회를 타서 적극 투항을 권고하고 유인하여 체포하였다.

9. 결과 :

- 1) 위통화경찰본대 특별수사반장 니시타니(西谷) 경좌 등 약 50명은 1940년 2월, 몽강 지역에서 대오

7) 수풍정태(袖風靜太)의 오기로 보임.

를 잃고 홀로된 동북항일연군 제1군 군장 양정우 장군을 공격하여 그로 하여금 자살하게 하였다. (자살이 아니라 전사임) 1940년 12월, 통화 위 경찰대대는 화전·무송현 경내에서 동북항일연군 제1군 정치처장 전광(金光)⁸⁾ 등 수십 명을 체포하였다. 1940년 11월, 통화위경찰대대는 영안 지역에서 진한장 장군과 최현 등을 사살하고 동시에 참모장 박덕범 등 수명을 체포하였다.

2) 상술한 이외에도, 각 토벌대는 모두 동북항일연군 간부 이하 약 2천 명을 사살하고, 공작대는 약 1,500명을 유인하여 체포하였다.

3) 나가시마공작반 및 특설대가 이번 기간에 행한 범죄행위 : 1939년 9월, 임강현 홍토애(紅土崖) 지역에서 동북항일연군 영장 위덕성(적의 유인으로 체포된 후 변절하여 적의 특설대대장을 맡음) 등 약 120명, 1939년 11월, 12월 무송현 북강(北崗)에서 항일연군 악단장 이하 약 60명, 무송현 남강(南崗)에서 동북항일연군 수령 압오영 이하 약 70명을 각각 유인하여 체포하였다. 또 1940년 2월부터 4월까지, 무송 지역에서 동북항일연군 ×××장군 부대 참모장 임우성(적의 유인으로 체포된 후 변절), 김부관 등 약 40명, 1940년 8월, 화룡현 대마록구(大馬鹿溝)에서 동북항일연군 정치부 주임 여백기(呂伯岐) 등 4명을 체포하였다. 1941년 2월, 위(魏)특설대로 하여금 화전현 협피구(夾皮溝) 지역에서 동북항일연군 제1군 부군장 겸 남만성위 서기 위증민(1941년 3월 8일 화전 협피구에서 병으로 사망) 등 6명을 사살하게 하였다. 동년 2월, 무송 지역에서 동북항일연군 전사 약 6명을 유인하여 체포하였으며, 또 하야시(林) 특설대를 이용하여 1941년 2월, 안도현 십기가(十騎街)에서 동북항일연군 ×××부대 이단장(李團長) 등 약 10명을 유인하여 체포하였으며, 1941년 3월, 연길현 용정(龍井) 지역에서 이 부대 정치지도원 주재월(朱在月) 등 5명을 유인하여 체포하였다. 이상 유인하여 감금하거나 체포된 자들을 1941년 4월 연길현 명월구(明月溝)에서 위 간도성에 넘겼다.

10. 1940년 6, 7월, 관동군 제4과 참모 3품 중좌 노조에 토벌사령부 작전참모 겸 제1공작대 대장 중좌 北部邦雄, 및 위 치안부 경무사 경무과장(성명을 잊음) (미야케 히데야(三宅秀也)) 등 수명 간부는 안도현 성내에 도착하여 토벌을 지도하였다. 당시 나는 안도에 있었는데 문밖에 나가 그들을 영접한 적이 있다. 그들은 위 안도현 공서에서 회의를 하였다. 나는 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그 내용을 모른다.

11. 나는 위 경찰특수반이 중국의 평화적인 농민을 탄압한 구체적인 사실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유인하여 체포한 동북항일연군과 관련이 있는 중국농민, 어떤 자는 그에 의해 체포되었다. 유인되어 체포된 자의 요구로 나는 선후로 수십 차례 교섭한 적이 있는데 모두 45명을 석방하였다. 이 밖에 1939년 어느 달, 길림에서 동북항일연군 제1군 후방 참모 방진성(方振聲)을 체포하여 심문한 후, 길림현병과 위 경무청특별수사반은 함께 길림과 화전 사이의 송화강 유역(현재 풍만수력발전소)에서 방참모를 지원한 중국농민 약 2백 명을 체포하여 위 길림고등법원에서 심판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연월일이 차이가 날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틀림이 없다.

(1) 119-2, 22, 2, 제14호

8) 오성륜(吳成崙)의 다른 이름.

편자 주 : 나가시마 다마지로우, 1936년 4월 군대를 따라 중국에 침입하여 선후로 본계호(本溪湖) 현 병분견대 군조(軍曹), 산성진(山城鎭)·통화현병대 공작반장과 조장(曹長)을 맡았다. 1939년 4월부터 1941년 7월까지 관동군 직속 노조에 토벌사령부 공작반장을 맡았다. 이 기간 북평(北平)·석가장(石家庄)·제남(濟南) 등 지역에서 나가시마공작반의 경험을 소개함과 아울러 구체적으로 지도하였다. 1942년 이후, 승덕(承德) 현병대 고북구(古北口) 분대장, 서남(西南) 방위군 제1유격대장, 열하(熱河) 특별경비대 제2소대장, 안동(安東) 현병대 전무(戰務) 과장 겸 제5군 사령부 군기방위계원(軍機防衛系員), 간도현병대 제1방면군 군기방위계원 등을 역임하였다.

미야케 히데야(三宅秀也)의 공술(1954년 12월 22일)

문 : 동변도 '토벌'의 경과와 결과를 말하라.

답 : 동변도 토벌은 1938년 말 준비에 착수하여 1939년 9월(10월)에 개시하였으며 1941년 3월에 끝났다. 토벌지역은 위만주국 통화성의 무송·몽강·장백·통화·금천·임강, 간도성의 안도·연길·왕청과 길림성의 화전·반석·돈화 등 현에 분포되었다. 관동군은 토벌사령부를 길림시에 설치하고 노조에 쇼토쿠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고 北部邦雄 중좌 등을 참모로 하고 위의 3개성의 일위(日僞)군경을 통일 지휘하였다. 위 경무사도 전력을 다해 협조하였으며 아울러 경비과장 다나가 요우지 및 특무과장 츠루 에이지(鶴永次)⁹⁾가 거느리는 경무사 인원으로 경찰부를 구성하여 노조에 토벌사령부에 귀속시키고 토벌에 참가하는 경찰대를 구체적으로 지도하였다. 이번 토벌 중 항일연군 제1로군 사령 양정우, 제1로군 제3방면군 군장 진한장 및 중공만주성위서기 위증민 등 2,000여 명을 사살하였으며, 1,500여 명을 체포하거나 유인하여 구금하였다.

문 : 이번 중국인민항일투쟁에 참혹한 피해를 끼친 사건 중 네가 범한 죄행을 사실대로 공술하라.

답 : 토벌기간 나는 선후로 교양감찰과장과 특무과장의 신분으로 특무사장(特務司長) 우에다 고우타로 우·타니구치 유이조우를 도와 동변도 토벌계획 제정에 참여하고 관련 각 성 경무부문의 집행을 지도하였다. 1939년 나는 통화·간도·길림 3성의 지방경찰학교의 인원확대계획 및 지도에 참여하고, 경찰훈련을 강화하여 토벌 중 발생한 부상과 사망 손실을 보충하였다. 동년 10월, 나와 경무과장 이와사와 히로시(岩澤博), 경비과장 다나가 요우지 및 특무과장 츠루 에이지는 함께 위만주국 각 성에서 일본경찰 150명을 선발하여 훈련시킨 다음 토벌에 투입하도록 계획하였다. 1940년 1월 이후 나는 경무사 과장을 맡고 경비과장 다나가 요우지 및 특무과장 츠루 에이지를 협조하여 경찰의 토벌활동을 지도하였으며, 명을 받고 위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주계처와 동변도 토벌경비를 교섭하였다. 4월 나는 또 다나가 요우지와 봉천성에서 경찰 200명을 전근시키도록 협의하여 토벌대를 편성하고 간도성에 파견하였다. 5월에 소집한 위 경무청장 회의에서 나는 또 각 성 경무청장에게 필요할 때 최우수 경찰을 선발하여 토벌을 지원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어서 토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와 토벌사령부 北部 중좌는 함께 간도성 안도현에 가서 토벌과 방위시설상황을 시찰하였다. 6월에 나는 경찰최고상

9) 츠루 이에지(鶴榮次)와 동일인물로 보임.

심사위원(主査)신분으로 위 경무사장 우에다 고우타로우와 함께 통화성에 가서 인민을 살해하는데 “공로”가 있는 십여 명의 경찰에게 경찰최고상을 수여하였다. 동년 가을, 간도성 마에다(前田) 경찰토벌대 50여 명은 ×××부대에 포위되어 섬멸되었는데 생존하여 돌아온 자는 겨우 9명뿐이었다. 나는 경찰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두려워 사실당한 전체 경찰에게 경찰최고상을 수여함과 아울러 순직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경찰이 적을 두려워하는 정서를 없앴다. 동년 9월 초순, 노조에 소장은 길림에서 임시동남지구치안연락위원회를 소집하고 토벌결과를 총결하고 이후의 방침과 대책을 연구하였는데 나도 회의에 출석하였다. 1940년 6백 명의 경찰을 배치할 때 나는 위의 3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 토벌기간, 나는 4차례 직접 길림토벌사령부에 가서 토벌사령부와 경무사와의 배합 및 토벌대의 증강문제를 해결하였다.

(1) 191-2, 22, 1, 제4호

편자 주 : 미야케 히데야는 1932년 위길림성 영길현(永吉縣) 참사관을 맡았으며,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선후로 위열하성(偽熱河省) 공서(公署) 총무청 총무과장, 경무청 경무과장을 담당하였으며, 1937년 7월부터 위치안부 경무사에서 선후로 교양독찰(敎養督察)과장·경무과장을 맡았으며, 1943년 위북안성(僞北安省) 경무청장을 담당하였으며, 1944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위봉천성 경무청장을 담당하였다.

미야케 히데야의 자필공술

동변도 토벌에 관하여.

1. 동변도토벌은 관동군이 7·7사변이후, 일본제국주의침화전쟁의 확대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침략기지인 위만주국의 치안불량지역을 신속하게 숙청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관동군의 의도는 가능하면 빨리 군대가 유격대(항일연군)에 대한 토벌을 끝내고 동변도에 대한 토벌을 마지막 군사토벌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토벌의 목적은 위만주국에서 치안의 마지막 암적 존재, 즉 통화성·길림성·간도성의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하여 계속 완강하게 저항하는 항일연군 양정우부대(390명) 및 ×××부대(약 100명)를 소멸하는 것이었다. 토벌의 주요지역은 위통화성의 무송·몽강·장백·통화 각 현, 위길림성의 화전·반석·돈화 각 현, 위간도성의 안도·연길·왕청 각 현이었다.

이번 토벌은 1938년 말 준비에 착수하여 1939년 초에 개시하였으며 1940년 말에 결속되었다.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관동군은 동변도에 대한 토벌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길림시에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육군소장 노조에 쇼토쿠를 사령관으로 하고, 육군소좌 北部邦雄을 참모로 하여 길림·통화·간도 3성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및 위만국군, 3성의 위경찰을 통일 지휘하여 토벌을 진행하였다. 그 병력은 이미 기억하지 못하나 일본병 약 2,000명(위길림·돈화·연길·통화의 각 독립수비대), 위만주국군 약 1,300명(위길림·돈화·연길·통화에 주둔하는 부대), 위경찰경비대 1,600명(위통화성 500명, 길림성 500명, 간도성 250명, 경찰지원대 250명, 일본헌병 나가시마 준위(准尉)가 지휘하는 나가시마공작대 약 100명), 총 약 5천 명이었다. 나가시마공작대(투항한 유격대원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함)가 통화성내에서 주로 정보

수집, 체포 및 투항권유공작을 하였다.

이밖에도 동변도지역내에서 직접 토벌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위경찰관 및 위자위단 역시 항일연군에 관한 정보수집에 협력하고, 경비경계를 맡고, 분산된 항일연군전사와 항일부대의 연락원, 지지자 및 기타 반만항일애국인민 등을 체포함으로써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번 토벌에 참가하였다.

동변도 토벌에 참가한 위치안부 경무사장 및 관련 위성 경무청장은 아래와 같다.

위치안부 경무사장 : 우에다 고우타로우·타니구치 유이조우. 1940년 7월 교체.

위통화성 경무청장 : 키시타니 류이치로

위길림성 경무청장 : 모리 유타카(森豊)·무라이 야노스케. 1940년 8월 교체.

위간도성 경무청장 : 수풍정태(袖風靜太).

위경무사 경비과에서 속관 1명을 파견하고, 위길림·통화·간도의 각 성 경무청에서 경찰관 1-2명을 파견하여 토벌사령부에서 일상 연락을 담당하게 하였다.

3. 위치안부 경무사는 동변도 토벌기간, 경정(警政) 운영의 중점을 이번 토벌에 집중시키고 위경무사 각 과의 업무를 동변도지역내 각 위 성의 치안숙정에 집중시켰다. 위 경무과는 토벌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위경무사 각 과 및 토벌지역 내 각 성(즉 길림·통화·간도성)경무청에 분배하거나 혹은 기타 성의 경찰 정원을 감소시키고, 토벌지역 내 각 성의 경찰정원을 늘였다. 동시에 기타 성에서 인원을 전근시켜 토벌지역 내 각 성의 경찰역량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기타 위성에서 위경찰대를 파견하여 토벌지역을 지원하여 중국의 애국인민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위경비과는 토벌사령부를 협조하여 위경찰의 모든 토벌행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였다. 동시에 토벌지역내 위성의 통신경비시설을 강화하여 각 위성 경찰경비대의 무기를 38식 보충으로 통일하고 탄약을 보급하는데 편리하게 하여 위경찰대의 인민에 대한 살상력을 강화하였다.

위특무과는 토벌지역내에서 반만항일사상을 가진 인민, 항일연군을 지원하는 중국의 애국자(식량 및 자금을 공급하는 자, 일만군경의 행동을 보고하는 자 및 연락원 등)와 잠복한 유격대원을 수사 체포함으로써 항일부대의 기초를 파괴하였다.

위교양감찰과는 토벌지역내의 각 성 지방경찰학교 신입 위경찰관의 훈련인원을 증가함과 동시에 전투 훈련을 강화하고, 이러한 경찰관들이 졸업 후에 인민을 살상하는 전투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경무사는 위 전국 각 성 경찰청장에게 동변도 토벌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각 성에서 이번 토벌에 호응하여 본 성내의 항일부대를 철저히 토벌하고, 반만항일사상을 가지고 활동하는 중국의 애국자를 탄압하고 체포하게 함으로써 이 기간에 성내의 치안을 완전히 숙청하도록 하였다. 특히 길림·통화·간도 3성의 인근 각 성과 성 경계부근의 경비·경계를 강화하고 동변도 토벌대를 협조하도록 하였다.

위치안부경무사는 동변도 토벌기간 위경무사 경비과장 다나카 요우지에게 토벌사령부와 항상 밀접한 연락을 가지도록 명하였으며, 또 위경무과장 및 위특무과장에게 제때에 토벌사령부와 연락을 가지도록 명하여 토벌사령부의 의도와 방침을 알게 하였으며, 토벌지역 내 각 성 경찰의 지도감독을 담당하였다.

4. 동변도 토벌은 ‘빈대’전술(즉 일단 항일부대와 접촉하면 ‘빈대’처럼 물고 놓지 않으며 섬멸할 때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추격하는 것)을 채용하여 철저히 항일부대를 추격 토벌하였다. 당시 위통화성 경무청장 키사키니 류이치로는 나에게 말하기를, 양(楊) 사령의 부대가 눈 속에서 걸으면서 남겨놓는 발자국은 마치 한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경찰 역시 아주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유격대의 변을 보면 언제 배설하였는지조차 식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위국군은 수수밭을 먹기 때문에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아무리해도 유격대를 추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변도 토벌기간, 이 전술로 항일연군에 타격을 주었는데 제일 가혹한 시기는 1939년 11월부터 1940년 3월까지의 동계토벌전쟁이었다.

5. 동변도 토벌기간, 전쟁 중 항일연군 및 기타 유격대에 끼친 피해.

이번 토벌에 배합하여 실시한, 잠복한 항일대원 및 그를 지원한 인민(식량과 자금을 공급한 자, 일만군경의 행동을 보고한 자와 연락원 등), 기타 반만항일사상을 가지고 활동한 인민을 체포하는 공작 중 얼마나 많은 애국인민을 체포하였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 그러나 1936년, 위열하성 및 위금주성(偽錦州省)에서 체포한 자는 모두 7,066명(그중 150명을 처형)에 달한다. 이 점과 당시 3성의 치안상황보고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바, 길림·통화·간도 3성에서 2년에 걸친 토벌 중 항일연군 및 기타 유격대와의 직접적인 전투에서 반만항일사상을 가지고 활동한 인민을 체포하고, 게다가 5천여 명의 토벌부대의 주둔과 활동이 인민의 생명재산에 끼친 손실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6. 1940년 초, 양정우 사령이 전사하자 그 부대 역시 소멸되었다. ×××부대 역시 양정우 부대가 소멸된 후 활동을 중지하였다. 기타 항일부대 역시 소멸되었다. 이리하여 동변도 토벌은 1940년 말 결속되었다.

통화성경무청장 키사키니 류이치로의 말에 의하면 양정우 사령의 최후는 다음과 같다.

1940년 초 어느 날, 양정우 사령과 4명의 동지가 산을 내려와 한 농가에 들어가 현금으로 식량을 구매하려고 하였다. 한 촌민이 이를 목격하고 부근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위경찰대에 밀고하였다. 위경찰대는 급히 현장에 달려가 양정우 사령을 체포하려 하였다. 양정우 사령은 위경찰이 습격하자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면서 산속으로 달렸다. 양손에 각각 1호 모젤권총을 들고 추격해오는 위경찰과 응전하였는데 끝내 위경찰대의 총탄에 맞아 희생되었다.

위통화성 경무청장 키사키니 류이치로는 양정우 사령의 수급을 토벌사령부와 치안부 경무사의 일부 간부들에게 보였다. 나도 당시 양정우 사령의 수급을 본 경무사 간부 중 한사람이다.

동변도 토벌은 기타 성, 더욱이는 인근 각 성의 치안공작을 자극하여 각 성내 유격대에 대한 토벌과 중국의 애국인민에 대한 탄압과 체포를 강화하였다. 동변도지역에서 항일연군을 체포한 후, 이러한 추세를 더욱 부추긴 결과 1941년 봄까지 위3성 지역에서 조상지(趙尙志)의 부대를 소멸하고 위빈강성(목단강)지역에서 진한장 부대를 소멸하였다.

(1) 119-2, 22, 1, 제13호

大美賀好一の 검거자료(1954년 11월 22일)

내가 위만신경 지문관리국 속관으로 있을 때, 1939년 11월 말부터 1940년 2월 초순까지 사이에 지문 반장의 신분으로 위길림성·통화성·간도성 및 목단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른바 동남부지역숙정공작에 참가하였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기간의 토벌상황 및 이와 관련된 당시 경무사 경무과장 미야케 미야케 히데야의 죄행은 다음과 같다.

1. 동남부지역 숙정공작개황

- 1) 토벌기간 : 1939년 6월~1940년 6월. (1939년 3월~1941년 3월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2) 토벌지역 : 위길림성·통화성·간도성의 전부 및 목단강성(牡丹江省)의 일부.
- 3) 토벌목적 : 동북항일연군 양정우·진한장·박덕범·xxx·최현 등의 부대 및 애국단체.
- 4) 토벌부대 및 그 지휘자 : 일본 노조에 여단, 위만국군, 위경찰대(위길림·통화·간도·봉천·빈강 각 성 경찰대 및 해상경찰대), 일본헌병대.
- 5) 토벌전의 준비공작 : 1939년 6월부터 위신경지문관리 기술직원 약 50명, 위길림·통화·간도 및 목단강성 경무청 지문관리실 직원 약 30명을 협조하여 모든 토벌지역주민에게 지문이 새겨져 있는 주민증을 발급하고 토벌이 치열할 때 주민 가운데 잠입하여 피난하는 애국자를 수색·체포하는데 대비하였다. 이번 공작은 약 1개월간에 걸쳐되었다.
- 6) 위만경찰임무 : 경험에 의하여, 무력으로 거둔 효과는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이번 토벌에서 특별히 경찰의 활동을 중시하였다. 길림 노조에 토벌대 본부에 경찰부를 설치하고 경무사 경비과장 다나카 요우지가 지휘하게 하였다. 그 조직성원은 아래와 같다.

노조에 토벌대 경찰부		
책임자 : 다나카 요우지; 보좌관 : 주월(舟越) 사무관		
서무반	반장	속관 요코타 타모츠(横田保)
	반원	중국인 4명
특무수사반	반장	속관 다무라(田村興志文)
	반원	속관 다나카(田中副藏), 다마치 큐우지로우(田井久二郎) 등 일본인 3명
형사반	반장	속관 세리가와(芹川)
	반원	속관 키마타(木全) 등 일본인 3명
경비반	반장	사무관 주월(舟越)
	반원	일본인 3명
지문반	반장	속관 大美賀好一
	반원	일본인 15명, 중국인 35명
무전반	반장	기사 타로이 유우조우(樽井勇藏)
	반원	일본인 8명

이런 반원은 토벌대장의 명령에 따라 토벌대에 각종 지시를 하고, 정보수집과 애국자를 유인하거나 체포하는 등 일본군대가 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어떤 경우는 현지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어떤 경우는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7) 토벌상황 및 결과 : 일본군·위만군·위만경찰대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는 항일연군 무장역량의 몇 배나 되었는데 항일연군의 근거지내에 주둔함과 동시에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토벌을 개시하였다. 초기에 항일연군의 용감한 항전으로 토벌대는 길림성 돈화현의 대석두(大石頭)·대포시하(大蒲柴河)·한총령(寒蔥嶺)·액목색(額穆素), 교하현의 신참(新站) 등 지역에서 참패를 당하였다. 그러나 1940년 3월 25일(2월 23일이 맞음) 양정우 장군이 길림성 몽강현성 부근에서 통화성 경찰대와의 교전중 전사하고, 1940년 4월(12월 8일) 진한장 장군이 목단강성 경박호(鏡泊湖)부근에서 통화성 경찰대와 교전중 전사하고, 박덕범·×××·최형 부대의 근거지도 연달아 소멸되었다. 드높던 애국운동은 토벌로 인해 좌절되었다. 나는 당시 지문반장이었으므로 항일연군에 끼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토벌기간에 지문반이 주민증을 검사하는 가운데서 80여 명의 애국자를 각종 혐의 분자로 체포하여 현지 특무수사반에 넘겼다.

(1) 119-2, 22, 2, 제13호

왕지우(王之佑)의 자필공술(1954년 8월 8일)

나는 1939년 5월 1일, 제8군관할구 사령관으로 특파되어 통화로 가서 취임하였다.

이 군관할구는 새로 개설된 것으로서 제1군관할구로부터 갈라져 나와 안동·통화 2성과 혼성 제1려, 혼성 제2려, 혼성 제3려 및 혼성 제5, 6려의 일부(즉 제8교도대의 전신)로 편성되었다. 제1헌병대의 일부(약 200명)로 제8헌병대를 편성하였다. 사령부는 통화에 설치하였다.

내가 5월 상순 취임하였을 때 사령부는 이미 주임고문 타치바나(立花) 대좌와 참모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고문부 : 타치바나 주임고문, 야스나카(安永) 고문, 이시쿠로 고문, 츠나다(綱田) 주계고문; 사령부 : 참모장 혁모협(赫慕俠), 참모처장 진명산(陳明山), 부관처장 소옥침(蕭玉琛), 군기처장 장모모(張某某), 군수처장 풍소공(馮緒功), 군의처장 가수병(賈樹屏), 군법처장 도원진(陶遠進), 상교 부선선(富璿善), 송도창(宋道倉)), 또 제8교도대를 편성하는 중이었다. 나는 취임 후, 즉시 각 업무의 진행을 독촉하여 추계토벌준비를 하였다. 5월 하순부터 선후로 심양에 가서 봉천지역 일본수비대사령부에 신고하고(이때 위제1, 8군관할구는 모두 다른 구역 처의 관할을 받았음) 계속하여 몽강·무송·장백·임강·집안·유하 및 통화 각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소속부대에 대한 시찰을 하였다. 7월 초, 일본길림장춘지역 수비대사령관 노조에 쇼토쿠의 명령을 받았는데 7월 1일부터 위8군 관할구 사령관이 다른 지역처를 맡는다고 하였다. 이때는 바로 1939년 통화·길림지역 연합토벌 직전이었다. 내가 위8군 사령관 임직기간에 저지른 주요한 죄행은 후에 있었다.

1939년 8월부터 1940년 8월까지 통화·길림지역 연합토벌. 이 토벌은 내가 사령관을 맡고 직접 위만군을 지휘하여 양정우·×××장군 등이 인솔하는 항일연군과 맞서는 죄행의 시작이었다. 또 내가 참모장을 맡고 1936년부터 동변도 지역에 대해 감행한 대토벌죄행의 결속이었다. 이번 죄행의 구체적 사실

은 아래와 같다.

1. 당시 항일군의 상황. 이 지역에서 항일군은 양정우·xxx·위증민·박덕범이 인솔하는 2,700명 병력이 있었다.

2. 일·위군의 예정행동. 7월 중순 길림·장춘지역수비대 사령부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해에 통화·길림지역에 대한 토벌을 결정하고 수비대사령관 노조에 쇼토쿠가 통일 지휘하도록 하였다. 개시 시기는 예전보다 빨랐는데 제8군 관할부대는 조기에 집결하여 준비를 끝낼 것을 요구하였다.

나의 조치 : 7월 하순(약 25일) 각 부대장에게 명령하여 8월 상순에 아래의 위치에 집결하여 보충을 받도록 하였다.

제1여 여장 이유평(李裕平), 여를 인솔하여 무송현성에 집결.

제2여 여장 고명(高明), 보병 제7단을 인솔하여 임강현성에 집결하고 기병 제4단에 임자두(林子頭)에 집결할 것을 명령하였다.

제3여 여장 왕사수(王士琇), 보병 제7단을 인솔하여 금천현성에 집결하고, 기병 제8단은 집안현성에 집결하도록 명령하였다.

제8교도대장 조진방(趙振邦)은 부대를 인솔하여 통화에 집결.

3. 토벌명령 하달. 8월 초, 길림·장춘지역 수비대사령부는 또 회의(토벌회의)를 소집하였는데 타치바나 고문, 야스나가 고문, 참모장 혁모협이 참석하였다. 하달된 토벌지시는 아래와 같다.

토벌개시 : 8월 중순부터 집안·통화·유하·금천·휘남남부에서 시작하여 남부에서 북으로 진군.

위제8군 관할구역 병력 : 소속부대 전부, 증원한 보병 제5단, 자동차부대 1련.

사용수단 : (1) 농민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수하게 하고, 식량을 외지로 운송하는 것을 엄금함.

(2) 무인지역을 수색하고, 산채를 훼손시킴.

(3) 헌병경찰로 지하공작원을 숙청.

명령을 하달 : 8월 중순(대략 11일) 노조에 쇼토쿠의 명령요지에 따라 나는 각 부대장에게 아래와 같이 명령하였다.

혼성제3려 기병제8단은 단장 위전용(魏傳鏞)의 인솔하에 즉시 통화수비대로 돌아가 수비대 대대장 후로미(古見) 중좌의 지휘하에 집결지에서 행동을 개시할 것.

보병 제5단은 단장 대원(戴元)의 인솔하에 즉시 산성진(山城鎭) 수비대 대대장 모모(某某) 대좌의 지휘하에 철로경호를 담당할 것.

혼성 제1려 보병 제3단, 기병 제3단은 단장 우택포(于澤浦)¹⁰⁾·고봉린(郜鳳麟)의 인솔하에 즉시 xx수비대 대대장 xx대좌의 지휘하에 집결지에서 행동을 개시할 것.

혼성 제2려 보병 제2단, 기병 제4단은 단장 이해징(李海澄), 마국동(馬國棟)의 인솔하에 즉시 xx수비대 xx대좌의 지휘하에 집결지에서 행동을 개시할 것.

행동의 경과 및 결과 : 위제8군 관할구역 부대는 일본군, 경찰대대의 배합으로 행동하였다. 기병 제8단은 먼저 집안현 칠도외자(七道歲子)의 무인지역과 집안현 북부의 무인지역을 수색하고 수십개의 산

10) 우택보(于澤浦)와 동일인임.

채를 불사르고, 농민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수하게 하였다. 10월 초에 이르러 팔도강(八道江)의 동쪽전선에서 멈췄다. (북부 무인지역에서 양정우 장군 소속 부대와 3차례 교전하였다.)

제8교도대 기병단은 통화·유하 2개 현 경내에서 농민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수하게 하였다. 10월 1일이전에 오른쪽 팔도강에서부터 왼쪽으로는 판석구령(板石溝嶺)에 이르기까지, 오른쪽 판석구령에서 왼쪽으로는 양수하자(凉水河子)에 이르기까지 전투가 없었다.

보병 제7단 2개 영은 금천현에서, 1개 영은 휘남현에서 농민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수하게 하였는데 10월 초에 이르러 소금천(小金川) 남북에서 중지하였다.

보병 제3단, 기병 제3단은 무송현 남부에서, 보병 제2단, 기병 제4단은 임강현 서부에서 농민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수하기 시작하였다.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약 15일에 농민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수하게 하고 옥수수 같은 조속 농산물은 성숙여하를 물론하고 모두 집단부락으로 거두어들이고 밖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감시하였다. 산채를 불태우거나 하는 전투는 비교적 적었다.

4. 제2차 토벌명령 하달. 10월 상순, 각 부대는 10여일 정지하고 식량을 보충하고, 민부와 부대를 이동시켜 다음번 준비를 하였다. 나는 소금천·양수하자·회두구자(回頭溝子)·판석구령·팔도강에 가서 보병 7단, 제8교도대 보병단, 기병단을 시찰하고 팔도강에서 기병단장 위전용을 만난 적이 있는데 농민을 “도와” 추수하는 나쁜 결과를 보거나 들었다. 이 지역의 농민들이 이듬해 봄에 식량이 없어 농사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부대에 명령하여 기병 제8단은 임자두(林子頭)·삼차자(三芬子)로 가고, 기병 제4단은 팔도강·판석구령·양수하자로 가서 보충을 끝내고 행동을 준비하게 하였다. 보병 5단 1영은 조양진(朝陽鎭)에 주둔하면서 교통을 경호하게 하였다.

행동 경과 및 악과(惡果) : 이번에는 무력으로 수색하고 타격하였다. 목표는 통화 북부, 몽강 남쪽의 넓은 무인지역(중흥으로 백여리)이었다. 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만군경이 배합하여 진격하고 동쪽에서는 대부대병력이 막는 것이었다. 10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위제8군 관할구역의 기병8단, 기병4단, 보병 2단, 보병 7단(2개 영)병력은 약간의 소부대로 나뉘어 여장, 단장, 영장 혹은 련장의 인솔하에 준비선으로부터 북쪽을 향해 산으로 들어가면서 수색하였다. 항일군을 만나면 즉시 타격하고 산채를 발견하면 바로 불살랐는데 12월 초에 행동이 끝났다. 이 15일 동안 위만군은 함께 약 20차례 전투를 하였다. 그중 내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보병 7단(1개 영)이 10월 하순, 소금천 동묘산(東某山)에서 양정우 부하 50~60명과 교전하여 항일연군 6명을 사살하고 4명을 부상 입힌 것이다. 보병 2단장 이해징이 거느리는 1영은 10월 하순 17도(道) 양차서남구(陽岔西南溝)에서 산채 2곳을 불사르고 항일군 4명을 사살하였다. 또 보병 2단 1영은 11월 초순, 십삼도양차(十三道陽岔)에서 양정우 부하 50명과 5시간 교전하여 항일군 5명을 사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 기병 4단은 8월 상순, 노야령서록(老爺嶺西麓)한 마을에서 양정우 부하 60~70명과 야간에 7시간 교전하여 항일군 5명을 사살하고 약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4차례 전투에서 모두 20명을 사살하고 12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모두 32명을 매번 전투에서 평균 8명을 사살하거나 부상 입혔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20차례의 전투에서 항일군은 160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산채 약 40곳을 소각당하고 약간의 생필품과 전투물자를 손해 보았다.

이 기간, 나는 10월 중순 위치안부 대신 우지산(于芷山)을 따라 통화로부터 임강현·무송현·몽강현·휘남현·조양진을 한번 시찰한 적이 있다. 또 12월 초, 나는 조양진으로부터 휘남현을 거쳐 용천진(龍泉鎭)에 가서 한번 시찰하였다.

5. 제3차 토벌명령 하달. 12월 상중순, 위만군 제8교도대는 대장의 인솔하에 팔도강에서 양수하자에 이르는 전선에서, 보병 제7단은 여장의 인솔하에 용천진에서 휘남현에 이르는 전선에서, 혼성 제2려는 여장의 인솔하에 몽강에서, 제1혼성려는 여장의 인솔하에 무송에서, 기병 제8단은 몽강현 이도화원(二道花園)에서, 보병5단은 산성진(山城鎭)(그중 1명은 조양진에서)에서 휴식과 보충을 하였다. 용천진에 전투지휘소(야스나가 고문이 이곳에 주둔)를 설치하였다. 12월 하순부터 1940년 상순(약 1주일간)까지 야스나가 고문이 지도하고 내가 명령을 내려 기차로 운송하게 하였다. 제1, 제2의 2개 혼성려는 여장의 인솔하에 길림지역에 진입하여 반석현에서 내리게 하고 줄곧 화전현 내로 달려갔다.

1월 하순의 어느 날(약 설달 20일 좌우), 이유평(李裕平)은 제1려를 인솔하여 화전·몽강 2개 현 경계의 산골짜기에서 양정우 장군의 항일군 주력(약 700-800명)과 만나 22시간 교전하였다. 위제2혼성려의 일부가 와서 지원하자 양정우 장군은 퇴각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항일군은 40명이 사살되고 3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피해 입은 무기는 수십대, 탄약은 수천발에 달하였다. 이는 이번 토벌 중 가장 큰 전투였고 항일군 역시 최대의 피해를 입은 한차례의 전투였다.

6. 양정우 장군의 전사. 1940년 2월의 어느 날, 나는 통화에서 통화성경무청장의 통보를 받았다. 통화성경찰대대는 몽강현 어느 집단부락 밖에서 양정우를 추격하여 사살하였다. 아울러 전투상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전공을 세운 공로로 상을 받았다.(상금은 위만주국 화폐로 약 1만 원) 3, 4일 후 고문부에서 오늘 밤, 통화수비대대부에서 후로미 대대장의 개선을 환영한다고 알렸다. 저녁 무렵 나는 위통화성장 장서한(張書翰) 등과 함께 후로미를 만나고 차로 돌아왔다. 차에서 양정우 장군의 수급을 내려 후로미가 다음날 일찍 길림으로 보내 일본군전범 노조에 쇼토쿠에게 바쳤다.

그 후 위몽강현장(僞蒙江縣長) 여서명(呂書銘)이 나에게 말하기를, 양 장군은 살해당할 당시 혼자였으며, 여러 날 먹지 못해 어느 집단부락 밖에서 한 노인에게 밥과 신발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 노인이 경찰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이 달려가 공격하자 양장군은 조난을 당하였다.

7. 그 후의 조치 : 양정우 장군이 조난당한 후, 통화지역의 토벌은 계속되었다. 나는 제1, 제2의 2개 려를 길림에 남겨 제2군관할구 사령관 吉興이 지휘하게 하고(3, 4월간 3개 혼성려를 제1, 제2의 2개 보병려로 개편하고, 원래의 3개 혼성려의 병력을 전부 파견하였다.) 제8교도대는 통화로 보내 교육과 보충을 받게 하였다. 1940년 2월, 나는 한번 길림에 가서 시찰하고 부상병들을 위문하였다. 3월에 한번 돈화에 가서 시찰과 위문을 하였다. 5월에 참모장 혁모협을 파견하여 한번 시찰하게 하였는데 8월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자동차대는 2월에 즉시 돌아왔다. 조양진의 1영(營)은 2월 초에야 산성진으로 돌아와 집결하였다.

(1) 119-2, 1161, 1, 제4호

吉興의 검거자료(1954년 4월 10일)

위만군대토벌계획은 모두 사사키(佐佐木)가 와서 규정하였다. 치안부 일본 최고 고문이 규정한 3가지 토벌계획 : 하나는 군관할구 독립토벌계획, 하나는 토벌증원, 하나는 일본군이 위만군경을 지휘하여 진행하는 대토벌계획이다. 군관할구 독립토벌은 일본군이 참여하지 않고, 본 관할구내에서 실시하는 토벌은 사령관과 일본주임고문이 지휘하였다. 토벌증원은 군대를 파견하여 기타 성관할구의 토벌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토벌은 위만군경이 일본군대의 지휘를 받으면서 광범한 범위에서 토벌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1939년 가을의 대토벌은 일본관동군사령관이 명령하여 일본군 길장(吉長) 경비사령관 노조에 쇼토쿠 소장을 총지휘로 삼아 실시한 대토벌이다.

1939년 항일군 양정우 장군과 ××× 장군 및 최현 등이 부하 2천여 명을 거느리고 무송·몽강·돈화 및 기타 각 현에서 활동하였는데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항일연군을 소멸하기 위하여 위만치안부 최고 고문이 획책한 계획, 일본군을 주체로 하고 위만군경을 지휘하여 감행한 이른바 길림대토벌은 남쪽으로는 집안현, 북쪽으로는 장백현, 서쪽으로는 돈화현 일대에 이르렀다. 위만주국 각 성에서 소집한 군경을 일본군 노조에 쇼토쿠에게 넘겨 지휘를 받게 하였는데 토벌실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토벌구역 : 길림·돈화·화전·액목·무송·몽강·집안·임강·안도·장백 등 현
2. 토벌병력 : 일본군총지휘관 길장(吉長) 경비사령관 노조에 쇼토쿠

일본군 제2군관할구 돈화에 주둔, 보병 1개 려, 려장 유상화(劉尙華)

화전 기병 1개 려, 려장 윤보형(尹寶衡)

통화 제8군관할구 2개 려(3개 혼성려, 1개 교도대), 려장 고명(高明), 조진방(趙振邦)

가목사(佳木斯) 제7관할구 1개 혼성려, 려장 등운장(鄧雲章)

목단강 제6군관할구 1개 려

길림성 경찰대대, 열하성 경찰대대, 통화성 경찰대대, 봉천성 경찰대대

3. 토벌분포 : 1) 숙정공작반은 일본고문, 일만현병과 특무경찰 등으로 구성, 2) 토벌구역 내 각 현, 가 및 기타 중요거점에 중요한 병력을 주둔시킴, 3) 위만군경을 정돈하여 영과 련을 토벌행동단위로 하고, 4) 위만군을 일본군토벌대의 조직내에 편성하고 일본군 장교의 지휘를 받도록 함, 5) 교통과 통신망을 구축하고 도로와 다리공사를 함, 6) 공격을 실행하기 이전에 농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정해진 기한에 농작물을 깨끗이 거두어들이게 함

4. 토벌행동 : 1) 숙정공작반은 특무를 이용하여 탐지고발, 밀고하게 하고, 적과 내통하는 것을 엄밀하게 수사하고, 비적·토비·협의범·사상범을 구제함, 2) 군대를 동원하여 엄밀하게 산림지역을 포위하고 내외를 단절시키며 식량통로를 단절시킨다, 3) 산속의 주민들을 기한 내에 이사하게 하거나 죽이며, 기타 인민들은 반드시 나오게 하되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4) 산채·촌락·민가·토굴을 모두 소각하여 없앤다.

5. 작전행동 : 1) 산림 일부 지역에서 작전한다. 소부대를 동원하여 진공하며, 일본군대 1개 중대 혹은 1개 소대가 위만군대 혹은 경찰 1개 영, 혹은 1개 련을 거느리고 일본군장교가 작전을 지휘한다, 2) 대부대의 항일군을 만나면 대부대병력으로 포위 공격한다, 3) 각 부대는 구역을 나누고 목표를 정하며,

진공을 책임지거나 게릴라전을 한다, 4) 위만군이 앞장에 서고 일본군은 뒤에서 중국인으로 중국인을 치게 한다, 5) 대오는 나뉘어 저격하거나 게릴라전 2가지 방법을 취한다. 저격할 때는 요새나 거점, 혹은 갈림길에 주둔하고 게릴라전을 할 때는 산림지대에서 종적을 찾아 진공하며, 전문 어느 지역 병력이나 혹은 어느 수령을 향해 진공한다.

6. 상벌방법 : 1) 공로가 있는 자는 승진시키거나 상금을 주며, 또 현상금을 주며, 힘을 내지 않는 자는 퇴각시키거나 처벌하며, 2) 적을 매수하거나 혹은 간첩으로 이간시키며, 혹은 적을 이용하여 와해시키거나 유인하여 투항시킨다.

이상의 각종 방법은 1939년 가을 8, 9월부터 시작하여 1년 남짓한 기간에 완전히 일본군 노조에 쇼토쿠가 총지휘하고, 길림제2관할구역 일본군 주임고문 에토우(江藤) 중좌와 일본토벌사령부 참모 北部 중좌가 연락하였다. 제2군 관할구는 내가 부하 2개 려를 파견하여 토벌에 참가하였다. 그해 겨울, 돈화현에 가서 위만군 려(旅) 사령부에 가서 한번 시찰하고 화전현 려 사령부에 가서 한번 시찰하였다. 일본군 노조에 쇼토쿠의 만행은 극에 달하였다. 화전현에서 토벌군경 책임장교회의를 소집하고 토벌에 불리하고 사병들의 사상자가 아주 많으니 위만군 장교를 크게 꾸짖었는데 이름을 거론하며 크게 욕하였다. 일본군 길림경무청장은 당시 회의장소에서 죽었다. (이름은 잊어버림)(모리 유타카(森豊)) 나는 화전 려 사령부에서 려장이 전투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싸움은 20여 차례 지나지 않았다. 몇 번은 항일군에게 패하고, 어떤 때는 항일군이 퇴각하였는데 전사자도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단 한번 14~15명의 항일군이 전사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위만군경과 일본군 사상자는 7~8명, 혹은 10여 명에 달하고 어떤 때는 적지 않았다. 싸움에 불리하자 백성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하였다. 산에 거주하는 인가나 혐의가 있는 농민은 화를 면하지 못하였다. 제일 심한 것은 숙정공작반이 매일 몇 명씩 혹은 10여 명씩 참혹하게 살해하였는데 실로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산속 민가나 토굴은 전부 소각하였다.

(1) 119-2, 1101, 3, 제13호

위통화성 1939년 추동‘토벌’ 각 현 경비병력 동원표
위통화성경찰대 편성 및 장비 일람표(1939년 8월)
(중략)

노자키 모사쿠(野崎茂作)의 자필공술(1954년 8월 1일)

동남지구토벌공작

1. 주모자 : 노조에 쇼토쿠
2. 실행자 : 모리 유타카(길림) · 키시타니 류이치로(通化) · 수풍정태(袖風靜太)(間島) · 고바야시(小林) 대좌(독립수비대) · 위만부대장.
3. 참가자 : 길림성토벌대본부, 통화성토벌대본부, 간도성토벌대본부, 길림독립수비대, 돈화독립수비대, 위만군부대(화전 토벌단, 돈화·간도·통화 등 토벌부대)
4. 시간 : 1939년 10월 1일~1940년 4월 10일. (1941년 3월 19일)

5. 토벌지역 : 길림·통화·간도성 지역

6. 토벌계획 : 길림성의 토벌계획은 7월 말, 와타나베(渡邊) 경비과장이 기초하였다. 나는 8월 1일 경비과부(警備科附)를 맡은 후, 연구에 참가하여 통과된 아래의 모든 것을 실시하였다.

1) 목표 : 치표(治標) 공작의 목표는 아래의 부대 장군, 사령 및 전사를 잡거나 섬멸하는 것이었다. 양정우 장군 부대 350명, xxx 장군 부대 100명, 최현 장군 부대 100명, 위증민 장군 부대 80명, 박덕범 장군 부대 100명.

치본(治本) 공작의 중점 : 둔화·화전·반석·교하·서란(舒蘭) 등 현 집단부락의 방어, 경비도로 보수건설, 통신망경비, 자위단 강화, 무기 노획.

2) 길림성토벌본부 편제 :

모리 유타카(1940년 1월 말 사망), 후임자 무라이 야노스케(村井矢之助). 부하 : 와타나베 마사오(渡邊政雄), 마사 요시타로우(牧芳太郎), 노자키 모사쿠(野崎茂作), 타카가키 가즈오(高柿一男)(경리)

화전대본부 : 가토(加藤) 경좌(토벌사무 처리), 요시나가(吉川) 경좌(토벌사무 처리), 스기야마(杉山) 경좌(수사반) 등 6명.

둔화대본부 : 도미무라(富村) 경좌(토벌사무 처리), 미등로(美登路) 경좌(토벌사무 처리), 시키모리(式守) 경좌(수사반) 등 6명.

3) 길림성토벌대 특수반 편성 :

반장 : 마사 요시타로우(牧芳太郎)

하속(下屬) :

화전 스기야마 경위 - 화전현 경무과 특무 12명을 특수반원으로 하고, 화전 지역에서 활동하게 한다. 반석현 경무과 특무 6명을 화전현 내에서 활동하게 한다.

둔화 시키모리 경좌 - 둔화현 경무과 특무 12명을 특수반원으로 하고, 둔화 내에서 활동하게 한다. 교하현 경무과 특무 6명을 현 내에서 활동하게 한다. 서란현 경무과 특무 5명을 현내에서 활동하게 한다.

4) 길림성토벌대 편성(표1)

5) 토벌경과 :

1939년 5월 5일, 노조에 사령관은 작전명령을 내렸다. 1939년 5월 7일, 길림성공서에서 동남부지역에 대한 토벌회의를 소집하였는데 회의참석자는 약 100명이었다. 1939년 5월 10일부터 1939년 7월 31일까지 토벌계획(와타나베 경비과장 및 기타 관련인원이 기초)을 기초하였다. 1939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벌준비공작을 하고, 길림성 내 각 현과 봉천·빈강·금주 각 성의 증원부대를 배치하였다. 1939년 10월 1일, 둔화·화전 두 곳에 길림성토벌대본부를 설립하였다. 1940년 3월 10일, 토벌 결과 길림에 파견한 노조에도벌대 사령부를 장춘(長春)으로 복귀시키고 토벌을 잠시 중단하였다. 이후 길림성 무라이(村井) 경무청장의 명령에 따라 토벌을 계속 진행하였다. 봉천성에서 500명, 빈강성에서 500명, 금주성에서 250명의 증원부대를 4월 10일 이후에 본성에 복귀시켰다. 길림성 각 현의 증원부대는 1940년 12월 말에 원래의 성에 복귀시켰다.

1. 나의 행동

1939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돈화 토벌대 본부에서 와타나베(渡邊) 경비과장과 함께 대포시하(大蒲柴河) 우노키(鵜木)대대·봉천(奉天)부대·요시모리(吉森)부대를 지휘하여 토벌을 시작하였다.

1939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교하현 액목색에 출장 가서 토벌대를 따라 청강(靑崗) 이북 5킬로미터 떨어진 산지에 도착하여 진(陳) 장군(진한장)부대와 교전하였다.

1940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통화성 몽강현 공서에 출장 가서 통화성 안곡 경무청장 주최로 열린, 양정우 장군을 토벌할 데 관한 토론회에 참가하여 어떻게 토벌에 협조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의논하고 돌아왔다. 모리(森) 본부장에게 보고한 다음, 즉시 토벌계획을 기초하고, 홍석립자(紅石砬子)대대·대포시하대대·토리하타(鳥烟)·요시모리(吉森)부대에 명령하여 몽강현 경계에서부터 몽강현을 출입하도록 하였으며 안도(安圖)·양강구(兩江口)부대에 명령하여 성 경계를 향해 출동하게 하였다.

1940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화전 토벌대 본부에서 홍석립자대대·대포시하대대·토리하타부대·요시모리부대·안도부대·봉천부대·양강구부대·빈강(濱江)대대에 명령하여 양정우 장군부대에 대한 토벌을 진행하였다.

2. 길림성토벌대가 항일연군 및 애국무장과 교전한 상황

(1) 양정우 장군부대에 대한 작전은 1940년 1월 7일, 내가 통화성 몽강현성에서 키사타니(岸谷) 경무청장을 만나고 돌아온 후, 부대에 명령하여 2월 10일부터 행동을 개시하였다. 즉 홍석립자대대 200명, 금주대대 250명, 대포시하대대 200명, 토리하타부대 150명, 요시모리부대 50명에게 명령하여 화전현에서부터 통화성 몽강현에 진입하도록 하였으며; 주요하게 양정우 장군부대를 포위하여 가능한 성 경내에서 체포·섬멸하도록 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 몽강현에 진입하여 체포·섬멸하도록 하였다. 토리하타부대 150명과 요시모리부대 50명은 몽강현에 진입한 후, 현성 서북으로 3킬로미터 떨어진 산중에서 양장군의 지대 약 50명과 교전하였다. 제1차 전투에서는 11명을 사살하고 보충 10자루를 노획하였으며, 제2차 전투에서는 7명을 사살하고 보충 5자루를 노획하였다. 교전 이외에 또 68명을 살해하였으며, 산채와 토굴 15채를 소각한 다음 통화성을 향해 출동하였다. 봉천대대와 빈강대대는 20명을 사살하고, 산지에 있는 가옥 30채를 소각하였으며; 화전홍석립자대대, 금주대대, 돈화현 대포시하부대는 통화성에 출동 중 30명을 사살하고, 산지 가옥 20채를 소각하였다. 항일연군 양(楊) 사령은 비록 2월 20일(2월 23일) 통화성 몽강현 남쪽에서 통화성경찰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으나 이 역시 길림성경찰토벌대가 토벌을 협조한 결과이다.

(2) 진한장장군부대의 전투는 1939년 11월, 내가 교하현 청강(靑崗) 산지에서 지휘한 제1차 교전 중, 항일부대로 하여금 5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였다. 제2차는 시모니시(下西)중앙경찰학교 토벌대와 일본수비대가 진한장 부대와 교전하여 그로 하여금 점차 길림성에서 자취를 감추게 하였다. 1940년 5월 초순, 진한장 부대는 통화성경찰토벌대 100명의 추격을 받아 간도성·길림성을 경유하여 목단강성 녕안현 경내의 경박호 부근에 도착하였다. 나는 길림성 돈화현 경찰토벌대 50명에게 명령하여 요시모리 경찰토벌대와 배합하여 진장군부대와 여러 차례 교전하여 항일연군 유력부대 130명을 섬멸하였다. 진장군은 통화성경찰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진한장은 1940년 12월 8일 경박호 남호두(南湖頭) 소만구

(小灣溝)의 앵가령(鶯歌嶺)에서 희생됨) 나의 명령을 받은 교하현 토벌대 50명도 이번 전투에 참가하였다.

(3) 위증민 항일연군과의 작전. 1940년 2월 7일, 항일연군이 화전현 횡도하자(橫道河子)를 습격하자 나는 횡도하자 경찰대 및 자위단 50명에게 출동하여 교전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위증민 부대 항일군 10명을 사살하고 보총 8자루를 노획하였다. 1940년 4월 초, 이시카미(石上) 토벌대 50명과 위증민 부대 60명은 교하현 액목색 동부 관지(官地)에서 교전(요시모리 결사대 50명 출동)하여 위증민 부대 항일군을 전부 섬멸하였다.

(4) 1940년 2월 25일, 화전현 화수림자(樺樹林子) 항일애국단 20명에 대한 습격에서 나는 화수림자 경찰 및 자위단 50명에게 출동하여 토벌하도록 명령하여 그 수령을 사살하고 또한 그 애국단을 전부 섬멸하였다.

나의 명령으로 인해 길림성토벌대가 항일연군에게 끼친 피해(표 2, 3, 4)

길림성토벌대본부 상황 :

1. 토벌대본부의 정보는 화전·돈화 두 본부에서 수집한 것으로 모두 560건이다. 돈화현은 도미무라(富村) 경좌, 화전현은 가토(加藤) 경좌가 책임지고 정보에 근거해 30차례 출동하여 항일연군 및 애국군대에 아주 큰 타격을 주었는데 그 결과는 토벌실적 중에 나타난다.

2. 특수반의 정보는 마사(牧) 특무과장이 직접 지도한 것으로 성적은 결과에 포함된다. 특수반이 밀정을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는 700건인데 마사 반장의 2명, 시키모리(式守)의 10명, 스기야마(杉山)의 10명, 화전현 특무고의 20명, 돈화현 20명의 밀정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 항일연군을 토벌하는데 가치 있는 정보는 약 300건이었다. 정보에 근거해 체포·살해한 항일연군 : (1) 살해 97명; (2) 법정에 교부 27명; (3) 심문 후 석방 180명.

길림성토벌본부공작중의 죄행 총결 :

- 1) 교전중 사상자 : 490명
- 2) 살해 : 97명
- 3) 치료 중 사망 : 5명
- 4) 법정에 교부 : 27명
- 5) 가옥 소각 : 230채
- 6) 인부 부역 : 11만 명(즉 부락방위시설 500개, 경비도로 수축 70킬로미터, 전화선 가설 100킬로미터, 도로 보수 260킬로미터, 200킬로미터 도로 양측의 나무를 벌목.)
- 7) 무기 노획 : 보총 256자루, 양포 2,000자루, 권총 1자루.

〈표 1〉

현별 (縣別)	토벌부대	인수	대장	장비	주둔지	비고
화전	홍석립자 토벌대대	200	중국인 경정	보총 200, 경기관총 3, 무전기 1	화전현 홍석립자	3개 중대
	금주증원 토벌대대	250	일본인 경정	보총 250, 경기관총 3, 무전기 1	화전현 협피구	3개 중대
	이에키(家木)토벌대	150	이에키 경좌 [토리하타(鳥烟) 경정대리]	보총 150, 경기관총 2, 무전기 1	화전현 화전	중대편제 [토리하타·천평 (天平) 2개 부대]
	아유카와(鮎川) 삼림토벌대	150	아유카와 경좌	보총 150, 경기관총 2, 무전기 1	화전현 동북채(東北砦)	위와 같음
	비파구(琵琶溝) 삼림토벌대	100	일본인 경위	보총 100, 경기관총 1, 무전기 1	화전현 비파구	위와 같음
	목기하(木箕河) 삼림토벌대	100	일본인 경위	보총 100, 경기관총 1, 무전기 1	화전현 목기하	중대 편제
돈화	우노키(鵜木) 토벌대	200	우노키 경정	보총 100, 경기관총 1, 무전기 1	화전현 대포시하	대대 편제, 3개 중대
	사와하타(澤烟) 토벌대	100	사와하타 경정	보총 100, 경기관총 2, 무전기 1	간도성 명월구	중대 편제
	요시모리(吉森) 토벌대 (결사대로 개칭)	50	요시모리(吉森) 경장 (후에 경위로 됨)	보총 50, 경기관총 1, 무전기 1	돈화현 돈화	중대 편제, 사복부대를 따르게 함
	아카시(明石) 토벌대대	500	아카시 이사관 (봉천성 경비과장)	보총 500, 경기관총 6, 무전기 3	간도성 양강구	2개 대대, 3개 중대로 편성
	빈강 토벌대대	500	일본인 경정	보총 500, 경기관총 6, 무전기 3	간도성 안도현	2개 대대, 3개 중대로 편성
	다카미사와(高見澤) 삼림토벌대	150	다카미사와 경좌	보총 150, 경기관총 2, 무전기 1	돈화현 소위호령 (小威虎嶺)	중대 편제
	시모니시(下西) 중앙경찰학교 토벌대	200	시모니시 경정	보총 200, 무전기 1	敦化縣 額木索	대대 편제, 3개 중대
	이시카미(石上) 경찰토벌대	100	이시카미(石上)경좌	보총 100, 경기관총 1, 무전기 1	敦化縣 官地	중대 편제
계	14개	2,750		보총 2,750, 경기관총 32, 무전기 18		

〈표 2〉

시간	지점	항일연군 및 애국무장	출동한 경찰토벌대	교전 회수	살상 인수	노획한 무기	비고
1939.11	교하현 청강산지 (靑崗山地)	진장군 부대 100명	노자키(野崎) 토벌대 100명, 시모니시(下西) 중앙경찰 학교 토벌대 200명, 독립수비대 22명	2	30		추격 작전
1939.12	교하현성과 신참(新站)	최 장군부대 100명	빈강 대대 200명, 사와하타(澤畑) 중대 50명, 요시모리(吉森) 중대 50명	2	20		추격 작전
1939.11	돈화현 대포시하	위와 같음	대포시하 대대 100명, 봉천 대대 200명, 요시모리 중대 50명	4	30	보총 20자루	추격 작전
1939.12	화전현 동북차	김장군 부대 100명	아유키와(鮎川) 삼림부대 100명	1	20	보총 12자루	추격 작전
1939.12	화전현 협피구	양장군 부대 100명	금주 부대 100명, 토리하타(鳥畑) 부대 100명	2	40	보총 25자루	반격 습격 후 추격 작전
1940.2.15	통화성 몽강현 산지	양장군 부대 50명	토리하타 부대 150명, 요시모리 부대 50명	1	11	보총 15자루	11명 작전 중 사살
1940.2.20	위와 같음	양장군 부대 30명	위와 같음	1	7	보총 5자루	7명 교전 중 사살
1940.2.10~1940.2.28	통화·길림성	양사령 부대 분산병	대포시하대대 200명, 빈강대대 500명, 금주대대 200명, 봉천대대 50명		62		추격 작전
1940.2.25	화전현 화수림자 (樺樹林子)	한애국단 (韓愛國團) 20명	화수림자 경찰 20명, 현지 자위단 30명	1	20	보총 20자루, 권총 1자루	추격전에서 수령을 사살하고, 20명 대원을 전부 섬멸
1940.2	화전현 횡도하자 (橫道河子)	위중민 부대 60명	횡도하자경찰 20명, 현지 자위단 30명	1	10	보총 8자루	추격전
1940.4월 초	교하현 관지(官地) 동쪽 3킬로미터	위중민 부대 60명	이시카미(石上) 부대 50명, 요시모리(吉森) 부대 50명	2	50	보총 20자루	추격 작전, 전부 섬멸, 위중민 장군을 사살 (오차가 있음)
1940.5월 초	목단강성 영안현 경박호 부근	진장군 부대 130명	통화경찰대 100명, 요시모리 결사대 100명, 돈화 경찰대 50명, 화전 경찰대 50명, 교하 경찰대 50명	4	90	보총 30자루	통화성경찰대가 사살한 일부를 길림성경찰대에 기재
1939.10~1940.5	토벌행동 이외에 토벌대에 살해됨				100		이는 토벌대가 체포, 학살한 것으로, 단지 대략적인 숫자임.
계		850명	3,122인차	21	490	보총 156자루 권총 1자루	

〈표 3〉

지명	구분	건수	채 (가옥)	설명
길림성돈화현		30	50	대포시하토벌대는 모두 25차례 출동하여 토벌을 진행하였다. 매번 산림지대 가옥을 소각하였는데 모두 32채를 소각하였다. 요시모리(吉森) 토벌중대는 대포시(大蒲柴) 남동쪽 20킬로미터 떨어진 산지를 토벌할 때 2차에 걸쳐 모두 8채를 소각하였다. 봉천토벌대는 출동하여 대포시산지를 토벌할 때 3차에 걸쳐 10채를 소각하였다.
길림성화전현		32 (23)	50	홍석립자대대는 13차례의 토벌행동 중, 산림지대 가옥 20채를 소각하였다. 금주대대는 15차의 토벌행동 중 성 접경부근 산림지대 가옥 22채를 소각하였다. 토리하타(鳥烟)부대, 요시모리 부대는 5차례의 행동 중 8채를 소각하였다.
길림성교하현		8	20	이시카미(石上) 부대는 1939년 11월, 1940년 3월 선후로 5차에 걸쳐 위호령(威虎嶺)의 토벌행동 중, 가옥 12채를 소각하였다. 시모니시(下西) 중앙경찰학교는 1939년 11월, 12월의 토벌행동 중, 3차에 걸쳐 모두 8채를 소각하였다.
길림성안도현		50	80	아카시(明石) 대대는 양강구·십기가산지에서 선후로 24차에 걸쳐 가옥 45채를 소각하였다. 녕안현에서 5차의 토벌행동 중, 모두 10채를 소각하였다. 빈강 대대는 안도현에서 20차의 토벌행동 중, 모두 25채를 소각하였다.
길림성몽강현				토리하타 부대, 요시모리 부대는 1940년 2월 양사령을 토벌할 때 5차에 걸쳐 15채를 소각하였다. 금주부대, 홍석립자 부대는 4차에 걸쳐 10채를 소각하였다.
계		131 (127)	230	

〈표 4〉 내가 경찰에 명령하여 강제로 진행한 치본공작이 중국인민에게 끼친 피해

지명	경비도로 건축	경비도로 보수공사	부락방어시설 강화	전화선 신설	전화선 수리	도로 양측 채벌	무기 몰수	용역인원
길림성 화전현	대포시하~ 협피구 30킬로미터	화전~ 협피구 80킬로미터	210개	협피구~ 돈화현 40킬로미터 전선대 1,320대	현내 각 선 200킬로미터	양측 50미터 벌채 80킬로미터	양포 500, 보총 30	40,000
길림성 돈화현	협피구~ 대포시하 40킬로미터	대포시하~ 돈화 40킬로미터, 돈화~ 액목색 60킬로미터	220개	대포시하~ 돈화현 50킬로미터 전선대 1650	현내 각 선 180킬로미터	110킬로미터	양포 600, 보총 20	45,000
길림성 서란현		산지부락 사이 20킬로미터	10개		산지부락 50킬로미터		양포 200 보총 10	5,000
길림성 교하현		산지부락 사이 20킬로미터	40개	액목색 10킬로미터 전선 330대	액목색 지역 30킬로미터	양측 50미터 벌채 10킬로미터	양포 300, 보총 20	10,000

길림성 반석현		반석~화전 40킬로미터	20개		화전지역 40킬로미터		양포 400, 보총 20	10,000
계	70킬로미터	260킬로미터	500개	100킬로미 터전선대 3,300대	500킬로미터	200킬로미터	양포 2,000, 보총 100	110,000

〈표 5〉

구분 현별	살해된 항일연군 및 애국무장세력 인원 수	'징지도비법 (懲治匪用法)에 의거하여 재판에 넘긴 인원 수	심문 후 석방한 인원 수	설명
길림성 돈화현	28	6	55	시키편리(武守)경좌가 특수반에 명령하여 체포하고, 현특무고에서 심문 후 경찰토벌대를 지휘하여 총살
길림성 화전현	31	7	60	스기야마(杉山) 경위가 특수반에 명령하여 체포하고, 현특무고에서 심문 후 경찰토벌대를 지휘하여 총살
길림성 반석현	6	3	10	서란현이 특무를 지휘하여 체포하고 심문 후 총살
길림성 서란현	5	2	10	교하현특무고장이 특무고원을 지휘하여 현 내에서 체포하고 심문 후 총살
길림성 교하현	7	3	15	시키편리경좌가 안도현성 및 부근 부락, 십기가, 양강구, 명월구에서 체포하고 심문 후 경찰대원을 지휘하여 안도현 남쪽 산지에서 14명을 총살하고 명월구에서 6명을 총살.
간도성 안도현	20	6	30	
계	97	27	180	

(1) 119-2, 41, 1, 제5호

**현재의 토벌방법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노조에토벌대 참모 北部邦雄의 통지
(1940년 5월 25일 야참(野參) 제33호)**

부건 요령에 의거하여 관철집행하고 토적공작을 강화할 것을 희망한다. 이에 특히 명을 받들어 통지한다.

부건(附件) :

1. 현재의 토벌방법에 관하여.

일반적 상황에서, 겨울에 비적은 식량을 비축하고 산구에 잠복하여 겨울을 나면서 토벌대를 피하기

때문에 토벌대는 반드시 비적의 정보를 수집하고 산구에 깊이 들어가 비적의 종적을 찾아 타격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비적단체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모두 부락에 접근하여 기회를 보아 습격하기 때문에 원래의 유격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마땅히 유격대를 나누어 담당구역을 정하고 경방대와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필요할 때 비적단체를 유인하거나 혹은 백성으로 위장한 사복대를 이용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 적이 나타나게 하여 일거에 섬멸하는 등 방법이다.

그 요령은 아래와 같다.

1) 각 현 연방구역을 고려하여 각 유격대 담당구역을 나눈다.

2) 유격대와 경방대는 낮에 망루 등을 설치하고 근무를 감소시켜 부대원들이 될수록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야간에는 경비를 강화하고, 언제나 전원이 전투투입태세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일부분 부대는 야밤을 이용하여 23시부터 1시까지 몰래 습격당할 가능성이 있는 부락부근에 접근하거나 혹은 비적이 출몰하는 중요한 도로에 잠복하거나, 날이 밝기 전에 주둔지로 복귀한다. 이런 부대는 반드시 특히 그 목적을 감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수봉공대(즉 민부)를 따르게 하지 말아야 한다.

3) 각 부대는 정보수집 이외에 야밤에 비적이 습격해올 수 있는 방향이나 비적이 출몰하는 중요한 도로에 밀정 혹은 잠복첩병을 배치한다.

4) 적을 유인하기 위하여 고의로 어느 부락의 경비를 철거하여 필요할 때 비적과 내통하는 자를 역이용하여 비적에게 선전하거나 비적을 유인한다.

5) 비적단체가 습격해올 수 있는 부락이나 비적을 유인하려는 부락은 용감한 사복첩병을 잠복시켜 비적이 습격할 때 전하나 봉화 등 방법으로 부근에 경보를 알린다.

이를 위해 유격대와 경방대는 상술한 봉화를 볼 수 있는 곳에 보초를 배치한다.

6) 모든 방법을 취하여 유격대·경방대와 부락사이의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며, 특별히 야밤에 비적단체가 습격해올 때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7) 비적이 습격하는 방향과 비적의 퇴로를 연구한다. 비적이 습격할 때 일부를 습격당한 부락에 파견하여 주력으로 비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비적을 체포하며, 일거에 섬멸하고 계속 추격하여 적을 패배시킨다.

이를 위하여 사람마다 늘 5일간의 식량을 휴대한다.

8)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비적을 기만하거나 유인한다.

예 : 낮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운수봉공대를 이용하여 부락에 식량을 저장하는 것처럼 비적을 유인한다.

기타 비적을 유인하기 위하여 먼저 방법을 강구하여 부근의 사람들을 기만한다.

유격대는 담당구역 내에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야밤에 몰래 위치를 이동하거나 낮에 고의로 사람들이 보도록 이동하고, 밤에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 비적으로 하여금 우리 행동을 알 수 없게 한다.

2. 도로 엄호

최근 밤에 한 용역노동자의 작은 가옥이 2차례 습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상세하게 고찰하면 알

수 있다. 전 구간을 동시에 완성하기 위하여 용역노동자들이 10여개 단위로 나뉘어 동시에 작업하였기 때문에 엄호대도 나뉘게 되어 각 곳의 경비부대는 아주 약해질 수밖에 없어 비적에게 빈틈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각 지역 토벌대장은 반드시 비적의 상황, 엄호대의 병력과 작업요구 등을 고려하여 도로작업의 실시와 엄호요령을 결정하고, 엄호대 및 도로를 수축하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고, 그 실행을 감독한다.

엄호대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엄호대는 낮에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초소를 세우고, 기타 대원은 될수록 휴식을 취하게 하고 밤에 전원이 경비를 강화하게 하며, 비적에게 습격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식량저장소, 용역노동자의 작은 집, 공구창고 등 곳에 직접 경비부대를 배치하는 이외에 저항선상에 시설을 수축하고, 야밤에 사격시설 등 주력출격을 위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

2) 엄호대는 스스로 부근의 비적정보를 수집하는 이외에 부근의 유격대, 경방대와 연락하여 비적의 정보를 알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근의 토벌대는 도로공사방향의 비적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엄호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야밤에 비적이 습격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밀정과 잠복 첩병을 배치한다.

3) 엄호대는 비적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면, 피동에 처하지 말고, 극력 유격대처럼 공세를 취하여 임무를 완수한다.

4) 기타 방면에서, 유격대와 경방대에 따라 행동을 취한다.

(하략)

길림회의 개황

1. 길림회의 설립 경과

1939년 10월 1일, 토벌사령관 노조에 소장의 지휘 하에, 남동 지역 공비에 대한 토벌을 진행한 이래, 일·만 군경의 맹렬하고도 과감한 전투로 이미 점차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공비를 대처함에 있어서 무력토벌에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삼으로 지면의 풀만 제거하고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것을 통감하였다. 노조에 소장은 공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적의 지하조직을 파괴하고, 외부단체와 동시에 행동을 취하여 식량통로를 단절시키고, 문화토벌의 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당시 참모 北部 중좌, 헌병부장 다마오카(玉鳳)¹¹⁾소좌, 대리경찰부장 다나카(田中)경비과장, 신경고등검찰청 오가타(緒方) 검찰관 등에게 명령하여 길림회의를 소집하게 하였다.

2. 길림회의 설립 취지

최근 비적토벌이 현저하게 진전됨에 따라, 잡아야 하는 자도 쉽게 체포하고, 아주 알기 어렵던 각종 반일항일불법단체도 점차 드러났다. 토벌지역에서는 반일회·동심회·구국회·동지회 및 기타 많은 비밀결사가 적발되어 그것들을 대거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비밀결사는 원래 고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

11) '玉岡'의 오기로 보임.

나라 공산국제·중공중앙·구 국민당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비는 기타 구역에서 민중·국군·경찰관과 자위단 등 무장단체에 대한 책동을 하여 상당한 동지를 얻었다. 일단 유사시에 이러한 사람은 비적과 서로 호응하여 군중무장을 선동하여 변절하게 하는데 이는 아주 명백한 사실이다. 때문에 “그 내왕을 단절시키는 것”은 비적을 토벌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목전, 일·만 군경의 맹렬한 토벌은 비범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뿌리를 뽑아 그 후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들의 지하공작·외부단체·비적과 내통하는 고리를 파괴하여야 한다. 고로, 현 단계에 관할구역 내 치안 숙정을 담당하는 각 기관은 반드시 무력토벌에 배합하여 일체를 결성하여야 한다. 즉 각 범위 내에서 연락을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방침을 확정하고,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토벌을 지휘하여 문화토벌의 종합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에 의하여 본회의를 소집한다. 본 회의는 질을 중시하고 형식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바 특히 적당한 인원이 서로 결합하는 원칙을 취하여 모든 법규형식을 배제하였으나, 각 기관의 진정한 합작을 요구하였다.

3. 회의명칭 : 길림회의

4. 회원 :

고문 : 노조에토벌사령부사령관 노조에 소장;

회장 : 사령부 헌병부장 다마오카 소좌;

간사 : 신경고등검찰청 오가타(緒方)검찰관;

간사 : 노조에토벌사령부 경찰부 다나카(田中)치안부 경무과장;

회원 : 치안부 형사과 후지나가(藤川) 사무관;

회원 : 길림성 경무청 특무과장 마사(牧) 이사관;

회원 : 치안부 특무과 니시즈지(西辻) 사무관;

회원 : 통화성 경무청 특무과장 노보리(登) 이사관;

회원 : 간도성 경무청 특무과장 도미나가(富永) 이사관;

회원 : 길림헌병분대장 야규우(柳生) 상위;

회원 : 길림철도경호대 경찰과장 시나가와(品川);

회원 : 노조에토벌사령부 국군헌병대 무라카미(村上) 소교.

보충 : 올해(1940년) 9월 3일, 제9차 길림회의 때 헌병부장을 전근시키는 것을 계기로 눈앞의 형세에 맞추어 아래의 회원을 증가하였다.

보충회원 : 신경헌병대본부 특고과장 마츠모토(松本) 소좌, 통화헌병대장 다마오카 소좌, 연길헌병대장 기(砥)중좌, 길림검찰청 차장 나카무라(中村)검찰관, 목단강고등검찰청 사상계 검찰관(무명), 빈강성 특무과장 나카무라(中村) 이사관.

이밖에 각 기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참가한다.

5. 회의 소집시간 : 매월 1일, 15일(주일, 휴일 구별이 없음); 긴급한 상황일 때는 사전에 날짜를 변경한다.

6. 헌병부장의 전근 : 제1임부장 다마오카소좌, 제2임부장 마츠모토소좌, 제3임부장 고수(高薮)상위, 제4임부장 야규우(柳生)상위.

본 건물은 설립 당시의 기구에 따라 써낸 것이다.

편자 주 : 이 건물은 1940년 위만신경고등검찰청 「길림회의의사록」에 기재된 것이다. 다마오카소좌는 원래 신경헌병대 특고과 과장이었는데 후에 통화헌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연길헌병대장 기고마(砥高鷹)가 동남부지역 치안연락위원회 상황에 관하여
관동헌병대사령관 다케우치 히로시(竹内寛)에게 올린 보고
(1940년 9월 11일 연헌고(延憲高) 제470호)**

요점 :

9월 5일, 길림성 경무청에서 노조에 토벌사령관의 사회로 동남부지역 치안연락위원회가 열렸는데 길림·간도·통화성 내의 이후의 치안숙정공작에 관해 협상하였다.

그 상황을 보고하면 아래와 같다.

1. 소집시간, 지점 및 사회자 :

- 1) 시간 : 9월 5일 9시부터 17시 30분.
- 2) 지점 : 길림성 경무청 강당.
- 3) 사회자 : 부위원장 노조에 소장.

2. 출석자 :

- 1) 일본군 : 노조에 소장 등 15명.
- 2) 만주국 : 각 위원, 간사 및 정부 측 등, 모두 46명.

3. 회의상황 :

회의는 9시에 시작되어 위원장 노조에 소장의 축사가 있는 후,

- 1) 각 지역 위원장이 추계 비적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책에 관하여 보고;
- 2) 각 성 부위원장이 치본(治本)공작의 진전 상황에 관하여 보고;
- 3) 각 성 협화회 사무장이 부락에 대한 공고와 장래의 공작에 대한 의견을 발표;
- 4) 각 성 경무청장이 수확물을 보호할데 대한 대책을 보고;

이어서 간사장 北部 중좌가 추계토벌방침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좌담을 진행하였다.

회의개황은 아래와 같다.

부위원장

최근의 토벌의 종합적인 전과(戰果) 및 치본공작의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각 기관의 일원화, 농작물 수확 및 그 엄호, 부락의 철저한 방위 등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특별히 숙정공작을 반드시

올해 말에 완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략)

간사장 설명

간사장 北部 중좌로부터 제2기 숙정토벌계획요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었다.

1. 비적의 상황 :

길림·간도·통화성내의 비적단체는 끊임없는 토벌과 치본공작의 진전에 의해 식량·마초·물자의 결핍 및 부하의 동요에 따라 이미 혼란 상태에 빠져 투항하는 자도 연속 출현하고 있으며 서쪽 및 남쪽 지역도 이미 숙청에 가깝다. 잔여 비적은 왕청현·간도·목단강·길림 등 3성 접경지역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방침 :

치안이 양호한 지역의 숙정공작은 점차 만주국 군·경에 넘기고 일본군은 중점을 치안이 불량한 지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국제형세의 변화와 국내치안상황은 이 방면의 치안숙정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견결히 올해 말에 치안을 안정시키고 잔여비적을 근절시켜야 한다.

3. 치본공작 :

갑. 제1기 말에 각 항 치본공작을 완성하고 반드시 신속하게 결속지어야 이후에 다시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다.

을. 수확물의 엄호 및 부락 방위 강화. 추수 엄호와 부락 방위 강화공작은 올해 말에 치안숙정 목표를 완수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추계토벌의 중점이다.

(중략)

부건 1 :

(노조에 쇼토쿠) 축사

비적에 대한 추계토벌이 개시된 이래, 일·만군경이 적극적이고 용감하였고, 각 기관이 단결 노력하였기 때문에 비적을 토벌함에 있어서 제1로군 총사령 등 약 2,500명을 사살·체포하거나 투항하게 하여 본 지역에 동지를 틀고 있던 비적단체의 대부분을 섬멸하고 빛나는 종합성적을 얻었다. 치본공작에서 경비도로 960킬로미터를 수축하고 360킬로미터 도로 양측의 나무를 벌채하고, 경방소(警防所) 80여개소를 건립하고, 제1선 부락의 방어 등을 강화하였다. 각 방면에서 대부분 예정한 목적에 도달하였다. 본위원장은 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여러분과 함께 만주국을 위해 기원한다.

이상은 대개의 성과에 불과할 뿐이다. 비적단체가 박멸에 임박해서 방황하고 있고, 또 식량 및 물자가 극도로 결핍해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은 식량과 물자를 얻으려고 여전히 부락과 농경지를 습격하여 피해가 적지 않은데 심히 유감스럽고 용인할 수 없다. 특히는 현재 국제정세가 긴박하고, 그 일환에 속하는 숙정공작은 실로 동야건설을 완수하는 절대적수요이기 때문에 만난을 극복하고 올해 말에 완수해야 한다.

(후략)

(1) 119-2, 22, 2, 제12호

츠노다 신이치(角田信一)의 자필공술(1954년 7월 22일)

1. 토벌행동 :

1939년 2월, 길림성 화전현 경무과 경위보로서 항일연군 제1로군 양정우 장군부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나는 화전현 카와무라(河村) 공작대 부관의 신분으로 대장 등 300명 대원과 함께 화전현 제8구를 진공하였다. 현지에 도착한 후 통화성 도미토리(富森) 공작대(정빈대(程斌隊))와 연합하여 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한 고지에서 제1로군 약 100명을 발견하였다. 나는 도미토리부대와 서로 배합하여 직접 카와무라부대의 침병소대를 지휘하여 약 2시간의 추격전을 벌여 항일군전사 7명을 사살하였다.

1940년 1월 길림성 화전현에서 경위로 있을 때, 화전현 토리하타(鳥烟)경찰대대부(附)의 신분으로 대원 400명을 지휘하여 화전현 제4구의 왕가점(王家店)에서 서북차(西北岔)를 향해 진공하던 중, 어느 산림에서 항일군 쌍승대(雙勝隊) 약 10명을 발견하고 나는 즉시 침병중대에 명령하여 공격을 개시하여 대대로 하여금 포위형식을 취하게 하였다. 40분간의 추격전 결과, 대장 쌍승(雙勝) 장군을 사살하였다.

1940년 4월, 길림성 화전현에서 경위로 있을 때, 나는 화전현 이에키(家城) 경찰대대부(附) 및 부관의 신분으로 이 대대의 한개 중대를 지휘하여 장춘으로부터 화전에 온 어느 중대장이 지휘하는 한개 중대의 일본군과 연합하여 화전현 제7구역을 진공하던 중, 나이핑구자(那尔轰口子) 부근 산악지대에서 항일연군(계통 상세하지 않음) 약 20여 명을 발견하고, 40분간 추격전을 진행한 결과, 항일군전사 2명을 사살하고 항일군이 사용하던 나룻배 2척을 노획하였다.

1940년 9월, 길림성 돈화현 경무과에서 경위를 담당할 때, 항일연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나는 돈화현 유(劉) 경찰중대 참모의 신분으로 이 중대를 지휘하여 돈화현 액목색 지역을 진공하였다. 이 지역 어느 곳에서 항일군 수십명을 발견하고 나는 즉시 중대를 지휘하여 공격하게 하였다. 약 20분간 교전하여 항일군 전사 4명을 사살하고, 보총 1대를 탈취하고 이 곳 항일군의 숙영지(20명좌우 거주할 수 있음) 1채를 소각하였다.

1940년 10월 초순, 길림성 돈화현 경무과에서 경위로 있을 때, 항일연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나는 돈화현 유 경찰중대 참모의 신분으로 이 중대를 지휘하여 돈화현 사하연(沙河沿) 지역을 진공하였다. 이 곳 산악지대에서 바로 이동 중이던 항일연군(계통 불명) 어느 부대 약 30명을 발견하고, 나는 즉시 공격을 개시할 것을 중대침병소대에 명령하였다. 약 20분간의 전투에서 항일군 전사 3명을 사살하고 보총 2자루, 탄약 60발을 빼앗았다.

(중략)

1941년 3월 상순 - 중순, 길림성 돈화현 경무과 경위로 있을 때, 길림성 경찰토벌대 본부장 무라이야노스케(村井矢之助)의 명을 받고 간도성 지역에서 “숙정공작”에 참가하였다. 나는 돈화현 진(陣) 경찰대대부(附) 및 참모의 신분으로 이 부대 400명의 경찰을 지휘하여 간도성 안도현을 진공하였다. 이 곳 산악지대에서 기타 침략부대와 서로 호응하여 항일연군 진한장 부대를 약 2주간 추격하여 중순에 이르러 이 항일부대를 안도현 대전자(大甸子) 교량 부근에 몰아넣어 항일부대로 하여금 교량부근에 매복해 있던 위만군부대의 습격을 당하게 한 결과, 진한장 부대 전사 30명을 사살하였다.

1941년 4월, 길림성 돈화현 경무과에서 경위로 있을 때, 나는 돈화현 진(陣) 경찰대대부(附) 및 참모의 신분으로 이 곳 경찰을 지휘하여 돈화현 사하장(沙河掌) 지역을 진공하였다. 이 곳 밀림지역에서 항일연군(계통 불명) 약 30명을 발견하고 나는 침병중대에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약 30분간의 교전 결과, 항일군 전사 2명을 사살하였다.

2. 방화죄행 :

1938년 10월부터 1940년 6월까지 나는 길림성 화전현 경찰과 경위로 있을 때 화전현 카와무라 공작대부(附) 부관, 토리하타(鳥畑)경찰대대 지휘반, 이에키(家城)경찰대대 부관, 평숙(平肅)경찰대 참모 등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항일연군을 지휘할 목적으로 화전현·돈화현·통화성 무송현·몽강현 등 지역에서 침략행동 중, 부하들로 하여금 항일연군의 주택 88채를 소각하게 하였다.

1940년 8월부터 1941년 7월까지 길림성 돈화현 경무과 경위로 있을 때, 나는 돈화현 유(劉) 경찰중대부(附), 참모, 진(陳) 경찰대대 참모의 신분으로 돈화현 및 간도성 안도현, 빈강성 삼조(三肇)지역 침략행동 중, 부하에게 명령하여 항일연군의 집 63채를 소각하게 하였다.

3. 항일애국군을 유인하여 체포한 죄행 :

1939년 4월, 길림성 화전현 경무과에서 경위로 있을 때, 화전현 경무과 특무고장 겸 특수반장 야마와키 키쿠지로우(山脇菊次郎) 경좌의 명을 받고, 유인체포공작을 목표로 길림성 경무청 특무과 사토(佐藤佐領)로부터 '음란'사진 50장을 받아 야마자키 경좌에게 넘겨주었는데, 나는 그중에서 20장을 가졌다. 카와무라공작대 부관으로 있을 때 화전현 제4구 산악지대에서 침략활동을 하던 중, 이 사진을 나무 등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놓고 이것을 항일애국군을 유인하여 체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1940년 1월, 나는 길림성 화전현 경무과 경위로 있을 때, 토리하타(鳥畑)경찰대대 지휘반의 자격으로 화전현 협피구에 주둔하고 있던 중, 중대장 평숙(平肅)경좌를 지휘하여 항일연군 쌍승 대원 1명을 유인하여 체포하였다. 이후에 매번 행동할 때마다 그를 역이용하여 길안내를 서게 하였다.

1941년 5월, 나는 길림성 돈화현 경무과에서 경위로 있을 때 돈화현 진(陳) 경찰대대 참모의 신분으로 돈화 거리에 주둔할 때 대장 진혜민(陳惠民) 경정을 지휘하여 항일연군에 대한 유인체포공작을 진행하였다. 결과 항일군 전사 중국인 부녀 3명(부 40세 좌우, 18세와 16세 딸 각각 1명)을 유인·체포하여 18세 딸을 진 경찰대대의 세키 후미요시(關文義) 경위보와 결혼시키고, 그 여동생은 진대장 집 하녀를 시키고, 그의 부모는 부대의 침략행동 길안내를 하게 하였다.

(1) 119-2, 848, 1, 제5호

무라카미 신이치(村上信一)의 자필공술(1956년 7월 13일)

화룡현 토벌작전 :

1. 토벌대 명칭 : 간도성경찰토벌대 우나미(宇波)대대 제2중대(중대장 무라카미 신이치)

2. 토벌명칭 : 동남지구치안숙정공작
3. 토벌참가시간 : 1939년 9월 하순부터 1939년 12월 하순까지.
4. 토벌대의 편성 : 중대 총 인원 75명 : 키노시타(木下)소대 27명, 나카무라(中村)소대 23명, 다카하시(高橋)소대 25명.
5. 토벌결과 : 총 68명을 살해.

내가 중대를 지휘하여 동북항일연군 및 애국인민군을 살해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밀정이 제공한 정보에 의거하여, 1939년 10월 17일 오후 10시좌우, 화룡현 삼도구에서 동북쪽으로 약 80킬로미터 (지명 상세하지 않음) 떨어진 집단부락을 중심으로 소속이 불명한 항일연군과 약 1시간 반 교전한 결과, 15명을 살해하고, 애국인민군 5명을 체포하고, 5명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심문한 다음 부하에게 총살하도록 명령하였다.

2) 밀정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 1939년 11월 11일 오전 1시경 화룡현 홍기하(紅旗河)에서 서남쪽으로 약 45킬로미터 떨어진 (지명 상세하지 않음) 산속에서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항일연군과 약 1시간 교전한 결과, 25명을 살해하고 애국인민군 8명을 체포하고, 8명의 무장을 해제하고 심문한 다음 부하에게 총살하도록 명령하였다.

3) 밀정이 제공한 정보에 의거하여 1939년 12월 오후 6시좌우, 홍기하 북쪽으로 약 24킬로미터 떨어진 산속에서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항일연군과 약 1시간 교전한 결과, 애국인민군 10명을 살해, 5명을 체포하고, 5명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심문 후 부하에게 총살하도록 명령하였다.

가옥을 소각 :

1939년 11월 27일 대대 명령에 의해 신무성(神武城)에서 토벌행동 중, 제1소대는 잡초와 목재로 덮인 가옥 2곳을 발견하고 이 집을 소각하였다.

정보 : 1939년 10월 10일부터 1939년 12월 상순 무렵까지 밀정이 보내온 정보 10여건(항일연군과 부락 인민 사이의 물자구매 상황), 매번 정보를 입수한 다음 모두 각 소대에 명령하여 토벌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대본부에 보고하게 하였다.

식량 단절 : 1939년 10월 좌우부터 1939년 12월 상순까지 화룡현 내 각 집단부락과 주둔지의 동북항일연군과의 연락을 감시하고, 식량운송공작을 단절시켰다.

노동자를 징용 : 1939년 9월 하순부터 1939년 12월 하순까지, 나의 중대는 토벌행동 중 각 집단부락의 인민을 징용하여 노역을 하게 하였다. (1) 식량 운반 600명; (2) 길안내 50명; (3) 정보원 200명; 모두 850명을 징용하였다.

1939년 9월 하순부터 1939년 12월 하순까지, 나는 간도성 경찰토벌대 우나미(宇波)대대 제2중대장으로 부하 75명을 지휘하여 동남부지역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에 반항하여 중국영토와 중국인민을 해방하기 위하여 해방운동을 진행하는 동북항일연군에 대하여 무장탄압을 함과 아울러 그 행동을 상급에 보고하였다. 또 애국운동에 필요한 식량물자운송을 단절시키는 엄중한 죄악을 저질렀다. 또 나의 부대가 참가함으로 인하여 동남부지역의 동북항일연군을 살해하는 엄중한 죄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모든 죄행을 인정한다.

명월구 경찰서토벌을 지원 :

1. 토벌대 명칭 : 연길현 무라카미(村上)경방소대.
2. 토벌 명칭 : 동남부 간도성 치안속정공작.
3. 토벌시간 : 1940년 1월 25일부터 1940년 3월 5일 사이.
4. 토벌대 편제 : 연길현 도문경찰서원 20명.
5. 토벌결과 : 교전 결과 모두 25명을 살해.

1940년 2월 14일 명월구 특수반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 나는 동북항일연군이 북방을 횡단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하여 신경중앙경찰학교 하다(多田)토벌대와 배합하여 작전하였다. 2월 15일 오전 2시경 제1분대·제2분대·제3분대는 명월구에서 남쪽으로 약 35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집결하여 분산배치를 하고 3시간의 교전을 거쳐 (시간 누계)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항일군 20명을 살해하였다.

1940년 2월 25일 오전 9시경 연길현 쿠스다(楠田)경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나는 연길현 둔전영(屯田營)집단부락에서 경비를 서다가 둔전영 북쪽으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산중에 항일연군이 있다는 성경무청 특수반의 정보를 받았다. 나는 경방대와 쿠스다 과장이 지휘하는 경방대를 집결시켜 이곳에서 약 10분간 교전한 결과,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항일연군 5명을 살해하였다.

공작지점 : 간도성 왕청현 삼차구(三岔口)경찰서(1940년 9월 천교령(天橋嶺)으로 개칭)

간도성 왕청현 삼차구경찰서장 경좌 무라카미는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해 그 죄를 인정하였다.

죄행사실 1, 서원을 지휘하여 위만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하는 죄행을 저질렀다.

치안유지법에 의거 - 정치 : 30명을 체포하여 고문과 심문을 한 다음 연길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치안유지법에 의거 - 경제 : 85명을 체포하여 고문과 심문을 한 다음 연길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일반치안유지법에 의거 - 380명을 체포하여 고문과 심문을 한 다음 연길지방검찰청에 150명을 넘겼다.

총 490명을 체포하여 연길지방검찰청에 260명을 넘겼다. 나머지 225명은 위경죄로 벌금을 내게 한 후 전부 석방하였다.

죄행사실 2) 1940년 7월 상순경 부하인 특무주임을 지휘하여 특파밀정을 삼차구 서쪽 지역에 보내 동북항일연군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한 결과, 왕청·연길현 경내의 산에서 동북항일연군 제3방면군 사령 xxx, 참모장 박득범의 거처를 발견하고 상술한 정보를 현경무과에 보고한 동시에 계속 비밀정탐을 진행하였다. 나와 신경치안부 경무사 다나카 요우지 경방과장이 지휘하는 에이(永)이사관 유인투항공작반이 함께 획책하여 부하 허(許)경위에게 명하여 관할구역 내 삼차구에 거주하는 외팔 조선인을 이용하여 밀정으로 삼아 물자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박득범에게 접근하게 하였다. 선후로 여러 차례 박득범의 당직을 통해 물자를 공급하였다. 1940년 9월 중순 어느 날 오후 4시 나는 부하 허경위와 장(張)경위를 지휘하여 춘양(春陽)신선대(투항한 군경인원) 10명과 에이(永)이사관이 지휘하는 4명과 함께 왕청·연길현 부근, 삼차구 서쪽으로 8킬로미터 떨어진 산 정상에 있는 돌집을 돌연 습격한 결과, 한창 잠자고 있던 박득범 이하 5명을 체포하였다.

상술한 모략수단으로 동북항일연군에게 끼친 피해 : (1) 동북항일연군의 동변도, 동남부지역 항일작전도를 노획; (2) 약간의 수류탄; (3) 솜옷 30벌, 솜신 30결레.

죄행사실 3) 1940년 8월 상순, 관할구역 내 각종 정보를 종합하고 다케시타(竹下)특무주임을 지휘하

여 특수반원을 밀파하여 삼차구 북쪽 산중에서 동북항일연군의 행동을 정탐하게 하였다. 1940년 10월 상순, 항일연군이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 삼차구 북쪽으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산중에서 숲 굽는 작은 집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한편으로 상술한 정보를 현경무과에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정찰하였다. 왕청현협화회 야츠나기(松崎)사무장이 경찰서에 와서 반드시 유인하여 체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나도 찬성을 표시하고 야츠나기와 함께 획책하였다. 백초구(百草溝)에 거주하는 조선인 부부를 위장시켜 숲 굽는 작은 집에 잠입시키고, 이 부부를 이용하여 야츠나기가 제공한 물자를 두 번 동북항일연군에게 공급하는 것을 미끼로 접근하였다. 1940년 10월 14일 경, 이 위장 숲 굽는 부부로부터 얻은 정보 : 항일연군 이용운(李龍云)이 겨울 솜옷을 구입하기 위해 10월 20일 점심에 오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즉시 야츠나기 현사무장과 연락하여 상술한 물자를 구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기회로 애국자를 체포하려 하였다. 나는 부하 특무계 김(金)경위를 숲 굽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이 지역에 몰래 들어가게 하였다. 10월 20일 오전 10시, 또 춘양신선대 5명과 야츠나기가 지휘하는 도(陶) 등 4명, 모두 10명이 위장하고 숲 굽는 작은 집 주위에 잠복하여 기회를 기다렸다. 애국자 이씨는 상술한 모략을 모르고 물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약속한 시간에 숲 굽는 작은 집에 와서 물건을 넘겨받을 때 이미 자기가 곧 체포되리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그가 작은 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돌아가는 중, 춘양신선대가 사격하여 동북항일연군 이용운 애국자를 사살하였다.

최행사실 4) 1940년 7월 상순경 애국인민군 3명은 관할구역 내 춘양역에서 남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산속에서 선후로 3차례 집회를 가졌다. 춘양분주소의 보고에 근거하여 나는 부하 장경위가 지휘하는 춘양신선대에 명령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1940년 8월 30일 오전 10시경 왕청·영안현 부근에서 그들과 교전하여 3명의 애국자를 사살하였다.

(중략)

최행사실 6) 1940년 10월 상순경 길림 고바야시(小林)부대(무라카미·다카하시·히로이시(廣石)·츠츠이(筒井) 각 중대)와 통화성 경무청장 키시타니 류이치로가 지휘하는 약 80명 좌우의 경찰토벌대가 경찰서에 왔는데 나는 아래의 토벌행동을 협조한 적이 있다.

(1) 천교령 경찰서 서장실과 경무실, 보안실을 고바야시부대에 빌려주어 대본부로 사용하게 하였다. (경찰사무를 경찰기숙사에서 처리하게 하였다.)

(2) 상술한 부대에 경비전화와 식량창고를 빌려주었다.

(3) 삼차구 만군병영을 통화성 키시타니(岸谷)경찰토벌대에 빌려주었다.

(4) 1940년 10월 5일 좌우, 통화성경찰토벌대가 왕청·영안현 부근을 토벌할 때 나는 부하에게 명령하여 춘양촌 공촌(公村)에 위탁하여 배추 두 수레를 구매하게 하였다.

(5) 두 부대에 관할구역 내의 모든 정보를 보고하였다.

(6) 1940년 10월 상순부터 1940년 11월 상순까지 기간에 고바야시 대좌의 명에 의해 천교령 일본인 소학교 내에서 3차례 관할구역 내의 별채업자, 영림서 임직원, 관할구내 유지들이 참가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들이 고바야시 대좌의 행정과 정보공작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최행사실 7) 1941년 1월 10일경, 관할구역 내 동북항일연군의 각종 정보를 종합하여 항일연군의 주력 두 부분으로 분산된 것을 알아냈다. 일부는 삼차구 북쪽 산중 및 왕청·훈춘현 경내에 있고, 다른 일

부는 영안현 경내로 이동 중이었다. 나는 이 정보를 고바야시 부대에 알리고 현 경무과에 보고하였다.

상술한 정보에 의해 고바야시 부대가 있던 왕청·영안현 경내의 키시타니 경찰토벌대는 1941년 2월 상순, 목단강 경박호 구역에서 항일연군과 교전하여 최현 이하 30명을 사살하였다.

(중략)

죄행사실 9) 1940년 11월 상순, 1개월의 시간을 정하고, 춘양촌 지역의 각 집단부락 토성 밖에 높이 약 5미터의 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집단부락 경비를 강화하여 동북항일연군과 부락의 연락을 단절시켰다.

죄행사실 10) 1940년 10월 상순부터 12월 하순까지, 나와 삼차구 만선적식공사는 함께 획책하여 조선이민 약 1천 명을 목단강·간도성 경내에 이주시키고 그들을 이용하여 동북항일연군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죄행사실 11) 나는 삼차구 경찰서장으로 있는 기간에 부하에게 명령하여 동북항일연군 한인화(韓仁和)와 부하 손희성(孫喜成)(구체적인 시간과 지점은 상세하지 않음)을 유인하여 체포하고, 그를 역이용하여 특무공작을 하게 하였는데 춘양신선대에 편입시켜 토벌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죄행사실 12) 춘양신선대는 투항자·퇴역군경으로 구성된 것으로 원래 삼차구경찰서 대리서장 기무라(木村) 경위가 넘겨준 것이다. 내가 접수한 후 그들의 봉급을 경찰서 경비로 지불하고 직업자위단으로 삼았다. 서원이 부족할 때는 그들로 관할구역내의 경계를 보충하고 경찰토벌대의 기준으로 대우하였다. 늘 그들을 이용하여 동북항일연군 및 애국인민을 목표로 본서 장경위의 지휘를 받으며 모략토벌 공작을 진행하게 하였다.

죄행사실 13) 나는 관할구역 내의 춘양촌 8개 집단부락에서 각 부락마다 10명의 자위단원을 징용하여 관련 분주소에 배속시켜 밤낮 경비와 정보 수집을 담당하게 하고, 이 자위단의 비용은 각 소속 부락에서 내게 하였는데 부락으로 하여금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중략)

죄행사실 16) 1940년 4월부터 1941년 4월까지 나는 삼차구 경찰서장을 담당하고 있던 기간에 관할구역 내에서 일본제국주의 무장부대 일본군의 토벌로 동북항일연군 15명을 사살하고 100명을 체포하였는데 이 모든 죄행을 인정한다.

(1) 119-2, 572, 1, 제5호

사토 후쿠지(佐藤福次)의 자필공술(1954년 8월 13일)

1940년 4월부터 6월까지 나자구(羅子溝)경찰서는 항일연군과 인민의 연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의 평화적 인민, 조선족 평화적 인민 1만 5천 명을 동원하여 모든 집단부락 경비시설을 강화하고 보수하였다. 이 죄행은 인민들로 하여금 아래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1) 1만 5천 명을 3개월간 무상으로 노동하게 하였다. (2) 깊이 3미터, 너비 3미터, 길이 10킬로미터의 도랑을 파고, 높이 2미터, 길이 약 10킬로미터의 토성을 수축하였다. (3) 길이 10킬로미터 나무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작은 원형 목재 2만 그루를 벌채하였다. 늘 각 부락에 명령하여 경비도로 공사를 하고 인민을 노역시켰다. 항일연군의 식량통로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모든 관할구역 내 부락의 식량을 강제로 나자구에 집결시켜 3일에 한 번씩 분배하였다. 이러한 죄행은 내가 서장을 협조하여 모든 경찰서원을 지휘하여 인민

을 억압하여 범한 것이다.

1940년 4월부터 1941년 3월까지 나는 특수반원 15명을 지휘하여 중국인 20명을 정보원(밀정)으로 고용하여 항일연군의 활동상황을 정탐한 결과, 1941년 2월 한인화 장군이 이끄는 20명 좌우의 항일연군을 살해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당시, 항일연군의 활동정보 약 50건을 수집하여 상급에 보고함과 아울러 토벌대를 인도하여 항일연군을 공격하였다.

1940년 5월, 나는 연길에서 위간도성 경무청이 소집한 전체 간도성 특무주임, 특수반장회의에 참가하였다. 같은 달, 나자구경찰서장 후지오 에이지(藤尾映次)의 대리인 왕청공서에서 열린 위왕청현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하였다.

1940년 4월부터 1941년 3월 사이, 나는 위나자구경찰서특수반을 지휘하여 나자구 및 금창(金蒼)·북황령(北荒嶺)·십리평(十里坪) 부근의 산중에서 항일과 관련이 있는 인민 100명좌우를 체포하였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1940년 4월·5월·6월 3개월 기간에 금창·북황령·십리평 부근 산속에서 약 10명을 체포·감금·고문 이후 5명을 위왕청현특수반에 넘겨 1개월간 감금시킨 다음 석방하였다. 그 5명에 대한 고문은 내가 직접 진행하였다.

2. 1940년 7월·8월·9월 3개월 기간에 나자구 부근 산속에서 60명을 체포하여 감금하고 고문한 다음, 5명을 위왕청현특수반에 넘기고, 기타 55명을 약 1개월 뒤 석방하였다. 그 5명에 대한 고문은 내가 직접 진행한 것이다.

3. 1940년 10·11월·12월 기간에 노흑산(老黑山)현 경내, 황니하자(黃泥河子) 산속에서 21명을 체포하여 감금하고 고문한 다음, 약 1개월 뒤 석방하였다.

4. 1941년 1월·2월·3월 기간에 나자구 북쪽, 노흑산, 황니하자 산속에서 9명을 체포하고 약 1개월간 감금·고문한 다음 석방하였다.

위왕청현특수반에 넘긴 10명의 피해자는 이듬해 3월까지 석방되었는지 그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1940년 4월부터 1941년 3월 기간에 나는 나자구경찰서특수반을 지휘하여 항일연군 및 항일과 관련이 있는 인민의 가옥 약 40채를 소각하였는데 그 대략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1940년 4월·5월·6월 기간에 금창·북황령·십리평 부근 산속에서 5채를 소각하였는데 그중 1개의 방은 약 2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방화현장부근에서 보총 1자루, 보총 탄알 5발 및 기타 식량과 물품을 수색하였다. 그중 한 가옥은 내가 방화하여 소각한 것이다.

2. 1940년 7·8·9월 사이 나자구 부근 산속에서 3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집 20채를 소각한 결과 보총탄알 20발을 약탈하였다.

3. 1940년 10·11·12월 사이, 사도하자(四道河子)·노모저하(老母猪河)·노흑산현 부근 산속에서 3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집 10채를 소각하고 수색한 결과 보총 1자루, 보총탄알 10발, 식염 등을 약탈하였는데 그중 2채는 내가 방화한 것이다.

4. 1941년 1·2·3월 기간에 노흑산현·나자구 북쪽 및 황니하자 산속에서 5명이 거주할 수 있는 집 5채를 소각하였는데 그중 1채는 내가 방화한 것이다.

5. 1940년 5월 나자구촌 삼도하자 집단부락의 경찰분주소가 항일연군의 정의로운 반격을 받자 나와

후지오 서장은 함께 서원 10명, 자위단 5명을 지휘하여 출동하여 지원하였다. 결과 삼도하자 둔장(屯長)의 집에서 항일연군을 위해 식량을 운반해온 조선족 인민 5명을 심문하여 항일군의 조직, 활동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심문당한 자들은 그날 즉시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6. 1940년 6월, 위나자구경찰서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평화적인 인민을 강제로 등록시키고 주민증을 발급하였다. 이는 항일군을 수사·체포하기 위한 반인민적 죄행인바, 내가 후지오 서장을 협조하여 전체 서원을 독려하면서 진행한 것이다.

7. 1940년 8월 연길에서 소집된 위간도성 전체특수반장회의에 참석하였다.

8. 1940년 7월 나는 특수반원에게 명령하여 노흑산현 및 황니하자 부근에서 노흑산철도공사현장을 이탈한 중국노동자 10명을 체포하여 약 10일간 감금하고 심문 후 노흑산공정현장을 맡은 청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9. 1940년 8월 나는 특수반원에게 명령하여 나자구촌 사도하자에서 항일연군전사 1명을 강제로 체포하여 보총 1자루, 탄알 10발을 노획하고, 1일간 감금하였다. 심문 후 위왕청현 특수반에 넘겼는데 이후의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 이름은 명확하지 않으나 20세 좌우의 남성으로 얼굴이 길고 눈이 크다.

(중략)

14. 1940년 10월 연길에서 소집된 위간도성 전체 특수반장회의에 참석하였다.

15. 1940년 9월 나자구촌 사도하자 경위단이 항일연군의 정의로운 반격을 받자 나와 후지오 서장은 함께 서원 10명, 자위단 10명을 지휘하여 출동하여 지원하였는데 교전은 없었다.

16. 1940년 10월 나자구촌 주가권자둔(周家圈子屯)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항일연군의 정의로운 반격을 받자 나는 서원 10명과 자위단원 5명을 지휘하여 출동하여 지원하였는데 교전은 없었다.

17. 1940년 10월 나는 위나자구경찰서 특수반원에게 명령하여 나자구촌 노모저하둔(老母猪河屯)에서 항일연군전사 2명을 체포하였다. 그날 즉시 피해자를 나자구일본헌병분견대에 넘겼다. 일본헌병대는 그들을 고문한 다음 살해하고 시체를 헌병대 부근 밭에 매장하였다.

18. 1940년 10월 나는 위간도성 경무청桂공작반을 협조하여 나자구촌 청석입자(靑石砬子) 산속에서 항일연군의 무기, 경기관총 2자루, 첩탄통 2개를 노획하였다.

19. 1940년 10월 나는 군용건초를 태운 사건을 수사한다는 빌미로 2명의 중국인을 감금하고 심문한 결과, 조선족인민의 반항행위라는 것을 알아냈다. 나자구촌 후병장구둔(后兵場溝屯) 부근 방화현장에서 조사할 때, 조선족인민 약 60명이 포위하고 반항하자 나는 한 심복경찰에게 명령하여 총을 쏘아 위협하게 하였다. 경찰서에 돌아온 후 서장 후지오에게 보고하였다. 후지오 에이지(藤尾暎次) 서장의 명령에 따라 후병장구둔장(屯長) 이하 12명을 체포·감금하고 고문한 다음 연길지방검찰청에 넘긴 결과 후병장구둔장은 1년 형, 기타 11명은 3개월 형을 받았는데 내가 집행을 선포하였다.

20. 1940년 11월 나는 위나자구특수반원에게 명령하여 황니하자 부근 산속에서 노흑산철도공사장에서 노역 중 도망한 중국인 노동자 20명을 체포하였다. 약 1개월간 감금하고 심문한 다음 보석으로 풀어주었다.

21. 1940년 11월 나는 위나자구경찰특수반원을 지휘하여 나자구촌 삼도하자 부근 산속에서 항일연군의 무기, 박격포 1문, 기관총 1정, 박격포 탄약 11발을 노획하였다.

22. 1940년 11월 나는 특수반원을 지휘하여 나자구 동쪽으로 20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마을에서 비밀 기름방을 구실로 중국의 평화적 주민 7명을 체포하고 두병 500개를 약탈하였다. 피해자들은 1개월간의 감금과 고문을 거친 다음 경제제도위반 및 ‘동남지구숙청공작’사령관의 명령을 구실로, 엄중처벌의견서를 첨부하여 연길지방검찰청에 넘겼는데 그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중략)

29. 1941년 2월 나는 특수반원의 정보에 의해 한인화 장군이 지휘하는 항일연군 20명이 나자구촌 후 병장구둔 북쪽으로 약 20킬로미터 떨어진 녕안현에서 활동한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나는 곧바로 나자구 부근에서 행동하던 통화성경찰토벌대 당(唐)부대와 문(文)부대에 통보하고 토벌대본부에 보고하였다. 결과 당부대는 상술한 지점에서 항일연군과 교전하여 한인화 장군 이하 20명을 전부 살해하였다. 나는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정보를 제공하고 토벌대를 인도하여 한(韓) 장군을 살해한 죄행을 범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이 있다.

30. 1940년 11월 나는 치안부 경무사장 시부야 사부로(澁谷三郎)로부터 특수반 죄행에 대한 공로로 상금 50원을 받았다.

31. 1941년 3월 연길에서 열린 위간도성 전체 특수반장회의 및 “동남지구숙청공작” 결속을 축하하는 열병식에 참가하여 위간도성 경무청장 이나와시로(猪苗代) 모(某)로부터 상금 20원, 상장 1장을 받았다.

(1) 119-2, 377, 1, 제5호

편자 주 : 사토 후쿠지는 당시 위간도성 왕청현 나자구 경찰서 특무주임·특수반장·경무주임·경위를 담당하였다.

맹광균(孟廣鈞) 등 12명의 공소서(1954년 7월 18일)

1939년 만력 7월 사이, 한간 위만 제8군 관할구 사령관 왕지우(王之佑)는 명령을 내려 우리 온 마을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마을 동쪽에 사각과 원형의 17무(6,000평방 척) 가량의 큰 탈곡장을 만들고, 너비 1척, 높이 8척되는 토성을 수축하고, 이 큰 탈곡장을 우리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한 식량을 모조리 집결하는데 사용하려 하였다. 이런 악랄한 방법으로 홍군의 식량 원천을 단절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고향사람들은 모두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는 수하에게 명령을 내려 때리고, 욕하고, 군도로 찌고, 냉수를 먹이는 등 악독한 수단으로 우리들을 강제로 만들게 하였다. 온 마을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런 형벌을 맛보았는데 그중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은 정덕전(丁德全)이었다. 그가 병이 있어 일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그가 홍군과 내통하고 피병을 한다고 하면서 계란만큼 굵은 큰 몽둥이로 마구 때렸는데 몽둥이가 5대나 부러질 때까지 때렸다. 정덕전은 맞아서 연속 2개월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단지 천만명중의 한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홍군의 식량원천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큰 탈곡장을 완성하자 이어서 명령을 내려 백성을 강박하여 곡식을 수확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음력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가을걷이를 한다. 가증스러운 한간은 우리에게 7월에 가을걷이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곡식이 아직 미숙하였으므로 우리는 가을걷이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때리고 욕하면서 핍박하여 강제로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1년간 고생하여 지은 미숙한 농작물을 베어 눅히게 하였다. 이런 것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어느 고향사람이 산에 갔다가 늦어지거나 혹은 일이 있으면 그들을 흥군과 내통한다는 “죄명”으로 앞잡이를 시켜 도처에서 백성을 잡았다. 사람을 잡아다가 냉수를 먹이지 않으면 고춧가루를 먹이거나 매달아 때렸는데 그들에게 이런 수단으로 시달린 인민은 부지기수이다. 그중 제일 참혹했던 것은 우리 마을 청년 최영복(崔永福) 일가 3명이다. 최영복이 병으로 아파서 산에 오르지 못하자 그들은 몽둥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려 죽였다. 그의 부인은 공포와 슬픔으로 역시 며칠 후 죽었다. 남겨진 3세가 채 안된 아이는 부양할 사람이 없어 굶어죽었다. 이런 한간은 실로 잔인무도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또 명령을 내려 온 마을의 남녀노소를 함께 큰 탈곡장에 모이게 하였다. 조금만 늦어도 매달거나, 때리고, 냉수를 먹이는 수단으로 군중을 핍박하였다. 그때 우리 마을은 총 300여 가구였는데 모두 그들의 이런 혹형을 당하였다.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잊지 못하게 하는 일은, 봉환림(逢煥林)의 부인이 임신하여 행동이 불편한데 그들은 큰 몽둥이로 그녀를 때리고 핍박하여 산에 올라가게 하였다. 당시 그녀는 매를 맞아서 유산하고 3일이 지나 곧 죽었다.

그들은 인민들과 혈육으로 맺어진 흥군을 굶어 죽이려고 큰 탈곡장을 만들고 마을 전체 7천여 무의 곡식을 사전에 베게 하였다. 우리 온 마을사람들은 아주 힘들어서 죽고, 도망하고, 이사하고, 죽지 않은 사람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해방 후에야 인민들은 겨우 머리를 들게 되었다. 이 원한은 바다와 같이 깊다. 현재 우리는 마을 전체 240가구, 839명을 대표하여 이런 한간의 죄악을 공소하고 인민정부가 인민을 위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죽은 자를 위해 복수해줄 것을 요구한다.

(1) 119-2, 1161, 1, 제7호

편자 주 : 공소인 맹광균·우덕춘(于德春)·란충국(栾忠國)·관준정(關俊亭)·조복춘(曹福春)·손금전(孫金田)·시덕방(施德芳)·국개발(鞠開發)·강문동(康文東)·허경해(許景海)·장덕부(張德富)·동명전(修明全)은 모두 통화현 6구(區) 동성촌(東成村) 농민이다.

동변도지구 일만군경 토벌 종합전과표(1939년 10월 상순~1940년 3월 하순)

실제 소멸한 비적의 수	무기 노획	식량·물품 노획	노획한 피복 및 기타	우리 측 손실
시체 유기 789	보총 868	쌀 1228석	군복류 1205	일만군경 및 기타 합계 : 전사 198, 부상 222
투항 652	보총 탄알 57,965	잡곡 11,766석	외투 59	
포로 488	권총 333	채소 15,904근	텐트 54	
합계 1929	권총 탄알 7,187	콩류 709석	양말 831	
	중기관총 1	밀가루 76자루		
	경기관총 21	소금 5.7석		
	자동보총 4	설탕 14근		
	척탄통 5	연초 418.5근		
	날창 118자루	유류 17통		
		아편 1,071량		

비고	1. 이미 체포하여 살해한 비적 수괴 : 양정우 · 쌍승 · 방진성 · 이(李)참모 · 정(丁)참모 · 임(林)참모 · 김(金)부관 · 왕장승(王長勝). 2. 투항한 주요 비적 수괴 : 위(魏)영장 · 악(岳)단장 · 압오영(壓五營) · 장(張)부관 · 장영춘(張永春) 3. 아직 소멸하지 못한 잔여 비적 수괴 : 조아범 · 진한장 · 최현 · 박득범 · 위증민 등
----	--

(1) 119-2, 1161, 1, 제23호

편자 주 : 이 표는 원 일위(日僞)의 「비적정황 및 토벌정보(匪情及討伐情報)」(편집, 발행한 기관은 상세하지 않음).

2. 양정우를 살해

노자키 모사쿠(野崎茂作)의 공술(1954년 8월 15일)

문 : 길림성토벌계획은 누가 제정한 것인가? 그 토벌목표는 어느 항일무장부대를 겨냥한 것인가?

답 : 길림성토벌계획은 1939년 8월 1일, 내가 경비과부(警備科附)를 담당했을 때 와타나베(渡邊) 경비과장과 함께 기초한 것이다. 토벌목표는 화전 · 돈화 2개 현의 항일무장부대였다. 계획에는 양정우 부대 350명, ×××부대 100명, 위증민 부대 80명, 박득범 부대 100명, 최현 부대 100명, 진한장 부대 100명 및 기타 부대 100명이 있었다. 활동범위는 주요하게 돈화 · 화전 · 반석 · 교하 · 서란 등 현이었다.

문 : 길림성토벌 조직상황은 어떠하였는가?

답 : 1939년 10월 1일 길림성토벌대본부에서 모리(森) 경무청장이 본부장(후임 무라이 야노스케) · 와타나베 마사오(渡邊政雄) · 마사 요시타로우(牧芳太郎)과 내가 구체적으로 토벌공작을 지휘하였다. 마사가 특수반을 지휘하고, 와타나베와 내가 각 토벌대를 지휘하였다. 화전 · 돈화 2개 지역에 각각 토벌본부를 설치하였다. 2개 지역에는 토벌에 참가한 경찰인원이 모두 2,850명이 있었다.

문 : 길림토벌중 항일무장부대원 및 평화적주민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가?

답 : 1939년 10월 1일부터 1940년 4월 사이, 선후로 항일연군과 몇 차례 전투를 하였다. 1940년 2월부터 20일까지 홍석립자대대 · 금주대대 · 우노키(鵜木)대대 · 토리하타(鳥畑)대대 150명과 요시모리(吉森)부대 50명을 파견하여 간도성 봉천대대 50명, 빈강부대 500명과 배합하여 길림성 · 통화성 경내에서 토벌을 진행하였다. 4차례 교전에서 양정우 장군 부하 136명을 사살하고, 보총 15자루를 노획하고, 민가 65채를 소각하였다.

1939년 12월 중하순, 아유카와(鮎川) 삼림토벌대와 협피구대대 100명, 토리하타(鳥畑)부대 100명에 명령하여 길림성 화전현 동북차 · 협피구 및 간도성 안도현 산지와 ×××장군의 항일무장부대와 3차례 교전하여 ×××장군 부하 60명을 사살하고 보총 37자루를 약탈하고 민가 20채를 소각하였다.

1939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우노키(鵜木)토벌대 100명, 봉천토벌대 200명 및 길림 · 빈강 · 사와

다(澤田) 등 부대에 명령하여 최현 장군의 항일무장부대와 약 10차례 교전한 결과, 114명을 사살하고, 보총 20자루를 약탈하고, 민가 30채를 소각하였다.

1939년 11월부터 1940년 5월 초까지 시모니시(下西)중앙경찰학교토벌대는 교하 청강(靑崗)산지 등에서 진한장 장군의 항일무장부대와 5차례 교전하여 115명을 사살하였다. 동시에 통화성 토벌대 100명이 진한장 장군부대를 경박호 부근까지 추격해 왔을 때 돈화·화전경찰토벌대에 명령하고, 내가 직접 교하경찰대 50명에게 이 토벌에 참가할 것을 명령하여 진한장 장군 부하 130명을 섬멸하였다.

1940년 2월 7일부터 4월 초까지 횡도하자경찰대 및 자위대 50명, 이시카미(石上)토벌대 50명에게 명령하여 선후로 항일무장부대 위증민의 부하와 4차례 교전하여 항일무장 120명을 사살하였다.

이번 토벌에서 화전·돈화·서란·교하·반석 등 현에서 모두 중국인민 11만 명을 노역시키고 경비도로를 70킬로미터 신축하고, 260킬로미터 경비도로를 수리하고 500개 촌락에 방어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전화선을 100킬로미터 신설하고, 200킬로미터 도로 양측 나무를 벌채하였으며, 기계양포 2천 자루, 보총 100자루를 노획하여 중국인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

이밖에 길림성토벌대본부는 화전·돈화 2개 본부의 도미무라(富村)·가토(加藤)경좌와 함께 항일무장인원의 정보 560여 건을 수집하고 길림본부, 돈화·화전특수반이 밀정을 이용해 수집한 정보는 7백건에 달한다. 이 정보들로 항일연군 304명을 체포하고, 97명을 사살하고,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토벌행동 중, 각 토벌대가 마음대로 중국인을 사용하면서 끼친 피해는 아주 많다. 그중 1940년 2월 23일 토리하타(鳥畑)부대가 식량 및 군용물자를 운반하던 중국인 4명을 살해하고 요시모리(吉森)부대는 1명을 학살하였다. 나는 이 5명의 중국인을 학살한 주요책임이 있다.

문 : 네가 지휘한 길림성토벌대가 양정우 장군을 살해한 죄악의 경과를 상세히 말하라.

답 : 1940년 1월 6일, 나는 모리(森) 경무청장을 대표하여 통화성 몽강현에서 키시타니(岸谷) 경무청장이 소집한 양정우 장군을 토벌·사살할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즉 길림성에서 출병하여 길림·통화성 경계에 도착한 다음, 양정우 장군의 항일무장부대를 통화성 경계까지 추격하여 포위·참살하는 것이었다. 회의 후 나는 화전에 돌아와 토벌에 협조할 약정을 길림토벌대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다시 토벌협조계획을 기초하였다.

2월 10일 길림토벌대에 출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봉천토벌대 500명, 빈강성토벌대 500명을 간도성과 통화성 경계에 도착하게 하고, 길림성·통화성 경계에서 나는 대포하토벌대 200명, 홍석립자토벌대 200명, 금주중원토벌대 200명, 모두 600명에게 명령을 내렸다. 또 요시모리(吉森) 토벌대 50명과 토리하타(鳥畑)토벌대 150명에게 명령하여 몽강현 내에 깊이 들어가 몽강현 서북으로 30킬로미터 떨어진 산지에서 양정우 장군부대 약 50명과 2회 교전하여 18명을 사살하고 보총 15자루를 노획하였다. 교전 이외의 행동 중, 양정우 장군 부하 68명을 사살하고, 민가 15채를 소각하였다. 길림성과 통화성 경계의 토벌행동 중, 양장군부하 30명을 사살하고 민가 20채를 소각하였다. 간도·통화성 경계의 봉천·빈강토벌대는 양장군부하 20명을 사살하고, 민가 30채를 소각함으로써 양정우 장군을 꺾박하여 부하를 거느리고 산지를 떠나 통화·몽강현성 남쪽으로 퇴각하게 하였다. 1940년 2월 23일 양정우 장군이 마침내 통화성경찰토벌대에 의해 살해되게 하였다. 이는 나의 위의 활동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문 : 길림지구 토벌 중 당신은 어떤 죄행을 범했는가?

답 : 1939년 11월 22일, 나는 액목색에 출장 갔을 때 진한장 부대 100명이 액목색 동쪽 8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을 습격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는 시모니시(下西) 중앙경찰학교토벌대 100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청강 산지 북쪽에서 1시간 교전하여 항일무장인원 5명을 사살하였다. 이상은 내가 길림토벌본부대에서 행한 주요 죄행이다.

(1) 119-2, 41, 1, 제4호

후지오카 분로쿠(藤岡文六)의 자필공술(1954년 12월 8일)

1939년 10월 중순, 나는 만주국 통화성 협화회본부 촉탁을 맡았을 때, 봉천성 안산시협화회본부 미야모토 오토지로우(宮本音次郎)를 중심으로(약 20명 일본인은 중앙본부에서 파견) 동변도토벌특별공작대를 편성하고, 길림성 길림시 노조에부대 노부에 소장이 지휘하게 하였다. 이 공작대의 임무는 선무공작이었다. 나는 공작대의 후방공작을 맡고, 물자공급과 연락을 책임졌다. 당시 통화성 무송현과 몽강현 경계에서 몽강현 경찰관 마시코(益子) 경위(일본인) 등 30명이 양정우를 체포하여 길림토벌사령부 노조에 소장에게 보내 살해하였다. (이 부분 공술은 착오가 있다. 양정우는 전사한 것이다.) 후에 수급을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35센티미터, 앞면에 유리가 있는 나무상자에 넣어 노조에 소장이 통화성장에게 보냈다. 성장은 협화회 사무장 나가이(永井)에게 명하여 양정우의 수급을 가지고 통화거리에서 선전하게 하였다. 나가이는 나에게 통화성에 가서 수급을 가져다 통화경찰관에게 보내 각 학교와 거리에서 시위하게 하였다. “반만항일사상을 가진 자는 모두 이런 끝장을 볼 것이다.”라고 선전하였다. 나는 명령에 의해 양정우의 수급을 협화회본부 직원 이씨에게 보내 4명의 경찰관을 데리고 통화거리 동서 양쪽 중국학교와 일본인학교를 향해, 또 통화거리에서 행진하면서 각각 15분간의 선전연설을 하였다.

(1) 119-2, 1109, 1, 제6호

왕지우(王之佑)의 자필공술(1954년 5월 21일)

1939년 5월 1일 나는 위만 제8군 관할구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내가 직접 만주군(偽軍)을 지휘하여 항일세력을 적대시한 시작이었다. 나는 마땅히 양정우 장군을 사살한 죄행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임명된 2개월 사이에 먼저 제8교도대를 편성하고, 또 8개현에 가서 위 1, 2, 3 혼성려 각 부대에 간 적이 있다. 위관병들에게 “성(誠)·신(慎)·근(勤)”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여 일위(日僞)에 충성하고, 반만항일세력을 적대시하는 사기를 높여주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인민에게 지은 죄행이다.

7월 초 위만군 정부의 명령을 받고 제8군구를 일본군 길장(吉長) 지역방위사령관의 관할에 귀속시켰다. 동시에 또 길장 지역방위사령관, 일본전범 노조에 쇼토쿠가 이미 제8군관할구를 접수하였다는 전보를 받았다. (그 후 그는 통화에 가서 한번 순시한 적이 있다.) 나는 주임고문 타치바나(立花) 대좌, 군사

고문 야스나가(永安) 중좌를 통하여 노조에 쇼토쿠에게 연락을 취해 통화성지역에서 양정우 등 항일세력을 목표로 하는 토벌준비를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타치바나 대좌와 함께 명령하여 제1혼성려(려장 이유평(李裕平))의 보병 6단(단장 우택보(于澤甫)), 기병 3단(단장 봉린(鳳麟))을 무송현에 집결시키고, 제2혼성려(려장 고명(高明))의 보병 2단(단장 이해징(李海澄)), 기병 4단(단장 마국동(馬國棟))을 임강현에 집결시키고, 제3혼성려(려장 왕사수(王士琇))의 기병단(단장 위전용(魏轉鏞))¹²⁾을 집안현에 집결시키고 보병 7단(단장 양춘욱(楊春煜))은 휘남·금천(金川)현에 집결; 제8교도대(대장 조진방(趙振邦))의 보병단(단장 주언유(朱彦儒)), 기병단(단장 이희재(李希才))는 통화에 집결시켜 준비하고 명령대기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다른 한 면으로 병기·군수·군의·수의 등 각 처에서 탄약·마초·군비·위생재료 등 군수품을 보충하게 하였다.

8월 중순, 일·만군경이 통화지구에서 협동하여 토벌행동에 대한 노조에 쇼토쿠의 명령을 받았다. 통화수비대 고(古)¹³⁾대대장이 지휘하는 기병8단은 먼저 칠도위자(七道歲子)(통화·집안 사이의 무인지대)를 수색한 다음, 다시 팔도강(八道江) 동쪽 지역을 수색하고; 교도기병단은 우익, 보병단은 좌익으로 통화·유하현 경계에서 시작하여 팔도강으로부터 양수하자(凉水河子)로 북진하였다. 산성진(山城鎭)수비대 대대장이 지휘하는 보병7단은 금·휘현 경계 동쪽에서 소금천(小金川)으로 들어갔다. 어느 대대장(이 이름 및 소재지는 잊어버림)이 지휘하는 기병 4단, 보병 2단은 임강(臨江) 서쪽에서 임·몽 경계 삼차악(三岔嶺)에 들어갔다. 통화현 북쪽, 몽강현 남쪽, 임강현 동쪽, 금천현 서쪽의 광활한 무인지대 변두리에서 포위태세를 취했다.

이번 행동이 취한 잔혹한 수단 : 한편으로는 항일군에 대해 병력토벌수단으로 모든 산채와 남아 있는 식량을 소각하여 그들로 하여금 핍박에 못 이겨 북으로 퇴각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을 도와 추수한다는 명의로 남에서 북으로 농민을 독촉하여 일찍 추수하게 하였다. 옥수수 등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모조리 수확하게 하고, 수확물을 집결시켜 경찰이 지키도록 하여 항일군에 한 톨도 수송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악과는 비록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채 34곳을 소각하고 더욱이는 농민들의 추수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내년엔 농사지을 수 없게 하고, 올해 식량도 연말까지만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내가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양수하자·판석구(板石溝) 각지에서 보고 들은 것이다. 10월 초 혹은 중순 각 부대는 휴식과 정돈을 하였다. 이 기간 또 제2기 행동준비를 하였다. 이번 행동계획 : 일부 일·위군경으로 남·동·서쪽에서 광활한 무인지대를 포위하여 항일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일부분 일·위군경으로 임강·통화·유하·금천으로부터 무인지대로 진입하면서 항일세력을 수색·타격함으로써 무인지대의 항일근거지를 숙청하였다. 그 실시 : 위8군관할구는 교도대 2개 단을 양수하자로부터 팔도강 연안에 남기고, 기병 8단, 기병 4단, 보병 2단, 보병 7단은 광활한 무인지대에 들어가 수색·타격 임무를 맡게 하였다.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산을 나와 서쪽으로는 용천진(龍泉鎭), 동쪽으로는 무송현으로 추격하고 또 잠시 중지하였다. 이번 악과 : 보병 2단의 1개 영은 13도양차(道陽岔)에서 양정우 장군 부하 약 50명을 만나 4-5시간 교전하여 항일군으로 하여금

12) 위전용(魏傳鏞)과 동일인임.

13) 후로미(古見)의 오기로 보임.

사상자 23명을 내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또 19도양차부근에서 이미 소각된 산채 2곳을 발견하였는데 그중 한곳에 태워진 시체 4구가 있었다. 기타 각 단·영도 발견한 산채를 모두 소각하였다. 그러나 무인지대에는 이미 사람도 연기도 없었다. 또 이때 수수쌀을 식량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식량과 술을 댄 민부의 수도 증가하여 부근 농민들의 노동력은 약 45만 명에 달하였다. 방어부대와 인민들이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인민의 물품에 피해를 주고, 인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11월 하순과 12월 초, 나는 위(僞)대신 우침징(于琛瀾)과 함께 2차례 순시하면서 이러한 악과를 직접 보거나 들었다.

12월 말부터 1940년 1월 초까지 위제1혼성려와 위제2혼성려는 려장의 인솔하에 길림지역(야스나가 고문이 반석현에서 하차하여 화전현으로 진입하는 것을 지휘)에 들어가게 하였다. 제3혼성려는 용천진·무송·휘남에 남기고, 제8교도대는 통화로 돌아가게 하였다. 1940년 1월의 어느 날(나는 음력 연말로 기억), 위려장 이유평은 이 려를 이끌고 화전·몽강 경계의 어느 산골짜기에서 양정우 장군의 항일군주력과 만나 이날 오후 3, 4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오후 2, 3시까지 격전을 벌여 항일군으로 하여금 약 30명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다. 위1려도 60여 명(부상 40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는 내가 통화에 있을 때 치른 가장 큰 한차례의 전투로서 내가 왜놈을 도와 항일세력을 공격한 가장 큰 죄행이다. 그 후 나는 또 길림·화전에 가서 이런 죄를 지은 관병들을 위문한 적이 있다. 그들은 길림경내에 남아 내가 통화를 떠날 때까지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다. 1940년 2월 어느 날(음력 정월) 통화에서 통화성경찰대대가 몽강현에서 양정우를 사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3, 4일 후, 고문부에서 후로미(古(見))대대장이 개선한 소식을 전해왔다. 그날 밤 위성장 장서한(張書翰) 등이 후로미 대대부 문 앞 차에서 양장군의 수급이 담긴 나무 상자를 내리는 것을 보았다. 다음날 아침, 후로미 대대장이 그것을 길림에 보낼 때 대대부 문 앞에서 이 영원히 기억할 모습(긴 얼굴, 넓은 이마, 짙은 눈썹, 곧은 코, 30여세)을 자세히 보았다.

나는 마땅히 그를 죽인 죄행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이 위사령관직무를 맡고 있을 때 명을 받고 양정우 장군을 적대시했던 것이다. 내가 임명된 다음의 준비행동 역시 양정우 장군이 지휘하는 항일세력을 겨냥한 것이었다. 노조에 쇼토쿠가 지휘하는 토벌이 없었더라도 역시 양정우 장군을 공격하였을 것이다. 더욱이는 8월 이후의 행동에서 우선 식량을 단절시키는 악랄한 수단을 채용하였다. 항일군의 식량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백성들의 생활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제2기 무인지대를 수색하는 행동 중에서 위2려의 부대는 양장군부하에 피해를 준 적이 있으며, 양장군이 핍박에 못 이겨 통화·길림 경계의 산림에서 퇴각하게 하였다. 나는 또 위1, 2려의 병력을 길림지역에 파견하여 1940년 1월 어느 날 화·몽 경계에서 양장군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었다. 양장군이 부득이 모든 것을 잃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 불행히 조난을 당하게 하였다. 나는 비록 직접 양장군을 살해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는 나로 인해 죽었다. 양장군의 이름은 천고에 길이 남을 것이며 나의 더러운 이름은 대대로 타매를 받을 것이다. 나는 인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싶다. 이뿐만 아니라 동변도의 풍부한 자원은 이때로부터 왜놈들의 수많은 약탈을 당하였으며, 동변도의 인민들은 아주 많은 재난을 당하였다. 그 후 위1, 2려가 길림경내에서 저지른 죄악은 모두 나의 죄행이다.

(1) 119-2, 1161, 3, 제18호

안동성 경무청 특무과장 타나베 노보로(田邊澄)가 관전현(寬甸縣) 경무과 특무고장에게
보낸 서신(1940년 3월 5일 안동경특비수(安東警特秘收) 제1173호)

노조에토벌대 경찰부장이 양정우를 사살한데 관한 경무청장의 보고를 받고 이에 특히 통보한다.

2월 23일 15시쯤 보안촌(保安村)(몽강 이남 3킬로미터) 촌민 조정희(趙廷喜) 등 4명은 보안촌 이남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적 한사람이 식량을 구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몽강현성 경찰서에 보고하였다. 촌민의 보고에 의해 그 용모특징과 복장으로 볼 때 양정우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분위기가 즉시 긴장해졌다. 당시 토벌대는 남구작명(南區作命) 제51호에 근거하여 각 부대가 즉시 출동하였다. 잠시 몽강 경비임무를 맡은 경찰대본부 5명과 당(唐) 경찰대 10명, 모두 15명으로 성(省) 특수반을 구성하여 본부원 니시카니(西谷)경좌가 책임지고 지휘하게 하고 15시 10분에 먼저 출발하였다. 다음 또 당(唐)·정(程)·최(崔) 등 각 부대의 부분 인원과 일군경비소대를 소집하고 급히 현장에 파견하였다. 16시 몽강 동쪽 표고 703, 서쪽으로 2킬로미터 떨어진 고지에서 이 비적을 발견하고 즉시 그를 추격하여 삼도몽강하(三道濛江河)에 이르렀다. 16시 30분, 몽강현성 서남으로 5킬로미터 떨어진 표고(標高) 490 부근에서 그를 사살하였다. 그 시체는 전 양정우 부하 여러 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하고 확실히 양정우가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로써 남만지역에서 9년 남짓 창궐하게 활동하며 문화의 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주던 양사령은 1940년 2월 23일 영원히 종적을 감추었다.

(하략)

(2) 2056, 122

양정우를 사살한 경과에 대한 통화성 경무청장의 보고
(1940년 3월 6일 통화경특밀(通化警特密) 제1167호)

통화성경찰대는 1940년 2월 23일 16시 30분 몽강현성 서남 6킬로미터 떨어진 490고지 부근에서 공산비적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총사령 양정우를 사살하였다.

사살한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1. 전투시간 :

1940년 2월 23일 16시 경부터 16시 30분.

2. 전투장소 :

통화성 몽강현성 서남으로 6킬로미터 떨어진 490고지 부근의 삼도몽강 강변.

3. 전투에 참가한 부대 :

통화성 경찰본부 인원 니시타니 경좌 등 21명.

4. 전투전의 상황 :

1940년 상순, 양비적은 아직 200명을 가진 비적단체의 주력이었다. 그 후, 일·만군경 각 토벌대와 비행기의 끊임없는 맹렬한 공격으로 부단히 사상자가 발생하여 도망자와 투항자가 나타났다. 2월 2일 쯘, 양정우 등 16명, 10일 쯘 12명, 2월 15일에는 겨우 8명만 남았으나 저항의지는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다. 붕괴직전이었으나 여전히 완강하게 비적단체를 재건하려 시도하였다.

2월 15일 우리 경찰대 최(최위봉崔胃峰)·정(정무程武)·당(당진동唐振東)·최(최지崔志)대대 및 오근정자(五斤頂子)삼립대의 주력이 맹렬히 공격하였는데 최대대장·이토(伊藤)경위 등 많은 희생자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철저한 추격을 진행하였다. 정·최·당 각 대대 중에서 각각 일부분 부대를 선발하여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또 비적의 종적을 찾아 추격하였다. 16일 오전 3시 30분 경 몽강현 대북산촌(大北山村)에서 동쪽으로 3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추격하였다. 당시 양정우는 이미 부상당해 도망치는 하얀 눈 위에 점점의 혈흔이 있었다.

2월 18일 몽강현 동쪽 6킬로미터 떨어진 대동구촌(大東溝村) 부근에서 2명의 양정우 측근이 촌민에게서 식량을 구하려고 하였다. 대동구경방대 및 특수반은 즉시 출동하여 그들을 사살하였다. 남은 사람은 양정우 한사람뿐이었다. 양비적에 대한 수사는 이미 극히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양비적한테 식량이 결핍하다는 것을 알고 토벌대는 그 식량원천을 단절하기 위하여 몽강현 각 촌의 교통을 단절시키고 촌민들이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 식량을 휴대하지 않은 나무꾼을 산으로 들어가게 하여 양정우를 산에서 끌어내도록 연속 며칠이나 갖은 방법을 취해도 결과가 없었다.

5. 정보를 입수한 상황 :

2월 23일 몽강현 제1구 보안촌 주민 조정희·손장춘(孫長春)·신순례(辛順禮)·지덕순(遲德順) 등 4명은 보안촌 서남쪽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할 때 1명의 비적(키 5척 7촌, 얼굴 길이 8촌, 큰 눈, 군복 같은 복장과 조선 신발)을 발견하였다. 그 비적은 조씨 등에게 강제로 밀가루 2자루와 솜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23일 15시 그들은 몽강현성 경찰서에 이 상황을 보고하였다.

6. 작전 :

상술한 보고를 받고 경찰서본부대장은 나타난 비적의 용모로 보아 양정우가 틀림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마침 각 경찰대는 아직 조무(朝撫)도로 이북 지역에서 양정우를 추격하고 있었는데 신속하게 본부 니시타니 경좌 등 21명을 현장에 파견하였다.

7. 교전상황 :

본부 인원 21명은 15시 10분 본부를 출발하여 보안촌 남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차한 다음 정보를 보내온 보안촌 주민 조정희를 길안내로 삼아 삼도몽강을 따라 743고지 서쪽 고지를 향해 급히 전진하였다.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산속에 있는 작은 집을 발견하였다. (농민이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지은 집) 길 안내자는 비적이 강요한 지점은 여기서 동남쪽으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다. 또 그곳에서 동남으로 전진하여 약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는 2개 부분으로 나뉘어 좌우 두 길로 포위태세를 취하고 전진하면서 연락을 유지하였다. 우익 부대는 전진하여 약 100미터 떨어진 지점 남쪽 비탈에서 비적이 최근까지 사용하던 산채(동굴)를 발견하였다. 이때 부대는 발자국을 찾으려 전진하여 아주 빨리 비적을 발견하고 즉시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전투를 벌였다. 비적은

토벌대가 온 것을 발견하고 밀림(현지 수목은 수년 전에 이미 벌채하였지만 지름 5촌 좌우되는 작은 나무가 뺨뺨하여 50미터 밖에서는 명중하기 어려웠다.)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응전하면서 도망하였다. 그러나 유리한 지형을 점령한 토벌대는 두 갈래 부대가 협력하여 약 20여 분간의 교전을 거쳐 좌우 두 부대가 협공하여 490고지에서 그를 사살하였다. 시간은 16시 30분이었다.

그동안 토벌대는 수차례 느슨하게 공격하면서 그를 권고하여 투항시키려 하였으나 추호도 투항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두 손에 모젤 1호 권총과 고이특식(考爾特式) 2호 권총(총의 종류와 번호는 사살 후 조사하였음)을 들고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때문에 부득이 맹렬하게 공격하여 사살하였다. 용모 등으로 보아 양정우가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시체를 거두어 몽강현성으로 실어갔다.

8. 시체를 검사한 상황 및 결과 :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살당한 비적이 아주 양정우를 닮아서 그 시체를 수습한 뒤, 경찰대대장과 대원(원래 양씨의 부하), 최근 투항한 장수봉(張秀峰) 및 현장 부근에 있던 사람이 관찰한 결과 양정우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휴대한 물품은 아래와 같다.

- 모젤권총 1자루, 탄알 160발.
- 고이특식 2호 권총 1자루, 탄알 30발.
- 고이특식 3호 권총 1자루, 탄알 40발.
- 현금 6,660원(휴대한 탄띠속에 있었음).
- 필기책 4권.
- 선전문 원고 1절.
- 볼펜 2자루.
- 시계 1개.

(32) 14-5, 1

통화성 경무청장 키시타니 류이치로(岸谷隆一郎)가 흥안복성 경무청장에게 보낸 서신 (1940년 3월 12일 통성경특밀(通省警特密) 제1503호)

통화성공서 홍보위원회는 성 내 일반 민중과 비적단체에 이번 양정우 피살을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동판사진이 찍힌 선전문 20만장을 제작하여 관할구역 내 각 현의 주요지점에 뿌리거나 붙이고, 비행기를 이용하여 관할구역 내 각 현에 뿌린다.

이밖에 공비가 출몰하는 치안이 불량한 지역과 요충지에 사진이 찍힌 대형 선전문을 붙여 모든 공비가 알도록 한다.

(2) 2506, 162

편자 주 : '홍보(弘報)'는 일본어이다. 즉 일위홍보부(日僞弘報部)은 선전을 진행하거나 정보특무 활동에 종사하였음.

진중일지(陳中日誌)

1940년 1월 1일

양비적 400명이 임강현 대양차(大陽岔) 동북으로 15킬로미터 떨어진 백색지구에 나타나 일본군 및 곡(曲)경찰대대와 약 1시간 교전한 끝에 도망하였다.

비적단체 피해 : 시체 11구, 보총 1자루, 탄알 380발, 권총 3자루, 기타 대량의 물품을 버림.

1940년 1월 4일

일본군과 당(唐)·양(梁)경찰대대는 임강현 삼차자 동쪽으로 23킬로미터 떨어진 1285고지에서 양비적 200명과 1시간 교전하여 이 비적단체가 서쪽으로 도망하게 하였다.

비적단체 피해 : 시체도구, 보총 2자루, 탄알 69발.

1940년 1월 9일

정(程)경찰대대는 양(楊)비적의 주력을 추격하다가 몽강현 서강(西崗)에서 양비적 주력 300명과 만나 6시간 교전하여 비적단체가 북쪽으로 도망하게 하였다.

비적단체 피해 : 시체 6구, 포로 1명, 권총 1자루, 비수 1자루, 탄알 705발, 수류탄 1개, 약상자 1개, 부상병 여러 명.

1940년 1월 28일

정(程)·곡(曲)·신(申)경찰대대는 양비적을 추격·수색하는 과정에 평강(平崗)에서 양비적 주력 200명을 발견하고 50분간 교전하였는데 비적단체는 도망하였다.

비적단체 피해 : 시체 7구, 부상병 20명, 보총 20자루, 탄알 500발, 권총 2자루, 탄알 15발, 수류탄 2개, 비수 2자루, 텐트 1개, 기타 대량의 물품.

1940년 2월 2일

정(程)·범(範)경찰대대는 몽강현 나이굉(那爾轟) 서쪽으로 3킬로미터 떨어진 633고지에서 양비적 주력 약 100명을 발견하고 2시간 30분 교전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범(範)경찰대대가 362고지까지 추격하였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다.

비적단체 손실 : 시체 2구, 용역노동자 14명, 말 3필, 비수 1자루, 외투 1벌, 기타 대량의 물품.

1940년 2월 2일

신(申)·곡(曲)경찰대대는 동쪽으로 전진하면서 비적단체의 종적을 수색하다가 일본군 와타나베(渡邊) 부대와 함께 나이굉 서북에서 식사를 할 때 남쪽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들었다. 현장에 달려가 양비적 주력을 발견하고 20분간 교전하여 비적단체를 서쪽으로 격퇴시켰다.

비적단체 피해 : 시체 2구, 44식 마창(馬槍) 1자루, 탄알 170발, 모젤권총 2자루, 탄알 15발, 11식 경기관총 1정.

1940년 2월 5일

몽강현 627, 532고지 일대를 소탕.

1940년 2월 18일

몽강현 대동구(大東溝) 동북으로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비적 2명을 발견했다는 주민의 보고에 의해 특수지문반장과 분주소원이 출동하여 30분간 교전하여 비적을 사살하였다.

시체 2구(양비적과 함께 행동한 자), 모젤권총 3자루, 탄알 150발, 탄띠 2개, 시계 1개, 만년필 1자루, 하모니카 등.

1940년 2월 21일

몽강현성 북쪽 대사하(大沙河) 부근에서 일본군은 양비적 부하 20여 명을 발견하고 1시간 교전하여 격퇴시켰다.

적은 시체 1구, 보총 1자루, 탄알 30발을 버렸다.

1940년 2월 22일

일본군비행기는 몽강현 대우구(大牛溝) 부근 고지에서 비적을 발견하고 비행기에서 사격을 퍼부어 비적으로 하여금 사망 3명, 부상 5명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1940년 2월 23일

16시 30분 보안촌 주민이 몽강현성 서쪽으로 6킬로미터 떨어진 490고지에서 양정우와 비슷한 사람이 식량을 강탈하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경찰본부원(특수반, 지문반을 포함)은 즉시 출동하여 20분간 교전하여 비적 두목 양정우를 사살하였다.

양정우 전사(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사령)

노획물품 :

모젤 1호 권총 1자루, 탄알 160발.

고이특식 2호 권총 1자루, 탄알 30발.

고이특식 3호 권총 1자루, 탄알 40발.

현금 6,660원.

시계 1개, 만년필 2자루, 연필 1자루, 기타 물품 등.

(42) 3-1, 86

편자 주 : 이 문건은 내부 출판물로서, 원래 책은 표지가 없기 때문에 서명이 상세하지 않다. 길면 아래에 “1940년 8월 1일”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1940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만주국 경찰협회 통화지부 키시타니 류이치로”라고 찍혀 있다. 이때 키시타니 류이치로는 통화성 경무청장을 맡고 있었다.

양정우를 토벌한 데 관한 좌담회(1940년 3월 31일)

머리말

지난 수년간, 만주국치안의 암적 존재로, 치안부대신이 1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던 비적 수괴 양정우는 이미 우리 일·만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기자는 이 첩보를 접한 후 주야로 달려 현장에 도착하였다.

통화성 통화현 마시코(益子) 경위보 집에서 이번 토벌 중 대공을 세운 인물을 방문하였다. 금방 채 10분도 이야기 하지 못했는데 경무청에서 파견한 1명의 심부름꾼이 뛰어 들어와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며 말했다. “어제 밤, 유하현 삼원포(三源浦) 부근에서 양정우부하로 보이는 몇 명의 잔여비적을 발견하였다. 전체 대원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십니다!” 기자는 속으로 겨우 약정한 취재인데 또 헛수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이때 본부에서 전화가 왔다. “『협화』 잡지의 기자들은 같이 현장에 올 수 없나? 현장에서 그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전화는 원래 키시타니 류이치로가 걸어온 것이었다. 기자는 미칠 지경으로 기빠서 토벌대의 트럭을 타고 삼원포로 달렸다.

그날 저녁 무렵 토벌대경비가 삼엄한 삼원포촌 토벌대본부 경찰서의 한 방에서 의외로 예상하지 못한 좌담회가 열리고 있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키시타니 류이치로 : 통화성 경무청장, 경찰대 본부장, 원 만철사원.

마시코 타다오(益子理雄) : 통화성 경무청 경위보, 대망(大罔) 경위와 동시에 양정우를 토벌하는 전투에서 대공을 세움. 양정우와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와 최후의 결전을 벌임.

오가타 타다오(緒方忠雄) : 통화성 경무청 근무경좌, 투항한 비적에 대한 교육을 책임짐. 공로가 탁월함.

고타카 도시아키(古高敏昭) : 양비적의 근거지 통화성 유하현 부현장.

정빈(程斌)대대장 : 원래 양정우 부하로서 참모를 맡음. 2년 전에 투항하고 현재 토벌대 대대장을 맡고 있음.

왕(王)·신(申)대대장 : 2인은 모두 양정우 부하로서 이미 투항해 토벌대 대대장을 맡고 있음.

기타 : 호(胡)공작반장·이(李)참모장·윤(尹)참모장 3인은 모두 전 양정우 부하였다.

본간행물 기자 : 미야모토(宮本)

대 두목 양정우

기자 : 여러분께서 다망하신 가운데 이번 모임에 참석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키시타니 : 지금 비적토벌을 하고 있는 시기에 비적을 토벌할 데 관한 좌담회가 소집된 것은 색다르지 않습니까?

고타카 :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기자 : 먼저 양정우의 이력과 용모부터 얘기합시다!

키시타니 : 이 면에서 정(程)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자네 원래 양사령의 측근이지 않았나?

정 : (머리를 흔들며) 농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양비적의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압니다.
 기자 : 나이는 얼마나 되지요?
 정 : 올해 40세인데 산동성 사람입니다. 키가 커서 거의 6척이나 됩니다. 힘이 아주 세고, 빨리 달립니다.
 마시코 : 무예가 높을 뿐 아니라 학문도 있고, 대학을 졸업했으며, 2천 명의 부하를 거느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시타니 : 아무튼 동북항일연군총사령, 중국공산당 제1로군 제1방면군 참모라는 대단한 인물이다.
 기자 : 그의 전성기는 대략 언제였는지요?
 마시코 : 그는 1935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중국공산당 특파원의 신분으로 하얼빈(哈爾濱)에 거주하면서 길림성 반석현의 조선족 공산당원과 결탁하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아직 통일되지 못해서 아무도 이 단체를 지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자 : 그럼 양정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당수로 되었는데는요?
 마시코 : 그렇습니다. 그의 무력과 학식은 바로 대중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체가 형성되고 이 단체도 적화되었습니다.
 1936~37년 전후는 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천 명의 부하를 거느렸는데 신변에는 언제나 20, 30정의 기관총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의리기구까지 있었는데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그는 간도·안동·통화·길림·봉천 등 5개 성 30개 현을 넘나들었습니다.
 (중략)

‘빈대’ 전술

고타카 : 미야모토 군! 키시타니 대장각하의 ‘빈대’전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자 : 아니,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시코 :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대처럼 물고 놓지 않는 전술입니다. 일단 물기만 하면 곧 독하게 달라붙어서 잡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청장각하가 다년간 비적토벌에 종사한 귀중한 경험에 의해 창조한 전술입니다. 이번에 양정우는 기진맥진했는데 바로 이 ‘빈대’ 전술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빈대’는 사실 바로 우리 이 사람들입니다.
 오가타 : 이 ‘빈대’는 진짜 빈대보다 아주 완강합니다.
 키시타니 : 이 ‘빈대’는 또 무서운 속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수염을 기르고 위풍당당한 사나이들입니다.
 마시코 : 총적으로 우리는 ‘빈대’처럼 양정우 뒤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의 전성기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생명을 무릅쓰고 추격을 늦추지 않은 것은 올해 1월 상순부터였습니다. 당시 양의 세력은 이미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부하 2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본 군수비대·철도경호대와 경찰대의 계속되는 추격으로 인해 산속에서 동쪽으로 도망하고 서쪽으로 빠지고 하면서 이미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가타 : 이 200명의 비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면 우리 항공부대가 출동해야 합니다.

키시타니 : 그 번 비행사들은 아주 용감했습니다. 비행기는 거의 나뭇가지를 스칠 정도로 비행하면서 지면을 향해 사격하고 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비행기는 또 우리의 머리위에서 날면서 전진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마시코 : 그들은 비행기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따라오세요, 빨리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입니다!” 그런 연락방법은 아주 통쾌하였습니다!

오가타 : 어느 한번은 비행가 너무 낮게 날아서 비행기 날개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긴장했으나 비행기는 부러진 날개를 끌고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날아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비행기가 적의 머리위로 날아갈 때 사격하는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말로 용맹하였습니다!

오타카 : 비행기가 날아오자 비적들이 나무주위를 에워쌌다는데 정말입니까?

마시코 : 당연히 사실입니다. 모두 명중당하는 것이 두려워 황급히 나무아래에 숨었습니다. 비행기가 사람들이 숨은 쪽을 돌아 아래 사람들은 또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 다른 쪽으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무를 에워싸고 돌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밑에 모두 5, 6명이 에워싸고 돌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 수십 그루의 나무아래에 십여 그룹 사람들이 나무를 에워싸고 돌고 있었는데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비행사는 크게 웃으면서 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비적을 조롱하기 위해 비행기는 위에서 돌고 돌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후에 비행사들한테서 들은 것입니다.

오가타 : 후에 우리들이 걸어가 보니 나무마다 밑에 돌고 돈 발자국이 찍혀 있고 풀은 밟혀서 넘어지고, 눈도 단단히 밟혀있었습니다.

발자국 회의

키시타니 : 총적으로 이 비적에 대하여 일단 추적을 개시한 이상 절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조금만 늦추면 그들은 사지에서 벗어날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수포로 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철저히 추격해야 합니다. ‘빈대’처럼 물기만 하면 놓지 않고 상대에게 1분간이라도 숨 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양정우에 대한 토벌은 ‘빈대’전술의 전형적인 전례로 될 것입니다. 금방 말한바와 같이 올해 1월 상순까지 200명의 집단을 이루었던 비적은 철로경호대와 우리 경찰대 및 통화역 직원들이 일본군수비대의 지휘를 받으면서 질서 있는 연락을 취해 주야로 맹렬히 공격하여 상대로 하여금 부단히 사상자가 나타나게 하였으며, 드디어 양정우를 비롯한 16명만 남게 하였습니다. 이 기간의 고생은 실로 목필과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자 : 여러분은 피의 대가로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였는데 그중 제일 돌출한 전투를 꼽아주신다면?

정 : 아무튼 가장 어려웠던 한차례는 2월 15일의 추격입니다.

기자 : 당신도 참가하였습니까?

정 :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 최(원래 양의 부하, 후에 귀순하여 토벌대 대대장으로 됨)의 대대와 함께 부하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시코 : 그날 최의 부대는 양을 수색해 나가다가 갑자기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발자국! 모두 긴장해졌습니다. 몇 십리를 걸어온 피로도 깔끔히 사라졌습니다.

오가타 : 수색자로 말하면 발자국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일단 발자국을 발견하고 모두 에워싸고 발자국 회의를 하였습니다.

기자 : 실로 재미있는 회의입니다!

키시타니 : 눈길에 찍힌 발자국의 수, 크기와 방향 등에 근거하여 적의 대략적인 수와 이동한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적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걸어갔다 할지라도 한사람이 걸어간 것처럼 발자국을 남길 것입니다. 뒤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앞서 사람의 발자국을 밟으면서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발자국에 권위 있는 인사가 있어 그들이 눈을 밟고 지나간 뒤에 다져진 정도와 발자국의 깊이 등으로 적의 숫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시코 : 그날 비적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최는 “이 발자국을 따라 1리 반을 더 전진하면 비적을 꼭 발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즉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고타카 : 과연 발견하였습니까?

마시코 : 발견하였습니다. 완전히 놀라운 직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꿈속에서도 찾던 양정우였습니다.

기자 : 그 뒤는?

정 : 양비적은 최의 대오를 발견한 뒤,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모두 양정우를 잡으려는 신념으로 계속 추격하였습니다.

혈혼을 따라 전진

키시타니 : 그러나 남들은 말하지 않지만 이 사내대장부 최도 양정우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양정우의 옆에는 단지 2명의 부하만 남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 2명도 그가 식량 구하러 마을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빨리 달렸는데 두 손으로 나무를 헤치며 큰 폭으로 뛰어가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타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산꼭대기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양정우는 엄폐물을 이용해 맹렬하게 사격하였는데 우리도 엎드려 응전하였습니다. 이토(伊藤) 경위보는 300미터 앞에 있는 양정우를 향해 외쳤습니다. “투항해라!” 상대도 소리쳤습니다. “투항한다. 총을 쏘지 말라!” 이어서 그는 또 말하기를 “투항하기 전에 나는 할 말이 있다. 너 혼자만 와!” “좋다! 내가 곧 간다!” 이토경위보가 일어나려는 순간 또 총소리가 울렸다. “아!”하는 소리와 함께 이토가 앞으로 거꾸러졌습니다. 이어서 또 세 발 쏘았는데 모두 이토의 흉부를 명중하였다.

마시코 : 1호 모젤권총도 필경은 권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수는 그 무서운 양정우였습니다. 그 녀석은 200미터이내에서 사람 머리위에 놓인 사과를 명중할 수 있는 명사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직접 1천미터 밖에서도 명중할 수 있는 모젤권총이 있었는데 실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 : 이토가 부상당하자 최는 화가 나서 양정우를 쫓았습니다. 결과 최도 부상당하였습니다.

키시타니 : 총알이 허벅다리를 뚫었습니다. 최뿐아니라 그날 양정우를 쫓다가 그의 모젤권총에 1명이 사망(사망자는 이토가 아니다. 이토는 의외로 구명되었다.), 6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를 사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유익한 방향으로 재능을 발휘하게 하고 싶어 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와라! 그를 사살하라! 그리하여 일제히 사격하였습니다. 이 녀석은 당해내지 못하고 도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왼손이 우리에게 명중되었으나 여전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 도망하였는데 완전히 미친 듯이 도망치는 거인 같았습니다. 나중에 드디어 한 밀림에서 우리에게 걸려들었습니다. 모두 눈 위에 점점이 찍힌 혈흔을 따라 계속 그의 종적을 찾았습니다.

오가타 : 대원들은 연이어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는 양정우를 쫓다가 놓치고 기운이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15리 이상 되는 산길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한사람이 쓰러지자 마치 맹렬한 전염병이 퍼진 것처럼 도처에서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오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출발할 때 600명이던 토벌대가 아주 빨리 300명, 200명, 1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키시타니 : 그러나 우리도 추격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오를 떨어진 대원의 몸을 넘어 계속 전진하였는데 최후 한사람이 남더라고 전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15일 지나 16일 오전 2시 경 단 50명만 남았습니다. 모두 언 손으로 몇 대 남지 않은 성냥에 불을 붙이면서 필사적으로 양정우의 혈흔과 발자국을 찾았습니다. 도망치는 자는 잘도 도망치고, 쫓는 자 역시 잘도 쫓았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식량을 운송하는 트럭을 만나 겨우 살아났습니다.

기자 : 그럼, 양정우의 행방을 찾았습니까?

마시코 :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수사는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모두 확실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양정우는 단 혼자만 남은 데다 부상까지 입었고 배도 고프기 때문에 결코 놓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신이 생겼습니다.

최후의 결전

마시코 : 그날부터 또 2일이 지났습니다. 18일 몽강현성 동쪽으로 6킬로미터 떨어진 대동구 부근에서 2명의 양정우 부하가 식량을 찾는 것을 발견하고, 대동구경방대와 특수반은 즉시 출동하여 그들을 사살하였습니다. 양정우는 완전히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토벌대는 부근의 촌민들에게 “산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는 사람은 절대 점심밥을 휴대하지 못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2월 23일 보안촌 서쪽으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사람이 4명의 나무를 하는 농민들에게 밀가루 2자루와 솜 신을 요구하면서 돈은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며 돈뭉치를 내보였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또 물건을 교환하는 지점도 약속하였습니다. 농민의 보고에 근거해 토벌대는 갑자기 긴장해져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키시타니 : 그러나 당시 토벌대의 대부분 대원들은 모두 다른 지방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찰대본부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당(唐)대대의 1개 중대와 부근의 마을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崔)대대의 한개 소대밖에 없었습니다. 트럭도 전부 출동하여 한대의 비상용 차량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보를 접한 후 조금이라고 지체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각 방면에 연락을 취하면서 동시에 당시 본부에 있던 마시코와 대망(大罔)경위보 등 19명이 트럭을 타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시코 : 명령을 받자 우리는 즉시 무장하고 트럭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트럭은 중간까지 밖에 갈 수 없어 부득이 제보한 농민한테 약속한 지점까지 길안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는 듯이 약속한 지점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 위에 아주 큰 발자국이 찍혀있었는데 거기에서 시작하여 300미터 떨어진 산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발자국을 따라 등산하였습니다. 이때 제일 앞에서 걸던 한 대원이 “사람이 있다.”라고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있다고 행동으로 알렸습니다. 모두 삼시에 긴장해져 대원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산꼭대기에서, 한 그룹은 산허리에서 시작하여 몰래 접근한 다음 갑자기 일제히 암석틈새에 숨어있는 사람 그림자를 향해 사격하였습니다. 그림자는 땅에서 뒹굴면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4, 5명 대원을 산위에 남겨 그림자를 감시하게 하고 계속 추적하였습니다. 보아하니 그는 이미 완전히 도망할 힘마저 상실한 듯 다시 산 아래의 은폐물을 이용하여 필사적으로 응전하였습니다. 두 손에 권총을 잡고 우리를 향해 마구 사격하였습니다. 쌍방의 거리는 겨우 50미터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다! 빨리 투항해라!” 우리는 다시 한 번 그에게 투항할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권총탄알을 교체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짐승! 죽여라!” 또 30미터 되는 곳까지 접근해 공격한 뒤에 다른 그룹 대원과 함께 동시에 2개 방향에서 맹렬히 사격하였습니다. 약 10분간 교전하였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사격한 탄알인지 그를 명중하였습니다. 나는 직접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필사적으로 고향을 질렀습니다. “사살했다! 전진!” 우리가 앞에 뛰어가 보았을 때 몸에 여러 발의 총탄을 맞은 사나이가 하늘을 향해 땅에 누워있었습니다. 나의 예감은 완전히 정확하였습니다. 원래 楊의 라이벌이었던 부하의 검증을 거쳐 확실히 최후의 한사람 대 두목 양정우라는 것이 밝혀지자 여러 사람들은 시체주위를 둘러싸고 순간 망연자실해 있다가 약속이나 한 듯이 큰소리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모두 “영영”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키시타니 : 2천 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양정우의 최후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시체에서 6,660원의 거금을 찾아냈으나 그는 해진 신과 같기같이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위에는 한 톨의 식량도 없었습니다.

(하략)

(42) 3-1, 87

편자 주 : 이 문건은 만철사원회가 편찬한 『협화』 잡지에서 발취한 것으로 제263기(期)이다.

3. 위증민·진한장 등 부대를 계속 ‘토벌’

노조에토벌대의 명령(1940년 9월 29일 야토추작명(野討秋作命) 제1호)

1. 계속되는 토벌과 치본공작의 진전으로 잔여비적은 이미 연이어 북상하였다. 한·최 비적단체는 간도성 동북지구와 영안남부지구에 집결하고, ×비적단체는 간도성 남부지역에서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진(陣) 비적과 위(魏) 비적은 각각 관지(官地) 북부지역과 무송현 북부 백색지역으로 잠입하였다.
 2. 토벌대는 치본공작의 중점을 동쪽과 동북지역에 두고, 잔여비적을 일거에 섬멸할 목적으로 토벌대사령부를 연길로 밀고 나간다.
 3. 사령부 통신대(전화 교환병 2명)는 9월 30일 203차 열차를 타고 연길에 도착하여 통신준비를 한다. 다른 일부의 지원으로 영(營)을 설치한다.
 4. 이지치(伊地知) 소좌는 영을 설치할 인원(하사관·고원 5명, 병사 15명)을 지휘하여 9월 30일 제203차 열차를 타고 연길에 도착하여 토벌대사령부에 영을 설치할 공작을 맡는다.
 5. 고야마(小山) 중위가 지휘하는 경비소대 및 사령부의 일부 인원은 9월 30일 제201차 열차를 타고 연길에 도착하여 정보 수집을 준비한다.
 6. 종풍(種風) 중위가 지휘하는 길림잔류부대는 길림에서 서쪽 지역과 남쪽 지역에서 보내오는 정보 중계업무를 맡는다.
- 길림잔류부대 인원은 표와 같다. (생략)
7. 나는 10월 1일 제201차 열차를 타고 사령부 막료와 기타 사령부 인원을 거느리고 연길에 도착한다.

토벌대 사령관 노조에 소장

(3) 881

노조에토벌대 명령(1940년 10월 4일 야토추작명(野討秋作命) 제3호)

1. 각종 정보를 종합해 보면, 비적은 소부대로 분산하여 겨울을 보낼 준비에 바쁘다.
2. 나는 앞의 두 부대를 함께 지휘하여 올해 완성하지 못한 치안숙정을 완수하고, 부분적으로 1940년도 제2기 토벌숙정요강의 부서를 개편한다.
3. 야마자키(山崎) 부대장은 간도지역의 토벌대장을 맡고 동쪽·동북·서북 등 각 작은 지역의 대장을 지휘하여 「1940년도 길림·간도·통화 각 성 토벌숙정계획요강과 별책」 및 「1940년도 제2기 토벌숙정요강 수정」에 의해 간도성과 영안현의 치안숙정을 맡는다.
4. 고바야시(小林)·하라다(原田)·메노카미(布上) 각 부대 대장은 각각 간도지역 내 작은 지역 대장을 맡고, 야마자키부대 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1940년도 제2기 토벌숙정요강 수정」에 의거해 기간 내에 비적을 체포·섬멸한다.

고바야시와 메노카미부대가 나의 직접적인 지휘에서 벗어나 야마자키부대 대장의 지휘를 받는 시간은 10월 18일 정오이다.

5. 나는 연길사령부에 주재한다.

토벌대 사령관 노조에 소장

(3) 881

1940년도 제2기 토벌숙정계획요강 수정(1940년 10월)

관작명(關作命) 제378호에 근거하여 야마자키부대 대장이 지휘하는 약 1개 대대가 나(노조에)의 지휘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1940년도 제2기 길림, 간도, 통화 각 성 토벌숙정계획요강」은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각 토벌대는 이 요강과 1940년도에 하달한 각 요강에 의해 각 항의 치안공작에 종사한다.

1. 비적의 상황

잔여비적단체는 각 항 치안공작의 침투로 완전히 붕괴되어 귀순자와 도망자가 부단히 출현하여 파멸에 임박했다. 비적의 숫자는 과거 같은 시기 약 3천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겨우 300명 좌우이다. 각 비적단체는 모두 무거운 무기를 은닉하고, 보충을 주요장비로 하여 30명이하의 소그룹으로 분산되어 겨울을 보낼 준비에 바쁘다. 그러나 일·만 군경이 철저하게 식량·마초와 물자를 단절시켰고 또 서리를 맞아 수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올해 가을 눈이 내린 뒤 각 소대의 소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2. 방침

토벌대는 눈이 내리기 전에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비적단체를 체포·섬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부대의 작은 유격대를 편성하고 비적단체가 가능하게 잠복해 있는 지역 부근에서 철저하게 소탕한다.

눈이 내린 뒤 이 요령으로 비적단체를 체포·섬멸하고 이밖에 토벌에 적응하여 각 종 특별공작에 침투한다. 12월 31일전에 비적을 모조리 섬멸한다.

3. 토벌중점

간도성, 특히는 목(牡)·간(間)·길(吉) 3성 접경지역, 왕청·훈춘·동녕·목릉 4개 현 접경지역.

4. 지역 획분과 간도지역 각 토벌대의 임무

간도·북쪽·서쪽·남쪽 등 4개 토벌지역으로 나누고, 간도지역을 동쪽·동북쪽·서북쪽 3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눈다.

간도지역 각 토벌대의 획분, 담당지역과 각 토벌대의 임무, 행동요령은 표1과 같다.

5. 이동과 지휘관계 전환요령

새로운 군대의 획분에 근거하여 배속부대 지휘관계 전환시간은 10월 18일 정오이다.

그러나 동쪽 작은 지역토벌대장의 회복 혹은 서북지역토벌대장이 지휘하는 일본군의 이동과 지휘관계의 전환시간은 간도지역토벌대장의 지시를 받는다.

6. 통신계통도는 표2와 같다. (생략)

표1 : 군대 획분

간도지역토벌대

대장 : 제4독립수비대장 아마자키 대좌; 독립수비보병 제19대대 1소대; 유선전보1분대.

동쪽 작은 구역 토벌대 :

대장 : 독립수비보병 제21대대장 메노카미 중좌; 독립수비보병 제21대대 대부; 94식 3호 무선 2분대; 94식 5호 무선 5분대; 제2구호반; 만군 혼성 제7려; 만군 보병 제15단; 만군 간도특설대; 만군 보병 제1려; 만군 : 제6군 관할구역 통신대 일부; 만군 : 제8군 관할구역 통신대 일부; 경찰대 : 간도성경찰대 본부; 경찰대 : 간도성 경찰 4개 대대; 경찰대 : 연길현 신선대; 경찰대 : 화룡현 신선대; 경찰대 : 안도현 신선대; 구서(區署)부대 : 간도성경찰(안도·화룡·연길 각 경방대); 삼림경찰대.

동북 작은 지역 토벌대 :

장 : 독립수비보병 제9대대장 고바야시대좌; 독립수비보병 제9대대 대부; 94식 5호 무선전 5분대; 만군 : 보병 제6려; 만군 : 제8교도대 일부; 만군 : 제8군 관할구역 통신대 일부; 만군 : 독립자동차부대 일부; 경찰대 : 간도성 경찰 1개 대대; 경찰대 : 왕청현신선대; 경찰대 : 통화성 파견 경찰대본부; 경찰대 : 통화성 파견 경찰 4개 대대; 구서부대; 왕청현경방대; 삼림경찰대(지역내에 있는 자)

서북지역 토벌대 :

대장 : 독립수비보병 제20대대 하라다대좌; 독립수비보병 제19대대 제4중대 대부; 독립수비보병 제20대대 대부; 94식 3호 무선 1분대; 94식 5호 무선 4분대; 만군 : 보병 제27단; 만군 : 제6군 관할구역 통신대 일부; 경찰대 : 묵단강성 경찰대 본부; 묵단강성 경찰 1개 대대; 구서부대 : 영안현 경방대; 삼림경찰대 (지역 내에 있는 자).

(3) 881

노조에토벌대 명령(1940년 11월 17일 야토추작명(野討秋作命) 제10호)

1. 진한장 비적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지만 영안·오상·교하 3개 현 경계지역에 잠복해 있는 듯하다. 북쪽 지역 토벌대장은 주력으로 이 지역 부근에서 수색 중이다.
2. 토벌대는 유력부대를 이 방면에 증강시키고, 진한장 비적을 수색하여 섬멸한다.
3. 등운(鄧雲) 부대장은 부대를 차조구(茶條溝) 부근에 집결시키고 재빨리 액목(額穆) 방면으로 전진하여 진한장 비적을 수색·섬멸한다.
특히 북쪽 지역 토벌대와 밀접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4. 차조구부터 돈화까지의 구간은 철로운수를 이용하고, 본부대는 계획대로 실시한다.
5. 나는 연길토벌대사령부에 주재한다.

(3) 881

노조에토벌대 명령(1940년 11월 26일 야토추작명(野討秋作命) 제11호)

1. 관삼일발(關參一發) 4927호에 근거하여 11월 26일부터 10일간 본 토벌대에 정찰기 1대를 배속한다.
2. 토벌대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 이 비행기를 간도와 북부 지역 토벌대에 배속시키고 비적상황 정찰과 토벌대의 연락을 담당한다.
3. 간도와 북부 지역 토벌대장 수선정소(須選定素)는 정찰경험이 있는 인원을 선정하여 비적상황에 대한 정찰과 토벌대와의 연락에 종사하게 한다.
4. 나는 연길사령부에 주재한다.

토벌대 사령관 노조에 소장

정찰기 배속 계획

배속부대	배속일	정찰지구 및 임무	요점
간도지구	동북의 작은 지역 토벌대	11월 26일~29일	동녕현 남부, 훈춘현 북부, 묵능현, 왕청현 비적의 상황, 특히 최현·안상길의 비적상황을 정찰하고 토벌대와 연락한다.
	서북의 작은 지역 토벌대		영안현 및 경박호 부근 비적상황을 정찰하고 토벌대와 연락한다.
	동부 작은 지역 토벌대		주요하게 대략 안도현과 미혼진(迷魂陣)의 ×××비적과 길림·간도·통화 3개 성에 잠복해 있는 위증민 비적의 상황을 정찰하고 토벌대와 연락한다.
북부 지역 토벌대	11월 31일~12월 1일	가능하게 영안·연길·돈화·교하·위위하(僞葦河)·오상 각 현 지역에 잠복해 있는 진한장 비적의 상황을 정찰하고 토벌대와 연락한다.	11월 26일 도문비행장에 도착하여 간도지역 토벌대장의 명을 받아 동북 작은 지역 토벌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12월 2일 10시 동경성 비행장에 도착하여 서북지역 토벌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11월 4일 11시 안도비행장에 도착하여 동부지역 토벌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11월 31일 10시 교하현 관지비행장에 도착하여 북부지역 토벌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3) 881

편자 주 : 부표 “비고”부분 생략.

노조에토벌대의 명령(1940년 12월 13일 야토추작명(野討秋作命) 제18호)

1. 진한장 비적은 12월 8일 소만구(小灣溝) 부근에서 간도지역토벌대에 의해 사살되고 잔여비적은 경박호 동서지역에서 배회하고 있다. ×××비적 소재는 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도차(五道岔) 서마안산(西馬鞍山) 북부 산지에 잠복해 있는 모양인데 대략 정확하다.

위증민 비적은 길림·통화·간도 3성 접경지역에서, 전광(全光) 비적은 화전·돈화현 부근에서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제2군 관할구역 보병 제5려를 증파하여 12월 14일 자정부터 나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2. 토벌대의 토벌중점은 ×××·위증민 비적으로서 연말 이전에 색출하여 섬멸해야 한다.

3. 간도지역 토벌대장은 일부 부대로 계속 경박호 동부와 남부지역에서 배회하는 진한장 잔여비적을 토벌하고, 주력은 ×××를 철저히 토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를 수색·섬멸해야 한다.

4. 북부지역 토벌대장은 12월 14일 이후 함께 병력을 지휘하여 주요하게 증파된 부대로 경박호 서부지역 잔여비적을 소탕하고, 현재 있는 부대의 주력을 돈화현 남부지역으로 돌려 위증민 비적에 대한 수색·섬멸을 담당한다.

계획 :

보병 제5려 사령부 14명(길림)

보병 제28단(제2영이 부족)

단부 33명(길림)

제1영 374명(길림)

제3영 311명

(제3영은 12월 말 길림에 도착과 동시에 북부지역 토벌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박격포련 75명(길림)

보병 제30단

단부 32명(교하)

제1영 162명(납빈선(拉濱線) 작은 성)

제2영 374명(서란)

제3영 176명(교하)

박격포련 96명(교하)

5. 서부지역 토벌대장은 12월 14일 자정 이후 함께 제2군 관할구역의 증파한 병력을 지휘하여 중점을 화전현 동남부에 두고 위증민과 전광 비적을 체포·섬멸한다.

계획 :

보병 제28단 제2영 164명(반석)

6. 북부 및 서부지역 토벌대장은 보병 제5려의 운수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제2군 관할구역 사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남부지역 토벌대장은 토벌의 중점을 무송현동북부에 두고, 위증민 비적을 체포·섬멸한다.

8. 등운(鄧雲)부대는 여전히 계속 진한장(陣翰章) 잔여비적을 소탕한다.

북부 및 간도지역 토벌대와 밀접하게 연락한다.

9. 나는 연길사령부에 주재한다.

토벌대사령관 노조에 소장

(3) 881

노조에토벌대의 명령(1940년 12월 16일 야토추작명(野討秋作命) 제21호)

1. 동북 작은 구역 대장은 ×비적을 수색, 체포하기 위하여 표고 1007(마안산(馬鞍山) 동남으로 7킬로미터) 부근, 오도양차·대황구(오도양차 북쪽으로 10킬로미터) 사이에서 토벌준비를 한다.
2. 천교령 파견 헌병 에지마(江島) 준위는 헌병 2명, 통역 1명, 만주 헌병 3명을; 나자구 파견 헌병 나카무라(中村) 군조(軍曹)는 헌병 1명, 만주헌병 1명을 동북 작은 지역 대장에게 배속시켜 그의 지휘를 받게 한다.
3. 에지마 준위는 속히 배속자 성명을 보고해야 한다.
4. 나는 연길사령부에 주재한다.

토벌대 사령관 노조에 소장

(3) 881

노조에토벌대의 명령(1940년 12월 22일 야토추작명(野討秋作命) 제24호)

1. 관작명령(關作命令) 제404호의 지시에 근거하여 나는 12월 27일 연길토벌사령부를 신경에 옮긴다. 그러나 토벌에 필요한 군관 등은 여전히 현지에 남긴다.
2. 토벌대는 내년 16년(1941년) 3월 말까지를 목표로 계속 맹렬하게 토벌을 진행하여 잔여비적을 근절시키고 최종적으로 치안숙정을 완성한다.
그러나 토벌지역 이외에 증원한 만주국군은 재빨리 원래의 체제를 회복한다.
등운(鄧雲)부대 귀환 시기는 따로 명령이 있을 것이다.
3. 북부지역 토벌대장은 교도보병 제1단 제1영 및 독립헌병단이 파견한 부대를 12월 28일 정오부터 지휘에서 이탈·귀환시켜 원래의 체제를 회복한다.
상술한 귀환으로 발생한 철로운송은 만군이 처리한다.
4. 등운부대는 12월 23일 정오에 나의 직접적인 지휘를 벗어나 간도지역 토벌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명령을 받은 자를 속히 도문 야마자키부대장에게 파견한다.
5. 나머지 부대는 여전히 계속 원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6. 나는 연길사령부에 주재한다.

토벌대사령관 노조에 소장

(3) 881

노조에토벌대의 명령(1940년 12월 24일 야토추작명(野討秋作命) 제26호)

1. 관작명(關作命) 제404호의 지시에 근거하여 나는 12월 27일 연길토벌대사령부를 신경으로 이전한다. 그러나 토벌에 필요한 군관 등은 여전히 현지에 남긴다.
2. 신경토벌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자와 현지에 남아 있는 자는 따로 토벌사령부의 지시와 계획에 따

라 행동해야 한다.

3. 현지에 남아 北部 중좌의 지휘를 받는 군관 등은 길림에서 수시로 제1선 토벌에 출동하여 토벌을 지도하는 지방기관의 각 항 공작에 적응함과 동시에 토벌사령부의 각 종 업무를 처리한다.

이 잔류기관을 “현지지도기관”이라 부른다.

4. 토벌대와 관련기관이 토벌사령관에게 제출하는 토벌과 치안숙정에 관련되는 보고·통보는 길림현지지도기관을 거쳐야 한다.

5. 나는 12월 27일 이전에 연길에 주재하고, 이후에는 신경에 주재하면서 수시로 제1선에 출동한다.

토벌대사령관 노조에 소장

(3) 881

노조에토벌대의 명령(1941년 1월 6일 야토동작명(野討冬作命) 제1호)

1. 1월 13일 제4차 동남지구치안연락위원회를 소집하고 토벌대는 계속하여 14일 토벌대장회의를 소집한다.

2. 만주 제555부대장, 만주 제356, 제590, 제62, 제166, 제890부대장, 제2, 제6, 제8군 관할구역 고문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길림에 가야 한다.

1) 1월 12일 저녁 이전에 길림에 집합한다.

2) 토벌대장회의에는 군관 1명, 하사관 1명이 수행할 수 있다.

3) 군복을 착용하고 수를 단다.

3. 세부적인 것은 따로 지시한다.

토벌대 사령관 노조에 소장

(3) 881

노조에토벌대의 명령(1941년 1월 13일 야토동작명(野討冬作命) 제4호)

1. 비적의 상황은 부건 ‘1941도 길림·간도·통화 각 성 토벌숙정계획요강’(이하 숙정요강이라 약칭)과 같다.

2. 노조에토벌대는 숙정요강이 가리키는 지역 내 잔여비적 ×××·위증민·전광 등을 중점으로 토벌하고 먼저 지역 내 숙정을 완수한 다음에 필요할 때 지역 이외의 최현 등을 중점으로 토벌한다. 3월 말에 잔여비적을 근절한다. 장기간의 치안숙정을 위해 부분적인 토벌부서를 변경한다.

3. 각 지역 토벌대장은 숙정요강에 근거하여 주도면밀하고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토벌을 진행한다.

4. 1941년 1월 16일 12시부터 서쪽·북쪽·남쪽 지역 토벌대의 명칭을 개칭하고 부서를 개편하고, 북쪽과 서쪽 지역 토벌대를 길림지역토벌대로 합병한다. 남쪽지역 토벌대는 통화지역 토벌대로 명칭을 바꾼다.

5. 특별공작부장은 토벌에 적응하여 주요목표로 하는 비적에 대한 공작대의 공작을 강화하고 정보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6. 통신대장은 1월 16일 12시 이전에 새로운 부서 통신망을 완성해야 한다.
7. 독립수비 각 대대장은 잔류부대로 계속 원래의 임무에 종사해야 한다.
8. 나는 길림 현지 지도기관에 주재한다.

토벌대 사령관 노조에 소장

부건 : 1941년도 길림·간도·통화 각 성 토벌숙정계획요강
(1941년 1월 13일 노조에토벌대 사령부)

본 요강이 가리키는 자 이외는 「1940년도 길림·간도·통화 각 성 토벌숙정계획요강」을 기준으로 한다.

1. 비적의 상황

현재 비적의 상황은 그림 1과 같다.

작년 가을 토벌 결과, 진한장·박득범·이사령(李司令)·장우정(張雨亭) 등 유력 비적두목은 모두 체포되거나 사살되고 비적단체는 지휘가 산만하고, 세력이 쇠퇴해지고 귀순자와 도망자가 연이어 나타났다. 최현·안정길(安政吉) 및 기타 제1로군 경위려 소속 비적단체는 토벌대의 예봉을 피해 토벌지역 밖으로 도망하여 제2로군과 회합하고 또 일부는 소련으로 도망하였다. 아직 지역 내에 남아 있는 ×××·위중민·전광 등은 이미 대부분 무거운 무기를 은닉하였는데 주요장비는 보충이며, 30명 이하의 소대로 나뉘어 분산하여 잠복하고, 그 소재를 엄호하기 위해 거의 행동하지 않는다. 토벌을 개시할 때 3천명이던 비적단체는 지금 겨우 200~300명뿐이다. 비적단체를 근절시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2. 방침

올해 3월 말을 목표로 철저히 지역 내 잔여비적을 근절시키고 최종적으로 치안숙정을 완수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아 있는 비적을 목표로 하여 가능하게 잠복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력을 사용하여 견결히 토벌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행정기관과 협화회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진일보 치분공작과 사상공작을 전개하여 만주국행정에 침투시키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장악해야 한다.

3. 일반 요령

1) 토벌대사령관은 행정관할구역에 따라 담당구역을 간도(간도성과 념안현 남부)·길림(서란·교하·돈화·화전·반석 각 현)·통화(통화성)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군 지휘관이 지역토벌대장을 맡게 하고, 토벌대 주력을 각 지역에 배속시키고, 각 지역에서 토벌을 진행한다. 필요할 때 일부분을 직접

관할하고, 전면적인 지표공작을 통일적으로 지휘함과 동시에 임시동남부치안연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 위원회를 통하여 치본과 사상공작지도를 통솔한다.

상황에 따라 담당지역 획분을 변경할 수 있거나 혹은 토벌지역의 숙박을 받지 않으며, 중점적으로 토벌대주력을 집결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역토벌대장은 또한 군대지휘관으로서 구역의 일·만군경을 지휘하여 지표공작을 진행함과 동시에 성치안연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위원회를 통하여 치본과 사상공작을 통솔하고 지도한다.

지역토벌대장은 토벌구역을 다시 작은 토벌구역으로 나눈다.

2) 군참모장의 지시에 근거하여, 치안숙정의 실시에 방해 받지 않도록 토벌대사령부를 신경에 설치하고, 필요한 군관을 현지에 남기고, 토벌을 진행함과 아울러 토벌지도지방기관에 적응하여 각 종 공작을 진행한다.

3) 이해와 성전이 같은 의의를 가지는 이번 숙정공작의 진정한 목적은, 각 기관, 각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어 통일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각 항 치안공작을 추진시켜 민심을 안정시키고 장악하여 숙정공작을 완수한다. 동시에 담당지역 내에서 소련·장(蔣)정권과 공산당의 모략·사상전을 진행하려는 시도를 부셔버려야 한다.

4) 치안숙정관련 각 항 공작, 특히는 지표공작을 추진시킬 때 토벌대와 각 기관이 서로 연락하며 밀접히 협조하여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지표공작

1) 요령

지역토벌대장은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비적이 가능하게 잠복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병력을 사용한다. 일정한 기간에 그 지역 요충지에 유격대를 분산하여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지표공작을 진행한다. 먼저 섬멸지역 내의 잠복한 비적을 목표로 수색하고, 담당지역 내 비적을 목표로 섬멸한 후, 지역 밖으로 도망한 비적을 목표로 섬멸한다.

2) 토벌중점

중점은 제2방면군 XXX비적과 제1로군 잔여비적 위증민·전광 등이 가능하게 잠복해 있는 지역에 둔다. 토벌이 끝나면 다시 중점을 최현·안정길 등 담당구역 밖으로 도망한 비적에 둔다.

3) 주요목표비적 및 상금액

토벌을 진행할 때 특히 전력을 다해 비적수괴를 체포·사살한다. 목표로 하는 비적수괴와 이 비적수괴를 체포·사살하면 상금은 다음과 같다.

비적수괴 이름	상금액
XXX	1만 원
최현	1만 원
위증민	3천 원
전광	3천 원

기타 유력 비적수괴도 체포·사살하면 상당한 상금을 준다.

5. 치본공작

1) 요령

이 기간에 관련기관은 토벌에 적응하여 중점을 아래의 각 항에 두고, 사상공작을 진행함과 동시에 비적과 민중을 분리시키고 민중의 자위력을 강화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여 치안숙정을 완수해야 한다.

2) 각 항 민생공작의 실시

행정기관과 협화회는 공동으로 난민을 구제하고 기타 각 항 민생공작을 진행해야 한다.

(1) 난민구제.

난민구제는 필수로 소극적인 방법을 피하고 직업 알선, 노동 분배 등 적극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

(2) 배급기구를 정돈하고, 배급을 완벽하게 하여 기층의 배급에 대한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가두와 촌의 배급기구를 정돈하여 공평하고 합리하게 배급하도록 하고, 특히 최하층의 배급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여 민중이 불평하지 않도록 하고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춘경준비의 지도와 지원.

(4) 기타.

3) 집단부락내부를 충실히 하고, 방어시설을 보충·강화하며, 부락내의 각 종 시설을 증가하고, 사상공작을 진행함과 동시에 민심을 안정시키고 장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방어시설이 파괴되면 즉시 보수하고, 부족하면 재빨리 강화하고, 비적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4) 자위단과 민중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토벌역량의 감소에 따라 자위력을 보충하여 자위단·민중 특히는 청년층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상대책과 함께 자위력을 강화하여 비적과 불량분자의 움직임을 방지해야 한다.

5) 만군경찰의 숙청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소련·공산당·장정권 등이 모략을 진행하여 무장단체의 변질을 획책한 변절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만군경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불량분자를 탈락시키고 엄격하게 심사·관찰하여 외부의 책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민중분리.

철저하게 호구조사, 지문채취와 수색·검사를 진행하여 비적과 민중을 분리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시간·지점·방법 등 면에서 돌연습격 할 수 있다. 그 밖에 비적이 철로를 이용하여 부락 내에 잠복할 때 투항한 비적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체포한다.

7) 식량·마초·물자·탄약의 공급통로를 단절시키는 것을 계속 엄격하게 진행한다.

8) 의료를 진행한다.

군·행정기관·협화회는 서로 협조하여 선전공작과 함께 의료를 진행한다.

6. 사상공작

치표와 치본공작에 적응하여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사상공작을 진행하여 민심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소련·장(蔣)정권과 공비의 파괴를 방지하여 적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반만항일의 각 종 단체, 특히 시국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공산당과 공산색채를 가지고 있는 각종 단체의 책동과 첩보활동, 그 활동초기에 즉시 철저하게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는 무장단체의 사병공작에 주의해야 한다.

2) 농촌공작 강화.

철저하게 청소년을 훈련시키고, 유력중견분자의 생취와 이용을 통하여 일반 군중의 사상공작을 강화하고, 비적에 대항하는 의식을 높이고, 국가방위관념을 배양하여 비적으로 하여금 책동의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

3) 선전기관은 조직을 충실하게 정돈함과 동시에 현재 있는 선전조직을 동원하여 각종 선전방식을 창조하고, 토벌과 시국에 배합하여 적극적으로 선전을 진행하여, 비적의 선전에 대하여 사전에 제압하고 봉쇄와 파괴를 진행한다.

특히 선전을 진행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다.

- (1) 적의 파괴상황에 대해 실물을 통하여 선전을 진행한다.
 - (2)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 예하면 경제통제·국병법(國兵法)의 실시와 기타 민중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민중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 의의를 이해하도록 한다.
 - (3) 반공사상의 선전.
 - (4) 세계형세 특히는 일·만·화 3국 동맹조약을 선전하여 일·만 2국의 온당한 발전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 (5) 민중으로 하여금 투항한 비적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그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뿐더러 이후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 4) 일·만군경은 토벌기간에 현지 민중을 사랑하고,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음으로써 민중의 존경심을 얻고 설득하며, 군대의 기율을 엄격히 한다.

7. 특별공작

특별공작부장의 통솔 하에 토벌의 수요에 따라 진일보 공작을 강화하여 잔여비적을 철저히 섬멸한다. 특히 정보수집에 노력하여 토벌대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 통신에 관하여

새로운 부서의 통신망설치에 따라 <표 3>에서 <표 6>까지 처리한다.

군대의 구분

토벌사령부 :

사령관 : 만주 제669부대장 노조에 소장; 만주 제451부대; 헌병부; 경찰부; 협화회 연락부; 특별공작부; 사령부 통신대(만군경 통신대).

만군 제174부대의 1소대.

제1, 제2공작대, 특설대 및 기타.

간도지역 토벌대 :

장 : 만주 제555부대장 야마자키(山崎) 대좌; 만주 제62부대 대부; 만주 제916부대 대부와 1소대; 만주 제166부대 대부; 만주 제890부대 대부; 유선전보 8분대; 94식 3호 무선 2분대; 94식 5호 무선 5분대; 만군 혼성 제4려; 만군 혼성 제7려; 만군 보병 제15단; 만군 제27단; 만군 간도특설대; 만군 보병 제6려; 만군 제8교도대의 일부. 경찰대 : 간도성경찰대(본부, 4개 대대, 독립 3개 중대, 안도·화룡·연길·왕청신선대); 통화성경찰대(본부, 5개 대대); 목단강성 경찰대(본부, 1개 대대). 구서(區署)부대 : 간도성 각 현 경방대; 녕안현경방대; 삼림경찰대(지역내에 있는 자).

길림지역토벌대 :

장 : 만주 제590부대장 도쿠히로(徳弘) 중좌; 만주 제590부대 대부; 94식 3호 무선1분대; 94식 5호 무선4분대; 만군 보병 제2려; 만군 제2교도대 대부(사령부 및 일부 부족); 만군 보병 제5려; 만군 보병 제12단; 만군 기병 제2려. 경찰대 : 길림경찰대(본부, 14개 대대, 5개 독립중대). 구서부대 : 길림성경찰(돈화·교하·서란·화전·반석경방대); 삼림경찰대(지역 내에 있는 자).

통화지구역토벌대 :

장 : 만주 제356부대장 후로미(古見)중좌, 만주 제356부대 대부(大部); 94식 3호 무선1분대, 94식 5호 무선5분대. 경찰대 : 통화성경찰대(본부, 4개 대대). 구서부대 : 통화성경찰(성내 각 현 경방대), 삼림경찰대(구역 내에 있는 자).

비고 : 만군과 경찰대는 따로 통신대와 자동차대를 가짐.

(3) 551

편자 주 : 부표 일본군토벌통신망도, 만군통신망도, 무선통신계통도는 생략함.

노조에토벌대의 명령(1941년 2월 6일 야토동작명(野討冬作命) 제12호)

1. 목표로 하는 비적 xxx, 위증민의 행방은 아직 상세하게 모르지만 최근의 각 종 정보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xxx비적 : 오도양차 동쪽 지역으로부터 화룡사이 구간 및 안도현 동남부 노령(老嶺)부근.

위증민 비적 : 협피구·인의하자·부이령·이합하와 인접한 지역 내 및 두도류하·이도류하 부근.

2. 토벌대는 만주건국 이후 제10차 만수절을 맞이하기 위해 주력으로 xxx비적을 수색·섬멸하고, 일부로 위증민 비적을 수색·섬멸하여 맹세코 이 방면의 숙정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간도지역토벌대장은 통화지역토벌대를 따라 안도현으로 진출하여 그 주력으로 화룡현 방면에 사용하여 xxx비적을 체포·섬멸하기 위해 노력한다.

구(區)와 서(署)는 비적을 토벌하는 통화지역토벌대를 협조한다.

4. 길림지역토벌대장은 주력을 협피구·인의하자·부이령·이합하 인접지역에 두고, 일부로 두도류하 부근에서 깨끗하게 소탕하여 위증민 비적을 수색·섬멸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통화지역토벌대장은 일부를 무송현 방면에 남겨 두도류하와 이도류하 방면의 토벌을 진행하는 길림지역토벌대와 협동 작전한다. 주력은(적어도 일본군 3개 중대, 경찰토벌대 2개 대대) 2월 15일 이후에 신속하게 안도현 노령 방면으로 전진하여 간도지역토벌대장의 구서(區署)를 받아 xxx비적을 토벌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속히 일부를 안도 방면에 먼저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전진할 준비를 한다. 행군운송은 본부대가 자체로 해결한다.

6. 헌병주력은 신속하게 화룡현 삼도구 방면으로 들어가 헌병업무에 종사한다. 특히 xxx비적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노력하고 토벌대와 밀접하게 연락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헌병부장의 명령에 따른다.

7. 나가시마공작반은 일부로 위증민을 대처하고, 주력으로 xxx비적에 대한 공작을 계속 진행하며 토벌대와 밀접하게 연락한다.

8. 나는 신경토벌사령부에 주재한다.

토벌대사령관 노조에 소장

(3) 881

노조에토벌대의 명령(1941년 2월 10일 야토동작명(野討冬作命) 제14호)

1. 토벌대는 94식 3호 무선1분대를 나가시마공작대에 배속시켜 연락을 확보한다.

2. 통신대장은 재빨리 94식 3호 무선1분대를 화룡현 삼도구에 파견하여 나가시마공작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3. 나가시마 다마지로우 공작대장은 위의 무선1분대와 토벌대를 지휘하여 현지기관과 밀접하게 연락한다.

4. 세부적인 사항은 통신대장의 지시를 받는다.

토벌대 사령관 노조에 소장

(3) 881

노조에 토벌대장의 명령(1941년 2월 14일 야토동작명(野討冬作命) 제15호)

1. 토벌대는 배속된 만주국군 일부를 귀환시켜 원래의 체제를 유지한다.
2. 간도지역토벌대장은 배속된 중지(中之)혼성 제1려(기병 제19단)·보병 제15단·보병 제27단을 2월 25일 현지 지휘에서 이탈시켜 원래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한다.
상술한 부대의 운송 등 사항은 제6군 관할구역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진행한다.
3. 상술한 부대의 배속 중 운수봉공대의 교환은 행정기관과 협상하여 확정된 후에 실시한다.
4. 나는 신경에 주재한다.

토벌대 사령관 노조에 소장

(3) 881

편자 주 : 노조에토벌대는 1941년 3월 19일 정식으로 해산되었다.

〈출전 : 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野副「大討伐」,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東北大討伐』, 北京:中華書局, 1991년, 486~492쪽·492~494쪽·501~506쪽·533~541쪽·541~545쪽·573~593쪽〉

(4) 만주국 중앙경찰학교

1. 연혁 및 일반 상황

1932년 6월, 교육령(教育令) 제30호를 통해 중앙경찰학교관제(中央警察學校官制)가 공포되어, 본과(本科)·별과(別科)·연구과(研究科) 등 3개 과와 부속연습소를 설치하는 제도가 출발하였으며, 12월 15일에 성내(城內) 장로(長路) 소재의 옛 감옥이 있던 자리에 제1기 본과생 54명, 제1기 연습과생 31명을 수용하여 교양수업을 시작한 이래 졸업생을 배출하여 만계(滿系) 본과생 제7회 1,139명, 연습과생 제3회 148명, 별과생 제18회 2,300명, 합계 4,553명이나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옛 교사(校舍)는 이제 장소가 협소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설비도 완전하지 못하여 교육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시설 수용력도 불과 200명 정도에 불과하여 새로운 교사 신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5년 7월, 현 교사의 준공을 보았으며 7월 16일에 교사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1936년 7월 30일에 지방경찰학교관제(地方警察學校官制) 공포와 함께 신경지방경찰학교(新京地方警察學校)가 설립되었다. 따라서 본교 내에 있던 부속경찰관연습소는 폐지되었지만, 종래 관성자(寬城子) 경찰관강습소에서 실시하던 경무(警務)·특무(特務)·보갑제도(保甲制度)·수의(獸醫)·통신(通信) 등의 특수단기교육은 1936년 7월 이후 본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본교로 이전된 이후, 특수강습생 820명, 일본어 전습생 50명을 배출하였다. 개교 이래 졸업자는 모두 4,553명으로, 현재 1937년 12월 말, 재학 중인 본과생 만계 제8기생은 96명, 별과생 181명 등 모두 277명이다.

2. 교육

본교는 국가 치안이라는 중책을 담당할 경찰관 간부 교양의 중추 기관으로서 본년도부터 당국의 방침에 따라 경찰관 대량 재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종전보다 배가 많은 교양 및 수용 능력을 발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하 항을 나누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과 공통적·근본적 교양 방침

(1) 건국이념의 철저와 실천적 능력의 함양

우리나라 건국의 근본이념으로 통치의 지도 원리인 일만일체(日滿一體) 민족협화(民族協和), 왕도낙토(王道樂土)의 완성, 도의세계(道義世界)의 현현(顯現)에 대한 철저한 이해·신념화 및 그 실천적 능력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학술과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이기는 하지만 결국 모두 건국 이상의 완성으로 귀결되는 이상 현상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으면 희생봉사·용왕매진하는 열렬한 경찰 정신 양양을 환기시키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각 교관은 하나가 되어 매일 아침 일만(日滿)양 황실요배(皇室遙拜), 순직비 참배, 국기계양 등 이외의 학술과 과제실습, 명사의 강연 및 규율 훈련 등 모든 것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여 실천 능력을 함양한 인재 양성을 기한다.

(2) 규율·덕육 및 전투 훈련 연마

본교는 규율 및 심신수련의 도량을 일관된 부동의 철칙으로 삼아 생도를 기숙사에 수용하여 기거하게 하면서 이를 연마해 감과 동시에, 규정된 사회 정세에 비추어 질적 향상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이거니와 지육(智育)의 편중을 피하여 지(智)·정의(情意)의 원만한 통합 달성과 실무적 학술과를 중시하며, 특히 비도불령(匪徒不逞)의 무리들을 일소하는데 충분한 전투 지도 능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3) 상식 수양과 어학 연구

우리나라 경찰관은 여러 외국의 경찰관과 달리, 제반 조장(助長) 행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 활동이 필요한 실정에 비추어 군사·경제·산업·민정·국제 정세 및 그 밖의 사회 각 분야의 사정에 관해서 관계 당국을 비롯하여 중앙 각 부(部), 학교 등에서 권위자 및 실무자에게 강연을 의뢰하여 상식 함양과 향상에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 복합 민족 경찰의 취약성을 강화하여 협화의 기초 조건 달성을 위해 어학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로써 현실 적응 능력의 함양을 기한다.

2) 각 과 특수한 교양 방침

(1) 본과생 교육

본과생 교육은 우리나라 경찰관의 중견이 될 지도자 양성에 목적이 있으므로, 앞 항에서 기재한 교양 외에 각 학술과에 대해 무엇보다 광범위하게 실력을 쌓아 부하 지도 감독 및 규칙적 능력 함양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2) 각종 강습

각종 강습으로는 앞 항에서 기재한 교양 외에 각각 그 특수성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지도적·규획적 능력 함양에 힘쓴다.

(3) 별과생 교육

앞 항에서 기재한 교양은 물론, 초임 경찰관으로서 가장 엄숙한 규율 하에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학술과 교양 훈련에 중점을 두고 왕도(王道) 경찰관이 되는데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3) 생도의 감독·지도 상황

생도는 그 종별 계급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여 엄정한 기율훈련 하에 기거하도록 하여 공동정신 및 기율관념을 함양하고, 단체생활의 실천을 통해 고통과 결핍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책임 관념을 함양하며, 희생 봉사의 마음을 조성하여 숭고한 인격 도야를 꾀함과 동시에, 생도의 개성을 통찰하여 그 감화유익을 기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담당 기구를 통해 생도 감독·지도를 철저히 한다.

(1) 주사(主事) : 교장의 명령을 받들어 학교에서의 감독·지도를 발동하는 근원이 된다.

(2) 학감(學監) : 학감을 두고 생도의 감독·지도를 통제한다.

(3) 주변사감(週番舍監) : 생도의 생활을 주도면밀하게 감독·지도를 담당할 자로, 이에 상당하는 경력과 연배 그리고 경험이 있는 자를 영입하여, 강인한 의지와 왕성한 기력과 적절·타당한 지도와 스스로 행하고 모범적인 정신으로 매일 매일 힘차게 생활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힘쓰는 생도 전반에 걸친 감독자이자 지도자이다.

(4) 조(組) 주임(主任) : 생도를 대략 30명 내지 50명씩 조로 편성하여, 교수나 조교수 중 책임자를 임명하여 생도의 개성 관찰과 그 계발 및 조의 자치지도에 전념하게 한다.

(5) 숙직원 : 매일 일본인 생도·만주인 생도 각 1명씩 숙직을 세워, 기숙사 생활에 따른 일과실행 훈련 및 지습 지도 및 교관·생도 사이가 친숙해 질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여, 생도를 도덕화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6) 반 및 반장 : 생도의 종류에 따라 한 개 반 혹은 여러 개의 반으로 나누어 반장을 임명하여, 교내 생활의 단위로 삼아 상명하달 상신(上申)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반원을 자치적으로 통제하도록 한다.

(7) 조행회의(操行會議) : 생도의 조행(操行)¹⁴⁾ 사정(査定)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교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지 말고, 각 조의 주임·사감과 협의하여 조행 사정을 정리하고, 훈육 주임을 통해 주사에게 제출하고, 직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생도의 감독에 나서도록 한다.

이상의 기구를 통해 생도의 감독·지도에 힘쓰고 있으나, 특히 경찰 점검, 조련(操練)·무도에 진지하고 열심이고 엄격한 규율적 동작을 요구하며, 지엄한 일과의 이행을 통해 생도 훈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14) 품행(品行)을 말한다.

4) 술과교육(術科教育) 상황

(1) 교육 방침

: 우리나라의 경찰이 가진 특성에 비추어, 대비(對匪) 전투를 기준으로 하여, 전투 훈련에 중점을 두고 대비(對匪) 전투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연습함과 동시에, 실천적인 경찰 정신을 함양하고, 규율을 훈련하며, 신체를 연마하며, 우리나라 경찰관에게 필요한 덕조(德操)·능력·체력을 증진하여 실력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교육 개황

: 술과 주임교관을 두어 본 교육을 지도·통제하도록 하며, 교육 방침에 따라 생도의 종류에 따라 목적·과목·내용·정도(程度)·교식(敎式)을 지시하고, 각 담당 교관으로 하여금 주도면밀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여 확실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술과 주임교관으로 하여금 적절하면서 부단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여 교육성과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① 별과생

: 하급지휘관에게 필요한 사항의 도야에 목표를 두어, 전체 교육시간의 5분의 2를 술과교육에 충당하고, 생도의 소질을 감안하여 주입식 교식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대비(對匪) 전투에 필요한 각 종 사격 자세, 경(輕)·중(重)·기관총의 조작법, 사격 동작, 각개산병(各個散兵), 지물이용(地物利用), 무기 등의 보조학(補助學)은 조련(操練)과 관련하여 대비(對匪) 전투에 필요한 사항을 요점 정리하여 강의하고, 나머지 과목 및 출신전(出身前) 혹은 졸업 후 연습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과목은 기초적 교육 혹은 중요 과목 훈련 전후에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복습하는 정도로 하며, 오직 대비(對匪) 전력을 충실히 하고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하면서 예정된 계획에 따라 교육을 진행시켜 가고 있다.

② 각종 강습생

: 간부인 지휘관 겸 교관이 되는 데 필요한 사항의 도야에 목표를 두며, 강습의 종류·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주로 계발식 교식으로 훈련을 하고, 일본인은 부대의 지휘 운용, 토비(討匪) 전술의 개념, 실병지휘(實兵指揮), 부하 경찰관의 교육 지휘법에 중점을 두며 나머지 과목 및 보조학은 기초적인 교육 내지는 요령 혹은 복습을 실시하는 정도로 하고, 만주인은 객체의 소질을 감안하여 별과생에 준하여 교육하며 실병지휘, 토비 전술의 개념에 중점을 두고 오로지 지휘관 겸 교관으로서의 덕조·능력·체력 등의 연마·향상에 노력하며, 현재 예정된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 중이지만, 교관의 부족·교육기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충분한 교육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교육의 성과

: 교관·생도 모두 술과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열심히 이에 종사하며, 특히 교관의 열의와 왕성한 책임감은 교관의 부족·생도의 종류·인원의 급격한 증가·연습기재의 부족 등 갖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예정된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는 일도 대국(大局)의 측면에서 볼 때 본년도 상사(上司) 방침에 기초한 술과교육이 점차 진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앞으로 교관의 결원을 서둘러 충족함과 동시에 교관의 능력 향상을 꾀하고, 교육용 기재를 정비하며, 아울러 술과 교육과 관련한 근본을 연구하여, 그 개선·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향상

교육 목적과 제반 사정에 적응하는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수단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상사(上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한다.

5) 일과·행사 상황

생도 훈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엄격한 일과의 수행에 있으므로, 이를 실시함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해 특별히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기상·취침

: 기상과 취침은 단체 생활에서 일상 훈련 중 2대 절점(節點)이므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기상은 활발하고 과단성 있게 우유부단함을 배격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속하고 기민하게 동작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기상 시각 전에 일어나도록 하는 기상 신호와 함께 즉각 기상하여 교정의 집합 지정 위치에 모여 점호를 받도록 한다.

취침은 평온한 것이지만 강인한 의지로 극기하여 규정에 따라 소등하고 취침하며 또한 정숙함을 지켜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권장하고, 만약 불을 좀 더 켜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변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점호

: 점호는 신속한 집합, 엄정한 규율, 정신통일을 꾀함과 동시에 인원 점검 및 생도의 보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침 점호는 교정에 정렬시켜 각 반의 반장이 지휘하여 엄격하게 수행하며, 저녁 점호는 실내에 정렬시켜 실시한다.

(3) 황거(皇居) 및 궁정부(宮庭府) 요배(遙拜)

: 황실(皇室) 및 제실(帝室) 존숭, 국체관념의 함양을 목적으로 아침 점호 때에 경건한 자세로 이를 실시한다.

(4) 순직영령비 예배

: 사은(謝恩) 전체주의 관념의 양성을 목적으로 황거 및 궁정부 요배 후에 실시한다.

(5) 식사

: 식사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또한 절도 있는 동작으로 실시하여 단체 생활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각 과의 주변 사감이 윤번으로 식당에서 취할 예법에 대해 생도 전원을 통제하고 사감의 지시에 따라 식사를 하도록 한다.

(6) 자습

: 아침 자습은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저녁 자습은 저녁 식사 후 약 2시간, 하루에 총 3시간 하고, 자습 시간 중 반드시 자습실에서 자습에 전념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7) 입욕

: 각 과 마다 시간을 구분하여 입욕도덕을 지키게 하더라도 현재의 목욕탕으로는 생도 전원이 매일 입욕하기란 불가능하므로, 격일로 입욕하도록 순서를 윤번으로 한다.

(8) 점검

: 아침 식사 후 수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하고 아침 학과 자습 시간을 활용하며, 학과 자습을 실시하지

않는 과에 점점 연습을 시킨다.

(9) 근로 작업

: 아침 점호 후 그리고 저녁 자습 시간 종료 후, 매일 각 반의 주변원이 지정한 구역(각 교실, 기숙사의 세면장 및 화장실)의 청결·정돈을 실시하고, 각 기숙사는 그 때 그 때 각 반마다 기숙사 내의 청결·정돈을 실시하며, 매주 토요일에는 교사 내 전체의 청결·정돈을 실시하고, 학감이 이를 검사하여 생도들로 하여금 근로정신 및 공동활동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종종 교정의 미화에 나서서 정조(情操) 도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정의 청소 및 제초 작업을 실시한다.

(10) 국기 게양·강하식

: 건국정신의 현현(顯現), 국가관념을 양성하기 위해 매일 국기 게양을 실시하며, 평일에는 숙직 교관의 지휘 하에 주변생도가 이를 행하고, 매주 월요일에는 직원·생도 전원이 참석하여 엄숙하게 게양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국기 게양 및 강하의 경우에는 교정에 있는 자 모두 자세를 바로 하여 국기에 주목을 하고 게양이나 강하가 끝날 때까지 경례를 해야 한다.

6) 교재의 편찬 상황

교재는 각 담임 교관이 편찬하는 것으로 하고, 법규 개폐 때에 이를 개정·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인쇄 및 제본은 주로 만주도서주식회사(滿洲圖書株式會社)에 맡긴다.

또한, 교재는 단순히 본교 생도뿐 만 아니라, 각 지방의 요청에 따라 널리 이를 배포하도록 한다.

7) 고사(考査) 실시 요령

(1)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과 전반에 걸쳐 담임 교관의 출제에 따라 임시 시험은 대략 월 1회, 그리고 기말 시험을 실시하여 백점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2) 조행(操行)에 대해서는 각 조반(組班)의 주임 교관이 사정(査定)한다.

(3) 성적 서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고 득점순으로 우열을 결정한다.

$$[(\text{학과총점}/\text{학과목수}) \times 3/10] + [(\text{술과총점}/\text{술과목수}) \times 3.5/10] + [\text{조행점}(操行點) \times 3.5/10] = \times 점$$

8) 상벌·진퇴 상황

생도의 상벌·진퇴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하여, 사소한 행위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비행에 대해서는 준엄한 조치를 행하고, 선행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선행을 자주하는 자는 기숙사 생도의 모범이 되는 자로, 이들에게는 상장(賞狀)·상사(賞詞)를 내려 표창한다. 비행을 자주 범하는 자는 외출지에서의 난주(亂酒), 귀교(歸校) 시간에 지각, 무단 외박, 아편 흡입, 시험 중 부정행위 등을 범하면 처벌 방법을 퇴교(退校)·금족(禁足)·계고(戒告) 등 세 종류로 나누어, 퇴교 처분은 행동이 악랄하고 과업을 이룰 전망이 없는 자에게 처하는 징계이고, 금족은 비행을 저질렀으나 개선의 여지가 현저하여 언젠가 과업을 이룰 전망이 보인다고 사료되는 자에게 가하

며, 계고는 자신의 부주의보다 비행을 시킨 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계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입교 이전 근무지에서 저지른 범행이 재교 중에 발각되어 퇴교 처분에 처해지거나 소속청의 의뢰에 따라 퇴교 처분되는 자도 있다.

또한 병으로 인해 과업을 이룰 수 있는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어 퇴교 처분된 자도 있는 상황이다.

9) 1937년도 교육 실시 상황

작년도 본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는 일(日) ○ 본과 제1기생, 별과 제16기, 17기, 18기, 19기 등 4개 기(期)와 제2 경무강습, 제3 경무강습, 사법강습, 보안강습, 특무강습, 형사강습, 무전강습 등으로, 그 교양 인원은 모두 1,591명이다.

10) 개교(開校)부터 1927년도 말까지 졸업생 상황

별지의 통계표 참조.

11) 1938년도 교육 실시 계획 요람

별지의 통계표 참조.

3. 직원

1) 직원의 복무 상황

본교는 1937년 7월 행정기구 개혁에서 치안부(治安部) 신설과 함께 치안부 대신에 예속되어 치안부 경무사(警務司)를 통해 그 감독을 받으므로, 경무사장이 교장을 겸임하고 주사 이하, 아래 표와 같이, 현재 교수, 조교수, 역관(譯官), 서기, 그 밖의 촉탁, 조수(助手) 응원 근무 고원(雇員) 등 모두 51명이지만, 정원에 25명의 결원이 있으나, 현 직원은 밤낮으로 힘껏 일을 하며 건국 정신을 이해하고 본직의 뜻을 익혀 화충협동(和衷協同)으로 경찰 교육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2) 직원의 현황

별지의 일람표 참조.

3) 직원의 이동 개요

교장은 3대의 변천을 거쳐 현재 시부야(澁谷) 교장이며, 주사 역시 3대의 변천을 거쳐 현재 나이토(內藤) 주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그 밖에 교수, 조교수 등의 이동이 있어 그 내용은 현황표에 나와 있는 대로이다.

4) 강사 현황

본교의 강사는 경무 관련해서 주로 경무사에, 그 밖의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 관련 부문의 권위자에게 위촉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4. 생도

1) 생도의 현황

법권철폐·행정권이양에 따른 접수, 경찰관의 교양과 현지에서 교양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적은 경찰관의 간부 교육과 함께 우리나라 경찰의 재건설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계획 아래 많은 경찰관을 수용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수용하고 있는 생도의 수는 다음과 같다.

- (1) 제8기 만계(滿系) 본과생 97명
- (2) 제19기 별과생(日系) 177명
- 합 계 274명

2) 생도 수지(須知)

본교는 건국 정신을 기조로 하여 경찰 관리로서의 덕조를 연마하여, 소요의 학술 기능 및 이를 운용할 때 생도 역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각 생도의 일언일행, 일거수일투족에도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며, 이를 엄수하도록 하기 위해 입교 당시에 본교의 학풍을 알려 재교 중 습득하도록 대강을 지시하고 있다.

그 요강은 생도 수지(생략)에 제시하였다.

3) 생도의 일반적 소질

4) 생도의 체격·보건 개황

종래 별과생의 체격은 가장 양호하였는데, 현재 입교 중인 제19기 별과생은 ‘지나사변’¹⁵⁾ 후 모집한 관계로, 군대 미교육자가 180명 중 약 3분의 2를 차지하여 체격이 양호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생활 방식·기후·풍토 등의 급변으로 인해 감기 및 각기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며, 이들은 모두 조기 진단을 실시한다.

그 밖에 입교 시 엄밀한 신체검사에서 질환을 가진 자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화류병(花柳病) 환자에 대해서는 입교를 거부하며, 재교 중에 규율적인 생활과 각종 술과의 연마와 함께 차차 건강을 증진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만기 졸업생의 경우 모두 입교 당시에 비해 평균 약 750g 정도의 체중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위생상태가 좋아져, 만주계 본과생의 체격은 총평 갑(甲)인 자가 6%, 을(乙)인 자가 3%, 병(丙)인 자가 1%로, 만주인의 체격으로서는 양호하여 가슴둘레도 함께 느는

15) 중일전쟁.

자가 약 3%이다. 병(丙)에 속하는 자는 신체가 허약하여, 특히 술과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결국에는 수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중도에 어쩔 수 없이 퇴학을 하게 되는 자가 약 0.1%이다.

재교 중의 이병율(罹病率)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본과생은 별과생에 비해 감기·소화기 계통의 환자 발생이 다소 잦은 편이다. 그 원인은 온돌 생활에서 갑자기 문화적 생활을 시작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하지만 잠시 환경에 익숙해짐에 따라 감소하여 규율적 생활과 심신 단련의 결과, 졸업 시기를 맞을 때마다 그 체격이 향상되어 입교 때에 비해 한 사람 당 평균 3kg의 체중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신체 허약자는 주로 호흡기 계통 환자로, 퇴학자는 모두 질환이 계속되거나 재발한 자들로, 본교 입교 시 신체검사에서 수학 불가능 자는 모두 역시 수학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퇴학하거나 조건부 입교를 통해 허가한다.

본과생·별과생 모두 추천 채용에서 관계 당국의 가장 엄격한 신체검사를 요망하는 자들로, 앞으로 체격 총평이 병에 속한 자, 화류병 보유자는 결코 입교를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때로, 단체 생활로 인해 개인의 보건 위생에는 무엇보다 유의하고 있다. 개교 이래 소수의 유사 적리(赤痢)¹⁶⁾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모두 일요일 외출 등의 좋지 않은 섭생으로 인해 외부에서 전염된 것인데, 교내에서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교우회 부속 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생도의 보건에 관한 상담을 받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5) 교내 생활 상황

생도의 교내 생활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일과·행사 및 생도 수지(須知)에 따라, 특히 기율·예절을 중시하며 공동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타성을 교정하는데 유의함과 동시에, 정조의 도야·기본의 변환을 위해 사내(舍內)의 생도들이 주지한 장소에 나무를 심거나 어류를 기르는 연못을 설치하는 일 외에 생도의 위안거리로 라디오·축음기 및 오르간 등을 설치하여 토요일의 방과 후 및 일요일에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교내에 일용품 판매점 및 이발소를 설치하여 생도들이 교내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진료소 병실 설비를 마련하여 가벼운 병이나 부상 등도 교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사는 엄격한 예절 아래 식당에서 마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 이외의 간식도 식당에서 해결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신문 및 월간 잡지 역시 장서를 정해 일반 생도에게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교내 생활 중에도 생도의 체력·기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실외운동을 장려하며, 동계에는 구내에 스케이트장을 설비하여 스케이트화를 일반 생도에게 대여하며, 직원 및 생도가 하나가 되어 엄동설한 기간에 실외운동을 매일 정오 휴식 시간 및 방과 후를 이용하여 실행하고, 기온이 따뜻해진 계절에 실외운동으로 테니스 코트 및 이를 위한 용구 및 야구 용구·농구 용구를 갖추어 실외운동을 장려하여 생도의 보건에 유의하고 있다.

16) '이질'을 말함. 유행성 급성 소화기 전염병.

5. 교사(校舍) 및 부지(敷地) 개황

교사는 부지 총면적 7,930평방미터, 건물 면적 6,086평방미터의 철근 벽돌로 지은 3층 건물로, 동서 71미터, 남북 69미터, 지하에 취사장, 식당, 목욕탕, 기관실, 전기실 및 지계(地階)에 전달실(傳達室), 경무참고품실, 도서실, 무도장, 총기고, 교실 3개, 교장실, 회의실, 직원실, 사무실, 회계실, 의무실, 숙직실을 갖추고 있다. 계상(階上)에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중심으로 실험실, 합동교실 2개, 작은 교실 2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교사와 연결되어 기숙사를 배치하였다. 그 수용 인원은 743명에 이르지만, 기숙사의 제1공사는 3단식 침실로 자습 설비가 없으며, 또한 위생적 결함이 있는 등 갖가지 불편함을 갖고 있으며, 1936년 8월 관성자(寬城子) 경찰관강습소의 본교 병합에 따른 수용 인원의 증가로 인해 기숙사 사방의 일익(一翼)에 복도를 중심으로 한쪽을 침실, 한쪽을 자습실로 설비하여, 건축 면적 770.50평방미터, 기숙사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증축하고 있는데, 대체로 선적은 양호하다.

또한 치외법권 철폐 후에는 최소한도 상시 1,000명을 수용하여야만 하므로, 1938년 이후에는 이를 표준으로 하는 교사 및 기숙사의 개축·증축 계획이 필요하여, 1937년도에는 2,900원의 예산으로 건평 510평방미터의 무도장을 증축하였으며, 또한 1938년도에는 약간의 교실 및 기숙사의 증축을 보게 될 예정이다.

6. 비품

1) 보통 비품

2) 술과 관계 비품

: 별표 참조.

7. 서무 및 회계

1) 업무 처리 분담 상황

교무를 서무·훈육·교무 등 3개 과로 나누어 각 과에 각각 주임 교수를 두고 그 아래에 각각 주임에게 분담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무의 쇄신과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2) 업무 처리 규정

〈중앙경찰학교 분장 규정〉

제1조 본교에 다음과 같은 3개 과를 둔다.

서무과

교무과

훈육과

제2조 서무과에 서무 담당 및 회계 담당을 둔다.

제3조 서무 담당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직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사항.
2. 관인(官印)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
3. 학교 경영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收發)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생도의 입교에 관한 사항.
6. 의식(儀式)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교중(校中)의 단속 및 숙직에 관한 사항.
9. 교사(校舍) 안팎의 청결·정돈에 관한 사항.
10. 학교연혁사(學校沿革史)에 관한 사항.
11. 상용인(常傭人)에 관한 사항.
12. 타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 회계 담당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용도에 관한 사항.
3. 부지·교사·기숙사·그 밖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회계에 관련한 사항.

제5조 교무과에 교무 담당·기획 담당 및 도서 담당을 둔다.

제6조 교무 담당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조(組)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교과목 및 수업 시간 및 교실의 배당에 관한 사항.
3. 강의안(講義案) 심사에 관한 사항.
4. 교수상(教授上)의 연락에 관한 사항.
5. 교수 진도에 관한 사항.
6. 시험 및 학업 성적에 관한 사항.
7. 교육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8. 교수 용품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교무에 관련한 사항.

제7조 기획 담당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 기획에 관한 사항.
2. 교과서, 그 밖의 편찬에 관한 사항.

제8조 도서 담당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서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참고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혼육과에 학원 담당·위생 담당·기숙 담당 및 조 주임을 둔다.

제10조 학원 담당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생도의 신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생도의 근태복무(勤惰服務) 및 규율에 관한 사항.
3. 생도의 청원(請願)에 관한 사항.
4. 생도의 홀금(恤金)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2항의 사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위생 담당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생도의 진료(診療)에 관한 사항.
2. 생도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학교 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 기숙 담당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생도의 기거 및 자습에 관한 사항.
2. 생도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
3. 입욕 및 이발에 관한 사항.
4. 식사 및 매점에 관한 사항.
5. 기숙 담당의 청결·정돈에 관한 사항.
6. 사감에 관한 사항.

제13조 조 주임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의 자치, 그 밖의 선도에 관한 사항.
2. 생도의 개성 관찰과 그 계발에 관한 사항.
3. 생석부(生席簿) 및 주변 일지의 사열에 관한 사항.
4. 지시·명령의 실행·독려에 관한 사항.
5. 조행 사정 원안(原案) 작성에 관한 사항.
6. 학적부에 관한 사항.
7. 교실 내의 청결·정돈에 관한 사항.
8. 생도 간부의 전형에 관한 사항.

부칙(附則)

본 규정은 193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학생진첩(學生津貼)

(1) 생도 수당액

수당액	구분	본과생		별과생	비고
1개월 수당		만주계 10원	○○	재교 중 봉진(奉津) 50원	

〈1937년도 생도로부터 징집한 평균 제비액(諸費額)〉

징집액	구분		식비		교우회비		교우회 입회 및 중신회비		교과서 비용		소계	
	만주계	8월	00	월	50	5월	00	4월	00	81월	25	
일본계	13월	50		50	5월	00	111월	93	30월	93		
비고	1개월분		1개월 회비		입회비 2엔 중신회비 3엔		한 사람 당		평균액			

〈출전 : 治安部警務司中央警察學校 「中央警察學校」, 『滿洲國警察學校要覽』, 1938년 7월, 25~37쪽〉

(5) 만주국 간도성 경찰학교

1. 연혁 및 일반 개황

간도성(間島省)은 1934년 12월 1일, 신성제도(新省制度)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독립된 한 성(省)이 되었으나, 경찰관의 교양은 항상 성내의 치안 상황 등으로 인해 뒤돌아 볼 여유가 없어, 겨우 길림성(吉林省) 경찰관 훈련소에 파견하여 교양을 익히게 하는 정도의 상황이다.

1935년 7월 30일, 칙령(勅令) 제76호 지방경찰학교제(地方警察學校制)가 발표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개교해야 한다는 지령을 접하고, 예의 제반 준비를 추진하여 같은 해 12월에 교관 이하 직원이 발표되어 부임함으로써, 제1회 교양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2일부터 연길(延吉) 경찰청 및 각 현(縣)에서 선발된 현직 경좌(警佐)·순관(巡官) 28명을 제1회 강습과생으로서 입교시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해 12월 25일에 졸업을 시켰다.

그리고 1936년도에 들어 치외법권 철폐 준비 교육으로서 보통과생에 현직 경장(警長)·경사(警士)를 경찰청 및 각 현에서 1회 50명 내지 60명 정도 입교시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총 221명을 졸업시켰다. 또한 강습과생에 제2회부터 제8회까지(보안·사법·특무·간부·일계(日系) 등) 일곱 차례에 걸쳐 220명(그중 9명은 일계(日系)경장·경사)의 현직 경좌·순관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각각 졸업을 시켰다.

그리고 1937년에 들어서서 이것이 더욱 보급되면서 한층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 제1회 고등과생으로서 현직 경좌·순관 31명을 1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기초교육을 실시하였고, 보통과생은 1회 53명 내지 67명을 수용하여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143명을 졸업시켰다.

그리고 1938년 전반기에는 치외법권 철폐 후의 사태에 대처해야 하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간도의 특수 사정에 맞추어 접수 경찰관 중 경위보(警尉補) 이상에 대한 특별 강습에 중점을 두고 별첨 계획 아래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월 5일부터 제1회 특별 강습생으로서 경사 80명을 입교시켜 현재 강습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경좌·경위는 처음에 중앙에서 강습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 제외하지만, 그 후 중앙의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경좌만 강습을 받도록 하고, 경위의 강습은 별도로 계획할 예정이다.

그리고 접수 경찰관 강습 기간 중에는 당교(當校) 수용 능력 문제로 보통과생 수용은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다.

2. 교육

1) 일반 개황

간도성 내의 경찰관 교육은 연길지방경찰학교(延吉地方警察學校)에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관할 하의 각 현에서도 현 훈련소를 세워 새로이 채용된 경찰관(만주계) 및 현직 경장·경사 중 미교육자를 아울러 교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각 경찰서에서도 획기적으로 관할 하의 각 분주소(分駐所)에서 근무하는 미교육자를 소집해 교육을 실시하여 그 보급과 철저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경찰학교 입교와 관련해서는 각 현의 방침에 따라 모두 같지 않다.

즉 연길, 화룡(和龍), 왕청(汪淸), 안도(安圖) 등 각 현에서는 중복철저주의를 채택하여 현 훈련소 및 각 경찰서에서 한 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찰관 가운데에서 선발하여 이들을 지방 경찰학교에 입교시키고 있으나, 훈춘현(琿春縣)에서는 보급병행주의를 채택하여 현 훈련소 졸업자는 다시 지방 경찰학교에 입교시키지 않는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 방침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2) 교육방침

교육은 경찰의 지도 원리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본지(本旨)로 하며, 여기에 경찰의 생명인 규율·훈련을 더함으로써 인물 양성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생도의 감독·지도 상황

인물 양성의 요점은 수업 시간 외의 일상 생활 규율에 지대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히 감독 주임을 두어 이 방면의 지도·감독에 전념하도록 함과 동시에, 속직 교관으로 하여금 감시·광정(匡正)을 담당하게 하여 위반자는 생도소행부(生徒素行簿)에 기입해 이튿날 아침 주사(主事)에게 엄중 계고하여 유감이 없도록 한다.

4) 술과교육 상황

술과교육은 제 제식(制式)을 익히게 하는 것은 물론, 규율 훈련, 지기(志氣)의 긴장, 엄격한 자세 및 태도, 공격 정신의 함양 등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강력한 체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한 번 익힌 교양 사항은 즉각 일상생활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기회에 불충분한 점을 개인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경계근무에 관해서는 술과 교육에서 그 요령을 터득하게 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재지 경찰

청과 연락을 취해 귀지(貴地)에 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경비에 관해서 1937년 8월 14일부 치안경비 제1977호 경무사장(警務司長)의 훈달(訓達)에 따라 헌경(憲警)의 시국대책요령에 기초하여 연길지방경찰학교는 연길 경무위원장의 통제 하에 유근(遊勤) 경찰대예비대에 편입시켜 유사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발췌〉

〈헌경시국대책요령〉

연길 경찰학교에서는 예비대로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훈련을 구성해 놓고 있다.

유근 경찰대 편성 요령

대명(隊名)	요 원			장 비			
	위 치	장(長)	차출기관	구분	계	장총	권총
예비대	연길경무 통제위원장	연길지방 경찰학교	직원 1명 생도 59명	60명	55	5	장총 60 권총 32

5) 일과 · 행사

일과 · 행사는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수업 시간 외의 일상생활의 규율에 대해서는 당교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 지도 · 감독에서도 무엇보다 엄정을 기하기 위해 특히 감독 주임을 두고, 나아가 숙직 교관으로 하여금 감시 · 광정에 힘쓰게 하고 있다.

6) 교재의 편찬 상황

아직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편찬된 교과서가 없으므로, 주로 중앙 경찰학교의 교재에 따라 강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인쇄해 배포해서 가르치고 있다.

7) 고사 실시 요령

학과시험은 각 담당 교관 · 강사가 시험 문제를 만들어 엄봉(嚴封)한 상태로 학교에서 정리하여 학기 말에 소정의 시험일에 각 과목마다 시험장에서 개봉하여 학교 직원의 감시 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이를 각 담임에게 교부하여 채점을 하게 한다. 술과시험은 담임 교관에게 각자의 실지 제반 생활에 대해 채점을 한 다음 학과 시험과 합하여 성적표를 작성, 서열을 정해 이를 상사(上司) 및 각 소속에 보고 · 통보함과 동시에, 수업증서에도 해당 서열 번호를 기입하고, 졸업식에서 이를 수여한다.

그리고 종래에는 학슬과의 시험 성적에만 근거하여 서열을 정하였으나, 본년도부터는 새로이 규율소행 성적도 고사에 반영하기로 한다.

8) 상벌 · 진퇴의 상황

찬장(贊狀)		징벌	진 퇴
보통과생	고등과생		
제6회 1 제7회 1 제8회 3 제9회 2	제1회 1	제9회 보통과생 1, 근신 20일 (사유 : 외출 중 음주를 하고 태도가 난잡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시켰기 때문)	해당 사항 없음
합계 7	1	1	

비고)

- (1) 상장 수여자로 교습 중 성적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였다.
특별히, 공로를 행한 자가 아니다.
- (2) 상벌로 인해 진급, 퇴직한 자는 없다.

9) 1937년도 교육 실시 상황

재교생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10) 개교부터 1937년까지 졸업생 상황

별표 참조.

11) 1938년도 교육 실시 계획 요람

별표 참조.

3. 직원

1) 직원의 복장 상황

경찰관의 교양에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직원의 복장 소질은 대개 양호하여 그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각자 역시 자숙자계하며 본분을 다하고 준담 업무에 정진하며 교장을 중심으로 주사 이하 치안부 대신각하의 훈시를 체득하여 사무실·교실 등에 이를 게시하여 그 실행에 협력일치해 학교의 사명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2) 직원의 현황

당교의 직원은 교장 외에 주사 1명, 교관 3명(이 가운데 한 명은 만주인), 조교수 1명, 경장 1명, 경사 1명, 고인(雇人) 1명, 타자원(打字員) 1명으로, 1938년도 전반기에는 오로지 접수 경찰관의 교양을 교육하므로 전임교관만으로는 주도면밀하고 철저함을 기하기 어려워 청내(廳內) 각 과 및 부외(部外)의 지식인에게 강사를 위탁하여 만전을 기한다.

3) 직원의 이동 개황

개교 이래 교장은 네 번 경질되었고, 주사는 두 번, 전임 교관 역시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확충으로 인해, 한 두 명이 이동한데 불과한 상태이다.

4) 강사 현황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 교관만으로는 교양 교육을 철저히 기하지 않으면 경찰 업무 뿐만 아니라 덕육에 중점을 둔과 동시에 조장(助長)·행정, 그 밖에 일반 사회 상식을 함양하기 위해 힘써, 성내(省内) 각 과 및 부외 전문가에게 강사를 위탁하여 현재 11명이 있으며, 그 밖에 과외 강연을 의뢰한다.

4. 생도

1) 생도 현황

현재 수용 교양 중인 강습과생은 80명으로, 접수 경찰관·경사 등인데,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경찰 정신의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규율, 복종에 무게를 두고 일거수일투족도 방만하지 않도록 하며, 생도들도 만주국 건설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장차 경찰관의 본분을 자각하여 전심전력으로 학업에 힘쓰고 있다.

2) 생도 수지(須知)

생략.

3) 생도의 일반적 소양

당교에서는 일찍이 새로 채용된 경찰관의 교양을 교육시키지 않고, 현임 경찰관 중에서 보통과생 혹은 고등과생, 강습과생을 입교시켰는데, 일반 경찰 업무에 관해 지식이 없고 보통학교·고등 소학교를 졸업한 정도여서, 상식에 대해 매우 놀라운 상태이다.

이를 우려하여 경찰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좋지 않은 대우로 인해 유능한 인사는 다른 방면으로 우대를 받으면서 가므로 지원자가 적은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중요성과 명예로움을 인식시키고 동시에, 대우를 개선하여 현임자의 교양 향상에 각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통감한다.

4) 생도의 체격·보건 개황

학생 중에 이른바 '완건(頑健)'하다고 할 만한 자가 적고, 신장·체중·가슴둘레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영양도 좋지 않다. 이에 식사는 영양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교련·건국체조 등을 통해 체력을 연마한다.

만주·조선 학생 가운데 가장 결여된 것은 기력으로, 그 민족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체력에서도 영향을 받은 바가 크므로, 기력 양성에 한층 노력을 기울인다.

5. 교사 및 부지 개황

본교가 사용하는 건물은 1905년 독변공서(督辦公署)가 설치되었을 때에 건축된 것으로, '히스'식 단층 건물이다. 1935년 7월, 지방경찰학교관제 발표에 따라 그 개교를 서둘러야 해서, 달리 적당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가 심각하여 본부 대부분이 썩었고 외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어져 언제 무너질 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건축물 및 부지는 관유(官有)로, 총 건평 275.98평이지만, 부지 면적은 성(省) 공서(公署) 내 일부를 사용하는 중이므로 구분하기 어렵다.

6. 비품

비품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

7. 업무 처리 및 회계

1) 사무 분담 상황

본교는 교무계, 감독계, 서무계, 총리계 등 네 개 계(係)로 나뉘어 있으며, 계 주임과 아울러 그 보조자를 배치하여 교무 쇄신과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다.

2) 업무 처리 규정

당교에는 아직 업무 처리 규정이 없어, 성 공서의 업무 처리 규정에 준하여 종래의 경험에 기초해 처리해 오고 있다. 이 규정의 필요성에 비추어 현재 그 작성을 서둘러 입안 중이다.

3) 학생진첩(學生津貼)

당교에서는 보통과생에 대해서는 5원(圓)의 학생진첩으로 식비를 충당하고, 고등과생에 대해서는 5원의 학생진첩을 초과해서 식비를 지불하도록 하며, 월(月) 5원 평균으로 삼는다. 그 밖에 제반 잡비를 부담하게 한다.

〈출전 : 治安部警務司中央警察學校 「間島省地方警察學校」, 『滿洲國警察學校要覽』, 1938년 7월 133~138쪽〉

(6) 만주국 치안부 경무사

(상략)

제2절 경찰기관의 변천

제1항 중앙기구

경찰국 '우리나라'¹⁷⁾는 건국 후 얼마 되지 않아 1932년 3월 9일에 공포한 "국무원 각 부서 관리제도"

제10조에 근거하여 흥안 각 성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찰 행정은 민정부 총장이 주관하고 있었다. 관리제도 제11조에 근거하여 민정부에 경찰 업무국을 설치하였고 관리제도 제14조에 근거하여 경찰 업무국에서 치안 경찰과 관련되는 사항 및 행정 경찰과 관련되는 사항을 주관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확립한 최고 경찰기관이다. 건국 당시의 경찰 업무국은 총무과, 특무과, 경비과, 외사과, 감독실과 형사실 등 4개 과와 2개 실로 구성되었으며 직원은 근 40여 명이 있었으나 건국 초기에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혼란한 시기에 그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경찰 업무의 기초가 대체적으로 확립된 후 우선 경찰 행정의 큰 방침을 국내 치안 숙정에 두고 전 만주의 경찰기관을 확립하고 그 일원화의 지도를 확보하는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였다. 1934년 3월 1일에 군주제를 실시할 때 예전부터 있던 정부조직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조직법에 따라 각 부서의 총장을 대신으로 개칭하였으며 때문에 경찰 행정도 민정부 대신이 주관하였다.

다른 방면으로 건국 이래 일본군과 만주군은 연달아 비적 토벌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국내의 치안은 점차 안정되었다. 그리하여 교통, 산업,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현저한 확대와 발전을 얻었다. 정부는 국가의 이런 발전 형세에 비추어 현지에 적응되는 행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1934년 12월 1일에 지방제도를 수정하였으며 원래의 4개성을 10개성으로 나누었으며(흥안 각 성을 제외함) 행정을 침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다. 새로 설립한 각 성에 경찰 업무청을 설치함으로써 하여 경찰 행정 진영도 더욱더 완벽한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런 발전 형세에 적응하기 위하여 경찰 업무국의 기관도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듬해 1935년 1월에 외사과를 철수하고 감독실을 감독관리실로 개칭하였으며 형사실을 형사과(10월에 또 실로 개칭하였으며 1936년 5월에 철수하였다)로 개칭하였으며 또 사법과 등을 새로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1937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 치외법권 철수와 부속지역 행정권을 인도하는 사업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며 실패하거나 실수할 염려가 전혀 없었다.

정부는 그 후의 각종 형세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 행정기관의 개혁을 실행하였다. 1937년 6월 5일에 조직법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공포하였으며 같은 날에 칙령으로 제120호 공문서인 “국무원 각 부서 관리제도”를 새로 공포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기관을 실행하였다. 이번 개혁을 거쳐 새로 치안부를 설치하고 치안부 대신이 국방, 용병, 군정, 경찰 및 기타 치안, 육지와 수로의 측량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주관하였다. 이와 동시에 민정부를 철수하고 경찰 업무국을 치안부에 넘겨주었으며 치안부 대신의 통할 하에 넣었다. 또 새로운 기구를 진일보하여 실시함으로써 원래의 몽고행정부를 철수하고 이를 관할하고 있던 흥안 각 성의 행정을 부동한 부서에 따라 국무원의 각 부서에 귀속시켰으므로 그 행정 사업은 치안부 대신이 주관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경찰 행정은 건국의 일원화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경찰 업무국은 의연히 관련되는 치안 경찰 및 행정 경찰이 주관하였다. 이번 개혁에 의거하여 군경의 통일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경찰국 내의 분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절을 진행하였으며 치외법권의 철수와 건국 후 제2기 경찰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경찰기관을 정비하는데 노력하였다.

17) 만주국.

즉 원래의 사법과를 철수하고 경비와 형사 두 개 과를 설립하였으며 특무과에서 검열과를 성립하고 보안과, 감독관리실은 계속하여 존재하였으며 총무과는 경찰 업무과로 개칭하고 기획과를 철수하고 경찰 업무과와 합병하였다. 결과 경찰 업무국은 6개 과, 1개 실로 확충하고 강화하였다. 1937년 12월 1일에 치외법권의 폐지와 부속지역 행정권의 인도를 실행하였으며 동시에 일본 측으로부터 관동국과 외무성의 아주 많은 경찰관을 접수하였으며 전 만주의 경찰 진영은 더욱 충분해지고 완벽화 되었다. 이밖에 치외법권을 폐지하고 부속지역 행정권을 인도할 때 경찰 사업을 더욱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반 경찰의 자질을 제고시키는 것은 극히 중요하고 절박하였다. 여기에 비추어 치외법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원래 총무과에 종속되어 있던 교양부문을 분리해 내어 교양과를 설립함으로써 경찰 교육을 철저히 진흥하였다. 이전에 일본과 만주국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조약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국내가 동맹 군사업무에 대한 원조 및 호적 사무의 보좌 집행을 우리나라 경찰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결과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병사은상실을 설치하여 이 사무를 나누어 관리하게 하였다. 이 한 개 과, 한 개 실을 증설한 후 경찰 업무국 내의 기관은 경무과, 경비과, 특무과, 검열과, 경비과, 형사과, 교양과, 감독관리실 및 병사은상실 등 7개 과, 2개 실로 확대되었다.

1938년 10월 1일에 검열과를 철수하고 검열과를 검열계로 고치고 특무과에 귀속시켰으며 감독관리실을 철수하고 교양과에 합병시켜 교양감독과로 개칭하였으며 감독과 교양이 양자가 일체화됨으로써 강력하게 교양을 강화하였으며 동시에 감독 업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이외에 국가 운명이 창성됨에 따라 국가 정치의 복잡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힘써 감독제도를 강화하려고 도모하였다. 1939년 8월에 '감독령'을 공포하고 총무청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부서, 각 성에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참사관을 설치하여 감독 관리 업무('감독' 이 장을 참조)를 완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찰 업무국은 같은 해 11월 1일에 대신 관청에 감독을 책임지는 참사관실을 새로 설치하였다. 때문에 경찰을 순시하고 감독하는 사업은 교양감독과로부터 분리되어 참사관실에 넘겨주었으며 교양감독과를 재차 교양과로 개칭하였다. 뒤이어 1940년 10월 23일에 칙령으로 제 282호를 공포하였으며 국무원의 각 부서의 관리 제도를 일부분 수정하였으며 국내외의 각종 형세와 방위 실시 성과에 비추어 원래의 국무원 총무청에서 관할하고 있던 경호업무를 치안부에 넘겨 주었으며 경찰 업무국에서 주관하였다. 때문에 같은 해 12월 17일에 원래의 경비과를 경찰방위과로 개칭하였으며 그 업무를 합병하여 통일적으로 주관하였다.

1940년 말까지 경찰 업무과는 경찰 업무과, 경찰방위과, 특무과, 경비과, 형사과, 교양과와 병사은상실 등 6개 과 1개 실로 나누었다.

중앙경찰학교 경찰관을 배양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건국 초기인 1932년 6월에 칙령 제 30호에 근거하여 신경에 민정부 총장이 관할하고 있는 중앙경찰학교를 설치하였다. 이는 경찰관을 교육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경찰간부를 배양하고 훈련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또 부속 경찰관 훈련소를 설치하여 하급 경찰관을 배양하는 것을 책임지었다. 1935년 7월 30일에 칙령 제 76호로 '지방경찰학교관리제도'를 공포하고 또 신경 지방 경찰학교를 설치한 동시에 부속 경찰관 훈련소를 폐지하였다. 일본인 경찰관에 관하여 최초의 임직 교육은 의연히 중앙경찰학교에서 책임졌다. 1937년 7월 1일의 행정기관 개혁에 따

라 중앙경찰학교를 또 치안부 대신의 관할 밑에 두었다. 그 후 경찰 행정의 발전에 따라 그 내용은 몇 차례나 완벽화되고 확대되었으며 경찰 교육 사업을 철저하게 개혁하는데 전심전력으로 몰두하였다.

지문관리국 우리나라의 경찰용도 지문은 1934년 2월 이후 전 만주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경찰 업무국에서 통할하여 관리하였다. 치안 방면의 특수성과 호적법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등 정황 하에서 만주의 노동자 협회에서 관리하는 노동지문과 경찰지문을 합병하여 최대한도로 지문의 작용을 발휘시킴으로써 치안을 유지하고 기타 제반 행정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1939년 1월에 칙령 제 5호를 공포하여 치안부 아래에 속하는 기관인 '지문관리국'을 설치하고 치안부 대신이 관할하였으며 지문관리 및 감정 등에 관련되는 사무를 책임지었다. 당시 지문관리국의 내부기관은 지금까지의 관리과, 감정과, 노무과 등 3개 과와 지문기술원 훈련소가 있다.

제2항 지방기구

성 경찰 업무청 건국 전에 각 성의 최고 경찰기관으로서의 전 성의 경찰 업무청은 성 내의 수로와 육지의 경찰 사무를 통할하고 있었다. 건국 당시 중앙행정조직의 확립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1932년 3월 9일에 칙령 제13호 '성 관공서 관리제도'를 공포하여 봉천, 길림, 흑룡강 각 성 관공서에 경찰 업무청을 설치하였다. 1933년 3월에 열하에서는 숙정 사업을 완성하였으며 같은 해 5월 3일에 칙령 제36호를 공포하여 열하성 관공서를 설치하고 성 관공서에 경찰 업무청을 설치하였다. 상술한 각 성의 관공서 경찰 업무청은 본 성의 경찰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있었으며 과거의 경찰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한 면으로는 경찰 진영의 완벽함과 보강, 다른 한 면으로는 국내 치안을 나날이 확립하기 위하여 오직 앞으로 매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각 성의 구획은 흥안 각 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건국 전의 각 성 정부의 행정구획을 답습하였다. 그러나 이는 건국 후의 새로운 형세에 적용할 수 없었으며 관할구역이 너무나 방대하였으므로 성 관공서의 직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으므로 1934년 12월 1일에 제1차 지방제도 개혁을 실행하여 원래의 4개성을 10개 성(봉천, 안동, 금주, 빈강, 삼강, 간도, 흑하, 용강, 길림, 열하)으로 나누었으며 각 성에는 각각 경찰 업무청을 설치하였다.

1937년 7월 1일에 실행한 행정기관의 재차 개혁은 안동성과 봉천성의 일부분에 통화성을 새로 설치하였고 빈강성의 일부분에 목단강성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상술한 두 개 성에는 각각 경찰 업무청을 설치하였다. 이밖에 건국 이래 흥안 각 성의 행정은 몽고 민족의 특수성에 비추어 중앙에 흥안국(1932년 8월 3일에 흥안분국으로 개칭하였으며 1934년 12월 1일에 몽고행정부로 새로 설치한 후 흥안분국을 폐지하였다.)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1937년 7월의 중앙행정기관의 개혁에 따라 몽고행 정부는 국무원의 직속기관으로서 재차 편성하여 흥안국으로 개칭한 동시에 원래 흥안 각 성의 경찰 행정사무(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순서의 흥안 각성의 경찰기관을 참조하기 바람)는 치안부 대신에게 귀속시켜 관할하게 하였으며 경찰업무국에서 주관하였다. 당시 흥안 각 성의 경찰기관은 흥안 북성과 흥안 남성에 경찰 업무청을 설치하였으며 흥안 동성과 흥안 서성은 민정청 내에 경찰 업무과를 설치하여 성 내의 경찰 행정 사무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1937년 12월 1일에 치외법권을 철수한 후 흥안 서성에 경찰 업무

청을 설치하였다. 이와 동시에 같은 날에 흑하성 행정기관의 개혁(칙령 제 398호로 흑하성 관리 제도를 공포)에 따라 흑하성 경찰 업무청을 폐지하여 경찰 업무, 특무 2개 과를 설치하여 각각 성 내의 경찰 행정을 주관하였다. 그후 북쪽 지역의 중요성이 잠시 격화됨에 따라 1939년 1월에 칙령 제144호로 “흑하성 관리 제도”를 수정하였으며 재차 경찰 업무청을 설치하였다. 이와 동시에 또 용강성과 빈강성의 일부분에 북안성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삼강성과 목단강성의 일부분에 동안성을 새로 설치하였다. 상술한 두 개 성에는 각각 경찰 업무청을 설치한 동시에 경찰 업무청을 설치하지 않은 흥안 동성에도 경찰 업무청을 설치하여 성 내의 경찰 행정을 주관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전국에는 18개성(신경 특별시에 수도경찰청을 설치)에는 모두 경찰청을 설치하였다.

지방경찰학교 건국 초기에 초임경찰관을 교육하기 위하여 신경, 봉천, 길림, 하얼빈, 치치하얼과 승덕 등 지역에 “경찰관 훈련소”를 설치하였다. 1934년 말에 지방행정조직을 개혁한 후 우리나라의 경찰 행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런 지방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정비하려고 준비하였다. 1935년 7월 30일에 칙령 제76호 ‘지방경찰학교관리제도’를 공포하였으며 기존의 경찰관 훈련소를 확충하여 ‘지방경찰학교’로 고쳤다. 이외에 당시 아직 훈련소를 설치하지 않은 연길, 가목사, 흑하, 금주, 안동 등 성 관공서에도 지방경찰학교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지방경찰학교는 신경 특별시 시장 혹은 성장의 관할 하에 사업을 진행하였다. 1937년에 흥안 동성, 흥안 남성, 통화성, 1938년에 목단강성, 흥안 북성과 흥안 서성, 1939년에 북안성과 동안성에 모두 각각 지방경찰학교를 설치하여 지방 경찰관의 교육 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1) 도시 경찰기관

수도경찰청 건국의 성스러운 사업을 완성하고 장춘을 신경으로 개칭하고 여기에 황궁을 건립하고 수도로 정하였으며 신경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통과 문화 중심으로 되었다. 이곳의 치안이 어떠한지는 기타 지방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1932년 6월 11일에 칙령 제 29호를 공포하여 민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수도경찰청’을 설치하여 수도와 장춘 현 내의 경찰 사업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 후 국세는 해마다 발전하였는데 수도의 발전과 팽창은 대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단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들게 하였으며 경찰사무도 또한 날이 갈수록 한 곳으로 집결되었으며 번영하기 그지없었다. 치외법권을 철수하는 준비를 충분히 하기 위하여 경찰 사업을 개선하고 완벽화하여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총감을 도와 경찰청 내의 업무를 주관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1936년 3월에 ‘관리제도 수정’을 실행하여 부총감을 배치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1937년 7월에 중앙 행정기관에 대해 개혁을 진행 할 때 수도경찰청을 직접 국무총리대신에 종속시켰다. 과거 수도경찰청의 관할 구역은 줄곧 수도와 장춘현이었다. 수도의 비약적인 발전 및 치외법권을 철수하고 부속지역 행정권을 인도한 후 도시 경찰행정의 중요성이 나날이 뚜렷해지므로 수도경찰청은 응당 수도 경찰행정에만 전문적으로 주력하여야 하는데 장춘현도 현 행정 관리 방면에서 현장에게 경찰권을 수여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되었다. 그리하여 1937년 10월에 수도 경찰청의 관리 구역은 신경 특별시의 구역과 일치하게 한 동시에 장춘현의 모든 경찰권을 장춘현 현장에게 넘겨주었다. 같은 해 12월 1일의 치외법권 철수와 부속지역 행정권의 인도에 따라 수도 경찰청은 동시에 만주철도 부속지역의 관동국의 관할하에

있는 경찰서 및 특별시의 일본 영사관 경찰서의 많은 경찰관을 접수하였으며 경찰 진영은 면모가 일신되었다. 이밖에 최근에 국내의 각종 형세가 나날이 긴박해짐에 따라 국가에서는 경제를 강화하고 기타 각 방면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일반 행정과 경찰 행정의 관계가 점점 밀접해지게 하고 시정 사업과 도시의 성질에 호응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응당 경찰권을 수여하여야 하는데 경제관리와 경호에 종사하는 외에 또 전 도시의 행정에 대한 혁신을 진행하여 높은 국방국가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1940년 11월 1일에 신경 특별시와 수도경찰청을 합병하여 하나로 하여 일원화 조직으로 고쳤다. 즉 원래의 '수도경찰청 관리제도'를 폐지하였으며 1940년 10월 12일에 공포한 칙령 제259호 '수도경찰청 관리제도'에 근거하여 수도경찰청을 신경 특별시의 직속기관으로 하고 신경 특별시 시장에게 귀속시켜 주관하게 하였다. 그 후 경찰총감은 신경 특별시 시장의 지휘와 감독의 명령에 따라 수도 경찰, 소방과 경호 등 관련 사무를 관리하였다.

일반도시 경찰기관 건국 전의 도시경찰기관은 각 도시에 공안국을 설치(성 소재지 공안국, 성도 소재지, 상업도시 공안국이라 칭함)하고 전 성의 경찰 업무처와 함께 독립기관으로서 도시의 경찰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건국 후 얼마 안 되어 1932년 6월 11일에 교령 제28호 "경찰청 관리제도"를 공포하였으며 전국의 주요 도시에 성에서 직접 관할하는 경찰청을 설치하여 도시의 경찰 행정사무를 장악하고 관리하였다. 그밖에 하얼빈시는 국제도시이므로 건국 전 각 방면의 경찰 기관과 함께 존재하였는데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1933년 3월에 교령 제14호로 별도로 제정하여 "하얼빈 경찰청 관리제도"를 공포하고 민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경찰청을 설치하였다. 후에 도시의 신속한 팽창, 신흥 도시의 흥기, 치외법권의 철수, 부속지역 행정권의 인도 등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 경찰청을 증설하고 관리제도를 수정하였다. 또 도시 인구가 조밀하고 정치, 경제, 교통 방면에서 특수한 중요성을 구비하고 있는 봉천과 하얼빈의 경찰청에 부청장을 배치하여 도시 경찰행정이 실패하거나 실수할 염려가 전혀 없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봉천, 하얼빈 두 대도시를 제외한 외 원칙적으로 경찰청 밑에 경찰서를 설치하지 않는 방침을 취하였으며 여기에 근거하여 1937년 4월에 안동, 길림, 치치하얼 각 경찰청 밑의 경찰서를 철수하였고 오직 영구와 안동 두 경찰청 밑에 있는 수상경찰서만 보류하였다.

1937년 12월 1일에 치외법권의 철수와 부속지역 행정권을 인도함에 따라 경찰청은 많은 일본측의 경찰서와 경찰관을 접수하였으며 진영은 더욱더 완벽화되었다. 그러나 원래의 경찰청은 모두 통일로 과를 설치하였으나 국세의 신속한 발전 특히 도시 발전이 나날이 뚜렷해지므로 경찰청의 기관은 이미 통일된 관리제도에 따라 실행하지 않았으며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기관을 설치하였다. 때문에 1939년 10월에 "경찰청 관리제도"를 수정하여 극력 경찰청 기관을 정비하려고 하였다. 그때로부터 줄곧 내용의 충실과 혁신에 노력하였으며 관리제도를 공포하여서부터 1940년 10월 말까지 경찰청의 설치, 개편, 폐지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32년에는 봉천, 길림, 안동, 치치하얼, 연길, 1933년에는 하얼빈(원래는 민정부에서 직접 관할하였는데 1937년 이후에 기타와 마찬가지로 성에 귀속시켜 직접 관할하게 하였다). 1935년에 승덕, 금주, 가목사, 흑하(흑하는 1937년에 성 기관을 개혁함에 따라 철수하였다). 1936년에는 해랄이(海拉尔), 만주리(이 두 곳에 설치한 경찰청은 최초로 모두 민정부에서 직접 관할하였으나 1937년에는 성에 귀속시켜

직접 관할하게 하였으며 그후 1939년에 만주리, 1937년에는 해랍이에 각각 국경경찰대를 설치하고 경찰청을 폐지시켰다), 1937년에는 무순, 요양, 안산, 철령, 목단강, 사평가, 영구 등 각 지역, 1939년에는 본계호, 부신에 경찰청을 새로 설치하였다.

도시와 경찰청의 합병 상술한 신경 특별시와 수도 경찰청이 합병한 동일한 사유는 1940년 11월 1일에 각 도시에서 모두 도시와 경찰청을 합병하는 것을 실행하여 일원화 조직으로 고쳤으며 시장에게 경찰권을 수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로부터 원래의 “경찰청 관리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봉천과 하얼빈의 두 경찰청은 같은 해 10월 23일의 칙령 제260호 “경찰관 관 제도”에 근거하여 도시의 직속 조직으로서 새로 경찰국으로 되었으며 기타 경찰청은 같은 해 10월 23일의 칙령 제266호 “도시 관리제도의 수정”정신에 따라 각 도시의 정황과 결합하여 각각 “도시 경찰업무청” 혹은 “경찰업무과”를 성립한 동시에 시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 사무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승덕, 연길 두 경찰청은 합병의 기회를 이용하여 현에 넘겨주고 경찰서로 고쳤다.

(현, 기의 경찰기관)

현 건국 전 현의 경찰기관은 각 현에 공안국 혹은 치안국을 두고 현의 경찰 행정사무를 관리하였다. 또 이는 본 성의 경찰 업무청에 직속되어 있으며 지위적으로 현장과 대등하며 심지어 그 실력은 대방보다 나아 현장을 능가하였으며 지방 행정사업이 원만하게 운행되지 못하였다. 건국 후 이런 폐단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1932년 7월 5일에 교령 제54호 “현 관리제도”로 “공안국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현장의 보좌기관으로서 현 관공서에 경찰 업무국을 두어 현 내의 경찰 행정사무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또 경찰 업무국 밑에 경찰서를 설치하여 관할 구역 내의 경찰 사무를 집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과거의 제도를 완전히 없앴으며 새로운 기관을 건립하여 지방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동시에 건국 당시의 국내 각지에 횡행하는 비적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현, 기 경찰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은 제일 긴요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1932년부터 시작하여 전 만주와 각 현에 경찰 업무 지도관(일본이 경찰관)을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지방 치안을 유지하고 경찰 기관을 충실히 하였다. 그후 경찰 업무지도관이 필사적으로 전투하고 사업하였기 때문에 국내의 치안 숙정은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찰의 각항 사업도 비약적인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태까지 현 관리 제도는 아직 경찰 국장의 신분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업무국의 직원도 다만 과원, 임시 직원이라 칭하였으며 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권한도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경찰 행정 방면에서 아직도 많은 부족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37년 12월에 “현 관리제도를 수정”할 때 상술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원래의 경찰 업무국을 경찰 업무과로 고쳤으며 현 경찰 업무과의 성원들도 모두 경찰관이 맡게 하였다. 특히 경찰 업무 과장과 경찰 업무과에 속하는 경찰이 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방면에서 현 내의 경찰관의 권한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현 경찰해정이 순리롭게 운영되게 하였으며 통제, 지휘, 감독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밖에 현 관리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또 원래의 소위 “경찰업무 지도관 제도”를 개혁하였으며 이 기관 시스템 내에 합병시켰으며 경찰 등급의 지휘명령 시스템에 따라 현 경찰기관을 개선하고 혁신하였다. 이밖에 1938년 12월 이후에 국경 경찰대의 각 현, 기의 경찰 업무를 설치하였고 이 국정경찰대에서 일원화 관리를 진행

하기 위하여 이런 현, 기에 더는 경찰 업무과를 설치하지 않고 경찰서도 설치하지 않았다.

기(旗) 몽기(蒙旗)지방은 흥안 각 성과 각 성(길림, 용강, 빈강, 열하, 금주)에서 기제도를 실행하는 지방을 말한다. 상술한 지방은 주요하게 몽골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기타 지방의 정황과 현저하게 부동하다. 1932년 7월 5일에 56호 교령으로 “기제도”를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기내의 경찰기관으로서 기장을 보좌하는 경찰 업무과를 설치하여 기내의 경찰 사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열하성과 금주성 내의 몽기(소위 현, 기가 중합된 지대의 몽기에 1936년 12월 17일 제179호 칙령으로 “열하성과 금주성 내의 기제도”와 같은 날에 제183호 칙령으로 또 “열하성 및 금주성 내의 기 관리제도”(1939년 제364호 칙령을 수정한 것임))를 공포하였으며 1937년 1월 1일에 특수 제도를 세원 동일한 지역 내에 현 경찰 업무과와 경찰서, 기 경찰서를 중복하여 설치하여 민족 경찰 사무를 관리하게 하였다. 그 후 1940년 4월 30일에 칙령 제82호와 제83호로 새로운 “기제도”와 “기 관리제도”를 공포하였으며 상술한 열하성과 금주성의 특수 기제도와 기 관리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기의 경찰기관은 일률로 기장을 보좌하는 기관인 경찰 업무과를 설치하여 경찰 사무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경찰 업무과 밑에는 경찰서를 설치하여 경찰 사무를 집행하였다.

경찰서 건국 전에는 공안분국이라고 칭하였으며 관할 구역 내의 경찰 사무를 관리하였으며 건국 후에는 경찰서라고 개칭하였다. 도시, 현, 기의 경찰 업무과, 경찰국, 경찰 업무처 밑에 두고 관할 구역 내의 경찰 사무를 집행하게 하였다.

(경찰대)

경찰대라는 명칭이 출현하기 전에 우선 특수경찰대가 있는 적이 있었다. 건국 후 국경과 해변의 경비 및 비법입경과 밀수를 단속하는 등에 따라 국내 치안과 재정에 대하여 아주 큰 영향이 있었다. 1932년 6월 15일에 교령 제32호 “특수경찰대 관리제도”를 공포하였으며 국경과 해변의 중추지역에 민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국경경찰대와 해변경찰대를 새로 설치하여 경비와 단속 임무를 담당하였다. 동시에 국내의 비적들을 토벌하고 경계하고 현 경찰대를 원조하고 감독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역의 치안을 신속하게 회복하였고 또 민정부에 귀속시켜 직접 관할하는 강유력한 유동경찰대를 새로 설치하여 관할 구역 내의 유동 경계임무를 완성하였다. 이런 유형의 특수경찰대의 설치 정황은 다음과 같다.

만주리, 수분하, 산해관, 와방점, 안동(이상은 1932년에 설치하였음), 흑하(안동에서 옮겨 갔음), 고북구(古北口, 1933년에 설치), 희봉구(喜峰口, 1934년에 설치), 등 각 주요한 국경 지점에 국경경찰대를 설치하여 경비와 비법입경, 밀수를 단속하는 임무를 맡게 하였다. 그러나 유동 경찰대는 신경(1933년에 설치)과 하얼빈(1933년에 설치)에 설치하여 정해진 시간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유동하여 비적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토벌하였다. 또 하나는 1932년에 창설된 해변경찰대인데 이 대대는 영구에 설치하여 관할 구역 내의 해변 경계를 책임지고 비법입경, 밀수를 감시하고 어선을 보호하였다.

이런 유형의 특수경찰대를 설치한 이래 줄곧 대원들의 훈련과 활동내용을 정비하고 충실하게 하였으며 국내 치안을 확립하는 면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방면으로 도시, 현, 기의 경찰을 해마다 정비하고 충실하게 하여 치안사업을 호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경찰 기관을 동일적으로 정비시킬 필요가 있었다. 1935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편성을 하여 유동경찰대와 국경경찰대를 도시, 현, 기의 경찰 기

관에 합병시켰다. 1937년 7월에 “특수경찰대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국경경찰대를 전부 취소한 동시에 새로운 관리제도에 따라 해변경찰대를 해상경찰대라고 개칭하였다.

해상경찰대 해상경찰대는 원래 1932년 4월에 “특수경찰대 관리제도”에 따라 민정부 총장이 관리하여 해변경찰대로서 창립된 것이다. 그 후 1937년 6월 27일에 칙령 제186호 “해상경찰대 관리제도”에 근거하여 해상경찰대라고 개칭하였으며 치안부 대신 밑에 두고 직접 관할하게 하였다. 해상경찰대의 본부는 영구에 설치되어 있고 연안의 중추지역에 7개 분소대를 설치하고 배와 비행기를 배치하고 해상경찰대는 관할 구역의 발해, 황해와 마주하는 해안 및 해상에 대한 경계를 책임지는 외에 비법입경, 밀수, 비밀리에 물고기를 잡는 것을 감시하고 단속하고 또 해상 치안을 유지하고 당시 해변경찰대의 임시 임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1938년 9월에 관리제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안 경찰 사무를 연안 각 현(청)에 넘겨주어 관리하게 하였다.

국경경찰대 국경 특수지역의 경비사업은 여태까지 치안부 참모국 소속한 국경감시대(건국 초기의 국경경찰대에 관해서는 특수경찰대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가 책임지었으며 후에 이 국경감시대는 경찰 업무부에서 접수하여 국경경찰대로 개편하였다. 1938년 4월 1일에 간도성의 훈춘, 목단강성의 동녕, 수분하, 평양진, 흑하 등 5곳의 국경경찰대를 접수하였으며 전부 이전부터 있던 관할 구역을 답습하였으며 새로운 구상과 경찰 관점에 따라 국경경찰의 업무를 힘써 완성하였다. 뒤이어 1938년 8월 1일에 국경경찰대를 설치한 동시에 각 대대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 약간의 변경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국경경찰대는 자신의 기본체제를 완벽화하였다. 그러나 국경형세의 변화와 현지 일본군과 국군의 분포 정황 등에 호응하기 위하여 경찰 구역의 변경과 경찰 역량의 변동을 실행하였다. 또 국경경찰대의 직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부, 북부 국경 지대의 현, 기의 경찰기관과 국경경찰대를 합병하여 법령에 따라 국경경찰대를 기관으로 고쳤으며 1938년 12월 1일에 칙령 제270호 “국경경찰대 관리제도”를 공포하였고 같은 날에 치안부에서는 제6호 포고를 선포하고 간도성 훈춘현, 목단강성 동녕, 밀산, 호림, 요하, 무원, 동강, 수빈, 라북현과 흑하성의 각 현에 국경경찰대를 설치하고 상술한 각 현의 경찰기관을 일일이 국경경찰대와 합병하였다. 그리하여 동부와 북부 국경 지대의 현의 경찰조직은 모두 대대의 편성 형식을 취하였으며 원래의 정황으로 놓고 볼 때 동일한 현 내의 국경경찰대와 현 경찰은 동시에 병립되었으며 양자의 유기적인 작용은 발휘하기 힘들었으나 지금은 양자를 합병시킴으로써 현 내의 경찰은 대장의 지위와 통솔 하에서 수량상에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력도 증가되었다.

우리나라의 4대 국책 가운데의 하나인 북쪽진흥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업과 관련되는 국경경찰대를 공고히 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 1939년 6월 1일에 흥안 북성과 해랍이경찰청의 관할 구역을 제외한 외에 전부 지역에 모두 국경경찰대를 설치하였으며 목단강성에 수양현(绥阳县)을 새로 설치한 동시에 이 현에 국경경찰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 후 노몬한사건의 실적에 따라 흥안 북성 중심지역인 해랍이가 지리위치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1940년 1월 1일에 해랍이경찰청을 경찰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뒤이어 같은 해 8월 22일에 외몽골의 국경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흥안 동성의 희찰알이기(喜扎嘎尔旗)경찰기관도 경찰대 조직으로 고쳤다. 이로 하여 7개성의 2개 시, 19개 현, 7개기에 국경경찰대를 설치하였고 굵이굵이 5000킬로미터에 달하는 만주, 소련, 몽골의 국경선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현재 설치한 경찰대는 앞에서 서술한 특수경찰대 제도에 따라 설치한 국경경찰대는 비록 명칭은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부동한 것으로서 이런 것은 이미 개론에서 논술했다.

현 경찰대 건국 전에 현과 기에는 공안대 혹은 경비대라는 명칭으로 비적을 토벌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 무장 경찰이 있었는데 대다수는 공안국장의 지휘 하에 있었다. 건국 후 그들은 일률로 경찰대라고 고쳤으며 직접 현장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비적 토벌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후 경비 역량을 통일로 관리하는 각도에서 출발하여 경찰대를 통일로 국군으로 할 데 대하여 결정하고 치안 숙정 사업을 맡게 하였으며 1936년 3월 1일에 군정부에서는 민정부의 15,000명과 몽고행정부의 1,400명의 경찰대를 접수하였고 즉시 치안대로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건국 이래 현, 기의 통솔 하에 지방 치안을 확립하는 면에서 공적을 거두었던 경찰대는 취소되었다. 그러나 1938년 3월 1일에 경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안부 참모국에서는 6,800명의 치안대를 또 경찰 업무국에 넘겨주었으며 각 현에 나누어 경찰 유격대를 구성하여 지방 치안을 유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후에 지방 치안이 정상화됨에 따라 경찰대가 존재할 필요성은 이미 아주 작았으며 점차적으로 이를 폐지하여 현 경찰 기관에 통일시켰다.

삼림 경찰대 심산 밀림지대는 예전부터 비적 집단들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었다. 때문에 이 지대의 숙정 사업은 바로 치안 대책상 제일 중요한 대사이었으며 지형의 관계로 하여 일본과 만주의 군경들이 적극적으로 토벌하는데 뜻대로 할 수 없었다. 근본적으로 삼림 지대의 비적들을 소멸하고 목재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중앙치안유지회와 실업부에서는 협의를 진행하여 1935년 12월의 민정부 명령에 따라 “삼림경찰대”를 구성하여 이를 필요한 현에 설치하여 직접 현장에 종속시켜 삼림 채벌의 경비 사업을 책임지게 하였다. 뒤이어 원래의 임업 경영자들이 사사로이 설치한 모든 자위단을 폐지하였다. 최근에 삼림경찰대는 자신을 강화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삼림벽지에서 흑서와 엄한을 무릅쓰고 경비와 경계를 진행하고 비적 집단의 활동을 타격하는 동시에 목재 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심산밀림 지대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으며 삼림경찰대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2) 기타 경찰기관

흥안 각 성 경찰기관의 통일 1932년 3월 9일에 교령 제11호로 중앙에 흥안국을 설치(1932년 8월 3일에 교령 제68호로 흥안본국으로 개칭)하고 국무원에 직속되게 하였으며 흥안 각 분성의 일반 행정을 통할하였다. 같은 날에 교령 제12호로 봉천, 흑룡강 두 개 성에 속하는 미개발의 몽고지역을 두 개 성으로부터 분리해 냈으며 각각 흥안 남분성, 흥안 동분성, 흥안 북분성에 속하게 하고 뒤이어 같은 해 4월 5일에 교령 제17호 “흥안 분성 관공서 관리제도”를 발표하여 각 분성에 분성 관공서를 설치하고 성내의 일반 행정사업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 뒤를 이어 같은 해 7월 5일에 교령 제59호에 따라 기제도를 제정하고 각 기에 기 관공서를 설치하고 기내의 일반행정사업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흥안 각 분성은 새로운 행정기관을 확립하였으며 경찰기관으로서 흥안국 행정업무처에 경찰 업무과를 설치하여 흥안 각 성의 경찰행정을 통할하게 하였다. 동시에 각 분성 관공서의 민정청에 경찰 업무과를 설치하고 성내의 경찰 사무를 관리하게 하고 기 관공서에 경찰 업무과를 설치하여 관할 구역 내의 경찰 사무를 책임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중앙, 성부터 기까지 기본적으로 경찰조직을 완벽화 하였다. 원칙으로서 국

내의 지방행정은 모두 민정부 총장이 주관하고 있었으나 몽고민족의 특수성에 의하여 특별히 흥안국을 설치하여 흥안성의 일반 행정(경찰 행정도 포함)사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흥안국이 지할하는 경찰기관은 관리제도상의 일종 형신혁신에 불과하였으므로 실질상 경찰업무 방면에서 그 어떤 제고가 있는 것을 꼬물만치도 보아내지 못하였으며 의연히 건국 전의 상태로 있었다.

그러나 당시 흥안 각 성의 실제 정황은 남분성의 부분 지역을 제외한 외에 모두 비적들이 횡행하여 창궐하기 그지없었으며 게다가 수재 등으로 하여 이전에 없었던 흉작을 발생되어 급히 정부에서 구제 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인심은 극도로 불안하였다. 이런 기회를 타서 불법분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날이 갈수록 더 활약적이었으므로 신속히 강유력한 경찰기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정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1932년 12월 28일에 교령 125호 “흥안 경찰국 관리 제도”를 공포하였으며 1933년 1월 1일에 체이한왕부(达尔罕王府; 흥안 남(南)분성), 포서(布西; 흥안 동분성), 해랍이(흥안 북분성)에 각각 분 성장이 관할하는 흥안 경찰국을 설치하여 이 성 내의경찰 사무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성 내의 치안을 확보하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그후 1933년 3월에 열하성의 민정청에 경찰 업무과를 설치하여 성 내의 경찰 사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그후 1933년 3월에 열하성의 숙정 임무를 완성하였고 같은 5월 10일에 교령 제37호로 과거 열하성의 북부에 또 흥안 서분성을 새로 설치하고 민정청 내에 경찰 업무과를 설치하여 성 내의 경찰 사무를 집행하게 하였다.

1934년 12월 1일의 중앙지방행정기관의 개혁과 더불어 흥안본국을 폐지하고 몽고행 정부를 새로 설치하고 몽고행정부의 민정국에 경찰 업무과를 설치하여 경찰 행정사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동시에 “흥안 각 성 관공서 관리제도”(1934년 11월 29일 칙령 제 164호)를 공포하여 “흥안 분성 관공서 관리제도”와 1933년 교령 제59호 “흥안성 행정 구획에 관한 요건”을 폐지하였으며 각 분성을 각각 흥안 동성, 흥안 남성, 흥안 서성, 흥안 북성으로 개칭하고 경찰 사무는 각 성의 민정청의 지방과에서 주관하였다.

1935년 9월 5일에 칙령 제110호 “흥안 각 성 관공서 관리제도”를 수정하고 “흥안 경찰국 관리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흥안 경찰국을 성기관 내에 귀속시켰으며 흥안 각 성 경찰기관과 흥안경찰국의 이원성 경찰 기관은 이로부터 취소되었고 흥안 각 성 아래의 경찰은 끝내 하나로 되어 합리적으로 관할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런 개혁과 더불어 국경성의 흥안 남성과 흥안 북성에 경찰 업무청을 설치하고 흥안 동성과 흥안 서성에는 민정청 내에 경찰 업무과를 설치하여 성 내의 경찰 행정사무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원래 흥안 경찰국에 종속되어 있던 경찰서를 전부 기장에게 넘겨주어 종속되게 하였다.

뒤이어 1937년 7월 1일에 정치행정기관의 대개혁 결과 몽고행정부는 흥안국으로 축소되었으며 흥안 각 성의 행정사무는 부동한 부서에 따라 각 부서에 넘겨주었으며 경찰 업무도 새로운 기관에 따라 치안부 경찰 업무국에 귀속시켜 주관하게 하였으며 치안부 대신이 통할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경찰 행정은 완전히 일원성 운명에 진입하였다.

북만특별구 경찰기관의 폐지 북만특별구(건국 전과 건국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성특별구로 칭하였음)의 기원을 더듬어 볼 때 이 지역은 1896년 청나라가 짜르러시아에 제공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하얼빈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은 만주리, 동쪽은 수분하, 남쪽은 관성자까지 이르는 T자형의 동청철도(건국 후 북만철도라 칭함)의 부속지였다. 짜르러시아는 이 지역을 원동을 경영하는 발판으로 삼았으며 동청철

도를 부설할 때 철도 부속지로서 청정부로부터 강행하여 얻은 것이다. 그 경영권은 동청철도회사에 속하며 관련되는 토지는 일체 부동산 세금을 면제하며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행정권을 부여하였다. 일러 전쟁 후인 1907년에 동청철도회사 내에 민정부를 설립하고 부속지 일대의 행정을 주관하게 하였다. 후에 중화민국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폭발한 시기를 타서 우선 무력으로 동청철도의 수비권을 회수하였으며 잇달아 경찰권과 행정권을 회수하였다. 1922년에 “동성특별구 행정장관 관공서”를 설치하여 동청철도 부속지의 행정을 책임지게 하였다. 경찰 사무에 관하여 “동성특별구 경찰 관리처”를 설치하여 관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건국 후 잠시 원래의 제도를 답습하였고 기관은 변동하지 않았다. 1933년 6월 21일에 교령 제52호 “북만특별구 관공서 관리 제도”를 공포하여 과거의 제도를 개혁하고 “북만특별구 관공서”를 새로 설치하여 북만철도 부속지(하얼빈 특별시를 제외한 외의 과거의 동성 특별구의 구역)의 행정 사업을 책임지게 하였다. 또 “북만특별구 경찰 업무처”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관할 구역의 중추 지방에 12개 경찰서를 설치하여 경찰 업무를 나누어 관리하게 하였다. 그후 북만 철도를 수매함에 따라 1935년 12월에 “북 특별구 관공서 관리제도”를 폐지한 동시에 특별구 경찰을 각 성에서 각각 넘겨받아 관리하게 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짜르 러시아가 동아세아를 침략한 역사 제도는 철저하게 붕괴되었다.

철도경호기관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철도경호기관은 1932년 3월에 봉천에 철도총국을 설치한데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국 내에 경찰 업무처를 설치하여 철도와 관련되는 경찰 업무를 관리하게 하였다. 경찰 사무는 원칙상에서 치안부 대신(1937년 6월 이전에는 민정부 대신)이 관리하고 있었으나 특수정황에 국한되어 철도경호 철도총국(후에 철도총국이라 개칭)에서 장악하고 관리하였다. 그 후 1937년 12월 27일에 칙령 제473호로 정부에서는 철도총국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 업무 및 그 인원을 접수하여 새로 “철도경호 총 대대”를 설치하여 그 업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내의 형세에 비추어 일반 경찰조직과 분리하여 치안부의 직속국으로 되었다. 그 통할기관인 “철도경호 총대대 총감부”는 봉천에 설치하고 그 밑에 “철도경호대 본부대”를 설치하고 본부대 밑에 “철도경호대”를 설치하였다. 이밖에 총감부에서는 경위대원의 교육훈련기관인 “철도경호학원”을 부설하였다.

(중략)

제6절 은상 사무

제1항 개론

공훈상 공훈상은 국가에 탁월한 공적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국가 최고 영예이다. 공을 세운 자들을 표창하는 방법으로서 국가에서 우선 훈위를 수여한다. 훈위는 대훈위, 훈1위와 훈8위 등 9개로 나눈다. 대훈위부터 훈2위 이상의 공훈증서는 황제가 친히 서명하였다. 훈장은 “대훈위 국화장”, “대훈위 국화장 대수장”, “용광대수장”, “경운장”과 “주국장”으로 나눈다.

“대훈위 국화장”은 확실히 국가 최고훈장인데 이전에는 대훈위로 평의된 자한테 하사하였다. “대훈위 국화장 대수장”은 처음부터 역시 대훈위로 평의된 자한테 하사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개 훈장은 부동한

훈장이다.

“용광대수장”은 최초에는 특별 지시에 의하여 훈1위를 수여받은 자에게 하사하였으며 훈1위 “경운장”보다 한급 더 높은 훈장이다. “용광대수장”은 “경운장”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동시에 패용할 수 없다. “경운장”과 “주국장”은 훈 1위 수여자 가운데서 “용광대수장”을 하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훈 1위부터 훈8위를 수여받은 자에게도 하사하였다. 똑같은 훈위 가운데서 “경운장”은 “주국장”보다 한 급 높으며 일본의 “육일장”과 “서보장”의 관계와 똑같다. 언급하는 김에 일본제국의 “금치훈장”, “보관장”에 상당한 훈장은 1940년 말에 이르러서도 우리나라는 아직(주석 : 비록 소위 치안부대신이 무공이 특별이 뛰어난 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회장이 있었으나 이것은 훈장이 아니고 관리 감독권의 근거였다 -원문).

하사품 하사품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비록 훈장을 수여받을 공적은 있지만 그 관리등급, 직급 혹은 사회지위 방면에서 이미 최고 훈위와 훈장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꽃병 혹은 컵 등을 하사하였다. 이런 하사품을 하사하는 절차는 훈장을 수여하는 정황과 완전히 똑같다. 은상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결자하여 허가한 후 명령을 발표하고 하사품에 국새를 날인하였다. 이것은 훈장을 대체할 수 있는 하사품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공적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국무총리대신에게 위임하여 영전수여대권을 행사하게 하고 국무총리대신이 하사품을 하사하기 때문에 하사품에 국새를 날인하지 않았다.

포상 훈장은 국가에 공헌이 있는 자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하사하는 것이고 포상은 바로 사회에 공헌을 하였거나 인품이 충직하고 온후한 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하사하는 영전의 상징이다.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포상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눈다.

(1) 협조하는데 힘써 노력하였고 몸소 체험하고 힘써 실행하였으며 성적이 탁월하고 민중의 본보기로 된 자에게 화합포상을 하사한다.

(2) 효자, 절부, 효순한 손자 및 기타 품덕이 고상하고 민중의 본보기로 된 자에게 덕행 포상을 하사한다.

(3) 자신의 안위를 아랑곳 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였거나 중대한 화재를 미리 방지하였으며 앞장서서 방공 사업에 종사하고 기타 공훈이 탁월하고 민중의 본보기로 된 자에게 의협심 포상을 하사하였다.(주석 : 의협심 포상과 경찰상은 차이점이 있다. 경찰상 규정에 의거한 경찰상은 곧 조직법 제 7조를 기초로 하여 용전대권에 기초한 표창과 근원 상 부동하기 때문에 그 성질도 같지 않다. 경찰관으로 놓고 말하면 경찰상을 수여받는 사람은 그 공적과 동시에 국가에 뛰어난 공헌을 하면 적당하게 훈장을 수여하나 포상령에 따라 진행되는 포상은 이렇지 않다. 포상은 관리의 신분을 완전히 떠나서 보통 백성의 신분으로서 나타나는 행위인데 즉 비직무행위이며 만약 의협심에 상당하면 당연히 포상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개선하고 자선사업 및 기타 사회공인에 힘쓰고 국가와 사회에 개인재산을 기부하였거나 부지런히 사업함으로써 공적이 탁월하고 민중의 본보기로 된 자에게 봉공 포상을 하사하였다.

(5) 학술, 기예, 종교 혹은 교육 방면에서 다소 공헌을 하였고 유익한 발명을 하였으며 기타 문화발전

에 공헌을 한 자에게는 문화포상을 하사하였다.

기념장 기념장은 어느 사건의 기획에 참가하였거나 어떤 집회에 참가한 것을 기념으로 하는 일종 표징이다. 1940년 말에 이르러 건용공로장(建用功勞章), 성전기념장(大典紀念章), 황제 일본방문 기념장, 창건건국 신묘기념장, 국경사변 종군기념장 등 5가지를 제정하였다.

제2항 경찰 직원에 대한 은상

만주국 은상 경찰직원의 은상 사무에 관하여 1934년 2월에 민정부 경무국 총무과에서 주관하였다. 당시 경무국에서 직접 관리한 것은 다만 경무국, 특수경찰대(만주리, 수분하, 산해관, 와방점, 고북고, 각 국경경찰대, 신경, 하얼빈 유동경찰대, 영구해변경찰대)와 중앙경찰학교의 관련 인원이었다. 지방관청에 속하는 경찰직원은 곧 모두 민정부 총무국(기관 개혁 후 내무국), 흥안본서(기관 개혁 후 흥안국)에서 관리하였다. 그 후 1937년 7월 중앙 기관에 개혁에 따라 치안부를 성립하였고 이 사무는 치안부 경무국으로부터 민정부 경무국으로 넘어 왔다.

1937년 12월에 우리나라 경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은상사업이 적절하게 제때에 진행하기 위하여 내무국과 흥안 두 개 국과 교섭을 거쳐 원래 두 개 국에서 각각 관리하던 지방경찰직원의 공적과 관련된 문건을 넘겨줄 데 대하여 결정하였고 경무국에서 전국의 경찰직원의 은상사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1940년 12월에 이르러 관리 정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생존자에 대한 평의-훈장은 1932년 3월 1일부터(만주사변 폭발 당시로부터 1934년 3월 1일까지) 건국 최초에 공적을 세워 영예롭게 임시 훈장의 은명을 받은 경찰직원에게 대하여 훈2위를 수여하고 “경운장”을 하사하였으며 빈강성 경찰청장 김용계(金榮桂)이하에게 훈1위부터 훈8위까지 훈장을 수여하였는데 도합 10,737명이었다. 뒤이어 1934년 3월 2일부터 1937년 5월 2일 기간의(치외법권 폐지와 관련된 인원은 그 공적을 1937년 11월 31일까지 종합하였다) 제2차 건국 임시 훈위를 기술하면 훈2위를 수여하고 “주국장”을 하사하였는데 용강성 경무청 장관 광리(光利)이하까지 훈8위를 수여하였는데 도합 16,000명이었으며 92명에게 은컵을 하사하였다. 그밖에 1937년 5월 3일부터 1940년 7월 15일 기간에 공을 세운 자들 즉 제3차 건국 훈장 평의에 대하여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적합한 자를 근 6만 명 이상 상급기관에 보고했으리라 짐작된다.

사망자의 임시 훈위에 대한 기술-건국 초기로부터 1940년 12월 말까지 공을 세우고 사망한 자들 가운데서 길림성 경무청장 훈4위 삼풍(森丰)에게 훈3위를 수여하고 “경운장”을 하사하였으며 길림성 경무청장 훈4위 이토(伊藤容亮)에게 훈3위를 수여하고 “주국장”을 하사하였으며 그 이하는 훈8위를 수여하여 용전을 받은 자는 도합 16,094명(제5편 통계표를 참조)이었다.

건국공로훈장 - 수여자격은 1934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위임관과 1932년 9월 15일 이전부터 1934년 3월 1일까지 연속 사업한 경장, 경사와 임시 직원이며 도합 21,774명이 수여 받았다.

성전기념훈장 - 황제등극성전 때 소견 받은 자들 가운데서 위임2등관 이상인 자, 성전사무에 참여하고 중요한 임무를 집행한 자에게 수여하였는데 도합 8,216명이 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황제 일본방문기념훈장 - 1935년 4월에 황제폐하께서 일본을 방문하는 관련 사무에 직접 종사하였

거나 이 활동 가운데서 중요한 임무를 집행한 자, 1935년 4월 6일까지 재직에 있는 위임2등관 이상의 관리와 동등한 대우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수여하였는데 도합 5,665명이 이 훈장을 수여 받았다.

건국신묘창건기념훈장 - 1940년 7월 15일까지 천임관 이상과 훈6위 이상의 훈위를 수여받은 자 및 의식에 참여한 자, 창건사무와 집행 및 창설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무에 참여한 자에게 이 훈장을 수여 한다.

국경사변중군기념훈장 - 사변현지에서 군무에 종사하거나 군사와 관련한 특별임무를 접수하여 사변현장을 왕복하는 군인, 군인 가족과 문관, 비록 사변현장에 친히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출동부대 혹은 사변으로 하여 임시 구성한 부대에 편입되었거나 사변에 관한 군무에 종사하는 군인, 군인가족, 사변현지에서 운수, 토목건축, 통신과 선전에 종사하는 자, 군부, 관리와 헌병의 감독을 받으며 사변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호하는데 종사하는 자, 사변과 관련한 사무를 협조하고 특히 공적이 있는 자는 모두 이 훈장을 수여받을 자격이 있다.

일본의 은상 만주사변 무렵에 일본군의 사변군무에 종사하였거나 그 업무에 원조를 주었으므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은상을 수여하였다. 일본인 관리의 공적에 대한 조사는 상을 하사하는 국을 거쳐 관동국에 송달하였다. 처음으로 상을 준 것은 1931년(건국 전해) 9월 18일부터 1932년 9월 30일 사이에 공을 세운 자였다. 제2차로 상을 준 것은 1932년 10월 1일부터 1934년 3월 1일 사이에 공을 세운 자였다. 이 두 차례는 모두 1934년 4월 29일에 집행하고 증여하였다. 제3차로 상을 준 것은 1934년 4월 1일부터 1936년 6월 30일 사이에 공을 세운 자였으며 1936년 7월 10일에 집행하고 증여하였다. 제4차로 상을 준 것은 1937년 7월 1일부터 1937년 7월 6일 사이에 공을 세운 자였는데 1937년 7월 7일에 집행하고 증여하였다(제5편 통계표를 참조).

중일전쟁과 관련한 은상은 1937년 7월 7일부터 1940년 4월 27일을 제1차로 하여 중일전쟁, 열하의 공산당 제8로군을 토벌하고, 장고봉사건, 노몬한 사건 가운데서 일본군의 사변사무 혹은 이를 원조하였으며 특히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관동군에 보고하였다.

제3항 순국한 경찰 직원에 대한 봉사(奉祀)

건국총령묘 합사(合祀) 건국의 성스러운 대업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영령을 위로하고 그들이 남긴 공적을 자자손손 찬송하기 위하여 1940년 8월 26일에 건국총령묘를 건축하였다. 여기에 모셔져 있는 영령들은 1932년 전해 9월 18일 만주사변의 폭발로부터 1939년 9월 17일까지 건국을 위하여 희생된 사람(공무순직자와 경찰기관과 함께 행동하였거나 원조를 진행할 때 죽은 일반 외곽자 및 상술한 기간 후의 순국자는 제 2차 이후 봉사로서는 길림성 사무관 훈5위 니시세 히데오(西瀬秀夫) 이하 2,701명은 합사의 영예를 누렸다.

총령묘 합사 건국 이래 치안 숙정 사업에서 생명을 아랑곳 하지 않고 최전선에서 활약하면서 흉악한 비적들과 작전할 때 영예롭게 전사한 국군용사와 경찰직원의 영령들은 여태까지 만충영묘에서 합사하는 용전을 얻지 못하였기에 1940년 3월 9일에 관동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전투 혹은 치안 숙정사업에서 전사한 국군 군인, 군인 가족과 경찰직원의 영령을 합사하였다. 순국 경찰직원 가운데서 381명은 아래

의 총령탑에서 영광스럽게 합사되었다.

요양-2명, 봉천-52명, 안동-18명, 신경-193명, 하얼빈-109명, 치치하얼-7명.

일본인 경찰직원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건국의 성스러운 대업에 앞장서서 관동군에 참가하여 비적을 토벌하다가 영예롭게 전사한 일본인 경찰직원수는 약 200여 명이었으며 이런 순국자들과 조국인 일본의 순국자들의 영령을 함께 야스쿠니신사에서 합사하는 영예를 줄 것을 절실히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경무국에서는 1940년 3월 14일에 국무원 총무청과 관동군과 교섭을 거쳐 순국한 일본인 경찰직원에게 관동군 군인 가족의 신분대우를 주고 그다음에 장차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하는데 대해 결정하였다.

경찰영령사 합사 순국한 경찰직원의 영령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찰영령사는 국도 남령의 중앙경찰학교의 교정을 선택하였으며 만주국 경찰협회에서 창건하였다. 1940년 4월 17일에 장엄하게 제사를 거행하였다. 국토수호신으로 3843명의 영령이 있었으며 애국단심을 삼가 바쳤고 소중한 희생을 하였으며 이 유열들은 10만 전우들의 본보기로서 우러러 보게 되었다. 매년 9월에 치안부대신을 제주로 하여 유가족의 참가하에 영혼을 위로하는 성대한 제전을 거행하고 전국경찰관의 무도시합 대회도 거행하였다.

(중략)

5장 경찰 교육

제1절 개론

우리나라 경정의 진전은 1937년을 전환 형식으로 하여 하나의 큰 비약을 형성하였다. 건국 초기의 경찰은 현재 직면한 치안숙정이라는 이 빠져서는 안 되는 긴급한 사명을 중점으로 하여 줄곧 이에 대하여 전력을 기울였다. 비록 경찰관이 일반 경찰업무의 자질을 구비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선 반드시 채용하는 자는 신체가 건강하고 용맹하고 과감하며 토벌활동에 적응하는 소질을 갖춘 자여야 했는데 특히 만인 경찰관은 더욱 이러하였다.

이런 정황 하에서 우리나라 경찰관의 자질은 낮았는데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1934년부터 전국의 경찰관 자질에 대하여 조사한 개황을 볼 때 대졸 0.3%, 대전 2.8%, 중등전문학교 졸업생이 10.4%, 고졸이 21.8%, 중학 졸업생이 34.6%, 기타 11.9%, 문맹이 18.2%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당시 유일 무이한 조사보고였는데 이 조사를 하는데 반년 이상이 걸렸으나 다만 대체적인 보고였다. 만약 도시 경찰의 문맹이 3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상술한 숫자가 나타내는 실제정황은 더욱 엄중한 것이다.

때문에 경찰교양의 중점 더 나아가서 실행정책은 바로 이 노선을 따라 전진한다. 우선 당시의 민정부 경무국은 중앙기관으로서 총무과 기획부문 내에서 경찰교육업무를 시작하였고 각 성에서도 즉시 각 경무청 경무과 내에 부문 혹은 계를 설치하여 이 사무를 집행하였다. 교육실시기관으로서 1932년 6월에 “관성자 경찰관 강습소”를 세우고 우리나라 일본인 경찰관의 중견을 훈육하였으며 건국 이래 치안숙정 사업에서 거대한 작용을 발휘한 소위 “경무지도관”이다. 뒤이어 1932년 6월에 교령 제30호로 공포한 “중앙경찰학교 관제”에 근거하여 같은 해 11월에 “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였다. 지방에서는 같은 해 8월에 민정부 훈령 제196호로 “경찰관 훈련소”를 설치하여 지방으로 하여금 경찰교육기관을 갖추게 하였으며

경무지도관이 철저한 현지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런 경무지도관의 현지도도 실제 효과는 특별히 뚜렷하였다.

당시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1934년 1월부터 1934년 3월 겨우 3개월 사이에 지도한 실적을 볼 때 봉천, 길림, 흑룡강, 열하성을 합쳐 도합 21만여 명에 달하였으며 치안숙정의 각종 대책에 적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도과목으로는 사격, 포승 등 실기 과목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정신 훈수와 전부 경찰행정 에까지 이르렀다. 간부 교육 방면에서 지도 대상으로는 경찰서장 이하의 경찰대원, 자위단원, 경찰관 훈련소의 학생 등이 있었는데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였으며 행정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규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제기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상술한 지도항목 가운데는 심지어 “철필 사용방법” 등도 포함되었으며 이런 것은 모두 당시 경찰관의 자질이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히 설명하였다. 훈육에서 특별히 중점으로 삼은 것은 건국정신을 장악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정신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주 큰 노력을 기울였다. 다년 이래 극히 혼란스러운 군벌의 약정하에서 그들은 국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운 국가는 바로 “민족화합, 왕도국가”의 본래의 취지를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피 흘려 싸우고 최대의 열정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현신한 경무지도관의 고생은 비교될 만한 것이 없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들은 현재 일체 장애를 제거하고 눈앞의 사태를 극복하면서 경찰 건설의 내일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1937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건국 이래 숙정사업을 부단히 진행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치안은 점차 기본적으로 완성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또 곧 치외법권을 폐지하는 획기적인 사건에 직면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찰업무로 하여금 소위 무력중심 경찰시기로부터 근대 경찰시기에 진입하게 하였으며 아래에 서술하게 되는 활약적이고 정식적인 경찰교육사업을 실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또 교육자료 제작, 경찰교과서 편집, 경찰교육 집성의 간행, 유익한 서적 등을 구매하고 발급하는데 특별히 중시하였으며 또 경찰가를 만들어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경찰강령”을 제정하여 왕도 경찰관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등등 일련의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였다.

경찰강령은 우리나라의 국내외 형세에 비추어 10만 경찰관의 단결을 강화하고 경찰정신을 철저히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 “철같은 규율과 규범”이다. 때문에 1938년 초부터 시작하여 편제에 착수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초안을 세우고 1939년 12월 1일에 치안부 훈령 제78호를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전문은 단지 7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명료하고 요점을 찌르는 경찰강령으로서 확실히 우리나라 경찰관이 평소에 실천하는 경찰정신의 진수이며 경찰관의 각오와 이상이다. 경찰학교와 경찰관청은 매일 경찰강력을 해독함으로써 경찰정신을 분발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제2절 교육기관의 변천

제1항 중앙교육기관

경무과 교육과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초로 나타나 경찰교육업무는 민정부 경무국 총무과 기획부문에서 주관하였는데 1935년 9월 4일에 기획부문은 기획과로 승격하였고 기획과 내에 교육부문은 새로 설치하였다. 이때 각지의 치안숙정사업도 상당한 진전을 획득하였으며 전반 경정도 근대 경찰건설

을 향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치외법권 폐지를 위하여 준비를 진행하는 등으로 하여 경찰관 자질을 제고시키는 것이 나날이 급선무로 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경찰교육의 중요성은 진일보로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새로 경찰학교, 경찰관 훈련소를 설립하고 경찰관청의 교육규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전면적으로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분발하여 전진하였다. 1937년 7월 1일에 정부개혁의 대개혁에 따라 경무국은 치안부대신에 귀속시켜 통할하게 한 동시에 경무국 내의 각 과와 각 부문도 합병, 정리를 진행하여 교육부문을 경무과에 예속시켰다. 1937년 12월 1일에 치외법권을 폐지하고 만주철도 부속지방 행정권을 인도할 때 경찰교육을 진일보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경찰교육 관제를 수정하였고 한 개 성에 한 개 학교를 설립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접수한 경찰관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아직 훈련을 거치지 않은 간부 및 처음으로 사업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래의 교육부문을 교육과로 승격시키고 교육부문, 편집부문과 경찰교과서 편집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1938년 3월에 또 과내의 교육부문을 중앙과 지방 두 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교무상 중앙과 지방의 밀접한 연락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시에 출판물로 교육을 진행하는 편집부문 등을 강화하였으며 각 부문의 규정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였고 다시 말하자면 같은 해 10월 1일에 원래의 편집과 관련한 업무를 만주국 경찰협회 출판부문에 넘겨주었고 교육과를 재차 경무국 감독관실과 합병시키고 교육감독과로 개칭하였으며 과내를 중앙교육, 지방교육, 감독 3개 단계로 조절하였으며 교육감독업무의 더욱 큰 발전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후 1939년 3월에 중앙교육부문과 지방교육부문을 재차 합병하여 교육부문으로 하였고 그 밖에 경찰교과서 및 기타 교재의 편찬발행 등을 위하여 교재부문을 새로 설치하였다. 같은 해 9월에 감찰령을 공포하고 각 부서와 국에 모두 감찰을 담당하는 참사관을 새로 설치하였다. 결과 같은 해 11월 1일에 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치안부 대신 관청 참사관실에 넘겨주었으며 이전의 교육과를 재차 회복하였으며 쭉 지금까지 이르렀다.

경찰교과서 편찬위원회 건국 후 수년간에 경찰관의 교육훈련은 중앙과 지방경찰학교에서 공동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행하였으나 아직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정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교육요구와 교육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이 결핍하였으며 결과 경찰교육의 불통일을 초래하였고 더 나아가서 극도로 불평형을 가져다주었다. 교육기관의 내용을 정돈하고 완벽화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서는 모두 교과서를 편찬할 것을 강렬하게 요구하였다. 결과 1937년 8월 20일에 치안부 훈령 제7호로 경무국에 “경찰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창설하였고 같은 해 9월에 편찬 사업에 착수하였다.

경찰교과서 편찬위원회는 치안부 차관의 관리하에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경무국장이 담당하고 간사는 경무국장이 담당하고 위원은 경무국의 각 과장, 감독관, 사무관과 중앙경찰학교 주사, 교수, 혹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특별 요청하여 편찬방침을 확정하고 교과서를 심사하고 처리하는데 종사하였다. 간사는 교과서의 원고를 탈고하고 서무를 주관하며 또 간사를 임명하거나 특별 요청하여 교과서 편찬에 종사하게 하였다.

경찰용어 조사위원회 우리나라 경찰 가운데서 지도지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인 경찰관의 대부분은 경찰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접수하거나 모집하였으며 전임 지역의 경찰 용어가 각각 부동하고 민족

도 역시 다르기에 그 용어는 극히 복잡하고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다. 때문에 의연히 예전대로 답습하여 사용하는 것과 혹은 합리적인 경찰용어로 수정하는데 대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정리와 통일을 진행하였다. 경찰용어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1939년 10월에 경무국에 “경찰용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경찰용어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무국 교육과장이 담당하고 위원은 치안부 경무국 사무관과 중앙경찰학교 교수 및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지들 가운데서 임명하거나 특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지도하에서 경찰용어의 연구에 종사하였다. 용어 조사는 “용어조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1940년 9월부터 시작하였다.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매달 한 번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반드시 조사할 사항을 확정하였다. 그 밖에 이 조사는 1941년 3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 조사를 완성하는 날에 근무 집행상 통일한 용어는 상용어로 되며 이 상용어는 경찰 활동에 아주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제2항 지방교육기관

건국 당초에 각 성의 경찰교육 주관기구는 경무청 경무과 내에 부문 혹은 과를 설치한데 불과하였으며 그 활동도 자아적인 완만한 상태에 처해있었다. 1937년 12월 경무국 교육과를 설치한 이래 각 성에서도 경찰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지불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38년 1월에 각 성에서는 원래의 감독관실을 해체하고 교육감독과를 새로 설치하였다. 흑하, 흥안 각 성, 수도경찰청, 해상경찰대를 제외한 외에 각 성에서는 모두 경무과에 교육감독부문 혹은 교육감독계를 설치하였으며 이런 교육기관을 개혁한 결과 진영이 정비되었고 교육과 감독의 긴밀한 결합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성의 부분기관도 다소 수정하였기 때문에 일부 변화가 발생하였다. 1940년 말까지 교육감독과를 설치한 성으로는 봉천, 길림, 빈강, 용강, 열하, 안동, 통화, 삼강 등 9개성이 있었고 기타 성은 경무과의 부문 혹은 계에서 주관하였다. 그 관할 업무로는 해당 성(청,대)의 관할 구역의 지방경찰학교, 경찰관청, 현, 기 경찰관 교습소 등의 모든 경찰 교육이었다.

제3항 경찰학교

관성자 경찰관 강습소 관성자 경찰관 교습소는 당초에 민정부 임시 경찰관 교습소로 불렸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치한 경찰교육기관이었다. 당시 이 교습소의 중요성은 자치지도부의 자정국(資政局)훈련소와 서로 대등하다고 평가되었으며 그 사명과 공적도 모두 아주 컸다. 정식으로 교습소를 설립한 것은 1932년 6월이었는데 중앙경찰학교보다 5개월 앞서 설립하였으며 그 임무로는 왕도경찰을 확립하고 지도하고 소위 경무지도관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때문에 제1기 신입생은 모두 관동국, 외무성, 내지 각 경찰과 헌병대에서 추천한 우수한 인재였다. 이 후 폐지한 해인 1936년 7월에 이르러 이런 경무지도관은 우리나라 건국정신의 지도원리를 장악하였으며 여기에 따라 배양한 지도관 정신을 확고하게 장악한 사람들은 치안이 혼란스러운 전국 각지로 활기있게 달려갔으며 조금도 유감없이

중책을 담당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부임한 첫 날에 토벌하는데 출동하였으며 용맹하고 과감한 건국 창시자로 되었고 어떤 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안 및 행정경찰 각 부문의 훈련사업에 종사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토벌활동의 선두에 서서 토벌사업에 대하여 지도하였다. 그들의 활동은 참으로 사람을 경탄케 하는데 비록 다만 몇 년 밖에 안되었지만 그 성과는 치안이 호전된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길림성의 1933년 5월의 조사자료로부터 볼 때 같은 해 1월 8일부터 3월 8일 겨우 두 달밖에 안되는 기간에 길림성 각 현 경무지도관이 출동하여 토벌을 진행한 횟수로는 이통현(伊通縣) 10차, 쌍양현(雙陽縣) 1차, 반석현(磐石縣) 6차, 화전현(桦甸縣) 2차, 밀산현(密山縣) 5차, 목릉현(穆稜縣) 6차, 영안현(寧安縣) 1차, 동녕현(東寧縣) 3차, 호림현(虎林縣) 1차, 벌리현(勃利縣) 2차, 보청현(寶淸縣) 1차 도합 37차이다. 상술한 토벌 가운데서 어떤 것은 경찰의 단독 행동이고 어떤 것은 일본군과 국군이 공동으로 작전하여 자위단 혹은 보위단을 지도하여 진행한 용감한 행동이었다. 이들과 작전한 비적수량은 어떤 때는 2,000명이 넘었다. 비록 적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지만 우리 측에서도 이 두 달 사이에 2명의 지도관이 전사하였으며 지도관 사명의 중대함을 여실히 설명한다.

강습소장은 경무국장이 담당하고 주요한 사무는 경무국 총무과장이 담당하며 교관은 경무국 각 과장이 겸임하고 강습생 가운데서 일반 경무지도관을 제외한 외에 또 위생, 수의, 보갑 등 특별지도관도 포함된다. 당시의 경찰은 치안숙정에 직면한 외에 또 산업 지도, 선전 위로 등 민생에 관련되는 사업 현장에서 광범하게 활약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그들이 치안 제일주의의 이 강력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

중앙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는 1932년 11월(1932년 6월 교령 제30호 “중앙경찰학교 관제”)에 근거하여 개설하였는데 관성자 경찰관 교습소의 설치보다 조금 늦었다. 이 학교는 임시 시설인 관성자 강습소의 “경무지도관의 단기 훈육”과 다소 부동하였으며 이 학교는 우리나라가 중앙에 설립한 영구적인 경찰관을 배양하는 학교이다. 1936년 7월에 관성자 경찰관교습소를 철수한 후 일본인 경찰간부의 교육은 모두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시하였다. 특히 1938년 이후 더욱 활발한 간부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기술한다. 관제상 경무국장을 교장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명실에 부합되는 경찰최고학부이다(제8장 제2절 참조 요망).

지방경찰학교 지방경찰학교의 전신은 경찰관 훈련소이다. 1932년 7월에 봉천에 봉천성 경찰관 훈련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이듬해 4월에 길림, 그후 흑룡강, 치치하얼, 승덕, 금주, 안동 등 중요한 도시에 모두 점차 설치하였다. 1935년 7월에 공포한 “지방경찰학교 관제”에 따라 지방경찰학교로 개칭하였다. 새로 고용한 만주인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현직자에게 재교육을 진행하는 중요성에 의해 해마다 발전하고 확충하도록 하였다. 1937년 말에 한 개 성에 한 개 학교를 설립하는 방침에 근거하여 전국의 각 성 관공서 소재지에 모두 지방경찰학교를 설치하였다. 1938년 3월의 관제 수정에 따라 이전에 소재지를 앞에 덧붙인 학교명칭을 성을 앞에 덧붙인 학교명칭으로 고쳤다. 1939년 6월 동안, 북안 두 개 성을 새로 설치한 동시에 이 두 개 성에 지방경찰학교를 증설하였으며 그리하여 학교 총수는 19개에 달하였다. 주요한 임무로는 새로 고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기초 훈련을 진행하고 그밖에 또 간부경찰관의 재교육 및 기타 각종 강습 실시를 통하여 경찰관의 자질을 제고하였다.

제4항 현·기 경찰관 교습소

1932년 8월 11일에 민정부 훈련 제196호로 현·기에 “경찰관 연습소”를 설치하여 현, 기에서 새로 고용한 경찰관을 교육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당시의 봉천, 길림, 흑룡강 각 성은 모두 이 방침에 근거하여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봉천성 아래의 각 현·기는 1934년 3월에 거의 모두 설립하였으며 기타 두 개 성도 같은 해 말에 상당한 수량을 설립하였다. 1936년에 이르러 “경찰관 훈련소”로 개칭하였으며 신입 경사에 대한 교육과 일반 강습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의 치안의 확립 및 정치와 사회질서의 정비에 따라 이런 형세에 적응하기 위하여 경찰관 자질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원랜 각 현, 기에서 각각 신입 경찰관을 고용하는 것을 각 성에서 통일로 고용하는 것으로 고쳤으며 성 지방경찰학교에서 철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우수한 경찰관을 배양하는 목적 하에서 1938년 10월 1일에 “현·기 경찰관 훈련소”를 일률로 폐지하였으며 무릇 지방경찰관의 교육은 “지방경찰학교”에서 통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각 계통의 경찰관을 수용한데 대한 현상태 조사를 거쳐 알게 되었는데 만주인 경찰관 가운데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자의 총수는 64.1% 이상에 달하였다.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퇴치하고 당시 고도화된 경찰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까운 근처의 현장에서 경찰교육을 충실히 하여 1939년 12월 27일에 치안부 훈령 제90호로 재차 “현, 기에 경찰관 교습소를 설치할 데 대한 문건”을 공포하였으며 각 성에 명령을 내려 현, 기에 경찰관 교습소를 설치할 데 대하여 통지하였으며 현직에 있는 교육을 받지 않은 경찰관의 교육사업에 전력하였다.

(중략)

제4절 교육실시정황

제1항 중앙경찰학교

교육방침 중앙경찰학교의 교육방침은 이전에 제정한 경찰강령을 실천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훈육 방면에서 건국이념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천능력을 배양하는 것인데 즉 중점은 건국의 근본이념인 일본과 만주는 하나로 뭉쳐져 있고 민족화합, 왕도의 낙토를 건설하고 도덕과 정의의 세계를 실현하며 이에 관하여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학과목과 실기 과목 교육을 모두 결국 건국정신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교관들은 하나로 뭉쳐 강습생들을 지도하여 정의에 입각하게 하였다. 공무를 집행하다가 희생된 이들과 용감하고 열렬한 경찰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매일 아침 아득히 먼 곳에 있는 황궁(즉 일본천황) 및 제궁(즉 만주국황제)에 절을 하고 경찰관 영령사를 참배하고 국기를 올리고 경찰강령을 낭송하는 외에 또 지명인사들을 요청하여 연설하게 하고 엄격한 기율훈련을 실시하여 인격을 연마하기에 노력하였다. 만약 학과목과 실기 과목 교육 방면을 놓고 볼 때 바로 기율을 배양하고 심신 수련을 일관불변하는 철 같은 법칙으로 삼았고 강습생의 일상생활에서도 양성하게 하였으며 교육이 지옥에 편중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학과목과 실기 과목을 중시하여야 하고 비적을 토벌하고 기타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인재를 배양하기에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 상식 방면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아직도 제반 행정을 조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비추어 산업, 경제, 군사, 국제형세 및 기타 각종 사회문제 방면에서도 관련 당국 혹은 각 분야

의 권위인사 및 실무가들을 요청하여 강습생들에게 강연하여 상식과 수양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밖에 우리나라는 복합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고 경찰은 반드시 사명을 완성하여야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어학교육도 역시 중요한 과목이었다.

그다음 이 학교에서는 각 과의 강습생의 교육방침 더 나아가서 그 교육목표로는 일본인과 만주인의 본과1부생에 대하여 우리나라 경찰의 중견 지도간부로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교육 방면뿐만 아니라 각 학과목과 실기 과목 방면에서도 광범하고 심오하고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도자로서의 통솔능력과 기획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시하였다. 일본인과 만주인 본과2부생에 대하여 정신적인 훈련 외에 고급간부의 자격으로서 국가의 각종 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학과목, 실기 과목의 교육에 노력한다. 만주인 본과2부생은 대졸 혹은 전문학교를 졸업한 위임관인데 이들을 우리나라 미리의 경찰 중견지도자로 배양하여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정신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며 초임경찰관의 자격으로서 엄격한 기율하에 필수적인 학과목, 실기 과목 훈련에 중점을 두고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보통학과생의 교육은 초임경찰관 자격으로서 엄격한 기율하에 엄격한 정신교육을 실행하는 외에 마찬가지로 중점을 필요하고 실용적인 한과목과 실기 과목의 훈련에 두고 경찰관의 기초교육을 실행한다. 유학예비생의 교육은 정신교육을 중시하는 외에 내무성 경찰강습소에 유학을 가기 위하여 준비를 잘 하여야 하며 필수적인 일본어, 일본 정황을 중심으로 하는 학과목과 실기 과목의 훈련에 치중한다. 기타 일부 경찰 실무 강습은 각자의 강습 목적을 중점으로 하여 지도능력과 기획능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앙경찰학교에 관하여서는 제8장을 참조하기 바람).

제2항 지방경찰학교

교육방침 지방경찰학교의 교육방침은 중앙경찰학교와 똑같은바 우리나라 경찰의 특수지위를 자각하고 경찰정신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고 무장경찰을 건립하고 행정사업을 원만하게 집행하는 기초를 닦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하에서 훈육, 학과목, 실기 과목과 언어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근본방침은 경찰학교를 건립한 당시에 이미 제정하였다. 그 후부터 오늘까지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 지역과 치안 등 관계로 하여 중앙의 방침과 비교할 때 각 지방의 교육은 독자적인 방침의 경향을 더 많이 반영하였다. 그 후 치안이 점차적으로 확립됨에 따라 일반 행정은 기층까지 침투되고 치외법권의 폐지로 하여 경찰권을 접수한 등으로 하여 경찰진영도 충분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경찰기관도 다소 정비하였고 따라서 지방경찰교육의 구체적인 방침도 점차적으로 명확해지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새로 설치한 교육기관과 경찰강령을 제정하는 것을 서로 결합하여 이러한 방침을 철저히 보급시킬 것을 기대하였다.

총적으로 말해서 지방경찰학교는 주요하게 만인 경찰간부와 초임경찰을 교육하고 훈련하였고 이밖에 또 일본인과 만인 경찰에게 보충교육과 강습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취지는 바로 건국정신 및 경찰정신의 완강한 정신을 자각적으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를 배양하는 것이었으며 실기 과목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러한 정신을 기초로 하여 철저한 전투 훈련을 진행하며 경찰의 단독적인 힘으로 지방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과학교육 방면은 바로 실무를 중점으로 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방침은 곧 각 학과 교육의 기초이다. 보통과생에 대하여서는 엄격

한 기율하에서 초임경찰관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학과목과 실기 과목에 대한 기본 훈련을 실시한다. 고등과생에 대하여서는 지방경찰의 중견 지도간부에게 필수적인 학과목과 실기 과목 및 통솔, 지도능력과 기획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으며 또 실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충분히 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밖에 보충 학습 강습생에 대하여서는 정신교육을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습과목의 중점은 강습목적에 두고 지도능력을 배양하기에 노력한다.

일상 관례 활동 기타 행정부분과 비교할 때 경찰영역에서는 조직이 있는 집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므로 엄정한 기율은 그의 명맥으로 되었다. 이러한 기율은 오직 일상 생활속에서만 배양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학교는 이 점을 아주 중시하여 매일 아침 엄격하게 출석을 부르는 외에 먼 곳에 있는 황제폐화와 만주국황제를 향하여 절을 하고 식사 전에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수업, 자습, 취침전에 묵도를 하는 등 일상생활 활동 외에 또 기타 과제의 숙제를 내주고 공동으로 훈련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기율을 배양하고 일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불요불굴의 정신을 단련시킨다.

학교 시설과 관리 건국 당초에 각 지방경찰학교에서는 모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구매하여 응급한 수리 혹은 부분적인 증축을 하여 학교 숙소로 사용하였다. 1937년 12월에 경무국에서는 교육과를 설치하였으며 교육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고 본래 중시되지 못했던 학교 시설도 점차적으로 보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쫓아 학교 숙소를 새로 건축하고 개조하고 확충시켰으며 오늘의 경찰교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질서 있고 완비화되었다. 각 성에서 새로 건축한 경찰학교는 흥안남성, 삼강성, 흥안동성, 금주성, 동안성, 북안성 등 6개 학교가 있었으며 기타 학교의 숙소는 적당한 건축물을 물색하여 증축하거나 개조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실시계획을 세우고 최후에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이미 있는 경찰학교의 대부분은 경찰관을 교육하는데 필요로 하는 운동장이 없으므로 장래에 학교 숙소 부근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다음 학교 내부의 각 가지 사무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는 모두 “처리업무 분담 규정”이 있다. 주요 책임자 아래에는 교무, 서무, 훈련 등 각 조직을 설치하여 교관과 조수가 이런 사업을 분담하였으며 사업 효율과 업무를 혁신하는 것을 책임지었다.

제3항 경찰관청의 교육

학교교육과 같이 현지교육도 두말 할 것이 없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 요구한 규정은 바로 경찰관청의 교육이다. 당초의 규정은 1935년 10월 21일에 민정부 훈령 제889호 “경찰관리 교육규정”과 1938년 9월 8일에 치안부 훈령(경) 제78호 “경찰관청 교육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현지교육의 방침은 이로써 완전하게 명백하게 확정하였다. 시국이 점차적으로 긴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은 국방, 치안 및 경제면에서 나날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자질을 제고시키는 것은 더욱 필수적이었다. 그리하여 현지교육의 필요성은 진일보로 가중되었다. 그 정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일상 교육 해당 관청에서 사업하는 직원들에게 매일 대체적으로 모두 진행하는 것이다. 관목으로는 훈시, 이론 과목, 언어학과 실기 과목이다. 해당 관청의 지도자와 간부가 교관을 담당한다. 수도경찰청, 성 경무청, 봉천과 하얼빈 제2경찰국과 해상경찰대에 한하여 매일 대략 반시간 이상 현장 근처에서 1차

이상 훈시를 진행하며 기타 경찰관청은 매주 한 차례 진행한다. 이론 과목은 훈시와 실기 과목이 있는 날을 제외한 다른 날에 진행하며 매일 대략 반시간 현장 근처에서 실행한다. 언어학은 우리나라의 국경에서 출발하여 원칙상 매일 반시간 학습하나 수도권경찰청, 각 성 경무청, 봉천과 하얼빈 제2경찰국 등 주요한 도시의 경찰관청은 필수과목으로 하여 매일 대체적으로 한 시간 학습한다. 실기과목은 매주 1차 이상 훈련하며 날짜를 정하여 진행하고 그 학습 내용으로는 점검, 예의범절, 포승기술 등이 있으며 훈련은 주요하게 토요일 오후를 선택하였으며 무도는 휴기일을 이용하였다.

소집 교육 매달 한번, 날짜를 정하여 진행한다. 하급 관청의 책임자 특히 지정사무 담당자를 불러 모아 각종 경찰 업무의 처리 및 지도방침 및 그 요점을 전수하였다. 만약 각 성 경찰청, 해상경찰대에 전수하기 힘들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교육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였다.

강습 교육 상급관청에서 관내의 각 관청에 지도인원을 파견하여 진행한다. 경찰국, 경무처, 도시와 현, 기 경무과 혹은 경찰서의 매개 소속직원에게 단기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경찰 업기를 바로 잡고 경찰 근무를 잘 해내는 교육을 진행한다.

신임 교육 신임 직원에 대하여 하는 수 없이 반드시 즉시 근무해야 하는 자를 제외한 외에 모두 해당 관청에서 한 개월 이상 신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초임자가 아닐지라도 다른 지방에 새로 배정받아 가면 역시 한주일간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책임자를 파견하여 해당 관리 구역의 특수정황을 기초로 하여 실제와 연계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갓 중앙경찰학교에서 초임교육을 완성하고 각 성에 배치받은 일본인 경찰관은 부득이한 정황을 제외한 외에 일률로 성 지방경찰학교에서 한 개월 학습해야 하고 경무청의 간부가 전문적으로 해당 성의 특수정황 및 업무 집행상의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다. 지방경찰학교의 초임교육을 완성하고 각 현, 기의 경찰관으로 배치받은 자는 현, 기의 경찰관 교습소에 가서 상술한 것과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

해상경찰대의 교육 수도와 각 성에 경찰학교 더 나아가서 현지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경찰교육을 진흥시키기에 노력하였다. 해상경찰대로 놓고 말하면 마찬가지로 자아교육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하여 1940년 11월 1일에 치안부 훈령 제 42호로 “해상경찰대 교습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해상대원에게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청렴결백한 덕성을 연마하고 이론 과목과 실기 과목을 학습하는 동시에 위탁 경찰관에게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기술을 전수한다. 교습소 소장은 해상경찰대장이 담당하고 주요 책임자는 경무과장이 담당하며 교관과 조수는 해상경찰대 대원이 담당한다.

교습소에는 보통과(수업 6개월), 고등과(수업 3개월), 기술과(6개월) 등 3개 수업과로 나눈다. 보통과는 초임경찰관에게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고등과는 감독신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필요한 학술과 기능을 전수하고 기술과는 경찰로서 특수하게 필요하는 기술을 전수한다.

제4항 현, 기 경찰관 교습소의 교육

1932년에 현, 기에 경찰관 교습소를 설치하였다. 1936년 1월 9일에 민정부 경찰규칙 제7호 “경찰관 훈련소를 개설하고 확충할 데 관한 문건”을 공포하고 경찰관 훈련소를 강화하고 확충하려고 하였으며

“현, 기 경찰관훈련소”라고 개명하였으며 현, 기에 교육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1) 새로 채용한 경사 혹은 현직 경사 가운데 필요로 인정하는 자에게 경찰관리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2) 교육시간은 2개월 이상이다. 훈련소장은 현, 기 경무국장이 담당하고 교관은 현장이 경정, 경감 혹은 순관 가운데서 임명한다. 그 후 즉 1937년 3월에 새로 채용한 경사는 성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 훈련소를 취소하였으나 1939년 말에 또 “현, 기 경찰관 교습소”(제2절 제4항을 참조)를 설립하였다.

교습소는 현장과 기장이 관리하였으며 성장의 명령에 따라 설립하였다. 1940년 말에 이르러 전국의 각 현, 기에 150개를 설립하였다.

교습소의 수용 능력은 각 지방의 시설상황에 따라 다소 부동하였으나 대체적으로 30명에서 50명이었으며 시설, 교관 등 관계로 하여 학원을 수납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나 개설 이래 약 1년 사이에 16,800명을 접수하였다.

제5항 기타 교육

위탁교육 우리나라 경찰교육 시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록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경찰기술 가운데의 특수기술교육은 시설, 장소, 교관 등 제한으로 하여 경찰학교 내에서는 전부 배울 수 없으므로 적당한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통신비둘기에 대한 강습은 국경, 삼림, 유격구역 등 각 경찰대의 통신비둘기 전담인원(일본인, 만인)을 파견해 올 예정이었으며 1935년 이후에 매년 관성자 군사용 비둘기 배육소에 위탁하여 3개월간의 교육을 받았다. 또 예컨대 무선 전신 기술인원에 대한 교육은 바로 국내 경찰 무선 전신 관리소에서 5명의 우수한 자들을 선발하여 1940년 7월부터 신경 만주 전신전화주식회사 사원 양성소에 위탁하여 이들에게 5개월간 훈련시켰다. 이밖에 경비군함의 조타수와 엔진 관리인원을 배양하기 위하여 각 성에서 경비군함 조타수와 공장 가스봄베 관리인원(검사 조수인 경위, 경위보 26명)을 모집하여 1940년 5월부터 약 7개월간 영구 해상경찰대 교습소에 위탁하여 훈련시켰다. 성적이 모두 아주 좋았으므로 장래에 매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내무성 경찰강습소 유학생 각 학과 출신 일람표(1940년 12월 말까지)〉

학기별	파견인수	민족					강습소에 들어간 날짜
		일본인	만인	조선인	몽골인	러시아인	
1(18)	25	—	25	—	—	—	1932년 4월 1일
2(19)	30	—	30	—	—	—	1933년 4월 1일
3(20)	30	—	30	—	—	—	1934년 4월 1일
4(21)	30	—	29	—	1	—	1935년 4월 1일
5(22)	30	—	29	1	—	—	1936년 4월 1일
6(24)	30	—	28	1	1	—	1936년 10월 1일
7(25)	30	—	30	—	—	—	1937년 4월 1일
8(26)	30	—	27	—	3	—	1937년 10월 1일

9(27)	30	—	23	2	4	1	1938년 4월 1일
10(28)	35	5	23	2	4	1	1938년 10월 1일
11(29)	37	5	27	3	3	1	1939년 4월 1일
12(30)	36	5	26	3	2	—	1939년 10월 1일
13(31)	33	5	24	4	2	—	1940년 4월 1일
14(32)	35	5	24	4	2	—	1940년 10월 1일
합계	443	25	374	29	22	3	

주석) 학기별()가운데의 숫자는 내무성 경찰강습소 출신 학생들의 학기별이다.

만인 유학생을 파견 건국 이래 우리나라 경무국에서는 전방백계로 경찰관 자질을 제고시키는 것을 강구하였다. 국내 교육체계에 의거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일본의 경찰제도도 연구할 수 있고 유학 기간에 전면적으로 일본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동시에 고등경찰업무를 학습하기 위하여 건국 이후에 아주 빨리 유학제도를 건립하였으며 재직 경찰 가운데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일본 내무성 경찰강습소에 파견하여 학습시켰다. 1932년 5월부터 제1기를 시작하여 1940년 말까지 도합 14기 파견시켰으며 졸업생수는 443명에 달하였다.

이런 유학생 가운데서 제1기로부터 제4기의 교육기간은 각각 1년이었는데 1936년 4월 이후부터 6개월로 고쳤다. 선발 조건 방면에서 4기 이전에는 언어학 방면에서 우수한자를 첫 번째 조건으로 삼았는데 6개월로 고친 후에는 언어학 방면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반드시 경찰교육과 일본 국정에 통달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제6기부터 시작하여 내무성 경찰강습소에 반년제 예과교육을 설립하였으며 예과와 본과교육을 합쳐 1년 강의하였다. 후에 예과제도는 고려할 점이 아주 많았으며 동시에 중앙경찰학교도 이미 충분히 정비되었으므로 중앙경찰학교에서 예비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11기부터 시작하여 중앙경찰학교에 유학준비 예비과제도를 설립하였으며 예과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유학제도는 일본인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으로 수정함.

1938년 4월부터 시작하여 매기마다 일본 내무성 경찰강습소에 5명의 일본인 유학생을 파견하였는데 그들에게 유학준비 예과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선발한 후 직접 일본 내무성 경찰강습소에 들어갔으며 이 강습소에서 일본 측 학생들과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학습하였으며 똑 같은 교육을 받았다. 이밖에 유학생의 신분으로 유학하였고 유학준비과에 입학하였는데 모두 수도경찰청에 속하게 하였고 졸업한 후 경무국에서 총괄하여 배치하였다. 유학제도를 실시한 이래 부동한 학과의 졸업생은 124페이지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고찰교육 고찰교육은 경찰교육의 한 방면으로 각 방면의 실제상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경찰의 지식과 식견을 제고시키고 국세와 시국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경찰의 투쟁정신을 드높인다. 고찰교육은 일본에 대한 고찰과 국내에 대한 고찰로 나눈다. 만인 경찰관의 일본에 대한 고찰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을 철저히 이해하는데 있으며 일본정신의 진수와 선진국가의 경찰 및 문화에 대한 실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하기 위하여 1937년 이래 매년 진행하였다. 일본인 경찰관의 국내에 대한 고찰은 바로 우리나라 경관으로서 연속 5년 이상 봉직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우리나라 국내에 와서 고찰

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발전하고 있는 수도의 매우 좋은 형세 더 나아가서 국경지역의 실제 정황을 인식하기 위하여 경찰학교의 주요 책임자, 교관 및 중앙경찰학교의 학과 선택생, 본과생과 장기적으로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그밖에 지방에서는 지방경찰학교 고등학교, 보통학과와 현, 기의 경찰관 교습소의 학생 및 수도를 참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행하였다. 우에서 서술한 일본에 대한 고찰은 경관으로서 정확하고 풍부한 식견을 획득하였으며 사업을 완성하는 면에서 재차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중략)

제7절 제4기(1935년 9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전기(1935년 9월~1936년 3월) 본기의 특징은 사변 이래 출현한 정치토비, 기타 토비가 모두 엄중한 쇠락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전국 토비무리 중, 공산토비만 잔존하여 격렬한 저항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여 1935년 9월 중순, 관동군을 중심으로 일만 군대와 경찰이 관련기관과 일체로 되어 가을철 치안숙정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의 중점은 빈강, 길림, 간도, 봉천, 안동 5개성인데 특히 국내 공산분자와 반만 항일분자의 암행활동을 중시함으로써 이런 사상을 가진 분자들을 철저히 소멸하려는 것이다. 하여 토벌을 위주로 하는 원칙 하에서 치안사업, 사상대책 등 각 수단을 운용하였다. 이 사업에서 특별히 강조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토비의 상황을 명확히 요해하되 특히 그 사상근원을 알아내어 계책을 실시할 기회를 장악함으로써 백성과 토비의 연계를 끊는다. 공산토비와 반만 항일의 정치토비에 대해서는 견결하고 철저한 토벌행동에 의거하여 일부 지방에서 소멸해야 한다. 동시에 근거지가 있는 토비를 철저히 소멸해야 한다. 될수록 각 수단을 이용하여 토비두목을 살해하고 토비무리를 이간하여 적당한 수단으로 토비와 연계가 있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치안 혼란의 근원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즉 선전사업을 통해 사상전투를 전개함으로써 백성과 토비를 철저히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정부 경무사에 명령하여 1935년 가을의 치안 사업요강을 제정하게 하여 군대사업의 실시에 적용시켰다. 그 요점은 : 치안사업은 군대 지도자의 감독을 받고 현은 그 주체에 대해 자각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현은 현장, 현 참사관을 중심으로 각 방면을 동원하여 행정경찰을 주체로 하는 치안사업팀을 이룬다. 팀 내에 정보, 보급지도, 수색, 무기몰수, 무료의료, 무홀구제, 호구조사, 선전안무 등 시스템과 반을 설치한다. 토벌한 후 계속·반복하여 치안 사업을 잘해야 한다. 치안사업의 중점은 : “비적토벌을 검거, 무기몰수 및 수색, 선전, 치료, 의료, 무홀구제, 보급제도, 호구조사, 자위단훈련, 직업지도, 인사협상, 치안에 필요한 통신, 공로, 교량, 경비교통도구, 보호방비설비 및 기타 정비실시의 정비; 경찰서, 분주소에 일본경찰을 두고 경비책임구역 등 행정실시를 확정하며 외지에 있던 지주의 귀향, 전투에서 사망한 자위단원을 구제·안무한다.” 등등이다. 이 치안사업은 원래 11월 중순까지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어서 12월 내지 강덕 3월 3일까지 실시하여 겨울철 숙정사업도 이와 같은 체제하에 계속 실행할 수 있었다.

같은 해 가을, 겨울철 숙정사업 전후의 토비상황은 아래와 같다. 숙정사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동변

도 지대에는 양사령(楊司令), 삼각지대에는 염생당(閔生堂)이 있고, 빈강성 중부 및 북부지대에는 조상지(趙尚志), 장련과(張連科), 고봉림(考鳳林), 사문동(謝文東) 등이 있고 동부 국경 지대에는 공헌영(孔憲榮), 오의성(吳義成)이 있고 금주(錦州), 열하성 방면에는 란천림(蘭天林), 류진동(劉振東), 원구점(苑九占), 노제자(老梯子) 주영구(周榮久) 등이 있었는데 전국 5만 명의 토비 중에서 35,000명이 이런 지대에 분산해 있었다. 숙정사업은 이런 지점을 중점으로 숙정을 한 결과 1935년 2월 말에 토비 두목 왕혜당(王惠堂), 류진동 이하의 183명이 총살당하거나 체포되었고 토비 무리 오성(五省)과 조영(曹榮) 이하의 134명이 항복하였다. 아래는 전투성과이다 :

〈1935년 가을, 겨울의 숙정사업 성과표〉

계절별	가을	겨울
총살	4797	1202
부상	4124	1307
체포	1204	225
항복	3068	2213
수출(搜出)	2665	1589

종류	토벌		항복		몰수		현재	
	가을	겨울	가을	겨울	가을	겨울	가을	겨울
기관총	20	0	16	0	3	0	39	0
추격포	4	0	0	0	0	0	4	0
자동보병총	3	0	2	0	1	1	6	1
보병총	2256	496	1570	910	4483	3179	6309	4585
권총	1208	133	449	451	1433	1692	3090	2276
탄알	82640	10370	36782	34955	93056	58862	212478	104187
인질수	1139	302	0	0	0	0	1139	302
마필(馬匹)	1486	385	0	0	0	0	1486	385

같은 해 가을, 겨울철 숙정사업이 결속된 후의 토비상황을 본다면 동변도와 삼각지대에서는 비록 양사령(楊司令) 이하의 흥군토비와 염생당(閔生堂) 등 토비무리가 활동하였지만 그 활동거점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빈강성(濱江省)중부 및 이북 일대의 각 토비무리는 엄중한 타격을 받아 투항하거나 흩어져 수량이 절반 감소되었다. 유력한 토비 두목 조상지도 북으로 이동하여 삼강성(三江省)으로 갔으며 동부 경내의 토비 무리는 국경 지구의 충실한 경비역량으로 하여 활동을 완전히 제지시킬 수 없었다. 첫째, 토비무리가 강박으로 경비 역량이 약한 지구로 집결하여 비적지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숙정사업에서 토벌팀의 효과와 치본사업의 진척을 병행하였다. 하지만 행동하기 쉬운 지방에서는 특별히 철저하게 진행하였기에 비적무리의 행동이 자취를 감추었다. 둘째, 과거의 비적 무리는 주의와 주장에서 같은 점은 물론이고 이해와 입장이 상반된 비적무리도 서로 접근하여 반만, 항일의 명목하에 대단결

을 실현하였다. 셋째, 사업의 심입 때문에 순수한 일반토비거나 정치토비로서 계속 존재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공산토비와 합작하지 않으면 항복하거나 흩어져 잠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장개석이 제5차 공산토비토벌에서 성공하였고 중국 소비에트(蘇維埃)구역의 수도 서금(瑞金)도 1934년 11월 10일에 함락하여 중국공산당부대가 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다음 해, 중국공산부대가 서북지구로 전이하는 도중 제7차 대회를 진행하였다. 공산국제의 경정에 의하면 1935년 8월 1일, 중국 소비에트정부 인민위원회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항일구국을 위해 전국동포에 알리는 문서” 즉 “8·1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모든 항일구국을 위한 부대 즉 홍군, 동북인민혁명군과 각 지의 항일의용군은 응당 통일되고 전국적인 항일의용군과 같은 연합항일군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공산당 지도방침의 전변과 우리나라 숙정사업의 진척 때문에 국내 비적무리가 항일 통일전선을 조성하는데 기회를 창조하였다. 1936년 1월 하순, 동북항일연합군은 탕원현(湯原縣) 내에서 군정확대연석회의(軍政擴大聯席會議)를 열었다. 회의에 출석한 토비두목으로는 조상지(趙尚志), 사문동(謝文東), 이화당(李華堂), 이연록(李延祿), 하운계(夏雲階), 풍치강(馮治綱) 등이 있다. 회의 결과 같은해, 2월 25일에 제1군 군장 양정우(楊靖宇), 제2군 군장 왕덕태(王德泰), 제3군 군장 조상지, 제4군 군장 이연록(李延祿), 제5군 군장 주보중(周保中), 제6군 군장 사문동 및 탕원유격대(湯原遊擊隊), 해륜유격대(海倫遊擊隊)의 명의로 “동북항일연군 통일군대 건제선언(東北抗日聯軍 統一軍隊 建制宣言)”을 발표했다.

항일전선을 통일한 공산토비는 그 활동이 더욱 격렬하고 흥포하였다. 그들은 아름다운 언사로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전을 진행하는 동시에 남, 북만에서 경찰서, 삼림경찰대, 무기창고 등을 습격하여 무기, 탄약을 약탈하였다. 상술한 가을철과 겨울철의 숙정사업으로부터 항일통일전선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제4기의 전기이다.

후기(1936년 4월~1939년 3월)는 작년 가을철, 겨울철의 숙정사업이 취득한 성과의 기초에서 치안 대책을 세우기 위해 관동군은 1936년 4월~1939년 3월까지의 삼년계획 - “만주국 치안숙정 계획대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대강”에 근거하여 “3년 치안숙정 계획요강”을 제정하였다.

사변 이래 진행한 수차례 숙정(肅整)사업은 모두 계절에 따라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이번부터 3년계획을 제정한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이는 국내 치안사업이 한 단계를 마치고 새로운 단계의 사태에 적응하기 위해 실행한 체제로서 남은 토비무리에 저항하고 장기적으로 각항 기본사업을 진행할 수요에 의해 산생한 것이다. 요강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방침 : 만주국 각 기관의 자아역량과 국내의 편벽하고 먼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경무기관은 반드시 치안의 악렬함과 비적이 산생한 원인을 알아내야 한다. 각 기관에서 진행한 제반 건설도 치안사업과 배합하고 동시에 경무기관의 공고와 충실을 도모하고 확보해야 한다.

요점 : 삼강, 빈강, 길림, 간도 네 성과 봉천, 안동 두 성의 일부를 중점으로 하여 숙정을 하고 국경을 엄밀히 봉쇄하고 비적무리의 동향을 확실히 판단하고 시기를 겨누어 적당한 행동을 취하여 현존 비적무리를 소멸하는 것을 치본 사업의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 선전과 안무를 통해 건국정신을 철저히 보급시켜 공산주의와 반만, 항일 등 불량사상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한다. 사상공작과 정확한 정치조치를

통해 토비와 백성을 분리시켜 민심을 파악함으로써 치본 사업과 병행하여야 한다.

항목 : (1) 경찰기관의 공고와 정비(일본인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원의 합리화를 분산, 분배시켜 경찰관의 교양과 소질을 제고하고 규율을 정돈하며 인사를 혁신하고 경찰을 개선한다. (2) 치안실시(통신네트의 확충을 정비하고 공로를 정비하여 집단부락과의 연계를 건립한다) (3) 현상만 치료하는 사업(비상경비와 서로 호응하고 정보네트를 확충하여 잠복한 비적 및 비적과 연계가 있는 자들을 수색하고 토적 무리를 항복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4) 치본 사업(민간의 충을 단속, 밀수하고 보갑 제도를 철저히 보급시키고 호구조사를 엄격히 진행하여 토비들이 자생하는 근원을 없앤다) (5)사상대책 (6)교화사업 (7)실업 진흥사업.

하여 이 지역의 치안숙정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군대와 경찰기관과의 공동노력에 과감히 개시되었다. 시작한 첫해 즉 1936년 봄의 상황을 보면 안동성 남부로부터 봉천성 일대에 접거한 제1군장 양정우와 부하 정빈(程斌), 우만리(于滿利), 만순(万順) 등을 두목으로 하는 토비들이 간도성으로 몰려간 제2군 제1사의 김일성(金日成) 비적과 연계를 가졌다. 그들은 또한 줄곧 대립상태에 처해 있던 정치토비 왕봉각(王凤阁) 및 길림성으로부터 도망 온 오의성(吳义成)과도 연합하여 창궐하였다. 8월에 이르러 이미 무송현(武松縣)을 대거 진공할 기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10월부터 군정부 최고 고문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동변도 북부에 대한 치안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공산토비가 사처로 분산하고 잠복하여 버렸다. 같은 해 년 말, 왕봉각 토비무리는 부하들이 거의 항복하고 본인만 도망쳤을 뿐이었다.

북만의 제3군장 조상지 토비와 제6군장 하운계(夏云阶)(6군이 성립 후 얼마되지 않아 사문동을 대치하여 해당직무를 맡았다)가 합병하여 11월 이래, 삼강성 탕원현, 빈강성 철력현(铁力縣)과 빈강성 통북현(通北縣) 변계 부근의 밀립을 근거지로 라북현(罗北縣) 국군창고와 해당 현 경내의 금광을 습격하였다. 11월 30일에는 불산현(佛山縣) 등을 습격하여 연속 흉악한 죄행을 저질렀다. 빈강성 동부지방의 제5군장 후보중은 간도성으로부터 북으로 전이한 제2군 제2사 왕덕태와 혼합부대를 이루어 영안현(宁安縣)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활동하였다. 삼강성 요하현 방면에는 제4군장 이연록과 같은 해 6월에 성립한 제7군 진영구(陈荣九)가 있었고 같은 시기, 의란현(依兰縣) 내에서 제8군(사문동)이 구성되고 탕원현 내에서는 제9군(이화당)이 성립되었다. 같은 해 가을에는 빈강성 동남부에서 제10군(왕아신(王雅臣))과 11군(기치중(祁致中))이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내막은 상세하지 않다.

총적으로 빈강, 길림, 간도 3개성의 치안이 좋아지고 삼강과 봉천, 안동성 변계는 치안이 악렬하였다. 동시에 이 시기에 암암리에 활동한 도적 무리는 모두 홍색토비무리였다. 이전에 세력이 있던 토비들도 공산토비의 세력아래에 들어갔으며 어떤 무리는 연속 투항하였다. 그 해의 각종 중요한 토비습격사건으로부터 볼 때, 경찰기관에 대한 습격이 제일 많았다. 비록 전해보다 감소되었지만 전국에 66건이 있었다. 이런 습격은 주로 비적무리가 무기를 얻기 위한 행동이었다.

〈1936년 비적무리가 항복하고 비적 두목이 총살당한 통계표〉

성별	건별	항복		총살	
		토비두목	일반토비	토비두목	일반토비
안동		6	659	6	22
삼강		0	19	1	1
빈강		0	112	2	20
봉천		3	162	0	29
길림		6	502	3	11
열하		0	35	0	31
금주		0	140	3	29
흑하		0	0	0	0
간도		2	270	0	2
용강		0	197	0	1
합계		17	2,096	15	146

치안숙정 3년 계획의 이듬해인 1937년은 사건이 제일 많이 발생한 해이다. 숙정사업의 특별 사항으로 같은 해 1월 24일에 중앙에서 “동변도 복흥위원회”를 건립하였고 통화에서 “동변도 복흥사무처”와 “동변도 특별치안유지회”를 건립하여 동변도의 치안사업을 다시 진행하였다. 그 외, 7월 1일부터 삼강성에서 특별치안숙정사업을 실시하여 “특별치안유지회”를 건립하였다. 마침 7월 7일에 중일전쟁이 폭발하여 내외형세가 긴박하였다. 하지만 국내 제반 정치사업의 정비가 온건하게 전진하여 12월 1일에 일단 양국이 계획했던 “치외법(治外法)권리를 제거하고 부속지역의 행정권을 넘기는” 소원을 이루었다. 이해의 숙정사업의 결과로부터 볼 때, 전국의 월평균 비적수가 2만이고 전해와 비길 때 1만이 감소되었다. 12월에 이르러서는 1만좌우로 감소되어 전국 치안상황이 선명한 전변을 가져왔다. 그해, 총살당한 토비두목이 107명, 일반토비 7,556명, 몰수한 총이 3,870개로써 성과가 컸다. 이번의 숙정사업은 작물이 무르익을 때여서 토비들이 제일 활약할 시기였다. 북경 교외 노구교에서 중일 양군의 충돌사건이 발생하고 전선이 점차 확대하여 중일전쟁으로 발전했다. 국내 토비무리는 시기가 닳았다고 생각되어 사변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선전을 진행함으로써 민심을 동요시켜 세력을 회복하려 했다. 하지만 일본 군대가 중국 각지에서 거대한 전과를 거두고 국내 경비기관이 적당한 조치를 취했기에 국내 치안이 동요되지 않고 동변도 및 삼강성의 공산토비에 대한 숙정도 온건하게 진행되었다.

지난 해, 빈강, 간도, 길림 각 성은 치안이 잘 되어 토비무리가 발을 붙힐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삼강성 경내로 들어가 새로운 근거지로 만들기 시작했다. 1937년, 토비수가 14,000명이 되었다. 흩어진 무리들이 다시 회합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토벌 팀에 저항하고 있었는데 그 행동이 계획있고 활약적이었다.

이 시기, 삼강성 내에서 치안이 가장 악렬한 지역은 방정현(方正縣)동부, 화천현(桦川縣), 의란현, 탕원현과 벌리현이다. 의란(依蘭)지역에는 동북항일연군 제8군 사문동, 제9군 이화당, 제5군 주보중 등이 있었고 부금(富錦)지역에는 제6군의 마덕산(馬德山)과 제4군의 이연록과 진영구 이학만(李學滿) 등이

있었으며 탕원 지역에는 하운계가 죽은 후 군장을 담임한 제6군 군장 대홍무(戴洪武)가 있었고 제3군 군장 조상지는 잠시 번강성 해륜현으로 전이하였다가 후에 다시 삼강성의 라북, 수빈(绥滨) 두 현으로 돌아갔다.

동변도(東邊道)는 삼강성에서 치안이 악렬한 지역이다. 1월에 시작한 종합 숙정에서 왕봉각을 체포했고 무송(抚松), 몽강(蒙江)에서 제1군에 소속해 있던 조국안(曹國安), 김일성, 최현(崔賢), 필단장(畢團長) 등을 체포하였다. 기타 토비들은 봉쇄구역을 돌파하고 금천(金川), 휘남(輝南), 유하(柳河) 방면으로 도망쳤다. 제1군 양정우는 흥경(興京) 본계(本溪), 청원현(淸原縣) 변계로 침입하여 세력을 점차 확대하였다.

길림성 제2군에 소속된 방진성(方振聲)과 목단강성(牡丹江省)의 진한장(陳翰章)도 행동하고 있었지만 토비의 상황이 비교적 완화되어 안동성과 같이 치안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용강성(龍江省)에는 통북(通北), 해륜성(海倫省) 외에 토비의 종적이 없어졌고 흑하성(黑河省)도 마찬가지로였다. 금주, 열하(熱河) 두 성에서는 기타 지리원인으로 하여 두 세 무리의 토비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비록 남경(南京)이 이미 점령당했으나 갈수록 확대되는 중일전쟁으로 하여 일만 양국은 부득불 전시 체제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형세 하에 치안숙정 3년 계획의 마지막 한해인 1938년을 맞이하였다. 그 해 3월, 삼강성 외에 기타 각 성에서는 모두 1933년 이래 설치한 각 급 “치안유지회”를 없앴다. 4월, 국군의 치안팀을 재차 경찰에게 넘겨 관리하게 하여 유격대를 묶었다. 6월, 화북 대부대의 잔여 패졸들이 열하성으로 침입하여 치안을 방해하려고 시도했다. 7월, 갑자기 장고봉(張鼓峰)사건이 폭발하여 형세가 험준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사한 시기에도 숙정사업이 잘 진행되어 유력한 토비두목들이 육속 항복하고 판을 치던 공산토비도 점차 소멸되었다. 삼강성의 치안숙정사업은 12월 말에 성공적으로 결속되고 항복사업은 1939년 3월 말에야 완성되었다.

이 한해의 중점은 지난해에 이어 삼강(三江), 통화(通化) 두 성에 두었다. 철저한 치안숙정을 거쳐 토비세력이 점차 쇠약해져 같은 해 년 말에는 토비수가 5,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년 말의 약 1만 명에 비하여 5,000명이 감소된 셈이다. 그 기간, 총살당한 수가 3,693명, 몰수한 총이 2,609자루였다. 한편 유력한 토비두목이 잇따라 항복했는데 5,837명에 달하였다. 하지만 중일전쟁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복잡하고·미묘한 국제형세는 한시도 조용하지 않았다. 특히 소련은 흉악한 음모를 꾸며 후방을 소란시키려 하였다. 음모가 갈수록 격렬하여 7월에 끝내 동부국경에서 장고봉사건을 일으켰다. 국내 토비무리 는 이 시기를 틈어주고 토비세력을 다시금 만회하려고 하였지만 일만 군경이 합작을 잘 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삼강성(三江省)은 일만 군경을 주체로 대집단의 토비무리를 소멸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 외, 식량 도로를 봉쇄하였기에 토비무리가 궁지에 빠져 모험을 걸고 행동하게 되었다. 2월에 라북현(羅北縣)을 습격하고 5월에 벌리현을 습격하였으며 9월에 요하현 서풍저자(西風咀子)에서 일야지대(日野支隊)사건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은 점차 국외로 도망치거나 경비역량이 비교적 약한 국경지대인 요하(饒河), 무원(撫遠) 방면으로 도망치고 혹은 항복하였다. 하여 실력이 있는 토비무리는 멸망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다. 삼강의 맹주로 떠받치던 제3군 조상지, 제4군의 이연록, 이연평(李延平), 제6군의 대

홍빈, 제7군의 이학만, 제5군의 주보중 등은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단지 노야령(老爺嶺)지역에 제9군 이화당과 왕음무(王蔭武), 사문동이 있었고 요하 방면에는 제7군의 주력이 있었으며 화천, 부금현 변경에는 제3군과 제6군의 일부가 있고 탕원지역에는 제6군 갱전군(耿殿君)이 있었으며 영안현 변경에는 제5군의 일부가 있었는데 모두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다.

용강성과 빈강성에서는 삼강성 숙정사업의 파급을 받아 잔재한 토비가 몰려 들어왔다. 7월, 보청(寶淸)지역에서 남하한 제4, 제5군에 소속한 잔여 토비 약 200명이 빈강성의 빈현(濱縣), 연수(延壽), 주하(珠河), 위하(葦河), 오상(五常) 등 현에서 위세를 부렸다. 통북, 해륜지역으로 침입한 장광적(張廣迪), 이진원(李振遠) 비적은 9월 4일에 빈북선(濱北縣)의 열차를 습격하였다. 왕명귀(王銘貴)를 위수로 한 제3, 제4군의 연합토비들이 철력, 경성, 수릉(綏陵), 해륜 등 광대한 지역을 침범했다.

목단강(牡丹江), 길림(吉林) 두 성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점거하고 제2군의 진한장(陳翰章), 최현, 김득범(金得範)¹⁸⁾ 등 유력한 토비무리들이 군경들의 부단한 숙정에 거의 소멸되어 완전히 침체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통화성(通化省)에서는 효웅(梟雄), 양정우의 창궐로 하여 집안현(集安縣)이 가장 위험한 지대로 되었다. 집단부락의 터널공정을 파괴하고 토벌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간혹 발생했다. 군경숙정활동의 심입되니 더는 그 지역을 차지할 수 없게 하자 몽강(蒙江), 임강(臨江)으로 도주했다. 그들은 삼엄한 경계구역을 지나 목적지 몽강에 도착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하고 물자 보급이 어려워 거기에서 오래 있지 못하였고 김일성과도 회합할 희망이 없어졌다. 비록 김일성이 한창 임강현(臨江縣) 중부지대에 출몰하였지만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다. 봉천, 안동 두 성에서는 토비숙정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다. 토벌목표인 토비두목 정빈(程斌)이 9월에 항복 한 후, 수하 토비들도 총살당하거나 체포되었다. 같은 해 연말, 두 세 갈래의 토비 외에 토비의 종적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

열하성에서 작은 토비와 야편 토비들이 아직 활동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이 비교적 완만하여 치안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중일전쟁의 진척과 함께 일본군대를 피하려는 화북의 잔병패졸들은 그 지역에서 “흥아정진군(興亞挺進軍)”과 토비로 급변한 자들과 합쳐 그 수가 2,000명이 되었다. 같은 해 6월, 기동(冀東)지역에서 점차 북상하고 난평(灤平), 풍녕(丰宁), 흥륭(兴隆), 청룡(靑龍) 등 국경지역에 침입하였다. 어떤 토비들은 각 지의 경비기관을 살피고 승금선(承金线)의 열차를 전복하려고 시도했다. 우리의 군경은 신속한 행동으로 수시로 격파하고 소탕하여 10월 이후 평온한 상태를 회복하였다. 그 외 흑하, 간도, 금주(錦州) 흥안(兴安) 각 성은 비록 사소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지만 상황이 온정하게 나아갔다. 193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석 달 동안은 “치안숙정 3년 계획의 최후시기”였다. 때문에 계속하여 특별 항복사업을 진행했다. 하여 1936년 봄, 항일통일전선의 구호아래 이루어진 도옥항일연군이 3년도 안 되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후회하는 자들은 단연히 항복하고 기타 토비 두목들은 홀몸으로 국외로 도망쳐 생명을 건졌다. 우리나라 제4기 치안사업은 이렇게 결속되었다.

18) 박득범(朴得範)의 오기임.

제8절 제5기(1939년 4월 이후)

이 시기의 특징은 국내형세의 변화에 따라 토비무리의 성질이 변화하고 국외의 작용이 심입된 것이다. 중일전쟁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새 질서의 건설과 동아공영권의 건설에 있다. 이 시기에 적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에서 새로운 체제가 산생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제국과 함께 새 동아건설의 기지로써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때문에 반드시 시국이 요구하는 제반 정책을 신속히 실시해야 하였다. 그 결과 모든 방면, 국민생활이나 사회 형세나 모두 변화를 피면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국민교양수준이 보편적으로 낮아 건국한지 10년이 흘렀지만 어떤 국민은 건국정신에 대한 인식이 모자랐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민은 심리상 불평과 불만이 산생하였는데 이는 이해할만한 일이다. 불량배들은 이 기회를 틈타 책동을 일으켜 민심이 국가와 분리되게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8·1선언”의 기치하에 성립된 동북항일연군은 아침이슬처럼 삼시에 사라졌다. 공산토비의 세력도 근본적인 타격을 받아 대부분이 분산되었다.

완고한 토비들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 엄숙한 비평과 자아반성을 하고, 비적무리의 성질을 고쳤다. 특히 그들은 군중에 대한 조치를 새롭게 바꾸고 과거의 전횡을 극복함으로써 군중과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1938년 중기부터 공산토비들은 자신들을 재조직하는데 착수하였다.

유럽, 아시아에 미친 세계형세의 변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각 국 간에도 복잡한 관계가 발생한다. 일·만(日滿)과 소련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러했다. 장교봉사건 이후에 발생한 노몬한사건, 독일과 소련지간의 관계,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국이 동맹을 결성한 것, 동아공영권의 북방의 변경을 보위하기 위해 소련에 대해 제1방어선을 구축한 우리나라의 입장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비무리가 국내에서 암암리에 활동한 것은 소련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국외의 강력한 부추김 아래에서 공산토비들은 잔여토비들을 규합하여 새롭게 자신을 무장하였다. 그 정황을 보면

제1로군은 원 동북항일연군 제1군, 제2군의 잔여토비들로 묶여졌다. 총지휘는 양정우가 담당하고 부총지휘는 위중민(魏拯民)이 담당하여 통화, 길림, 간도 3성의 변계를 활동구역으로 삼았다. 제2로군은 원 제5군, 제7군의 잔당으로 이루어졌는데 총지휘는 주보중(周保中)이 담당하고 동안, 삼강성 변계로부터 목단강성 남부지역까지를 활동구역으로 삼았다. 제3로군은 원 제3군, 제6군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엔 조상지가 총 지휘를 맡다가 장수전이 대치하였고 정치위원은 풍중운(冯仲云)이었다. 그들은 북안(北安), 삼강, 흑하, 빈강 각 성의 변계인 소흥안령(小兴安岭)에 근거지를 잡고 있었다.

1939년 3월 11일, 양정우 비적들이 화전현 목기하 삼림경찰대를 습격하였고 4월 7일에는 그 현의 대포재하(大蒲柴河)를 습격하였다. 6월 30일, 제1로군에 소속한 최현(崔贤)이 천보산(天宝山)광업소를 습격하였는데 행동이 매우 적극적이었다. 특히 현지에 가서 항복사업을 하던 길림성 구눈호(區瀨戶) 경비과장일행이 순직한 사건으로부터 볼 때 제1로군의 활동은 아주 활약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감안하여 그해 10월부터 일본군 야전군 부사령관의 지휘하에 일만군경이 일체로 되어 “동남부 치안숙정 특별사업”을 실시하였다. 제3로군에 소속한 왕명귀(王銘貴), 주주임(周主任), 박주임(朴主任), 풍치강(冯治剛), 강복영(姜福榮), 장광적(張廣迪) 등은 통북, 북안 두 현을 근거지로 하여 북만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일만 군대와 경찰유격대가 배속을 증가시켜 압제를 받았지만 소식이 없던 조상지가 7월에 갑

자기 만주로 들어와 흑하성 불산현의 우라가금광(烏拉嘎金鑛)을 습격하여 다수인이 살상되었다.

1940년에 들어서서 갈수록 긴박해지는 형세와 함께 비적무리의 활동도 더욱 활약적이었다. 그들은 연이어 현, 삼림경찰대, 개척단, 철도 등을 습격하거나 사병사업(士兵事業), 민중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동남부지역의 숙정사업은 커다란 진전이 있었고 북안성도 비적무리를 소멸하는데서 성과가 컸다.

제1로군의 상황을 보면 같은 해 2월 23일, 총지휘 양정우가 몽강현에서 습격당해 죽고 위증민이 대처하였다. 그들은 안도현(安圖縣) 홍기하(紅旗河)와 오상현(五常縣) 라림하(拉林河)의 삼림경찰대 및 오상현의 충하진(沖河鎮)을 습격한 외에 또 우리의 마에다(前田) 토벌대도 전멸한적이 있었다. 하지만 3월에 제1방면군의 지휘 조아범을 총살하고 9월에 경위려 여단장 박득범을 체포하였으며 12월에 영안현 내에서 제3방면군의 지휘 진한장 등을 총살하였다. 지도간부를 잃게 되자 수하의 토비들이 항복했다. 1940년 겨울에 이르러, 잔여분자들이 분산하여 몇 사람씩 소부대를 이루어 간도, 목단강 두 성의 변계에 은신하였다.

제2로군은 1940년 6월에 지대로 개편하여 제1, 2, 3지대가 동안, 삼강성 변계에 있었고 제5군이 목단강 남부의 산악지대에 있었다. 그들은 제1로군과 마찬가지로 그 해 5월 7일에 제7군 군장 경악정(景樂亭)이 총살당했다. 5월 27일에는 원 제7군 제1사장인 제2지대 대장 왕여기(王如起)가 총살당하였다. 기타 제7군의 보충단장(補充團長) 이을평(李乙平), 정치주임 정로암(鄭魯岩), 제5군 제3사장 이문빈(李文斌)과 장진화(張振華) 등 대두목들이 부하와 함께 총살당하지 않으면 체포되었다. 그러나 잔여 비적들이 9월 13일에 보청현(寶淸縣) 칠성하(七星河)에 머문 국군에 대해 사병사업을 진행하고 10월 20일에 밀산현(密山縣) 동이도강(東二道崗) 개척단을 습격하였으며 8월과 9월에는 공공연히 도가철도(圖佳鐵路)를 폭발시켰다.

제3로군은 행동이 제일 활약적인 비적무리로서 북안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유격활동을 진행했다. 4월에 조양산에서 비적두목회의를 거행하여 지대로 개편하고 로군 총지휘본부를 통북현의 남북하(南北河) 부근에 두었고 각 지대는 북안, 용강, 빈강, 흥안동(興安東) 각 성에서 평원 유격전술을 전개했다. 제3지대 왕명귀가 영솔한 토비 무리는 7월 17일에嫩江縣) 커라경찰서(科洛警察署)를 습격하고 8월 24일에 극산현(克山縣) 통관경찰서(通管警察署), 9월 11일에 남하현(訥河縣) 리하역(拉哈站), 9월 25일에 제9지대와 합작하여 장수전의 지휘하에 극산현을 습격하였다. 10월 3일에 룡용문역(隆龍門站)을 습격한 후, 흥안동성으로 침입하여 그 성 각지에서 한 달 반 동안이나 유격전을 하였다. 그리고는 북상하여 원 점거지인嫩江縣) 조양산부근에 이르러 토벌대의 추격을 받고 북상하였다. 제6, 제9지대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특히 제12지대의 대홍빈(戴洪賓), 서택민(徐澤民) 비적은 1940년 3월부터 빈강성, 조주(肇州), 조동(肇東), 후곽(后郭), 조원(肇源)의 평원지역에서 지하사업을 진행했다. 8월 하순에 북안성으로부터 대거 남하하여 빈강성으로 잠입하였다. 9월 20일에 조주현(肇州縣) 풍악진(丰乐鎮)을 습격하여 중앙은행 지행에서 현금을 빼앗아 갔다. 그 후, 대홍빈이 북상하였고 서택민, 서향식(徐享植) 등이 잔여분자들을 지휘하여 삼조지역(삼조)에서 유격을 진행했다. 10월 11일, 곽후기(郭后旗)는 토벌대에 의해 41명이 총살당하여 큰 타격을 받았다. 또 11월 8일에 후곽기성(后郭旗城)을 습격하여 그 현을 한때 점령했다. 우리 토벌대의 급습 때문에 12월 말, 북방의 북안성 경성현(庆城縣) 방면으로 도망갔다. 이번의 추격적 중, 빈강성 경비과장 와타나베(渡边)가 12월 26일에 장렬히 전사했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과거 10년동안 국내의 토비무리에 대해 부단히 치안숙정사업을 진행했다. 국내 교통과 통신의 발달 및 산업과 경제의 발전과 함께 치안상황은 비약적인 전변을 가져왔다. 하지만 부단히 변화하는 국제형세 하에 곧 건국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도 일본제국과 함께 험난한 시국을 침착하게 대해야 했다. 또한 다년간의 노력을 거쳐 극대한 희생을 부여하였지만 현재에도 비적 무리가 깡그리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동부와 북부 국경을 연계하는 산악·밀림지대는 적대국가와 이어져 있어 거기에서 소수의 비적무리들이 일만 군정의 토벌에서 벗어나 잠복하고 있다. 동시에 남부의 열하성 국경지방에서도 공산당 팔로군의 토비무리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토비무리에 대해 이후에도 철저한 토벌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을 계속 앞으로 추진하는 시기, 북방의 유력한 거점을 확보하는 중대한 사명을 짊어진 우리나라의 치안은 단지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공영권 북부변경을 보위하는 책임도 짊어지고 있다.

(하략)

〈출전 : 吉林省公安廳公安史研究室, 東北淪陷十四年史吉林編寫組 編譯, 「治安部警務司」, 『滿洲國警察史』, 1990년, 52~62쪽 · 110~113쪽 · 122~126쪽 · 132~137쪽 · 195~204쪽〉

2) 신선대

(1) 일본이 양성한 주구, 신선대

중공안도현위(中共安圖縣委) 당사관공실(黨史辦公室) 왕지양(王志揚)

1937년 전국항일민족전쟁이 폭발한 이후, 일본침략자는 관내를 진공하는데 장애가 되는 '우환'(동북 항일연군을 가리킴)을 제거하기 위하여 「3년치안숙정계획요강」에 근거하여 동북항일연군과 유격지역에 대한 대"토벌"을 진행하였다. 신선대(新選隊)(新仙隊라고도 함)는 일본침략자가 "치안숙정"계획을 실행할 때 백두산지역의 항일연군을 "토벌"할 목적으로 지금의 연변지역 안도(安圖) 등 4개현에서 조직된 것이다.

안도현(옛 安圖縣을 가리킴) 신선대는 1938년 7월 초, 위안도현경무과장이 경방과장 박호길(朴好吉) 경좌를 파견하여 책임지고 조직하게 하였다. 모집대상은 사격을 잘하는 "포수"와 신체가 건강하고 산길에 익숙한 옛 군인들이었다. 준비가 끝난 이후, 1938년 7월 중순 안도현 안도촌 흥룡하(興隆河)에서 정식으로 신선대가 조직되었다. 초기에 신선대는 겨우 17명의 대원에 불과하였다. 채봉림(蔡鳳林, 興隆河에서 무장자위단 단장, 保長 등 직무를 맡은 적이 있음)이 제1임 대장, 신덕승(辛德勝)이 부대장, 김두익(金斗益)이 참모장을 맡았다. 1938년 11월 이후에는 이창조(李昌朝)가 제2임 대장을 맡았다.

1938년 8월과 9월, 항일연군은 대사하(大沙河)와 한총구(寒葱溝)에서 전투를 벌여 백두산지역의 일위(日僞) '토벌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일위군(日僞軍)은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토벌'을 강화하였다.

1939년 11월 위안도현 경무과에서는 또 박호길(朴好吉)을 파견하여 만보촌(萬寶村) 십기가(十驥街)에서 40여 명의 신선대원을 확충하고 이도일(李道日, 십기가에서 무장자위단 단장을 맡은 적이 있음)을 대상으로, 장홍성(張洪星)을 참모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원래 흥릉하에서 조직된 신선대를 안도현 제1신선대로, 십기가에서 편성된 신선대를 제2신선대로 편성하였다. 신선대를 조직할 때 대원은 모두 조선족이었는데 후에 확충하면서 한족도 영입하였다. 안도현 신선대는 대원이 가장 많을 때 90여 명에 달하였다. 이 신선대는 시종 위안도현 경무과의 지휘를 받았는데 조직 명칭을 1938년 7월부터 1939년까지 신선대라고 하였다. 1940년 이후에는 가타다(片田)부대로 명칭을 바꾸었다.

1939년 가을부터 1940년 겨울까지 일제는 간도성 각 현과 화전(樺甸)·통화(通化) 등 지역에서 3,000명의 일위(日僞)¹⁹⁾군경 및 신선대로 항일연군이 활동하는 유격구에서 경제봉쇄를 하고, “참빗질로 이 잡듯이 수색과 토벌”을 실시하였다.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상황에서 동북항일연군은 대부대의 활동을 중지하고, 소련경내로 퇴각하여 대오를 정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40년 겨울부터 항일부대는 육속 소련경내로 전이하였다. 안도현(安圖縣)경내에서 총부와의 연락이 끊어져 고군 작전하던 마덕전(馬德全) 휘하 제2군 6사 9단 3련의 일부 지휘관과 대원들은 연이어 적에게 투항하였다. 적은 이미 “치안숙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여기고 1941년 5월에 신선대를 해산하였다. 신선대의 역사는 1938년 7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총 2년 10개월이다.

신선대의 역사는 비록 길지 않지만 극히 최악적인 역사이다. 즉 그 일부가 일본침략자의 지휘를 받으면서 “치안숙정”의 깃발을 내걸고 백두산지역의 항일무장세력을 “토벌”하고, 항일전사와 무고한 백성을 도살한 죄악사이다. 신선대가 ‘토벌’을 감행한 주요지역은 안도현 경내의 흥릉·이도백하(二道白河)·두도구(頭道溝)·한양구(漢陽溝)·소황구(小荒溝)·대황구(大荒溝)·한총구(寒葱溝)·서북차(西北岔) 등이다. 당안자료의 통계에 의하면 신선대의 ‘토벌’활동은 모두 15차에 달하는데 항일전사와 백성 36명이 살해되고 17명이 체포되었다. 그들의 ‘토벌’활동은 대체로 초기·중기·말기 등 3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38년 7월부터 1939년 11월까지, 즉 신선대의 설립부터 대오를 확충하여 편성(제2신선대의 신설)하기 이전까지의 ‘토벌’활동을 초기단계라고 한다. 초기단계에는 주요하게 안도촌과 양강구촌(兩江口村) 일대에서 ‘토벌’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의 ‘토벌’활동은 모두 7차례 있었는데 항일전사 14명이 살해되고 10명이 체포되었다.

1938년 7월 15일 위안도현 경무과는 밀정 왕복유(王福有)로부터 흥릉하(興隆河) 남산에서 항일연군의 소부대가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무과 경방고장(警防股長) 박호길을 파견하여 채봉림(蔡鳳林)이 거느리는 신선대원 17명과 헌병 2명이 배합하고, 왕복유가 길안내를 하면서 밀림에 들어가 항일연군부대를 수색·‘토벌’하게 하였다. 교전 중 신선대는 항일연군 1명을 사살하고 장총과 단총을 각각 1자루씩 빼앗았다. 참모장 김두익은 항일연군전사의 시체에서 수급을 잘라내 왕복유한테 메고 가게하고, 그것을 상급에 바쳐 공로를 인정해줄 것을 청하였다.

1938년 10월 초 밀정 왕복유의 정보에 근거하여 경무과는 경위 왕한민(王漢民)을 파견하여 채봉림이

19) 일제시기의 일본과 만주국을 가리킴.

거느리는 17명의 신선대원으로 흥륭하(興隆河) 동남쪽 합정자(合頂子)에서 “토벌”을 진행하여 항일연군 전사 1명을 살해하였다.

1938년 12월 20일 신선대 제2임 대장 이창조(李昌朝)는 전체 대원을 거느리고 백두산 서하자(西河子) 일대에서 항일연군의 숙영지를 몰래 기습함으로써 항일연군에 아주 큰 손실을 주었다. 항일연군전사 4명이 살해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체포되었다.

1939년 2월 신선대 대원들은 경무과 경위 왕한민 등 4명의 지휘를 받으며 백두산 서하자(西河子)일대에서 산을 수색하다가 항일연군 소분대와 교전을 벌였다. 항일연군부대가 포위를 돌파할 때 신선대는 4명을 사살하고 총 2자루를 빼앗았다. 흉악무도한 참모장 김두익은 수난당한 항일대원들의 귀를 잘라 칼에 꿰어가지고 가서 상급에 항일연군을 ‘토벌’ 한 공로를 과시하였다.

1939년 5월 초 위경무과 경위 왕한민은 이창조와 신덕승(辛德勝)이 거느리는 20명의 신선대를 직접 지휘하여 이도백하지역에 들어가 산을 수색하다가 삼합수(三合水)에서 항일연군의 숙영지를 발견하였다. 쌍방이 교전할 때 왕한민은 기관총으로 항일연군전사 2명을 사살하고 총 2자루를 빼앗았다.

1939년 7월 20일 이창조와 김두익은 20명의 신선대원을 거느리고 위경무과 경찰 류홍유(劉洪有)의 배함으로 두도구에서 산을 수색하던 중 항일연군전사 1명을 살해하고 권총 1자루를 빼앗았다.

1939년 11월 말부터 1939년 12월 말까지, 즉 신선대를 확충하고 2개 부대로 나누어 “토벌”할 때부터 2개 부대가 연합하여 ‘토벌’하기 이전까지를 ‘토벌’활동의 중기라고 한다. 이 기간 신선대의 “토벌”활동은 모두 2차례 있었는데 항일연군전사 10명이 살해되고 5명이 체포되었다.

1939년 11월 말 제2신선대 40여 명은 대장 이도일(李道日), 참모장 장홍성(張洪星)의 지휘를 받으면서 양강구·로수하(露水河)일대에서 산을 수색하다가 항일연군의 숙영지를 발견하고 마구 사격하여 항일연군전사 1명을 살해하였다.

1939년 12월 24일 이창조가 거느리는 제1신선대 40여 명은 위경찰 채영춘(蔡永春)의 배함으로 양강구 서차하(西岔河)일대에서 산을 수색하다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곧 발자국을 따라 추격하여 항일연군의 숙영지를 몰래 포위 습격하여 항일연군전사 9명을 살해하고 5명을 부상 입히고 체포하였다.

1939년 12월 말부터 1941년 5월까지, 즉 제1신선대와 제2신선대의 연합‘토벌’로부터 신선대의 해산까지를 ‘토벌’활동의 후기라고 한다. 이 단계 ‘토벌’활동은 주요하게 소황구(小荒溝)·대황구·한충구·서북차와 백두산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이 시기 ‘토벌’활동은 모두 6차례 있었는데 항일연군전사와 백성 12명이 살해되고 백성 2명이 체포되었다.

1940년 5월 초 제1신선대와 제2신선대는 소황구에서 연합하여 ‘토벌’할 때 항일연군의 숙영지를 발견하고 맹사격을 퍼부어 항일연군전사 2명을 살해하고 항일연군부대에 식량을 공급한 백성 2명을 체포하였다.

1940년 5월 10일 제1신선대와 제2신선대는 이창조와 이도일의 지휘를 받으며 대황구에서 ‘토벌’하다가 항일연군전사 1명을 살해하고 권총 1자루를 빼앗았다. 신선대가 전투장소를 정리할 때 참모장 김두익(金斗益)은 잔인무도하게 수난당한 항일연군 전사의 귀를 잘라 신선대에 걸어놓았다.

1940년 5월 중순 1명의 경좌(이름은 잘 모름)가 제1신선대와 제2신선대를 지휘하여 한충구(寒蔥溝)에

서 산을 수색할 때 아편을 재배하는 백성 3명(그중 2명은 소련인)을 발견하고 그들을 총살하였다. 하산한 이후에는 항일연군전사 3명을 소멸하였다고 거짓보고를 하였다.

1940년 11월 초 제1신선대와 제2신선대가 백두산일대에서 산을 수색하다가 항일연군 숙영지를 발견하고 사면으로 포위하였다. 포로가 된 항일연군전사 3명(그중 2명은 소련인)은 현성으로 압송되어 가던 중 참살 당하였다.

1940년 12월 5일 제1신선대와 제2신선대는 대장 이창조와 이도일의 지휘를 받으며 백두산일대에서 산을 수색하던 중 항일연군전사 2명을 살해하고 총 2자루를 빼앗았다.

1941년 2월 초 제1신선대와 제2신선대는 안도현 서북차에서 '토벌'할 때 항일연군부대의 행적을 발견하였다. 이도일은 일부 대원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항일연군전사 1명을 사살하고 총 1자루를 빼앗았다.

상술한 15건의 피비린 '토벌' 죄악은 증거가 있음으로 조사한데 불과하다. 증거가 확실한 많은 부분적인 사실과 죄악적인 사실들은 잠시 고증할 방법이 없다. 신선대가 '토벌에 공로가 있어' 일위(日僞)로부터 '훈8위'훈장을 집단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해방 후에 신선대에 참여하여 '토벌'활동을 감행한 반혁명분자들은 병사하거나 국외로 도망한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이어 인민정부에 잡혀 재판을 받았다. 두 손에 혁명선열들의 붉은 피를 가득 묻힌 살인귀들은 인민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 본문 참고자료 목록

- ① 『안도당사자료(安圖黨史資料)』 1집.
- ② 안도현 공안국 당안 『위안도현신선대조직간황(僞安圖縣新選隊組織簡況)』
- ③ 안도현 공안국 당안 『위안도현신선대조직간황』 “신선대가 저지른 중대한 반혁명사건”
- ④ 마덕전(馬德全)기록
- ⑤ 『중국공산당의 주요사건에 대한 소개(中國共產黨主要事件簡介)』

〈출전 : 政協安圖縣文史資料委員會, 「日僞參養的鷹犬—新選隊」, 『安圖文史資料』 第4輯, 1990년, 158~163쪽〉

(2) 간도성 내 비적 토벌 상황에 관한 건 외(1940)

2-1)

간도성 내 비적 토벌의 상황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함북 파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상황

- 1) 진한장(陳翰章) 비적단 약 50명은 지난 5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영안현(寧安縣) 방신구(房身溝)

부락을 습격하였는데, 이 지역 주둔 만주군 부대가 이를 격퇴하여 물리쳤다.

2) 지난 10일 계통을 알 수 없는 비적단 약 150명은 연길현(延吉縣) 서북 부락을, 같은 날 10일에 최현(崔賢) 비적단 약 100명이 연길현 무학동(舞鶴洞) 부락을 습격하여 식량과 기르던 소, 그 밖의 다수를 약탈한 뒤 도주하였다.

3) 와타나베(渡邊), 신(申) 각 경찰대대는 지난 2일에 화전현(樺甸縣) 655 고지에서 양비(楊匪) 주력과, 구마자와(熊澤) 특수반은 이튿날인 3일에 연길현 1145 고지 북측에서 진비(陳匪) 약 60명과, 그리고 만경궁본대(滿警宮本隊)는 같은 날 돈화현(敦化縣) 825 고지에서 쌍승잔비(雙勝殘匪)와 교전을 하여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4) 지난 7일, 무라카미(村上) 경방대는 연길현 둔전영(屯田營) 서북쪽에서 최현(崔賢) 비적단의 주력 약 150명과 교전하여 이를 격퇴하였는데, 여기에다가 만주군 송수(宋樹) 부대는 같은 달 12일에 돈화현(敦化縣) 1120-617 고지에서 최현 비적단과 교전하여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2.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1) 이번 주 중에 간도성(間島省) 내에는 비적단이 출몰하지 않았으나, 성(省) 경계 및 접양지대에는 여전히 유력한 비적단이 모여 있다. 이들은 식량 공작에 광분하여 경비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2) 지난 2월 9일, 돈화현 관지(官地) 부락에 진한장 비적단 약 100명이 습격해 와서 물자·기르는 소 등을 약탈하고 부락민 46명을 납치해 도주하였다.

3) 왕청현 춘양(春陽) 경방대는 토비(土匪) 오개기(吳開起) 비적단 약 80명을 격멸하고자 출동하던 중, 지난 2월 18일에 춘양 동북쪽 우권구(牛圈溝) 부근에서 오개기 비적단과 충돌하여 교전하다가 비적 3명을 쓰러뜨려 패주시켰다.

편자 주 : 원본은 등사(謄寫), 훈령정(璽領正) 기밀(機密) 제76호, 1940년 3월 13일, 재(在) 훈춘(琿春) 영사(領事) 다키야마 세이지로(瀧山靖次郎) 보고. 본신사송부선생략(本信寫送付先省略).

2-2)

비적 정보 보고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간도성 경찰대 본부장으로부터 온 통보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기(記)

1. 화룡현(和龍縣) 박신선(朴神選) 부대가 김일성(金日成) 비적단의 야영 흔적을 발견하고 양포(洋砲) 및 그 밖의 것들을 압수하다.

: 3월 11일 9시 무렵, 화룡현 박신선 부대는 화납자(花拉子)·이마록구(裡馬鹿溝) 부근의 김일성 비적단을 색출하여 소탕 중 1269 고지 4킬로미터 이마록구 안에서 천막 11개가 있던 흔적이 남아 있는

비적단의 야영지를 발견하고 그 부근을 수색 하던 중 우피(牛皮) 6장, 양포 한 개, 대부(大斧) 두 개를 발견하여 압수한 뒤 현재 그 흔적을 따라 추적 중이다.

2. 왕청현 서부 현 경계 부근에 소속을 알 수 없는 비적 두 명이 출현하다.

: 왕청현 합마당(哈蟆塘) 삼림경찰대에서 사하장(沙河掌) 방면의 비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파견한 밀정의 보고에 따르면, 3월 11일 6시 30분 무렵, 1149 고지 서북쪽 4킬로미터 부근에서 비적단의 척후병으로 보이는 무장 비적 두 명(모두 국방색 복장과 방한모·장총을 휴대하였다)이 출현하여 누구냐 하는 말이 날아와 이에 이 밀정은 서둘러 도주해 돌아왔다고 한다.

<처리>

1) 합마당 삼림경찰대 손(孫) 경위 이하 32명의 추적대를 구성하여 즉각 이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였다.

2) 대황구(大荒溝) 주둔 여과 부대에 통보함과 동시에 왕청현·연길현(延吉縣) 부근 각 경방대를 독려하여 이 방면에 대한 비적 정보 수집을 적극 요청함과 동시에 삼엄한 경계를 실시하였다.

3. 일본군 다치바나(橘) 중대가 사하장(沙河掌)에서 소속을 알 수 없는 비적단 30명을 공격하다.

: 3월 11일 18시 무렵, 사하장 일대 소탕 중인 다치바나 중대는 방신구(房身溝) 상류 부근에서 소속을 알 수 없는 비적단 30명과 충돌하여 교전을 하다가 격퇴하여 현재 동쪽으로 추적 중이다.

<처리>

왕청현·연길현의 각 경방대를 독려하여 비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과 동시에 삼엄한 부락 경비를 지시하였다.

4. 김일성 비적단이 이마록구 방면에서 남하하여 안도현 홍기하(紅旗河) 삼림 경찰대를 공격하다.

: 지난 3월 1일 이래, 내두산(奶頭山) 방면에서 이마록구 방면으로 잠입 중이던 김일성 비적단 약 150명은 3월 11일 20시 40분 무렵, 안도현 삼림 경찰대를 습격해 와 다섯 시간에 걸쳐 교전을 하다가 비적단을 서남쪽으로 격퇴시켰다. (현재 자세한 사항은 불분명하다)

<처리>

1) 이시가키(石垣) 경방부장은 경비소대 및 무선통신반을 지휘하여 토벌 □□(불분명-원문) 위해 12일 8시, 연길의 발현지(發現地)로 출동하였다.

2) 사금구(沙金溝)에 있던 마에다(前田) 중대(100명 경기관총 4정)는 이 비적단의 정보에 따라 12일 7시, 이 비적단의 퇴로를 차단하려고 대마록구(大馬鹿溝) 남쪽으로 출동하였다.

3) 안도현 삼도구(三道溝)에 있던 야마네(山根) 중대는 12일 6시 무렵, 이마록구 방면으로 동진(東進)하여 비적단의 퇴로를 공격해 격퇴하였다.

5. 왕청현 경방대는 비적이 은닉해 둔 식량과 말 먹이, 그 밖의 물자를 발견하고 압수하다.

1) 3월 11일 8시, 상촌(上村)을 출발한 상촌 경방대 유(劉) 경위보 이하 18명은 서부 현(縣) 경계 부근의 경계를 겸하여 비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수색 활동을 펼치던 중, 이 날 14시 무렵, 상촌 서북쪽 17킬로미터 1125 고지 부근 산 속에서 동쪽 산 중턱 정상 부근에서 횡혈(橫穴)을 파서 여기에 퇴적(堆積)하여 윗부분에 나뭇잎·작은 가지로 덮어 놓은 비적들이 은닉해 놓은 다음과 같은 식량을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기(記)

속(粟) 16 대(袋)

2) 3월 11일 이른 아침부터 왕청현 □(불분명-원문) 구촌(丘村) 서쪽 14킬로미터 지점의 밀림 속에서 수색 활동을 하던 중에 □구촌(□丘村-원문) 경비대 유(柳) 경장(警長) 이하 3명(자위단 2명)은 같은 날 14시 무렵 비적이 은닉해 놓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기(記)

남자용 바지 1

여자용 바지 2

국방색(國防色) 신발 1

속반(粟飯) 10인 분 정도

셔츠 1

보자기 1

세면기(洗面器) 1

(모두 오래된 물품)

6. 김일성 비적단의 도주 경로가 드러나다.

1) 13일 아침 일찍, 흥기하 삼림 경찰대에서 보냈던 척후(대원)가 돌아와 한 보고에 따르면, 비적단은 흥기하 서북쪽 대마록구 상류 735 △ 동쪽 소곡지(小谷地)에서 야영을 하고 주력 비적단의 전초(前哨)는 이 지역 동쪽 소고지(小高地)에 불을 질러 경계를 하고 있다. (13일 3시 현재)

2) 납치당한 사람 중 일본인 1명, 조선인 13명, 만주인 9명, 백인계 러시아인 2명, 모두 25명은 13일 11시 30분에 석방되어, 대마록구로 돌아 왔는데, 돌아와 들려준 고생담을 종합하면, 비적 수는 약 150명 (만주인 약 30명, 그 밖에는 조선인, 그 가운데 여성은 3명 있다고 한다)으로, 경기관총 4정을 가지고 있다.

비적은 12일 6시 무렵, 735 고지 부근으로 도주하여 당일에는 이 지역에서 야영을 하고, 13일 7시 30분 무렵, 앞에서 언급한 피랍자 25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약 20명의 피랍자는 식량을 운반하는 데 동원하여 이 지역 서북쪽으로 이동하였다.

(1) 위의 비적에 대한 정보에 따라 대마록구에 진출해 있던 이시가키(石垣) 경방부장은 각 토벌대에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마에다(前田) 중대(흥기하 삼림경찰대 일부를 포함한다)는 이들을 체포·섬

멸하기 위해 13일 6시 30분에 흥기하를 출발하여 맹추격 중이다.

(2) 오카미(大神) 토벌(제1, 제2 중대)은 14일 안도웅구(安圖熊溝) 부근에서부터 이 방면으로 적을 수색하며 전진 중이다.

(3) 후지이(藤井) 안도부현장(安圖副縣長)이 지휘하는 오카미(大神) 경찰대 제3중대(40명)는 14일에 안도삼도구(安圖三道溝)에서부터 양방자(楊房子) 방면으로 적을 수색하며 전진 중이다.

(4) 안도 제1, 제2신선대는 14일 안도삼도구에서부터 동남쪽 15킬로미터 부근으로 적을 수색하며 전진 중이다.

(5) 아마네(山根) 토벌대는 14일 상화납자(上花拉子) (이마록구 북쪽 6킬로미터) 부근으로 진출하여 적을 수색하면서 활동 중이다.

(6) 우나미(宇波) 경방대장은 박(朴) 신선대(神選隊) 30명(경기관총 1정) 및 이나다(稻田) 소대(9명(경기관총 1정))를 지휘하여 마에다(前田) 중대와 합류하려고 14일 백리평(百里坪)에서 출발하였다.

7. 마에다(前田) 중대가 김일성 비적단과 교전하다.

: 마에다 중대는 13일 출동한 뒤, 비적의 흔적을 따라 추적 중에, 같은 날 20시 무렵, 대마록구 서쪽 소마록구(小馬鹿溝)에서부터 서쪽으로 통하는 선로(線路) 중점 서쪽 1킬로미터 지점에서 비적의 후위(後衛)와 충돌하여 40분 동안 교전을 하다가 서쪽으로 격퇴시켰다.

또한 같은 날 22시에 소마록구 선로 북쪽 3킬로미터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비적단으로부터 맹사격을 받아 마에다 중대장의 통솔 하에 맹렬히 공격해 이 비적단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격 중이다.

〈이 2회에 걸친 전투에서 입은 피아(彼我)의 피해〉

우리측 없음

적비(敵匪)

유기사체(遺棄死體) 3구

기타 다수의 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획품

탄약 153발(發)

백미(白米) 두 석(石)

밀가루 다섯 부대(袋)

기타 전등(電燈), 탁상시계, 도대(刀帶), 의류 등 10여 점

편자 주 : 원본은 타이프 판(版), 훈령정(瓊嶺靑) 기밀(機密) 제85호, 1940년 3월 19일, 재 훈춘 영사 다키야마 세이지로 보고. 본신사송부선생략(本信寫送付先省略).

2-3)

간도성 내 비적 토벌 상황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함북 파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기(記)

1.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의 상황

1) 김일성·최현 연합 비적단의 주력 약 150명은 안도현 화남자에서 안화현(安和縣) 경계 노령(老嶺) 일대로 이동 중이었다.

경비의 빈틈을 엿보다가 각 토벌대에서는 포위 태세를 갖추고 이 비적단을 추적 중이다.

2) 지난 5일, 일본군 오하라(大原) 나츠이(夏井) 부대는 임강현(臨江縣) 청구자(靑溝子)에서 이참모(李參謀) 비적을 공격하여, 이참모 이하 10명을 무장해제 시키고 무기·탄약 등 다수를 압수하였다.

3) 만주군 제6유격대 및 여가보(呂家保) 삼림경찰대는 지난 5일 몽강현(濛江縣) 860 고지 부근에서 강주임(姜主任) 비적단 약 20명과 충돌하여 강주임 이하 3명을 죽이고, 부관(副官) 이하 3명을 체포하였고 그 밖에 무기를 압수하였다.

4) 본성(本省)에서는 수차례 보고가 있었듯이, 김일성 비적단이 극도의 식량난과 토벌 상황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대들듯이, 조선 내 공격을 감행하려는 계획도 어려워진 점에 비추어, 관할 하에서 삼장서(三長署)에 경찰관 41명을 증원하여 각 요소에 배치해, 비적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아울러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상황

1) 안도현 남부지구에 남하 후 소재가 불분명한 김일성 비적단 약 150명은 갑자기 지난 11일 밤, 안도현 대마록구 소재 흥기하 삼림 경찰대를 습격하여 사상자가 각각 2명 발생하였다.

그 밖에 다수의 총기와 현금 10,504엔(円), 물자 12,900엔, 합계 23,404엔을 약탈하였고 고력(苦力) 140명을 납치해 도주하였다.

2) 만주군 마에다(前田) 중대는 김일성 비적단을 수색하여 추적 중, 지난 13일 밤, 안도현 대마록구 부근에서 이 비적단과 충돌하여 두 차례 교전을 펼쳐 비적 3명을 죽이고, 그 밖에 탄약·식량 등을 압수한 뒤 계속해서 추적하였다.

3) 만주 측 토벌대에서는 김일성 비적단의 섬멸을 위해 주력을 안화현 경계 노령 동부 지구에 집중 포위 태세를 갖추고 비적을 수색하면서 추적 중이다.

4) 김일성 비적단과 함께 안도현에서 남하한 최현 비적단은 지난 달 말 무렵, 다시 돈화현으로 북상한 것으로 보인다.

5) 본성에서는 강 건너 편 비적의 정보에 비추어, 관할 하 삼장서(三長署)에서 경찰관 31명을 지원 받아 경계 중에, 비적 관련 급박한 정보가 날아들어, 지난 12일 경부보(警部補) 이하 50명을 증파하여 경비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편자 주 : 원본은 타이프 판(版), 훈령정(璽領正) 기밀(機密) 제93호, 1940년 3월 28일, 재 훈춘 영사 다키야마 세이지로 <간도성 내 비적 토벌 상황에 관한 건> 보고. 본신사송부선생략(本信寫送付先省略).

2-4)

비적 정보 보고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간도성 경찰대 본부장으로부터 온 통보는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기(記)

1. 연길현(延吉縣) 양병대(亮兵臺) 경방대(新新隊) 소비적단(小匪賊團)을 격멸하다.

: 3월 12일 14시 무렵, 연길현 동□촌(同□村-원문) 연통납자(煙筒拉子) 북쪽 5리(里, 만주식 리 단위) 지점에 있는 숲을 굽는 오두막에 비적 6명(1명은 권총을, 2명은 소총을, 그 밖에 곤봉을 들고 있었는데 모두 군경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연길현에서는 관할 하의 경방을 엄격히 강화함과 동시에 성창구(城廠溝) 경방대로부터 가와무라(河村) 경좌 이하 25명 및 가미야(神谷) 경위가 지휘하는 양병대 자위단 20명, 그리고 서북쪽에서 유격 중인 김(金) 경위가 지휘하는 신신대 30명은 이를 수색하는 중이다.

또한 14일 19시 50분 무렵, 앞에서 언급한 비적 6명은 연통납자 부락에 출현하여 부락을 경비하는 자위단에게 누구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경방대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위단으로 하여금 오인하여 문을 열게 한 뒤 부락 안으로 침입하여, 양포 1개, 전화수화기 1개, 그 밖에 잡곡 소량 □□(원문) 점(點)을 약탈하고 도주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앞에서 언급한 각 경방대는 공격 의지가 더욱 고양되어 이를 급히 추적하여, 합미파령(哈爾巴嶺) 삼림 경찰대 분둔대(分屯隊) 청사가 있던 자리에서 북쪽 약 13킬로미터 (그림 상, 1088 △ 동측) 부근에서 불을 피우고 휴식 중인 그 비적단을 발견하고 기습 공격하여 격멸하였다.

시간은 15일 11시 30분이었다.

<피아의 피해>

우리측 피해 없음.

적(敵)

유기사체 4

부상 1

포획품

모젤 1호 권총 1정(목제(木製) 자루)

모젤 권총 탄약 20발(發)

경찰관용 도대(刀帶) 2

그 밖에 다수

또한 연통납자에서 납치되었던 자들을 탈환(奪還)하였다.

2. 안도(安圖) 명안(明安) 가도(街道) 부근에 소비적단이 출현하다.

1) 14일 23시 무렵, 명안 가도 상소영자령(上小英子嶺) 남쪽 산기슭인 영자령의 서쪽 산 속에 수상 짙은 불빛이 있어, 이곳의 감시초소원 6명은 이를 정찰하기 위해 나갔다가 300미터 전방에 23명의 사람 그림자를 발견하고, 누구냐고 물으니, 불빛이 있는 쪽에서 사격이 가해져 와, 이에 반격을 하여 그들을 서남쪽으로 격퇴시켰다.

이튿날 아침, 정찰했던 흔적을 통해 판다해 볼 때 약 30명 정도의 비적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15일 3시 무렵, 명안 가도 상□수하자(上□樹河子-원문) 감시초(監視哨)의 보초선(步哨線)에 약 4, 5명의 비적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일찍 이를 발견하고 일제히 사격을 가해 남쪽으로 격퇴시켰다.

3) 16일 16시 무렵, 미혼진(迷魂陣) 방면의 비적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나갔던 안도대전자(安圖大甸子) 특수반 하시바(橋場) 경위 이하 3명은 대전자(大甸子) 북쪽 5킬로미터 835 △ 동측 2킬로미터 밀림 속에서 비적단 약 10명 정도로 보이는 야영 흔적을 발견하였다.

대원들은 그 흔적을 따라 북쪽으로 약 5킬로미터 729 △ 동측 2킬로미터 지점부터 동북쪽 827 △ 동남 측에서 야영을 하고, 동진하여 □동자(□銅子-원문) 725 △ 부근까지 추적 중이다.

4) 15일 14시, 안도현 대사하(大沙河) 특수반 밀정 호청림(胡靑林)으로부터 안도현 장연둔(長連屯) 동북쪽 약 4킬로미터 밀림 속에 무장한 비적 4명이 야영(野營)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대하사 경찰 대원 안(安) 경위보 이하 5명은 14시 30분에 비적을 격멸하기 위해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으나, 이를 일찍 눈치 챈 비적들은 우리 쪽에 사격을 가해 왔으며, 우리 측도 용감하게 비적에게 접근하여 맹렬하게 사격을 퍼부어 이들을 서북쪽으로 궤주(潰走)시켰다.

〈이 전투 결과 남은 피아의 피해〉

우리 없음

적(敵)

유기사체(遺棄死體) 1 (전장 수사 결과 판명하였다)

포획품

탄대 1

38식 소총탄 37발(發)

지갑 1

도장 1(장수산(張壽山))

거주 증명서 1(장수산)

서류 1책(冊)

이불 1장

그 밖에 현금, 의류 몇 점

5) 15일 17시 안도현 장연둔(長連屯) 경방대 7명은 고동하(古洞河) · 부이하(富爾河)가 합류하는 부근에서 수 명의 비적단과 충돌하여 교전을 하다가 동북쪽으로 추격하였으나, 밀림과 날이 저물어서 비적의 흔적을 놓쳤다.

이 전투에서 경장 김영택(金英澤)은 오른쪽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다.

위의 비적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최현 비적단의 일부가 최근 미혼진에 잠입하였는데, 작년 10월 이해 각 토벌대의 토벌로 인해 그들의 근거지가 파괴되어 최근 식량이 부족해져 식량 공작(工作)에 분주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

각 부대는 연락을 비밀리에 취함과 동시에 부하를 비적에 관한 정보 수집에 적극 나서도록 하며, 부락의 경방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다.

3. 3월 16일 19시, 연길현 서북쪽 경찰대에서 다음과 같은 비적 2명을 체포하다.

기(記)

본적 : 산둥성(山東省) 요남현(耀南縣) 사도하자(四道河子)

제2연사호(第2連四號) 왕길덕(王吉德) 당 30세.

본적 : 안도현(安圖縣) 대사하(大沙河)

제2연칠호(第2連七號) 유봉산(劉鳳山) 당 19세.

1) 위 두 사람 모두 2월 14일, 최현 비적단의 연길현 서북쪽 협피구령(夾皮溝嶺) 서북쪽 서쪽 1085 △ 부근에서 비행기의 폭탄을 맞아 부상을 당하였고, 그 밖의 부상자 및 나오자 모두 10명(만주인 7명, 장총 3정, 조선인 3명, 권총 1정)과 함께 비적의 본대를 벗어나 서북쪽의 북쪽 30리(만주식 단위의 리) 산 속에서 반거(蟠踞) 요양(療養) 중인 만주인이 사망하였다.

3월 10일, 그 밖의 7명은 앞에서 언급한 2명을 남기고 다른 곳으로 식량 공작에 나서서, 주둔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어 이를 손에 넣기 위해 나섰으므로, 서북쪽 부근에서 이들을 마침내 발견하여 체포하여 조치하였다.

현재 조사 중에도 이청배(李靑背) 경방대는 17일, 이 비적들을 연행하고, 적을 수색해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처리하였다.

4. 김일성(金日成) 비적단의 동향

김일성 비적은 14일 이른 아침, □□(불분명-원문)(마록구(馬鹿溝) 상류)에서부터 북진하여 1182 △ 서북 지구에서 서쪽을 향해 1269 △에서 적설량이 3척(斥)이나 되는 산 봉우리 1368 △ — 1427 △ — 1242 △ — 1283 △의 정상은 서쪽으로 향해 소(牛) 여덟 마리 및 피랍자 70여 명을 데리고 도주하고 있다.

5. 위 비적에 관한 정보에 따른 각 부대의 행동

1) 화룡현 우나미(宇波) 경방대장(최도전(崔稻田)소대, 박(朴)신선대를 포함), 마에다(前田) 중대는 적굴대(赤堀隊)와 비밀리에 연락을 위하여 김일성 비적을 수색하면서 맹렬히 전진 중이다.

2) 오카미 부대(大神隊)(제1, 제2중대)는 옹구(熊溝) 부근에서 계속해서 동진하여 적을 수색하는 중이다.

3) 후지이대(藤井隊)는 양방자(楊房子) 지점에서 북방으로 가는 김일성 비적을 격퇴하려고 하였다.
4) 제1, 제2신선대는 삼도구 동남쪽 20킬로미터 지점으로 전진하여 김일성 비적을 격퇴하려고 하였다.

6. 경찰대 본부는 대마록구에 추진하다

안도현, 흥기하 삼립경찰대를 습격한 김일성 비적단을 격멸하기 위해 추격 중인 각 경찰대·토벌대를 지휘·독려하기 위해 후쿠오카(福岡) 경찰대 본부장은 3월 15일 15시 30분, 화룡현 삼도구 출발하여 전투사령소를 대마록구에 추진하였다.

7. 김일성 비적단의 주력은 1242 고지를 거쳐 백색(白色) 지대를 내두산 방향을 향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일부는 이마록구 혹은 그 상류 750 고지 부근에 잠입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위의 김일성 비적단에 대한 정보에 따른 각 부대의 행동

1) 각 경찰 토벌대의 지도·독려를 위해 흥기하로 전진 중인 후쿠오카(福岡) 본부장은 3월 18일 삼도구(화룡(和龍))에 전투사령소를 추진하였다.

2) 이시가키(石垣) 경방대장은 여전히 대마록구에서 토벌대 및 경방대의 지도 및 연락을 담당하고 있다.

3) 나가토미(永富) 공작부장은 연길경찰학교 생도 및 본부 예비대 모두 합쳐 47명으로 일개 소대를 편성하여, 3월 16일 연길·안도(安圖)를 향해 전진 중인데, 18일 14시에 함흥둔(咸興屯)을 출발하여 내두산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내두산에서 1283 고지 부근으로 진출하는 아마네(山根) 중대와 합류하여 전진하였다.

4) 3월 18일, 아마네(山根) 중대는 1630 고지, 1076 고지 서남쪽 4킬로미터 무명(無名) 고지에서 야영을 하고, 이후 나가토미(永富) 공작부장의 지휘 아래 배속되어 내두산으로 전진하였다.

5) 마에다(前田) 중대는 11일 이래, 김일성 비적단의 흔적을 따라 추격 중이었는데, 16일 1242 고지 부근에서 남하하는 피납치자(61명, 소 2마리)의 흔적을 비적들의 흔적으로 오인하여 이를 추격해 대마록구로 전진하였으나, 계속해서 이마록구 남쪽 지구에서 은닉되어 있던 식량들을 발견하고 김일성 비적단의 일부를 색출하여 격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6) 오카미(大神) 중대(제1, 제2중대)는 여전히 용구 부근에서 반격을 하는 김일성 비적단을 추격하려고 한다.

후지이(藤井) 안도부현장(安圖副縣長)이 이끄는 오카미(大神) 제3중대는 3월 18일 청산리(靑山里)에 서부터 노령(老嶺) 부근을 적을 수색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7) 3월 19일, 안도(安圖) 경방대본부를 흥□둔(興□屯-원문)으로 이동하여 제일선 경방대를 독려하는 중이다.

9. 비적단이 은닉해 놓은 식량을 발견하여 압수하다

3월 19일 14시 무렵, 김일성 비적단을 추격 중인 마에다(前田) 중대는 대마록구 서북쪽 15킬로미터

비적단의 첫 번째 야영지 부근에서 다음과 같은 비적이 은닉해 놓은 식량과 기타 물자를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기(記)

백미(白米) 10 석(石)
소고기 한 마리 분(分)
축음기 1 대
레코드 10 장
라디오 1 대
면복(綿服) 상의 15 장
면복 하의 6 장
폭열탄(爆裂彈) 8 발(發)

10. 3월 17일 14시 무렵 합마당(哈蟆塘) 삼림경찰대 양(楊) 경장 이하 10명은 이 부대 서남쪽 10킬로미터 사하장 지구를 수색 활동하던 중에 다음과 같이 비적 1명을 체포하였다.

기(記)

본적 : 봉천성(奉天省)
소속 : 제2 정치위(政治委) 제14 단(團) 제5 연(連)
양봉만(楊奉滿)(당 23세)

비적은 지난 해 12월 21일 이래, 각 지에서 토벌대의 공격을 받아, 지난 2월 10일 연길(延吉) 서북쪽에서 일본군 대부대 및 비행기의 공격으로 인해, 사하장 서북쪽 □□□□ 잠입 중, 최근 식량이 극도로 부족하여 왕청현 향수하자(响水河子) 부락의 습격을 계획하고 그 상황을 정찰하여 3월 16일 30분 무렵 근거지를 출발하여 침입해 왔다.

11. 왕청현 합마당 삼림경찰대가 사하장 지구에 출동하다.

앞에서 언급한 체포 비적을 길 안내자로 세워 같은 비적들이 은닉한 총기·탄약 등을 압수하였으며 아울러 그 비적들의 본거지를 격멸하여 합마당 삼림경찰대 사사키(佐々木) 경위보 이하 22명(경기관총 1대)은 3월 20일 4시, 1149 고지 및 사하장 서북쪽을 거쳐 돈화현 주만자구(朱滿子溝) 삼림 경찰대로 진출할 예정이다.

12. 안도현 고등창(高登廠) 동쪽 10킬로미터 산 속에 소속을 알 수 없는 비적 십 여 명이 출현하다.

3월 13일 11시 무렵, 안도현 고등창(대사하 동남쪽) 주민 이근주(李根柱)(47세)는 이 부락 동쪽 산 속에서 뿔 나무를 하던 중에 소속을 알 수 없는 비적에게 납치되어, 3월 20일 13시 무렵, 비적단에서 탈출하여 돌아왔는데, 그 비적단 15명(경기관총 2대, 소총 8정, 그 밖에 권총 휴대, 조선인 여성 2명이 있다)

은 현재 고등창 동쪽 10킬로미터 산 속에 반거(蟠踞) 중이다.

〈처리〉

각 토벌대에 연락함과 동시에 대사하 경방대원 20명 및 봉천(奉天) 나카무라(中村) 경찰대는 20일 14시, 비적을 섬멸하기 위해 비적들의 흔적을 수색하며 마안산(馬鞍山) 동북쪽(요단(腰團) 동북쪽 10킬로미터) 지구까지 서둘러 추격하였으나, 결국 그 흔적을 놓치고 말았다. 21시 30분, 고등창(高登廠)으로 귀환하였다.

대사하 특수반에서는 반원 및 첩자를 독려하여 이 지역 방면의 비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 왕청현 북합마당(北哈蟆塘) 경방대가 비적 1명을 체포하다.

3월 17일 17시 무렵, 북합마당 경방대 하마무라(浜村) 경장 이하 10명은 대석둔(大石屯) 서쪽 현 경계 부근에서 수색 활동을 하던 중에 고력(苦力)들의 오두막에 잠복 중인 다음과 같은 비적 1명을 체포하여 수사반에 인도하였다. 당국은 현재 조사 중이다.

기(記)

오준정(吳俊停)(당 18세)

편자 주 : 원본은 타이프판(版), 훈령(璽領) 기밀(機密) 제94호, 1940년 3월 29일, 재 훈춘 영사 보고, 본신사송부선생략(本信寫送付先省略)

2-5)

비적 정보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서 간도성 경찰대 본부장으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통보가 있어 그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기(記)

A. 연결현 이도하자(二道河子)에 비적단이 습격해 왔다

- (1) 비적단의 습격 일시 : 4월 5일 0시 45분
- (2) 비적단이 습격한 부락 : 연결현 양병대 동북쪽 4킬로미터인 이도도하자(二道道河子)(신설 개척민 부락)
- (3) 비적단의 수·계통·장비 : 계통이 불분명한 비적단 약 30 여 명(그 가운데 조선인 여성 2명).
군경복 착용
경기관총 3정

각자 장총 휴대

(4) 비적단의 습격 상황 : 비적단은 갑자기 습격해 와서 권총이나 장총을 겨누면서 부락 내의 민가에서 식량을 약탈하고, 부락민 7명에게 이를 운반하게 하여 동쪽 600고지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5) 부락의 비적단 피해 물품

: 백미 1석 3두

속 2석 5두

옥수수 7승

현금

(6) 비적단의 유류품 : 천막 하나(약 30명 수용 가능)

㉠ 명월구(明月溝)의 고이케(小池) 부대(명월구 14명, 천천구(賤賤溝) 9명, 영통석자(煙筒磊子) 6명, 모두 29명)는 5일 8시 30분, 천천구를 출발하여 지도상의 1088 고지에서 812 △ 로 나왔다가 812 △ 와 701 △의 중간에서 비적단이 식사 주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였다.

천막 및 그 밖의 물품을 포획하였다.

그리고 비적들을 추격하였으나, 이 비적단과 우리 부대 중간에 만주군 지성부대(指省部隊)가 나타나 공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적단의 퇴로(退路)를 차단하고자, 지도상의 714 △ 및 807 △로 우회한 곳에서 결국 비적단을 놓쳤다.

이에 같은 날 23시, 다시 701 △ 부근으로 가서 야영을 하고, 이튿날 7시 이곳을 출발하여 714 △에서부터 807 △ 일대를 수색 활동을 하였으나, 결국 비적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늘 18시 삼도구로 귀환하였다.

㉡ 경찰훈성부대(38명)는 같은 날인 5일 15시, 양병대를 출발하여, 만구구(灣口溝) 오지 계곡 사이에서 야영을 하였다.

6일, 이 부근에서 고이케 부대와 함께 이 지역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비적단을 만나지 못하였다.

같은 날 9시, 명일구(明日溝)로 귀환하였다.

㉢ 연길현 구스다(楠田) 경방대장 이하 13명은 5일 7시, 연길을 출발하여 1088 △ 에서부터 비적단을 찾아 812 고지 서쪽으로 나와, 고이케 부대와 연락을 취하였다.

비적단은 만구구 및 천천구로 철수하였으며, 7일 13시 2분, 명일구로 귀환하였다.

㉣ 통화 응원 경찰대는 5일 3시, 양병대를 출발하여 비적단을 찾아 출발하였다.

700고지 부근 일대를 소탕하고, 같은 날 16시 일단 천천구로 귀환하여 이전 임무로 복귀하였다.

㉤ 연길현 의용 자위단 부대(40명)는 5일 9시, 비전영(比田營)을 출발하여 대리수구(大梨樹溝) 및 이청배(二靑背)의 오지를 출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8시, 이청배에 도착하여 숙영을 하였다.

이튿날 6일 7시, 이 지역을 출발하여 애양뢰자(哀羊磊子) 오지 일대를 소탕하고 차명구(車明溝)로 나왔으나, 비적단의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19시 30분, 양병대로 귀환하였다.

연길현 흑할자구(黑瞎子溝) 부근에 소규모 비적단이 나타났다.

① 비적단의 정황

: 4월 6일 21시, 연길현 명일만 경찰서 내 흑할자구(黑瞎子溝)(남구(南溝) 남쪽 약 3킬로미터)의 동쪽 지점에 숲 굽는 오두막에 계통을 알 수 없는 무장 비적 2명, 조선인 비적 2명(조선인 여자 2명)이 나타나 숲 굽는 인부에게 부근 부락의 경비 상황을 듣고, 7일 2시 무렵, 남쪽을 향해 갔다.

② 조치

: 위 비적단의 정황을 접하자 만만구(灣灣溝) 경비대장 나가이(永井) 경위보 이하 15명은 즉시 출동하여 대서촌(大西村) 특수반에 연락하여 대서촌 흑할자구 일대를 소탕·수색 중이다.

B. 마에다(前田) 중대의 전투 상보

1. 전투 전의 피아의 태세

: 1940년 3월 11일 밤, 흥기하 삼림경찰대를 습격해 온 김일성 비적단을 수색하여, 안도현 동남부 밀림지대에서 비적 토벌 활동을 하던 중인 화룡현 경찰대 마에다(前田) 중대 145명(이 가운데 흥기하 삼림 경찰대원 25명 및 박(朴) 신선대원 35명을 포함한다) 은 3월 24일, 지도상 안도현 대마록구 서북쪽 약 30킬로미터(1368 고지) 부근을 수색하던 중, 김일성 비적단 23명이 야영을 한 흔적을 발견함으로써 그 흔적을 따라 서둘러 추격하여 그 비적단을 체포·섬멸하기 위해 이튿날 25일 8시, 다음과 같은 행군 서열에 따라 야영지를 출발하였다.

- (1) 족적 탐색반 특수반원 9명(이 밖에 탐정을 3명 포함한다)
- (2) 참병 박신선대(朴神選隊) 35명
- (3) 전위 야마시타(山下) 제1소대 34명
- (4) 마에다(前田) 중대 본부 4명
- (5) 후위 요시카와(吉川) 제3소대 25명
- 후위 이즈미(泉) 제2소대 38명
- (6) 인부 약 120명(각 소대에서 호위원 3명 당 모두 12명을 배속한다)

봉천 경찰대 호리우치(堀内) 대대는 마에다(前田) 중대의 약 3킬로미터 후방에 속행하도록 한다.

위의 태세를 통해 비적단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1368 고지에서부터 서쪽 1427 고지를 향해 산악 밀림 속을 전진함에, 비적의 흔적이 더욱 분명해졌으므로, 중대장은 비적단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각 소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대원을 격려함과 동시에 지엄하게 경계를 하면서 북대마록구하(北大馬鹿溝河) 상류 계곡을 따라 추적 속행하였다.

C. 중대 명령

흔적을 통해 판단해 볼 때, 비적단의 주력이 가까이에 있다.

참병 소대는 특수반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본대의 전방 약 300미터를 수색하면서 전진해야 한다.

나머지 각 소대는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긴밀히 취해 전진해야 한다.